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013. 1.

산 림 청
KOREA FOREST SERVICE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숲이 희망이 되는 나라"

목 차

〈 기획조정관실 소관 〉 ····· 1

1. 중기사업계획 및 ’14예산 편성 ····· 3
2. 재정사업 성과관리 ····· 5
3.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 8
4.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 10
5. 산림행정 조직관리 ····· 13
6.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 15
7.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 17
8. 민원만족도 제고 ····· 19
9. 자체감사 내실화 및 도와주는 감사 실시 ····· 22
10. 고객맞춤형 “SMART 산림행정” 구현 ····· 26
11.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 34
12.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신뢰성 증진 ····· 39

〈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 ····· 45

1.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 47
2.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체계 정비 ····· 50
3. 산림협력 환경 제고를 위한 양자협력 강화 ····· 53
4.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 56
5. 임산물 수출확대 ····· 59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 및 확대 ····· 63
7. UNCCD COP10 의장국 역할 수행 ····· 68
8.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 ····· 71
9. 녹색 ODA 사업 확대로 해외산림협력 강화 ····· 74
10.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 77

〈산림자원국 소관〉 ····· 81
1. 새로운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산림정책 마련 ····· 83
2.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 85
3. 녹색일자리 사업 ····· 88
4.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 92
5. 산림탄소 거래체계 구축 · 운영 ····· 101
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 103
7. 한국임업진흥원 전략적 경영 이행 ····· 105
8. 녹색사업단 발전방안 수립 · 이행 ····· 108
9. 산림분야 R&D 추진 역량 강화 ····· 111
10. 조 림 ····· 114
11. 숲가꾸기 ····· 142
12. 공공산림가꾸기 ····· 156
13. 종묘생산관리 ····· 164
14. 산림생명자원관리 및 신품종 개발 지원 ····· 171
15. 남북 산림협력 사업 ····· 184
16.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 운영 ····· 188
17. 임업진흥권역 관리 ····· 191
1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193
19. 국산 목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 ····· 197
20. 목재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 200
21. 임업기계화 촉진 ····· 203
22.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 208
23.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 213
24.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 218
25. 도시숲 조성 · 관리 ····· 225
26. 학교숲 조성 · 관리 ····· 233
27. 전통마을숲 복원 ····· 238

28. 산림경관 보전 · 관리 ····· 242
29. 가로수 조성 · 관리 ····· 244
30.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 ····· 248
31. 새만금 그린네트워크 구축 ····· 252

〈 산림이용국 소관 〉 ····· 255

1. 산림복지지구(단지)를 위한 법 · 제도 기반 마련 ····· 257
2. 미래 산림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 259
3. 효율적인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강화 ····· 263
4. 국유림의 기능 및 국유림경영 정책 강화 ····· 266
5.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 273
6.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사후관리 강화 ····· 280
7.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 284
8.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 287
9.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 289
10. 산림복지 서비스 구축 ····· 291
11.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 296
12.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 ····· 300
1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활용 ····· 302
14. 산촌생태마을 운영 · 관리체계 정비 ····· 304
15. 가족친화적인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 306
16. 건전한 수목장림 활성화 ····· 308
17. 숲에서 행복을 찾는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 보급 ····· 319
18.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 322
19. 임업인 육성 · 지원 활성화 ····· 326
20.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 ····· 329
21.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 333
22. 단기임산물 유통 기반구축 ····· 338
23. 임가 소득 안전망 구축 ····· 342

24. 국가숲길 지정 추진 ····· 345
25.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347
26.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 359
27.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 369
28.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 374

〈산림보호국 소관〉 ····· 377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 379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 382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 · 외 보전기반 구축 ····· 385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 390
5. 산불예방대책 추진 ····· 394
6. 산불 진화대책 ····· 399
7. 산불방지 기반구축 ····· 404
8.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 ····· 408
9.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 413
10. 산사태의 신속 · 정확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실현 ····· 418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423
1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 427
13.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 430
14.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 432
15.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 434
16.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 436
17. 산림복원 ····· 440
18. 백두대간 보호 · 관리체계 강화 ····· 443
1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 · 관리체계 강화 ····· 447
2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 450

〈 부 록 〉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 455

기획조정관실 소관

1. 중기사업계획 및 ’14예산 편성

목 표

◇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의 육성 · 이용
◇ 산업 · 경관 · 복지가 어우러진 선진 녹색국가 기반 마련

가. ’14예산안 편성여건

o 유럽 경제위기, 미국 · 중국의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증가 등의 대내외 불안 요소 상존으로 사업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 노력이 강화될 전망

나. 기본방향

o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기후변화 대응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충, 산림재해방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산림투자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13~’17 중기사업계획 수립

o 법령 제 · 개정, ’13년 예산확정 등으로 ’12~’16년 계획 수립 이후 변동이 발생한 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위한 재원 배분 방향을 검토하여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2) 2014년도 예산편성 추진

o 각종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환류(feedback)하여 세출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신규 프로젝트 및 국책사업 완료소요 중심으로 재원배분 및 예산편성

3) 2013년도 예산집행 및 배정 관리

o 예산 전용 · 이용 · 예비비 · 이월 등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 및 배정 관리를 통해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라. 추진일정

o ’13~’17 중기사업계획 수립 및 기획재정부 제출 : 2013. 1. 31

o ’14예산안 편성지침 및 부처별 지출한도 확정 통보 : 2013. 4월말

o 산림청 ’14년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 2013. 6월말

o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3. 7~9월

o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 2013. 10. 2

o ’14년도 자치단체보조금 예산(안) 통지 : 2013. 10. 15

o 국회 예산안 심의 및 확정 : 2013. 10~12월

2. 재정사업 성과관리

목 표

◇ 재정성과관리 강화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 투명성 · 책임성 제고
◇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고 세출구조조정 추진

가. 정책여건

o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강화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예산환류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추세
- ’09회계년도부터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음

o ’09.1.1부터 국가회계법이 시행되면서 발생주의·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도입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기본방향

o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 구조조정 추진
- 성과와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성과지표 개발, 직원역량 강화로 성과제고

o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집행 사전준비를 ’12년 연말까지 이행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2013년도 재정사업(2012년도 사업추진)평가 부처 상위권 유지

o 미흡등급 최소화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74.0점)를 초과한 75점 이상을 획득하여 평가대상부처(34개) 중 3위권 이내의 목표달성
- 평가대상 7개 사업 : 산림경영기반구축,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업인 육성, 산림자원협력, 국가산림통계, 임업통계조사, 산림자원정보화

o 전문가 자문, 전문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평가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활용도 증진

2) 재정성과 목표관리 강화

o 2012년도 성과보고서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자율적 검증절차 강화
- 성과측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도록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법무감사담당관실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에 제출

o 주요국의 산림부문 성과관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위목표와의 연계 강화 추진
-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사업의 효과성 평가가 강화되도록 관리

o 만족도 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재정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일괄 추진하여 객관성·신뢰성 제고

o 재정사업 성과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현장확인 실시

o 프로그램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를 일치화하여 2014년도 성과계획서 수립
- 2014회계년도 예산안과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사업비 등이 일치되도록 하여 예산과 성과의 연계 및 환류 강화
- 성과목표와 프로그램(항),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세항)이 각각 1대 1 대응되도록 하여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체계 확립

3) 2014년도 재정사업(2013년도 사업추진)평가 사전대비 강화

o 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을 기준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 추진체계 및 추진방향 제시
- 2014년도 평가 대상사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 선정(’13년초)

o 평가대상 사업부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평가는 과별로 외부 위탁으로 추진
- 제안서 기술평가시 재정성과 담당자를 참여토록 하여 상호 정보교류

o 재정사업 모니터링은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피드백
- 사업목적 달성,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해 성과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외부 지적사항, 민원, 이해관계자간 갈등 해소 또는 개선방안 마련

※ 자율평가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엄격히 하고 성과관리 제고 노력, 성과평가서 작성의 충실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기여자에게 포상 계획

4)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o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예방 강화
  - 산림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o 예산낭비 사례가 신고되면 담당 사업과에서 현지조사 후 10일 이내 회신
  - 조사결과가 미온적이거나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주관으로 재점검, 필요시 산림정책평가위원과 함께 현지조사 추진

o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심사를 거쳐 3천만원 한도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5) 실집행 점검을 통하여 집행의 효율성·건전성 제고

o 실집행 기준으로 ’13년 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점검 강화
  - 본청 각 부서·지자체·소속기관별 집행목표를 설정하고, ’12년 연말까지 집행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연례적 이월·불용액 최소화

o 월별 계획대비 집행부진 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행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하고 집행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직접 현장점검, 일자리창출 사업과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집중 점검

o 예산집행률 제고 노력 및 성과 등에 따라 인센티브(예산증액 및 포상금 지급) 또는 패널티 적용

라. 추진일정

o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 ’13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시달 : 2012. 12월
  - ’13년도 자율평가 대상사업의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 2013. 1~12월
  - ’12년도 지역발전사업 자체평가서 제출(지역발전위원회) : 2013. 1. 31
  - ’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2013. 2. 28
  - ’13년도 재정분과 소위 워크숍 및 사업현장 확인 : 2013. 8월
  - ’13년도 재정사업 만족도 조사 추진 : 2013. 2~12월
  - ’13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기여자 포상 : 2013. 12월

o ’12년도 성과보고서 및 ’14년도 성과계획서 제출
  - ’12년도 성과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 : 2013. 2. 28
  - ’14년도 성과계획서 제출(기획재정부, 국회) : 2013. 6. 30

3. 창의적 조직문화 형성

목 표

◇ 창의·실용적 조직문화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산림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산림행정의 발전 도모

가. 정책여건

o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산림공직자의 변화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

o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 강화

o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산림정책의 효율적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창의적 조직문화 및 직장분위기 조성

o 소통과 교류·화합과 새 정부 정책공유를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 성별, 직급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감의 장 마련

o 「산림행정 이슈 토론 모임」을 활성화하고, 연구모임 활동과 연계

o 「직원 아이디어 실현회의」를 통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추진
- 산림정책 발전 또는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 형성

o 개인과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내실화
- 우수 연구모임 우수 활동 포상 및 수범사례 발표회 통하여 전파 및 공유

o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의 변화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공유 등 부처 간 상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를 위한 「3청사 아카데미」 운영

o 창의적 공직문화 형성을 위한 기관별 「변화관리 워크숍」 등 활동 지원

2)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

o 비효율적인 업무의 개선 및 불필요한 업무축소 추진

o 직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 추진

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 산림행정 정책네트워크 강화

o 「산림청정책자문위원」, 「산림정책평가위원」, 「산림행정연구회」 등을 활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 산림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효과 증진(분기 1회 목표)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림정책 비전 공유 및 상생 협력 체계 구축

- 본청과 시·도간 상시 소통채널 확보 및 퇴직공로패 수여 등 협력 강화

4) 선제적 이슈 발굴·대응 및 현장과의 소통

o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현안점검회의」 운영

o 임업인,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현장특임관」 운영 내실화

-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현장특임관」 활동 우수사례 전파 등

o 창의적 업무발굴 및 산림행정 이해 도모를 위한 「현장체험의 날」 운영

- 임업기업, 유관기관, 산촌체험 행사 등을 통한 현장이해 및 팀워크 강화

- 「농림수산식품 기관 방문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전파

o 「산림행정 순화용어」의 적극 활용 및 어려운 산림행정 용어의 지속적인 발굴 및 용어 순화 추진

라. 추진일정

o 공무원 연구모임 운영 및 지원계획 수립 : 2013. 2월

o 시·도 산림부서장 협의회 실시 : 2013. 6월, 11월

4. 산림행정 평가 및 성과관리

목 표

◇ 체계적 성과관리 및 특정평가 역량 집중으로 성과 제고
◇ 각종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

가. 정책여건

o 국무총리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기반이 되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부처 업무계획 등을 반영토록 하여 국정기조와의 연계 강화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 · 관리역량 평가를 확대 · 강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o 본청 · 소속기관 · 지자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부서 · 기관 ·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등 환류체계 확립으로 평가에 대한 관심 제고

나. 기본방향

o 국정기조를 반영한 성과관리계획 수립으로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특정평가에 역량을 집중하여 정부업무평가 상위권 달성

o 각종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여 성과관리 수준향상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수 기관 · 부서 ·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산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평가 역할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성과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제도 운용

o **특정평가**

- 특정평가 과제 선정 후 특정평가 점검회의 개최
  ※ 특정평가 대상 과제는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후 현안점검회의에서 선정
- 과제별 주관·협조부서 지정 및 보고서 작성 T/F팀 운영

- 특정평가 결과를 본청 평가에 반영
  ※ 특정평가 결과 ‘우수’이상 주관·협조 부서 가점 부여

o **주요정책 자체평가**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모든 관리과제(사업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하여 산림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결과는 본청 사업부서 평가에 반영(80%)

o **본청·소속기관 평가**
- 소속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과의 연계 강화
- 전년도 평가 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여 금년도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

o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
- 지자체의 평가부담 경감을 위해 핵심사업 위주로 지표 개선
- ’14년(’13년 실적) 평가지표는 사업성과 및 효과 거양 위주로 보완 추진
- 산림분야 평가결과 우수기관·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2) 성과 관리 강화 및 합리적 포상체계 마련

o 업무계획(분기별 점검) 및 성과관리계획(반기별 점검) 이행상황 점검 및 점검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
- 업무계획의 분기별 추진계획 중 지연과제 발생 시 감점 부여(1과제 당 -1점)
  ※ 연두업무계획은 당해 연도 핵심 사업을 담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특정평가(정책관리역량)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주요정책 자체평가에 반영(5%)

o 본청 · 소속기관 · 지자체 평가 결과에 대한 합리적 성과보상체계 마련
- 우수기관·부서·공무원에 대해 표창, 인사가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3)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 활성화

o 산림정책평가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 재구성
-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산림청 훈령 제985호)」에 따라 6개 소위별로 관련 전문가 재위촉 및 신규 위촉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 정기회의 개최(5월, 12월), 현장토론회(8월~9월) 실시

o 평가위원의 산림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소위별 현장설명회 개최(사업부서별 연 1회) 및 산림정책 자료 제공(사업부서별 연 3회 이상)

라. 추진일정

o 성과관리계획 수립 : 2013. 2월

o 연두업무계획 이행상황 점검 : 매분기 말

o 본청·소속기관 평가 및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13. 3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재구성 : 2013. 4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개최 : 2013. 5월, 12월

o 산림정책평가위원회 현장토론회 및 설명회 개최 : 2013. 8~9월

o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 2013. 7월, 10월

o 특정평가 추진실적 제출(국무총리실) : 2013. 7월, 10월

o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공개 및 포상 : 2013. 11월

o 주요정책 자체평가(산림정책평가위원회) : 2013. 12월

o 본청·소속기관 평가 결과 포상 : 2014. 1월

5. 산림행정 조직관리

목 표

◇ 산림행정 변화에 부응하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진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과 건강자산으로 산림에 대한 관심 급증
- 산림복지 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등
- 글로벌 산림협력 증대, 산림을 통해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 등

o 원활한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직변화 요구 증가

나. 기본방향

o 산림행정 변화에 부응하고 신규 수요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관리 추진

o 내실있는 유동정원제·총액인건비제 운영 및 자체 조직진단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조직 및 인력 확충

o 2013년 소요정원으로 확보된 기구 및 인력 증원을 위한 직제개정 추진
- 기구설치 : 청양산림항공관리소(5급), 휴양림 권역별 사업팀(4팀)
- 증　　원 : 9명(5급 5, 6급 1, 연구관 1, 연구사 1, 통신원9급 1)

2) 신규 산림행정 수요 및 현안 대응 인력 확보

o 2014년 소요정원 확보 및 중기('13~'17년) 인력운영 계획 수립
- 국유림 경영·관리, 산림교육·치유·휴양 등 산림이용 분야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인력 우선 반영
- 단기소요는 '14년 소요정원에, 중기소요는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반영

3) 내실있는 유동정원제 운영

o 신규 행정수요 등에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유동정원 지정·운용
※ '12년 유동정원 지정 및 운영 현황 : 지정 31명, 배정 29명

o 운영실적 분석을 통한 유동정원 지정 및 배정

4) 총액인건비제 운영

o 의도적 절감재원 마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자체 세부운영계획(안) 수립·시행

- ’07~’10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에 따른 소요예산 마련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각각 별도 수립

5) 자체 조직진단 실시

o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능 분석 및 재설계 도출

- 실·국·과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토론 등 의견수렴 포함
- 조직진단 결과는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에 반영

6)「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o 국유림 관리 업무의 국가 직접 수행체계 확립을 위한 대응 추진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보고(대통령·국회, ’13.5월)

·「도의 지위 및 기능재정립 등 개편방안」보고 시 특행기관 사무 중 지방이양 대상 사무를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지방행정 계층별 배분계획(안) 보고

라. 추진일정

o 2014년 소요정원 요구 및 중기(’13~’17년) 인력운영 계획 마련

-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알림(본청 및 소속기관) : 2013. 2월
- 2014년 소요정원(안) 및 중기인력운영 계획 제출(행안부) : 2013. 4월말

o 2013년 자체 조직진단 실시 : 2013. 4월말

o 2013년 자체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2013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알림 : 2013. 3월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계획(안) 확정·제출(행안부) : 2013. 4월말

o 2013년 소요정원 반영 등을 위한 직제 개정 : 2013. 2분기

o 2013년 유동정원제 운영계획 수립·시행 : 2013. 8월

6. 법제업무의 효율성 제고

목 표

◇ 차질없는 입법 추진 및 법령안 협의에 효율적 대응
◇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가. 정책여건

o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창출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법령 제·개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o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로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경제난 극복,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 관련 법령을 적극 발굴하여 입법계획에 반영, 적기 추진

o 의원입법 및 타부처 법령 협의에 적극적인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1) 2013년도 「정부입법계획」 적기 추진 및 하위법령 제때 마련

o 정책여건 변화 및 규제개혁 등의 입법수요를 반영하고, 주요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법, 산림자원법, 산지관리법 등 5개 법률

o 법률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하여 법률안 제·개정시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

o 법령정비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내실 있는 법령검토

2) 의원발의 법률안 및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사전검토 내실화

o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리적 문제, 산림정책의 부합 여부 및 재정소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법률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o 의견 요청된 법령안은 철저한 사전검토와 주요내용을 요약·통보하는 등 소관과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타 부처 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법령의견조회/공문생산 : (’11) 3,971/642건 ⇒ (’12.12.14 현재) 2,901/441건

o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해 적극적 의견제시 및 제·개정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

3) 산림관계 법률의 내용분석을 통한 입법 미비사항 보완

o 산림관계 법률의 제·개정 및 분법에 따른 운영상 상충 및 미비사항 분석

o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산림관계 법률의 영문 번역 추진

- 법제연구원 등 법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4) 법제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o 입안부터 법령안 공포까지 각 단계별 유의사항 및 작성절차 안내

o 법률용어, 행정법 및 민사법 관련 사항 등

5) 행정규칙(훈령·예규 등) 부패영향 평가 실시 및 기한 재검토

o 행정규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내부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유발요인 사전제거

o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 **재검토 기한 준수**

6) 전문적인 국가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공익법무관 추가배치

o 법무부와 협의하여 **공익법무관 추가 배치** 노력

라. 추진일정

o 2013년도 정부입법 추진계획 작성제출 : 2012. 11월

o 법제업무 가이드 북 제작 배포 : 2013. 9월

o 산림관계 법령집 및 훈령·예규집 제작 : 2013. 10월

o 산림관계 법률의 영문화 추진 : 2013. 11월

o 산림관계 법률의 내용분석 추진 : 2013. 11월

o 타 부처 법령협의 및 자체 법령정비협의회 개최 : 연중

o 행정규칙 부패영향 평가실시 : 연중

7. 산림분야 규제개혁 추진

목 표

◇ **국민생활 불편과제 적극적 발굴 및 규제개혁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경제민주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혁의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증진을 위해 규제개혁성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o 규제일몰제 및 Negative 규제방식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나. 기본방향

o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규제개혁 효과 극대화

o 규제개혁에 대한 조직원의 역량 강화와 성과 홍보를 통한 규제개혁 품질 향상 및 대국민 체감도 제고

o 자체 규제심사 강화 및 고시 등 행정규칙 규제심사로 신설·강화 규제 최소화

다. 세부추진계획

1)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강화

o 민원사례, 규제만족도조사, 국민제안 등을 통한 국민의 개선요구분야를 분석하여 과제 발굴의 적절성 확보 및 국민 친화적 과제 발굴

※ 현장특임관·민원보호담당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 실시

o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및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한 합리적 수용

o 등록된 산림규제 건수의 30% 이상을 규제개혁과제로 발굴

2) 중·소기업, 일자리 등과 관련된 경제 분야 규제 우선 개선

o 중소기업 규제적용 차등화 및 중소기업 친화적 규제기반 조성
-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규제를 개선, 차등 적용
- 중소기업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규제 우선 개선

o 연령규제 개선을 통한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임업후계자 등에 대한 상한 연령규제 완화·폐지

3) 규제개혁 품질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o 산림청 직원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로 규제개혁 품질 향상 도모
- 산림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교육(2회, 60명), 전문가 특강 등 실시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사이버교육 등 전직원 의무적 이수 추진
- 규제개혁 가이드 북(규제판단기준, 규제심사절차·운영 등) 제작·배부

o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 사례별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대국민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기고, SNS, 블러그, e-mail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
-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분기별 1회)

4) 자체 규제심사 강화로 신설·강화되는 규제 최소화

o 내실 있는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발생 사전 차단
- 신설·강화 규제는 원칙적으로 일몰제 및 Negative 규제방식 적용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철회·개선권고율 20% 이상 유지

o 고시·공고·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심사 강화
※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제로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사례 방지

라. 추진일정

o ’13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 시달 : 2013. 1월

o 규제개혁 언론홍보(본청, 지방청) : 법령 제·개정시

o 규제개혁 현장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 분기별 1회

o 산림인력개발원 규제개혁과정 교육 추진 : 2013. 5월, 10월

o ’13년도 정부업무 규제개혁 평가보고서 제출(국무총리실) : 2013. 10월

o ’13년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2013. 10월~11월

8. 민원만족도 제고

목 표

◇ 민원행정 제도 개선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가. 정책여건

o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원의 확대

o 민원 요구 내용이 갈수록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

o 산지이용 확대 및 국유림 대부와 관련하여 수용이 어려운 국민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o 신속하고 공정한 국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o 생활밀착형 민원제도 중점 개선으로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

o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민원만족

다. 세부추진계획

1) 민원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o 분기별 고충 및 빈발민원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o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처리사례를 국민신문고의 민원 Q&A에 지속 등록

o 주요 민원 Q&A 사례집을 전자북 모바일 앱으로 구현하여 민원인 편의 및 민원신청 건수 감축 도모

o 민원대표번호(1588-3249)에 문자 메시지 수신기능을 추가하여 통화대기 민원인의 불편 해소

o 폭언 · 폭행 민원인에 대비한 녹음 · 녹화시설 시범 추진(1개소)

2)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강화, 민원처리실태 분석 및 환류

o 매월 접수·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답변 성실도,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개선 조치 실시

o 개인별 민원처리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 하여 일일 처리기간 만료예고 등 미흡 부분에 대한 개별 통보 및 시정조치

o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등 불만민원 사후관리 강화

o 민원보호담당관의 사후 모니터링 및 민원상담 강화
- 민원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 고충민원 현황 파악 및 심층상담

3)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추진

o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파악, 개선함으로써 산림행정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조사시기 : 연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 조사분야 : 민원만족도(인터넷, 일반), 전화친절도
- 조사결과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실시
※ 민원만족도 추이 : ('10) 79.2% → ('11) 80.0% → ('12) 82.9%

4) 직원 및 신규자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교육 강화

o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별 맞춤형 순회교육** 실시(2~3월)
- 교육방법 : 전문강사의 기관별 맞춤형 순회 교육을 통해 직원 마인드 혁신 및 고객응대 스킬 향상
- 교육대상 : 본청 및 1·2차 소속기관 전 직원(49개 기관, 1,584명)

o 산림교육원 신임실무자과정에 '민원만족도 제고방안' 교과 편성(2시간)

5) 갈등관리 업무강화로 갈등예방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

o 갈등관리과제에 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추진 단계별 대응

o 갈등과제(핵심 · 일반)에 대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및 운영 활성화

6)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 활성화로 행정서비스 제고

o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 · 공무원 제안 참여 확대 유도

o 산림청 특성에 맞는 행정제도 선진화 우수사례를 발굴 · 포상

o 국민 · 공무원 제안 발굴 및 자체심사위원회 운영(상 · 하반기 각 1회 이상)

라. 추진일정

o 국민신문고 모니터링 및 민원처리실태 분석 : 연중

o 고객만족(CS) 서비스 교육 : 2013. 2~3월

o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3. 3월

o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 2013. 4월

o 산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 2013년 6월·10월

o 녹음 · 녹화시설 시범 설치(1개소) : 2013. 6월

o 민원 Q&A 사례집 전자북 발간 : 2013. 6월

o 민원대표번호(1588-3249) 문자메시지 수신기능 탑재 : 2013. 6월

o 국민제안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 상 · 하반기 각 1회 이상

o 공무원제안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 상 · 하반기 각 1회 이상

9. 자체감사 내실화 및 도와주는 감사 실시

목 표

◇ 자체감사 운영 효율화와 현장애로 사항 발굴 개선
◇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제고와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가. 정책여건

o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 개선 필요

o 새정부 출범에 따른 반부패·기강해이 등 공직기강 확립 강화 필요

o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노력 필요

나. 기본방향

o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 개선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

o 예산집행의 낭비 및 시행착오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o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산림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생활 정착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체감사 내실화 및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

o 감사주기에 의한 자체감사의 효율적 수행(27개 기관 대상, 10회)
- 종합감사(4회) : 북부·동부지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원
- 재무감사(1회) : 민간보조금(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립수목원·휴양림, 숲사랑소년단)
- 특정감사(1회) : 산조중앙회 토목사업소(3)·자원조사본부·도지회 및 지역조합(2)
- 복무감사(4회) : 설명절, 하계휴가, 추석명절, 연말연시

o 현장 애로사항 해소 및 문제점 발굴개선 위주의 도와주는 감사 실시
- 수감 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 수감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사항 발굴 및 해결방안 제시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반영 등 감사내실화를 위한 감사규정 정비
- 홈페이지에 사전 감사를 예고하여 국민 제보 활성화 유도
  · 감사실시 2주전 감사 계획 게재(비위, 산림사업 문제점 제보 등)

o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간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 내실화
- 구성 : 법무감사담당관, 감사계장, 산림조합중앙회 상임감사 실장·팀장, 조합감사위원회 실장·기획상시감사팀장 등
- 시기 : 연 2회 정기(상 · 하반기) 및 필요시 감사협의회 개최
- 운영 :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기법 특강, 기관간 감사정보 공유, 반부패 청렴업무 공동협력, 사건사고 사전예방 등

o 산림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감사관(2명) 운영 및 활용 강화
- 산림분야 비리·불만사항 제보 및 자체 감사 활동에 참여
- 알선·청탁 등 부패유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등
- 수감기관 대상 청렴 등 공직윤리 특강 실시

o 사전예방적 자체 감사활동 강화
- 일상감사 강화로 사업추진의 행정적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사전예방
- 취약분야 및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산림청 회계사 감사 참여

o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공직윤리 위반사례, 관행적 부조리, 잘못된 답습 사례 및 반복 지적사항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교육 실시로 재발 방지

o 감사업무 체계적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매뉴얼' 제작
- 감사업무 실무적 활용을 통한 감사활동의 내실화 및 품질향상
- 신규 감사직원의 감사업무 조기 습득 및 불합리한 처리 사례 방지

o 감사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감사기법 습득
- 감사담당자의 감사관련 직무교육 의무 이수(40시간/년)
- 감사원·행안부와 협력감사를 통해 감사기법 습득 등 실무 능력 배양
-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조사기법 특강 실시로 전문성 강화

o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 공무원 및 부서 발굴·포상 등
-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 업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 및 부서
-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적용

2) 산림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

o 부정부패 사전 예방 및 청렴생활 정착을 위한 각종 시스템 홍보 및 교육 강화
-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청탁등록센터'

- 금품 향응제공,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 음성적 비리에 대한 제보 및 고충상담을 위한 무기명 '고충·비리 상담·신고방'
-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력 향상과 바람직한 행동 유도를 위한 '행동강령 상담센터'

o 청렴교육 및 홍보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 지속적 실시(신규임용, 승진자, 고위공무원단 진입 시 청렴교육 7시간 의무적 이수)
- 산림교육원의 청렴교육 강화(10일이상 교육과정 청렴교육 1시간 이상 반영)

o 내부 인트라넷(e-푸른샘)에 '청렴 팝업창'을 신설하여 청렴 생활 정착
- e-푸른샘 로그인 시 관행적 공직비리 근절과 청렴,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등에 관한 문구를 게시

o 반부패 청렴 수준 진단 및 환류 기능 강화
- 민원분야 청렴도 조사를 위한 Clean-call 설문지 발송 및 모니터링(연중)
- 추석 등 명절 및 취약시기에 청렴관련 문자, 음성 등 SMS 발송(수시)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온라인 자가 측정 및 분석(전직원, 2회)

o 청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청렴산림공무원상 포상(반기)
- 청렴생활 솔선수범, 반부패 청렴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청렴공무원 발굴·시상

3)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o 공정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관행 및 제도 발굴·개선 추진

o 명절연휴,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집중 점검

o 취약분야 및 대상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o 언론보도, 외부기관 통보, 민원내용 등 모니터링 강화

o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 적용

o 외부 비위통보자에 대한 비위사건 처리기준 이행실태 모니터링

라. 추진일정

o 2013년 자체감사 · 부패방지 · 공직기강확립 계획 등 수립 : 2013. 1분기

o 내부인트라넷 '청렴 팝업창' 신설 : 2013. 1분기

o 산림청 감사규정 개정 : 2013. 상반기

o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반복 지적사례 권역별 순회 교육 : 2013. 상반기

o 자체감사매뉴얼 제작 : 2013. 상반기

o 시민감사관 자체감사활동 참여 : 2013. 상 · 하반기

o 민·관 감사협의회 운영 : 2013. 상·하반기

o 산림청 공무원행동강령 자가 측정 : 2013. 상·하반기

o 취약분야 및 대상에 대한 모니터링 : 연중

o 취약시기 청렴알리미 서비스 : 수시

o 자체감사 결과 우수·모범공무원 발굴·포상 : 연중

10. 고객맞춤형 “SMART 산림행정” 구현

목 표

◇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현장중심형 “SMART 산림행정” 구현
◇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자체대응역량 강화 및 능동 대응

가. 정책여건

o 새 정부 출범 원년으로 국가정보화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스마트폰 3,000만 시대로 모바일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급속도로 변경
- 폭증하는 데이터의 관리개선방안 마련 및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화 추진
-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 국가사회 전반으로의 정보화 확산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 패러다임 및 트렌드 변화

o 최근 지능화되는 사이버테러,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모바일 기반 확대 등에 따른 보안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필요

나. 기본방향

o “SMART 산림행정” 구현을 위한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실천

o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국민포털서비스 구현

o 현장 및 현업 중심의 국유림 발전방안 수립에 필요한 정보화 사업 추진

o 정보화종합설계도(EA)에 기반을 둔 IT거버넌스 체계 구축

o 자체 대응능력 강화 및 능동대응 기반조성으로 정보보호 수준 향상

다. 세부추진계획

1)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포털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 및 통합 추진

o 숲에ON, 국가생물종지식정보 등 6종 웹사이트 서비스 통합 구현
- 6종 사이트 통합에 따른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메인화면에 대한 네비게이션 화면 구성 등 접근체계 개선
-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고 웹 취약점

등에 문제없도록 구축

-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어려움 없이 포털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구 분	대 상
사이트 통합대상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 www.nature.go.kr) ■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http:// www.nature.go.kr) ■ 산림문화휴양포털 (http:// www.foreston.go.kr) ■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http:// sansatai.forest.go.kr) ■ 산림공간정책포털시스템 (http:// fgis.forest.go.kr) ■ 산지정보시스템 (http:// www.forestland.go.kr)

o 통합 검색 기능을 개선하여 대표 수종(소나무, 잣나무 등) 검색 시 수종의 기본 정보, 관련 사진, 연구자료 등이 검색되도록 기능 개선

o 수목장림 등 산림주요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메인에 배치하고, 동영상·이미지 정보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o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맞춘 모바일 대표포털 고도화

o 자연휴양림, 수목원, 생태숲, 숲유치원 등 통합예약서비스 구축방안 마련

2) IT기반의 국유림경영업무 선진화(1단계) 추진

o 정보화를 통해서 업무를 줄여 줄 수 있도록 현장 업무중심으로 시스템화

- 시스템간 연계를 중점 검토하고, 신규시스템 구축보다는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

o 국유림경영계획 실시간 변경 업무기능 구축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승인업무 실시간 온라인 처리 지원
- 산림자원관리 사업수행 후 계획을 변경하는 역전현상 해소 및 정보 현행화

o 국유임소반도 현행화 및 관리 체계 구축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업무를 통한 임·소반도 변경추적관리 체계 구축
- 현행화율이 50%이하로 추정되고 있는 경영계획구의 임소반도 정비

o 임목축적분석 정상화를 위한 경영분석기능 고도화

- 산림자원관리에 의한 변경적용 알고리즘 구현
- 국가산림자원조사, 정밀임상도, 정밀산림입지도 등 광역산림조사 데이터 반영 방안 도출 및 적용

※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조사 기반 임목축적 추정에 관한 연구 지원 필요

o 국유림경영 DB 구축 및 정비

-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 산림조사부 등 과거 산림자원 관리 이력정보를 3~4

년차의 경영계획구를 중심으로 2~3차기 산림자원이력정보 구축

3)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체계 구축

o 엑셀 기반의 국유임산물 대금사정 프로그램 온라인 시스템 구축
- 품등체계의 개선, 시가 조사, 관련 지침의 개선, 대금사정 인자 조서 현행화 등을 반영
- 다양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토록 대금사정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4) 스마트한 현장업무 스마트워크 기반 확산 및 활성화

o 스마트 산림현장 업무지원시스템 신규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
-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현장업무 신규서비스 구축
  ·산림조사, 임산물 소득 생산량 조사, 대부지 실태조사
  ·사방댐 현지조사, 병해충예방 관리, 병해충 예찰, 산불 순찰·감시
- 모바일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표준지조사, 생산재검척, 수고측정 등 현장 음성인식 기능 구현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연계기능 구현
  ·공간정보 이력관리 시스템 연동(공간정보 데이터 내보내기/가져오기)
  ·2013년도 전국 항공사진 및 전국 주제도 가공 및 제공

o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를 통한 현장업무 스마트워크 조기 확산
- 관리소별 1인 1대 보급체계 구축(모바일기기 300대 추가 보급)
  ※ 기 보급 : 209대('11년 45대, '12년 164대)

o 산림현장업무 위치 네비게이션 기반 구축
- 산림네비게이션 플랫폼 구축(매쉬업 기능을 통한 위치정보 공유)

o 모바일 현장정보시스템 활용능력 제고 및 진단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3월 중)

5)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o 산림자원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및 기능 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담운영팀 구성 및 활동
- 대부분의 시스템이 구축이후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의 미지원으로 활용도는 낮아지고, 업무담당자의 업무는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됨

o 교육, 정기세미나, 워크숍, 전담 유지보수, 홍보 활동 등 변화관리 지원

6) 정보화종합설계도(EA)에 기반을 둔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 구축

o 정보화 기획·사업·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여 예측가능한 정보화 추진

o 예산 투자의 적절성, 시스템 중복성 제거 등으로 성과와 시스템의 품질을 제고

o 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정보시스템, 매뉴얼 등 성과품 품질 강화

- 산림청 정보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훈령에 반영
- 내·외부 정보표준기술을 준용하여 구축함으로써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임

o 각 시스템에 보유중인 산림DB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

- 2012년도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산림청 데이터 표준지침을 적용
- 데이터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데이터 중복구축과 중복관리를 제거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체계를 마련

7) 법·제도·지침 등 개선

o 산림정보의 대국민 통합서비스 추진에 따라 콘텐츠의 관리·운영 등을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반영

o 전사적인 차원에 데이터관리체계 수립과 데이터품질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및 절차를 정보기술아키텍처 규정에 반영

o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따른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여 혼선을 최소화

- 본청, 소속기관은 물론 한국임업진흥원과 녹색사업단을 포함
- 스마트 폰, 무선랜 등의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환경에도 대응

o 현실적인 종자 채취 및 종자유통이력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지방산림청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한 주요 주체별 역할 정립 필요
- 채종림 관리 매뉴얼 및 숲가꾸기 지침의 개정 · 보완 필요

8) 정보자원의 365일×24시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o 국립산림과학원 등 5개 소속기관의 집선화 및 증속 추진

- 네트워크 집선화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 향상 및 업무처리 속도 개선

o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본청에서 5개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까지 확대

o 산림청 정보화지원센터의 관리체계 강화

- 유지보수 품질 향상을 위하여 1년차 서비스수준협약(SLA, Service

Layer Agreement) 결과를 기반으로 2년차 재계약시 서비스수준협약 기준점 상향 조정

※ 서비스수준협약 : 최적의 비용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서비스 목표수준을 달성하고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활동을 사업자와 협의 하에 수립

o IT정책 변화(클라우드 기반 확산)에 따른 산림교육원 전산교육용 PC(40대)를 가상화하여 운영

o 정보화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월 집행내용 점검

9)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

o 산림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개최 및 정보화 역량진단 실시
- 직원들이 자체 및 결선대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자료 제작 · 배포(3월)
- 행정관리역량평가 대비 공무원 정보화 역량진단 참여율 110% 이상 참여

o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Forest IT 포럼, 정보기술세미나 추진
- 산림 현장업무의 정보화 아이디어 발굴 및 최신 IT 트렌드 전파

o 정보화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대상 정보화교육 추진
- 정보기술과정(EA, 포토샵 등),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원에 전문과정 신설

o 유관기관 간 정보화 정책 공유 및 정보기술 교류 강화
- 정보화업무 담당자 중심의 워크숍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6월), 농림부 산하기관(11월) 등 정보화 정책 및 정보기술 공유

10) 사이버테러 등 보안사고 예방 및 능동대응 체계 마련

o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유지를 통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o 「마스터 플랜(2013~2015)」 이행 및 점검을 통한 능동보안 기반 마련

o 내 · 외부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 주기적인 교육 및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강화
- 통합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솔루션 도입을 통한 실시간 침해사고 대응체계 기반 마련
- 노후화된 업무망 장비 교체(백본 및 스위치, 패치관리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를 통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서비스 제공

o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연계한 국가정보보호 활동 강화
- 보안 사고(웹사이트, PC 해킹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활동으로 침해

사고 최소화 추진

※ 침해사고 2011년 18건 → 2012년 36건 → 2013년 계획 30건 이하

o 전 직원 보안인식 제고를 통한 보안사고 사전예방

- 정보화업무 담당자 중심에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안의식 제고
- 본청 및 소속기관 보안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통한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
- 내PC지킴이, 인터넷PC 저장방지SW 등 정보보호SW 활용을 의무화
- 전 직원 대상 연 2회 이상 보안교육 실시
- 자체 사이버 위기 모의훈련 실시(7월중)

o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력 제고 및 기반시설 보호 강화(월 1회)

-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물리적·관리적 보안 인프라 및 정책/관리체계 정비
- 해킹 탐지 및 처리·대응, 정보보안 장비 운영,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결과 분석 등을 통한 정보보안 관리 및 보고체계 강화
- 신규 및 고도화사업, 주요시스템 등에 대해 웹 취약점, 서버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주기적인 웹사이트·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11) 우리청의 개인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기문서 관리방안 개선

o 산림청 개인정보관리체계 강화 추진

- 2013~2015년에 중점 추진할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공표
- 신규 임용자(전산 7급)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전담 배치
- 산림청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개인정보 실무위원회 구성
- 개인정보보호담당자를 과서무가 아닌 업무담당자가 직접 관리

o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삭제(파기)과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 · 대표포털(대표포털, 자연휴양림정보, 네이처의 회원통합, 300백만 예상)
  -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주민등록번호 6만 건 이상)
- 개인정보 암호화솔루션을 모든 PC에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사전 차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소속기관 포함)에 대해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암호화(SSL) 현황을 점검하고 미적용 시스템은 2013. 3월까지 추진 완료
- 산림업무 처리 시 수집한 민원서류(법정서식 등)와 내무업무 관리를 위해 종이문서 관리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서버용) 도입을 통한 실시간 개인정보 검출 및 유출방지 체계 마련

o 본청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실태관리 점검 추진

o 개인정보담당자 및 취급자는 필수 해당교육을 연 10시간 이상 이수

- 신입실무자, 산림 직무과정 등 정규과목으로 편성

라. 추진일정

o 산림정보화 기본계획 중 실행계획 수정 : 2013. 2월

o 2014년 주요 시행계획(안) 마련 : 2013. 4월
  - 정보화시행계획, 성과시행계획 등

o 국가산림정보화 기반조성사업
  - 정보화사업 최종예산 및 사업범위 확정 : 2012. 12월
  - 행정안전부 사전검토 심의 : 2012. 12월
  - 통합정보화 사업발주 : 2013. 1월
  - 사업관리(착수, 워크숍, 중간보고, 완료보고) : 2012. 3～12월
  - 최종검수 및 인수 : 2013. 12월

o 대국민 포털서비스 통합 및 기능 개선
  - 주요 수종 검색기능 개선 : 2013. 5월
  - 수목장림 대국민홍보 체계 강화 : 2013. 1월

o 정보화사업 자율평가(정책역량 및 재정사업 평가) 수행 : 2013. 1월

o 노후 전산장비 교체 : 2013. 5월

o 정보화 운영·유지보수
  - 2013년 통합운영·유지보수 계획 및 발주 : 2012. 12월
  - 2013년 통합운영·유지보수 실행 : 2013. 1～12월

o 2014년 정보화예산 확보
  - 중기사업계획 마련 : 2013. 1월
  - 정보화예산 : 2013. 2～8월

o 정보화 교육
  - 산림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 2013. 7월
  - 정보화 역량 진단 : 2013. 7~8월
  - Forest IT포럼 : 매월
  - 정보기술세미나 : 연 3회
  - 정보화 전문 교육 : 연중

o 정보보안 강화 및 정보화 기반확충
  - 내부 정보보호 지침 개정 등 체계마련 : 2013. 3월

- 노후 업무망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 : 2013. 3월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 2013. 6월
- 통합보안관리 및 로그분석 솔루션 구축 : 2013. 9월
- 전 직원 정보보안 교육 : 2013. 3월, 8월
- 정보보안담당자 워크숍 : 2013. 5월
- 사이버 모의훈련 : 2013. 7월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스템운영 : 매월

o 개인정보 보호
- 2013년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 2013. 2월
- 201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마련 : 2013. 3월
- 종이문서 관리 방안 마련 : 2013. 3월
-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 2013. 2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상반기
-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 2013. 6~8월
-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12~’13) 이행 점검 : 2013. 9월

11.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

목 표

◇ 임상도 등 산림주제도의 운영관리 체계 확립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산림공간정보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산림행정서비스 지원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 시행되는 등 탄소흡수원과 관련된 산림공간정보의 활용성 증대

o 우리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리랑 위성 등 지구 관측위성의 성공적인 개발 및 운영

o 범정부 차원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운영

나. 기본방향

o 조림, 숲가꾸기 등 현장 위주 산림사업에 대한 산림공간정보 기반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림행정 지원

o 임상도 등 산림주제도의 관리 및 운영 등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마련

o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한 산림공간정보 DB 정밀화사업 추진

o 안정적인 산림공간정보 유통 및 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공간정보의 대축척 서비스 활용 확대

o 임상도 등에 대해 대축척(1/5,000) 서비스 확대 · 개편 추진
- 정밀 임상도(1/5,000) 및 산림입지토양도(1/5,000)의 온라인 유통기반 확충
  ※ 산사태예방, 산지관리, 사유림 컨설팅 및 국유림 경영 등에 활용되도록 1/4분기 내 배포
- 산림주제도의 안정적인 온라인 유통서비스 제공
  ※ 타부처 · 기관(수요자)의 산림공간정보 공동 활용 증대(연간 4만 도엽)
- 산림공간정보의 안정적인 자료관리 및 갱신체제 구축

o 공간정보 기반의 정확하고 신속한 산림정책 결정 지원체계 확립
- 정책수립 초기단계부터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산림경영계획 등 산림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운영
- 정밀 디지털 항공사진 서비스를 통한 과학적인 산림정책 추진 지원
- ‘공간정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산림주제도의 체계적 관리·활용 지원

2)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2014~2018) 수립

o 임상도 등 산림주제도의 제작 및 운영 방안 마련
- 임상도의 작성방법, 성과심사 등 체계적인 관리지침 마련
- 올해 접경지역 임상도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임상도의 지속적인 현행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산림주제도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산림공간정보를 관리하고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

o 고객 중심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현장 중심의 산림공간정책 운영방안 마련
- 웹표준을 준수하여 기기간 자료 연동, 지자체 운영 확대, 모바일 등 다양한 기기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o 아리랑 위성 등을 활용한 산림분야 원격탐사(RS)기술의 확보 및 서비스 활용방안 마련
- 산림탄소지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주제도의 확대 방안 마련
- 북한 지역 산림황폐화 및 해외 산림자원관리 현황 등에 대한 산림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산림분야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o 산림공간정보의 신기술 적용 및 연구개발(R&D) 방향 설정

3) 정밀 산림주제도 구축 및 온실가스 통계기반 마련

o 1/5,000 접경지역 임상도 제작
-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 등에 따라 접경지역의 산림 기본 주제도를 확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08~’12) 588만ha → 접경지역 임상도 제작(’13) 20만ha
-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임상도 품질관리 강화
-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총괄), 산림청(주관), 한국임업진흥원(검수)
- 대상지역 : 경기·강원(예산 : 17억원)

o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

- 인구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 등에 조기 활용

· (’08~’12) 149만ha → (’13) 46만ha → (’14~’16) 393만ha(사업완료)

- 엄격한 사업관리, 현장검수, 성과심사 등을 통한 산림입지도 품질관리 강화
- 추진체계 : 산림청(총괄), 한국임업진흥원(주관)
- 대상지역 : 인구 20만 이상 시·군(예산 : 32억원)

o 탄소흡수원 확충 활동 검증을 위한 산림항공사진 DB 구축

- 1972~1980 기간에 촬영한 항공사진 6만매 중 2만매에 대한 디지털 사진 제작

※ 1990년 전후 우리 산림에 대한 정사항공사진(692 도엽) DB 구축을 완료(’12)하여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재조림 활동 검증 기반 구축. 2012년 2만매 스캔 완료

☞ 항공사진 DB구축의 전문성 확보 및 무결성 DB구축을 위한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 간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

o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국가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 시스템 연계 추진

- 국가공간정보와 산림공간정보 간 온라인 자료 연계 및 활용체계 구축

4) 산림공간정보의 신속한 운영지원 및 교류 강화

o 산림GIS·GPS 활용 장비확충

- 소속기관의 활용기반 마련(18대, 223백만원)

·GIS용 PC(8대), GPS 장비(8대), 칼라플로터(2대) 등

o 산림 GIS 및 GPS 시스템 장비유지 관리

- 산림GIS 시스템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한 최적의 기능 유지

·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 맞춤형 GPS장비 유지보수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교체, 수리, 교육 등)을 통한 장비 성능 최적화

·현지순회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Help Desk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o ‘2013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산림 정보기술의 아이디어 발굴, 최신 산림 IT 기술 전파 및 수요 창출

※ FGIS, 모바일 등 IT기술의 산림분야 활용우수사례 발굴 확산 및 신기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산림분야 정보화 수준향상 및 발전방향 모색

- 산림정책과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와 연계 추진
- 숲을 소재로 한 초·중학생 인터넷 중독방지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확대 운영

o 공간정보(GIS) 관련 정책·기술 교류 강화
-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정책 교류 강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주요정책 심의 등
-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GIS/RS자료 확보 및 현업 활용 지원
- 국가공간정보세미나 참가, 부처별 신기술 확보 등 GIS 기술교류 확대
·디지털국토엑스포(국토해양부), 영상정보연례회의·워크숍(항공우주연구원) 등

o 산림공간정보 운용 활성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 교육실시
- 산림교육원 전문 과정(산림공간정보시스템반) 교육(5일, 2회 70명)
- 임상도 및 산림입지토양도 제작과정 자체과정 교육(4회 140명)
- 소속기관별 자체활용교육 지원(산림공간정보 보안교육 등 : 수시)

o '2013년 디지털 국토엑스포' 행사 참가 및 산림공간정보관 운영
- 국토해양부에서 주최하는 '디지털 국토 엑스포'에 산림공간정보 운영 사례 등 전략적 홍보 추진
- 산림공간정보 세미나 발표 및 전시 등을 통한 발전방안 마련

라. 추진일정

o 산림공간정보 세부사업 추진계획 안내 : 2013. 1월

o 공간정보 관리지침 마련 : 2013. 1～12월

o 소속기관 GIS, GPS 장비 확충 : 2013. 1～3월

o 1:5,000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관련부서 배포 : 2013. 1～3월

o 소속기관 GIS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 2013. 4～5월

o 2013년 전국 Forest IT 컨퍼런스 개최 : 2013. 5월

o 2013년 디지털국토엑스포 대회 참가(전시부스 운영) : 2013. 10월

o 접경지역 임상도 제작사업 추진 : 2013. 1~11월

o 산림재해 통합관리 ISP사업 추진 : 2013. 1~11월

o 산림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 : 2013. 11월

o 산림입지토양도 확대제작사업 추진 : 2013. 2~11월

o 항공사진 DB구축사업 추진 : 2013. 1～12월

o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시스템 고도화 및 DB갱신 : 2013. 2～12월

o 2013년 GPS장비유지보수 추진(순회 유지보수 및 교육) : 분기별

o 산림GIS교육 실시(정규 2회, 전문위탁 4회, 자체-수시) : 분기별

o 산림GIS 홍보 및 타 부처, 기관 간 기술교류 추진 : 수시

o 산림GIS 자료 확보·유통 및 갱신 : 수시

12. 산림통계의 안정적인 생산 및 신뢰성 증진

목 표

◇ **통계생산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신뢰할 수 있는 산림·임업통계의 생산 및 신뢰성 증진으로 활용성 제고**

가. 정책여건

o 정책형성 과정의 통계역할 강조로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수요가 증가

o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등의 대외협상 대응을 위한 통계의 신뢰성 강조

o 한국임업진흥원 출범에 따른 산림·임업통계조사 역할 확대

o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 작성 요구

나. 기본방향

o 정책수용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 · 임업통계의 개발 및 발전

o 임산물생산조사의 신뢰성,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행조사체계 개편

o 임산물의 대외개방 협상을 위한 임업통계의 신뢰성 증진

o 산림 · 임업통계조사를 위한 산림유관기관과의 상생 · 협조체계 구축 추진

o 측정·검증·보고가 가능한 온실가스 통계자료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정책수요와 통계생산의 연계성 강화

o 산림정책 수립 시 산림통계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
- 산림통계에 대한 현업부서의 필요한 개선 요구사항을 의견수렴
- 산림통계의 모니터링, 조사결과 자문 등에 관련 부서의 참여 확대

o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수요 발굴 추진
- 사회적 이슈가 정책의제로서 채택되어 정책형성에 필요한 통계 개발
- FTA피해보전, 임산물 손실보상 기준, 임업구조개선 등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통계 발굴

※ FTA로 인한 산림소득작물의 피해가 사회 ·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응하는 정책수요가 있을 경우

2)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지속 추진

o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확산

- 2012년까지 82개 시 · 군 · 구가 완료되고, 2013년 전북 · 대구 · 강원 등 40개 시 · 군 · 구로 확산 구축

※ 2012년까지 대전 · 경기 · 충북 · 충남 · 경남의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완료

-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과 산림행정 및 세움터시스템과 지속적 협조체제 구축

·사유림경정보 DB 구축 시스템과 연계하여 새올시스템 기능개선 보완 등

·세움터 및 새올시스템,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산지전용협의 정보 공유

o 사유림경영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사유림의 시업관리 공간정보 및 산림탄소계정 평가 지원체계로 고도화

·(기존) 전국 사유림경영정보에 대한 자료 표준 및 공도활용기반 마련

·(고도화) 경영정보자료를 필지별 공간정보와 1:1 매핑방식으로 시업관리와 지역별 시계열적 산림탄소계정 평가 지원 가능

3) 안정적인 산림 및 임업통계 생산

o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산출 관리 규정」마련

- 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기관별 역할 범위 및 통계산출 범위 설정

※ 기관별 특성에 따라 산림청, 과학원, 진흥원, 조사본부 등의 조사결과 분석 등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분석 및 통계산출

o 통계산출관리규정과 연계하여 제5차 국가산림조사 결과 분석 완료

- 한국임업진흥원의 제5차 조사에 미진한 결과분석 마무리

o 제6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3년차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

- 2008년 표본점(813 plot)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조사를 실시하여 5년 경과에 따른 산림자원의 변화상황 분석

※ 2007년 표본점(816 plot)의 산림자원 변화상황 분석 보고(4월)

o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는 산림식생조사구(200 plot)에서 병행 실시

o 국가산림자원조사 및 산림기본통계 지원시스템 통합 고도화

- 행정보고 체계 최소화 방안 도출(사유림경영정보지원시스템 연계방안 등)

- 임상도와 연계구축으로 무립목지 및 비산림 지역의 임상 · 영급정보 공유

-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항목 추가 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계 분석 및 조사결과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임가의 소득, 생산비 등 경제지표 생산을 위한 임업통계조사 추진
- 차질 없는 조사를 위해 1월 초에 사업을 발주하고 3월말 사업 착수
- 임가 간담회, 조사원 교육 등을 통해 임업통계조사 표본임가 관리 강화
- 임업통계조사 및 감리업무 한국임업진흥원 위탁 추진
※ 2014년 사업 위탁을 대비하여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조체제 논의

o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 결과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표
- 임산물생산비조사(4월), 임가경제조사(5월), 임산물생산조사(7월), 임업경영실태조사(10월)

4) 임업통계조사의 효율성 및 신뢰성 증진

o 임산물생산조사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행조사체계 개편 추진
- 임산물 주요 품목(밤, 대추, 떫은 감, 호두, 표고버섯)에 대하여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기 위해 임산물재배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추진
※ 2012년에 보은, 부여에 시범조사 → 2013년에 전국 본 조사 실시

o 임산물생산조사 5개 품목 시범 표본조사 실시(보은, 부여)
- ’12년 임산물재배실태조사 결과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설계 및 시범조사 실시

o 표본 이탈 방지와 기후변화에 따른 주산단지 이동 등을 반영한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업통계조사 표본임가 재구축
- 2014년부터 향후 5년간 임가경제조사 및 임산물생산비를 조사할 표본임가 구축을 위해 대상 임가에 대한 적합성, 조사 참여의향 등을 시범조사
※ 2012년 표본설계 완료(한국임업진흥원)

o 임산물생산비조사 표본임가 확대(1,200임가 → 1,400임가) 및 조사회수 증가(연 6회 방문, 6회 전화조사 → 연 12회 방문)로 통계조사 품질확보

o 임업통계조사의 조사업무와 분석업무를 분리 발주하여 이월 방지
- 임업통계조사 예산의 이월 방지를 위해 임업통계조사·분석업무 분리 추진
※ 임업통계조사(임가경제, 임업경영실태, 임산물생산비)의 1월 발주하여 다음해 4월에 종료되는 사업 → 조사·분석업무를 분리하여 회계연도 독립 발주

5) 산림 및 임업통계의 품질개선 추진

o 2012 임산물생산조사 품질진단 개선과제 후속조치 추진
- 임산물생산 표본조사 전환과 연계하여 개선과제 마련

o 산림청 승인통계 10종 정기 및 자체품질진단 지속 추진
※ 2013년 자체품질진단 평가제도 도입(통계청)

o 산림기본통계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강화

- 산림전용, 조림 등 산림변화정보 및 임산물생산조사 등의 행정자료 모니터링 추진

※ 퇴직공무원, 조사본부 조사원, 진흥원의 연구원 등을 모니터링 요원 활동 방안 강구

- 2012년 감사원감사 처분결과 처리 및 누락된 행정자료 검토 후 입력 방안 강구

o 감리 전문기관 등의 외부감리 활성화 및 내부 관리 · 감독 기능 강화

- 외부감리기관의 통계감리를 통해 품질 진단 및 개선
- 임업통계조사 중간·최종보고회시 통계청 전문가 참석 정례화

o 산주 현황 분석을 위한 법령 개정 지속 추진(산림경영소득과 주관)

- 국토해양부 지적전산자료 확보를 위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o 산림·임업통계 생산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훈련 강화

- 임업통계담당자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횟수(2 → 4회)확대 및 지역별 순회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산림통계 강의 개설(2013년 신규)

6) 산림·임업통계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산림·임업통계의 대국민 접근성 및 자료의 시의성 제고

- 우리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통계정보 제공
-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시스템 등에서 서비스되는 산림·임업통계를 정기적으로 현행화
- 간추린 임업통계, 임업통계연보, 기타 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범위 확대

※ 과거 통계자료의 전자 문서화 및 시스템 등록 추진

o 통계정보의 이용성 · 편리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 매체 개발 지속 추진

- 간행물, 전자책, 모바일 등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 특성을 분석하여 제공매체 개발

o 모든 산림통계정보를 통합 · 연계할 수 있는 「산림통계통합 관리체계」 마련

- 산림통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림통계 통합 · 연계 방안마련

라. 추진일정

o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산출 관리 규정 마련 : 2013. 1월

o 2013년 임업통계조사(표본설계 포함) 추진 : 2013. 1~12월

o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사업 추진 : 2013. 1~12월

o 2013년 임업통계담당자 교육실시 : 2013. 1~2월

o 국가산림자원조사 지원시스템 통합 고도화 추진 : 2013. 2~12월

o 임산물재배실태조사 본 조사 추진 : 2013. 2월

o 2013년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보고 : 2013. 3월

o 2012년 임산물생산비조사 결과 공표 : 2013. 4월

o 2012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공표 : 2013. 5월

o 2012년 임산물생산조사 결과 공표 : 2013. 7월

o 2013년 간추린 임업통계 발간 : 2013. 8월

o 2013년 임업통계연보(제42호) 발간 : 2013. 9월

o 2012년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공표 : 2013. 10월

o 2013년 임업통계담당자 워크숍 실시 : 2013. 12월

o 임업통계조사 표본 임가 간담회 : 2013. 2~12월

o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사업 현장교육 및 설명회 : 2013. 2~12월

해외자원협력관실 소관

1. REDD+ 탄소배출권 확보 기반구축

목 표

◇ **개도국의 산림전용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제고하는 REDD+사업을 통해 확보된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을 녹색성장의 동력으로 이용**

가. 정책여건

o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 열대림 전용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려는 논의가 활발(FAO 보고서)

o REDD+를 통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 지분 확보 및 민간기업의 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해 REDD+ 사업이행 기반 구축 필요

o 기후변화협상에서 예외 없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능력 배양 필요

※ 우리나라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0%(2.4억 CO_2톤)를 자발적으로 감축토록 목표 설정('09.11.17)

나. 기본방향

o 해외탄소배출권 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o REDD+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발도상국과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및 능력배양 등과 연계

o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탄소배출권 사업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능력 증진, 사업전문가 양성 등 투자환경 사전 정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협력 채널을 활용한 정부 간 REDD+ 협력체계 구축

o 열대림 국가, 국제기구, 국책·민간연구소, 민간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REDD+ 협의체 등 운영(245백만원)

- REDD+ 정책협의회(1회), 전문가 및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회의(2회), 세미나 개최(2회) 등을 활용하여 양자·다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사업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o REDD+ 사업 대상국 확대를 통한 사업 수행능력 제고
- 미얀마, 캄보디아 등 REDD+ 사업 잠재력이 높은 열대림 국가와 공동 시범사업 이행을 협의(2개국, 150백만원)
- 사업대상지 확보 협의를 통해 추천된 사업대상지(1개소 당 50천ha 이하 임지)의 사업타당성 조사 진행(본 시범사업은 ’14년 이후)
※ 사업대상지 추천(상대국) →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공동) → 정부 시범사업(공동) → 결과분석 및 본 사업 준비

2)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시범사업 이행(2년차)

o 깜빠르 FMU/REDD+ 시범사업 진행(14천ha, 1,650백만원)

o REDD+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승인 등 처리

o REDD+ 이행사업단에 한국 측 co-director 1명 파견(총 7명)
- REDD+ 사업계획서(PDD) 작성 및 등록 등 탄소배출권 확보 진행
※ 깜빠르 REDD+ 시범사업 ROD 체결(’12.1.26, 인도네시아)

3)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거래 방안 강구

o 해외 산림탄소배출권의 국내 탄소거래시장 연계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 및 깜빠르 탄소배출권 상품의 시범 거래 추진
※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020년말까지 해외 탄소배출권(REDD+ 포함)의 국내 탄소시장 거래를 불허

o 민간단체, 온실가스 감축 대상기업에 대한 REDD+ 사업효과 및 사업 추진절차 등 교육·홍보(리플릿 제작, 사업보고서 발간, 국제정보지 번역 등)

o 탄소배출권 기술 워크숍, 심포지엄 등을 활용하여 한국형 산림탄소 인증(MRV) 체계 구축
※ MRV : 모니터링(Monite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4) REDD+ 국내·외 전문가 양성을 위한 능력배양 사업

o REDD+ 사업대상국 확대, 사업수행, 국제정보 분석을 위한 전문가 채용(3명)

o 민간기업의 REDD+ 사업투자에 대비하여 국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산림대학 REDD+ 강의 편성 요청, 피교육자의 지식수준에 맞는 전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REDD+ 국제세미나 또는 국제회의 참석

o REDD+ 사업대상국 이해관계자 및 한국 REDD+ 관계자 대상 GIS/RS, 탄소량 분석기법 등 교육 훈련 실시(2회)

라. 추진일정

o 2013년 REDD+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2. 12월

o REDD+ 시범사업 대상지 확보를 위한 정부간 협의 : 2013. 1월

o 열대림 국가 추천 대상지 사업타당성 조사 : 2013. 3월

o 국제 REDD+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 2013. 4월, 10월

o 사업 이해관계자 REDD+ 전문기술 교육 : 2013. 4월, 11월

o REDD+ 정책협의회 개최 : 2013. 7월

o 신규 추진 REDD+ 시범사업 협력 약정 체결 : 2013. 11월

o 인도네시아 깜빠르 REDD+ 사업 이행 : 2013년 연중

2. 해외 산림자원개발사업 지원체계 정비

목 표

◇ 해외산림투자 지원체계 정비로 사업 안정화·활성화 도모
- o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o 해외산림투자 지원 확대로 ’13년 해외조림 26천ha 추진

◇ 해외산림투자 다양화 및 신규사업 모델 개발
- o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400ha 시범사업 추진
- o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투자 모델 개발

가. 정책여건

-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해외 산림자원의 가치 부각
- o 참여기업의 다양화, 투자유형의 다변화로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성 증가
- o 해외조림 개발자원의 반입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요구 증대
- o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녹색사업단의 고유사업 개발 필요

나. 기본방향

- o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등 사업 다양화를 통한 해외 산림자원개발 확대
- o 해외 산림투자 추진 및 지원체계 정비로 사업의 효율성과 활성화 증진
- o 녹색사업단을 활용한 신규 투자지역 개척과 수익모델 개발·보급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 및 지원 체계 확립

- o 참여기업의 증가, 투자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체계 정비
  - 해외 산림자원의 조사, 조성, 이용 등 분야별 지원 전문화 추진
    - ※ 국립산림과학원, 녹색사업단 등 관계기관 역할 및 전문성 강화
  - 해외산림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 ※ 녹색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외산림자원개발 협의체’ 구성·운영

- 해외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과 지원을 위한 독자법령 구축 기초조사
  ※ 관련 법률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실시

o 해외조림 실시와 개발자원의 반입,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해외산림투자지원 정책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금)의 확대와 목재확보 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율 조정
  ※ 목재확보 조림과 부산물 활용 조림(고무나무, 팜유나무 등)사업과 지원 차등을 위한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율 조정 협의 실시
- 목재바이오매스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및 활용촉진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 칩, 우드펠릿 등 목재바이오매스의 발전연료 사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추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 진출지역 다변화,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을 통한 신규사업 모델 개발 등으로 해외조림 26천ha 실시

o 한-인도네시아 산림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추진
- 양묘→조림·육림→벌채→가공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조림 실시(1차 400ha 조림)
- 사업추진을 위한 바이오매스 조림사업 추진 실시협의록(ROD) 체결
- 녹색사업단을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o 국가 간 산림협력으로 확보한 조림대상지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강화
- 미얀마 산림협력에 의한 조림투자 대상지(50만ha) 후속조치 이행
- 인니정부에 조림허가 신청(16만ha)된 바이오조림 허가취득 협력 강화

o 투자기업 및 목재자원 수요자를 연계한 산림자원 개발방법의 다양화 추진
- 장기 안정적 원료 공급기지 조성을 위한 정부와 기업간 연결 역할 확대
- 조림기업과 목재가공기업, RPS 적용 발전사 등과 연계한 투자 지원

3) 녹색사업단을 통한 신규 진출지역 개척과 투자 수익모델 개발·보급

o 산림자원 선점을 위한 조사사업 실시로 해외산림개발 전문기관 역량 확보
- 미 진출지역 산림투자 환경조사 실시를 통한 투자정보 축적 및 제공
- 국가간 산림환경 증진사업을 통한 해외 산림투자 네트워크 구축

o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수익모델 개발
- 파라과이 산업조림 대상지 확보 및 조림실시(1,000ha)
- 인도네시아 우드펠릿 원료 확보 조림사업 수익모델 창출(500ha)

4) 정책지원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전문가 양성을 통한 사업 활성화

o 다양화, 규모화된 해외산림투자 융자 및 보조지원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 융자사업비 집행상황 점검 강화 및 사업실적과 연계한 지원 확대
  - 국고보조 조림대상지 사전환경조사 확대를 통한 개발투자 안정성 강화

o 투자기업 지원과 산림분야 학생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인턴 운영
  - 산림전공 학생의 글로벌 직장체험 및 해외자원개발 예비 전문가 양성
  - 투자기업, 국제기구 및 산림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해외인턴 파견(20명)

o ODA 사업과 연계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산림개발 대상지 확보
  - 사업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출국의 산림개발 조력자 확보
  - 협력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통한 국가간 산림개발 대상지 확보

라. 추진일정

o 해외산림자원개발 지원 해외인턴 발대식 : 2013. 1월

o 해외산림투자 환경조사 및 융자사업 지원계획 공고 : 2013. 2월, 7월

o 미얀마 50만ha 조림투자협력 MOU 체결 : 2013. 2월

o 2012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 보고 : 2013. 2월

o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을 위한 인니 바이오매스 조림투자 ROD 체결 : 2013. 2월

o 해외산림투자지원 자금 융자심의회 개최 : 2013. 3월, 8월

3. 산림협력 환경 제고를 위한 양자협력 강화

목 표

◇ 산림자원 보유국 및 기후변화대응 협력대상 국가들과 신규협력관계 구축으로 양자협력 다변화

◇ 기 체결국과는 양자협력사업 내실화로 실질적인 성과창출 도모

가. 정책여건

o 사막화방지 유엔총회(UNCCD COP10) 개최를 계기로 산림녹화 및 사막화 방지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기대 증가

o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외교협력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간 산림환경 복원 협력 필요성 증가

나. 기본방향

o 신규 양자협력 구축 및 정례 산림협력위원회를 통한 협력사업 내실화와 산림선진화 도모

o 산업조림, 산림 바이오매스 조림, REDD+ 등 해외산림자원 확보, 산림 녹화경험·기술의 해외 협력, 선진 임업기술 · 경험 분야에서 양자협력 강화

o 양자협력 국가별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관련 DB 구축 및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전략적인 양자협력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자원 확보 및 산림보전 협력을 위한 신규 협력 MOU 체결

o 산림관리정책 선진화와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산림자원 보유국 및 아프리카 등 국가와 산림협력 추진

- 주요 산림보유국이며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은 미주(캐나다, 아르헨티나) 및 아시아(말레이시아, 라오스) 국과 산림협력 MOU 체결

- 아프리카 국가 중 세계 2위 열대우림의 산림자원국인 콩고민주공화국(DR 콩고) 및 열대림 보전, 황폐화된 산림복구가 시급한 르완다와 신규 산림협력 관계 및 협력사업 발굴 추진

※ UNCCD 제10차 총회에서 개최된 양자회담시 르완다 자연자원부 장관이 양국 간 산림협력 요청('11.10.18)

구 분	계	현재 협력국가	신규 추진국가('13)
계	27	21개 국가	6개 국가
아시아	8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중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아프리카	4	튀니지, 알제리, 베냉, 에티오피아	DR콩고, 르완다
미주	5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 럽	2	러시아,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	호주, 뉴질랜드	-

2) 양자협력 국가와의 실질적인 협력과제 발굴 추진

o 정기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및 산림협력 의제 협의, 이행

- 목재 및 바이오에너지 확보를 위한 조림투자, 사막화방지, 생물자원 확보, 전문가 교류 등 국가별 주요 의제 발굴 및 기 합의사항 이행

〈'13년도 산림협력위원회 개최 일정〉

한국 개최(6회)	상대국 방문(6회)
·중 국 (제 9차, 4월)	·필 리 핀 (제 1차, 6월)
·베 냉 (제 1차, 4월)	·인도네시아 (제 21차, 7월)
·브 라 질 (제 1차, 5월)	·튀 니 지 (제 2차, 8월)
·우루과이 (제 3차, 6월)	·칠 레 (제 1차, 9월)
·뉴질랜드 (제 7차, 10월)	·에콰도르 (제 1차, 9월)
·호 주 (제 7차, 10월)	·오스트리아 (제 1차, 11월)

※ 상대국과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확정

o 인도네시아와의 안정적인 산림사업 및 투자협력 강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7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 개최(7월, 인도네시아)

- 4개 분과별로 구성하여 깜빠르지역 REDD+ 사업, 바이오매스 조림 등 주요 조림사업, 산림보호, 공동연구 및 인적개발 등 논의 및 협력

o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자협력을 위한 시스템 마련

- 국가별 정례 양자회의 합의의사록 및 의제별 추진사항 등 관련 DB 구축
- 양자협력 국가별 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및 운영
- 양자협력 기관간 약정체결 절차 및 효율적인 산림협력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한 「양자협력 업무매뉴얼」 발간
- 양자협력 의제준비와 성과공유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마련

※ 녹색사업단 해외조직을 지역별 산림협력센터로 활용

o 개도국과의 산림협력분야에서 인적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시행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녹색사업단, 동국대학교 사막화방지사업단, 한반도 산림복원 및 국제산림협력 연구사업단(INFOCO) 등에서 운영하는 초청연수 및 장학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인적자원 역량강화 추진

라. 추진일정

o 제9차 한·중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4월

o 제1차 한·베냉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4월

o 제1차 한·브라질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5월

o 제1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6월

o 제1차 한·필리핀 산림협력회의(필리핀) : 2013. 6월

o 제21차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회의 및 제7차 산림포럼(인니) : 2013. 7월

o 제2차 한·튀니지 산림협력회의(튀니지) : 2013. 8월

o 아프리카 산림협력 체결(DR콩고, 르완다) : 2013. 8월

o 제1차 한·칠레 산림협력회의(칠레) : 2013. 9월

o 한·아르헨티나 산림협력 체결(아르헨티나) : 2013. 9월

o 제1차 한·에콰도르 산림협력회의(에콰도르) : 2013. 9월

o 제7차 한·뉴질랜드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10월

o 제7차 한·호주 산림협력회의(한국) : 2013. 10월

o 제1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회의(오스트리아) : 2013. 11월

o 한·캐나다 산림협력회의(캐나다) : 2013. 11월

4. 임산물 통상협상 대응

목 표

◇ 한·중 FTA 등 주요 교역국가와의 자유무역협상에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여 임산업 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2013년 1월 현재, 미국, EU 등 47개국과 10건의 FTA를 타결하였고, 중국과의 FTA가 진행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

※ 발효·타결(10) : 칠레, 싱가포르, EFTA[1],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 진행 중(8) : 중국, 호주, GCC[2],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o ’25년 기준, 임산업에 4,211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협상도 차기정부에서는 타결될 전망

- 단기임산물 3,266억원, 목재류 942억원, 석재류 3억원

o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RCEP[3], 한중일 FTA 등 다자간 협상이 가시화 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임산업 피해가 예상

나. 기본방향

o FTA 추진 확대에 따른 대상국별 교역규모, 피해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해당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상안 준비

o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하여는 민감·초민감 품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방어 전략대응과 수출확대 추진

o 타결·발효된 FTA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내 파급효과가 큰 중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 대응

1) 유럽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3) 역내 포괄적 동반자협정(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주도) + 6(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o 추진경과 : ’ 12. 5월(1차) ~ ’ 12.10월(4차)까지 Modality 진행
  - 협상의 범위와 개방수준을 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이견이 큼

o Modality 협상에서의 주요쟁점
  - 농림수산분야 : 전체 상품분과에 농림수산품목 포함여부
    ※ 전체 상품분과에 농림수산분야가 포함되면 초민감 품목 반영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원산지분야 : 개성공단의 원산지 포함여부
    ※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한국의 원산지 생산품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상 중

o 중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임산업 보호노력
  - 목표기간 : 중국은 조기타결, 한국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타결을 희망

o 우선 처리하여야 할 사항
  - 연구기관, 품목부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양허순위 확정
  ※ 용역결과, 품목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된 양허순위 마련

o 협상에서 중심을 둘 내용
  -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세인하에 취약한 임산물이 초민감 품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대량유통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내용 확인 등 비관세 장벽의 활용을 통한 수입억제력 제고(농산물 품질관리원 소관업무)

o 품목과와 공동으로 협상동향설명회, 통상간담회 등을 통해 협상동향 전파하고 임업인의 의견수렴
  - 개방 품목의 피해추정금액, 피해보전대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전파
  -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물류비 지원 등 수출 지원대책 등 설명

2) 협상중인 FTA에 대한 국가별 맞춤형 대응

o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13년도 타결 예정인 FTA 협상에서 국가별 민감성 반영을 위한 다양한 협상 추진
  - 전문기관 연구결과, 품목과 의견 등을 반영한 민감 우선순위 확정
  -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양허제외, 장기철폐 등 민감성 반영
  - 합판, 섬유판 등 가공 목재산업 보호를 위한 민감성 반영

o 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 수출 유망품목의 협상 대상국 관세 조기철폐 요구와 수출규제 등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

o 수입방어와 수출확대를 위한 원산지 규정 반영
- 제3국산 상품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
- 원자재를 수입한 후 가공하여 수출하는 품목(섬유판, PB 등)에 대하여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제시

o 해외조림 등 임산업 해외투자 활성화 및 투자자의 안정성 확보방안 모색

o 원목, 목재칩 등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 기후변화협상에 대응한 A/R CDM, REDD+ 등 임업협력방안 반영

3) 타결된 FTA 모니터링과 추가 협상 대응

o 타결된 FTA 이행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모니터링
- 한-칠레, 한-ASEAN(상품) 등 이미 발효된 FTA 추가 협상 대응
- 업계 관심사항 발굴, 원산지증명 간소화 등 개선 필요사항 모니터링

o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RCEP, 한중일 등 다자간 FTA 협상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영향분석과 협상대응 방안 모색
- 목재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ASEAN과의 목재류 상품양허 협상에 대응한 맞춤형 양허안 마련

4) WTO/DDA, GSTP[4], APTA[5] 등 다자간 통상협상 대응

o WTO 신규 가입, GSTP, APTA 협상 등 다자 임산물 협상 대응
- WTO 가입신청 국가 및 GSTP, APTA 협상관련 품목별 양허안 검토

o DDA협상 동향 파악과 임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별 입장파악과 영향분석 등 대비
- 농업협상과 NAMA[6] 협상별 민감품목 선정, 영향분석 등 대응
- 일부 분야에 대한 조기타결 움직임 등 파악으로 임업계 영향 최소화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통상협상 종합대책 마련 : 2013. 1~2월

o 통상협상 간담회를 통한 임업계 의견수렴
- FTA 협상 간담회, 대책회의 : 사안발생시 수시
- DDA 협상 간담회 : 반기별(쟁점발생시 수시)

o 임산물 통상협상 참가 : 연중

---

4)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44개 회원국
5)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6개 회원국(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6) Non-Agriculture Market Access(비농산물 시장접근)

5. 임산물 수출확대

목 표

◇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과 수출조직화 및 전략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확대**

o 임산물 장기 수출비전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추진

가. 정책여건

o 주요 FTA 타결 · 발효로 관세철폐 및 비관세 장벽 완화

o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불안과 주요국의 소비침체

o 원유, 목재 등 원자재 가격상승과 자원 확보 경쟁 격화

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화와 수입통관 강화

나. 기본방향

o 전략품목 중심의 대표 수출상품 육성과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o 수출협의회, 수출선도조직을 중심으로 수출 주도세력 육성

o 품목 · 국가별로 공격적인 맞춤형 마케팅 전개

o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전략품목 중심으로 대표 수출상품 육성과 수출기반 구축

o 수출규모, 성장가능성에 따라 전략품목별 차별화된 지원

- 그 동안의 수출규모,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품목군을 나누고, 품목별 전략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수출확대를 지원

o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용 공동브랜드 상품화 촉진

- 밤, 표고, 감의 수출용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과 관련기술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전파하고 기술교육 강화
- 유럽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브랜드 홍보로 시장진입 지원

o ’13년부터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장비(급속예냉, 자동선별장비 등) 지원
- (’13년) 1개소, 총사업비 20억원(국고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2) 수출협의회 기능 강화 등 임산물 수출의 핵심세력 적극 육성

o 품목별 수출협의회(6개)의 역량강화와 기능재편을 통해 핵심 세력화
-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에 수출협의회 인센티브를 운용함으로써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참여 및 실적이 저조한 수출협의회 기능재편 추진
- 협의회별 자율기능 강화로 품목별 품질기준 운용, 수출질서 유지, 정보교류, 정책건의, 해외마케팅 효율화 방안 등 수출확대를 위한 발전방안 협의 및 공동사업 지원
- 협의회의 박람회 참가 및 공동판촉·마케팅 등 지원(300백만원)
-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지원팀 회의 운영
  ※ 수출협의회 : 밤, 감, 건표고, 신선표고, 목제품, 합판보드(6개)

o 신규시장 중심의 수출용 공동브랜드 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지원
- 한국임산수출사업단의 유럽권 진출 지원과 충남지역 주산지 생산조직과 전략적 제휴 등 수출물량 확보 추진 등 밤 마케팅보드 육성
-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용 공동브랜드 홍보지원으로 수출확대 추진
  ※ 한국임산수출사업단 : 밤 수출업체 10개사 출자, 2010.11월 결성

o 수출선도조직의 운영활성화 및 농가와의 결속력 확대
- ’12년 수출실적 평가와 실적 저조업체 재선발과 피드백을 통한 사업개선
- 참여농가 확대, 농가·수출업체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
- 마케팅, 사업관리비, 선도조직 장비지원 등(2조직, 369백만원)

o 수출전문 인력 육성으로 수출역량 배양(50백만원)
- 수출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생산자, 수출업체 대상 교육
- 지역별 수출컨설팅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 수출특화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품질기준 교육 등 병행 추진

3) 수출국 다변화 및 시장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내실화

o 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시장조사단, 해외판촉전 지원(344백만원)
-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주요 국제박람회의 임산물 홍보관 운영(2회)으로 임산물 인지도 확대
- 시장조사단 파견으로 수출품목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판촉전 지원

o 신시장 개척 또는 신규 품목의 수출유망품목 지원(6품목, 140백만원)

o 해외시장 마켓테스트 및 정보조사 지원(375백만원)
- 임산물 수출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시장정보를 분석, 제공(매월)
- 마켓테스트 등을 통해 신규 품목의 시장 진출 지원

o 공동브랜드 홍보 등 한국산 임산물의 고급화 추진(130백만원)
- 해외판촉전 연계 홍보, 언론매체 광고 등 전략적인 홍보 추진
- 박람회, 판촉전에 활용할 임산물 홍보 영상물 제작

4)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o 지방자치단체 수출·유통 담당자와의 토론회 등을 통해 협조채널 구축
- 지역별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 수출 예산 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수출특화지역 육성 등 협력사업 확대

o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 생산자간 상시적인 공조시스템 운영
- 산림조합의 수출참여, 농수산물유통공사 콜센타 운영 등

o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강화
- 농식품부 한식세계화사업과 연계하여 산채비빔밥 수출 확대 추진
- 수입국 검역 조건 완화를 위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정책 협조
  ·호주, 뉴질랜드 등 밤 검역 협상 지원, 분재 수출 조건 완화 등
  ·검역협상 완료시 시장조사단 파견 및 마켓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국으로 분재 수출 관련 공동 검역 협조방안 추진 등
- 수출국에서의 통관 애로사항 등 해결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협조

5) 수출장애 해소와 수출확대에 유리한 여건 조성

o 물류비 경감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판매촉진비 지원(1,732백만원)
- 수출가격에 따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 고부가가치 수출 장려
- 수출여건과 국내 생산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류비 지원체계 운영

o 유망 육성 품목 및 가공기계를 중심으로 기계장비 지원(120백만원)

o 수입국의 식품 안전성 강화에 대응하여 현지검역비, 수출이력제 관리비용 지원(500백만원)
- 밤 잔류농약 검사 및 생산이력제 등 밤 수출 안전성 확보 지속 노력
- 밤 생산이력에서 신선표고, 감까지 수출이력 관리대상 확대 추진

o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용 카달로그, 포장재 개발 지원(35백만원)

o 목재류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 목제품 수출용 원자재 구입비 융자(이차보전, 20억원)
- 합판보드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지원을 위한 할당관세 운영

o 수출업체, 생산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 개최
- 수출현장간담회, 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확대회의 등 개최
- 수출애로사항 의견수렴과 개선 추진

라. 추진일정

o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 세부 추진계획(지침) 시달 : 2013. 1월
- 세부사업별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 수시
- 판매촉진비 : 매월
- 수출선도조직 평가 : 2013. 2~3월
- 시장조사단 파견 : 2013. 상반기
- 수출·수입업체 간담회 : 2013. 7~8월
- 기계장비 지원 : 2013. 하반기
- 임산물 해외 수출홍보 : 2013. 하반기

o 임산물 수출촉진 대책회의 : 2013. 2월

o 수출확대간담회 : 수시

o 임산물 수출유공자 표창 : 2013. 11~12월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 및 확대

목 표

◇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성실한 이행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확대를 추진

o AFoCO 출범에 따른 사무국 지원 및 협력의 성과를 도출

o 회원국 확대를 위한 제3국가 협력 및 협상 추진

가. 정책여건

o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09. 6, 제주)시 AFoCO 설립 제안 후 제1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18, 인니)시 ASEAN과 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여 발효됨으로써 AFoCO 출범(’12.9.1, 서울)

※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의 발효 및 AFoCO 사무국 개소를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산림장관회의 개최(’12.8.29~30. 서울)

o 한·아세안 특별산림장관회의 성명서 채택으로 한·아세안산림협력협정의 이행과 협력의 강화를 뒷받침

※ 주요내용 : 1)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성실한 이행, 2) 역량강화, 훼손지 복구, SFM,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협력, 3) 기구 확대를 추진

o 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기반으로 AFoCO 확대의 기반을 구축할 시기

나. 기본방향

o 산림협력 협정이행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대내외 설립 추진 효과 제고

o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 및 조기정착 추진

o 회원국인 ASEAN 국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3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신규사업을 추진

o 사무총장 선임, 이사회, 작업그룹 준비 철저로 협정의 이행기반 마련

o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타 아시아 국가와 기구확대를 위한 주요 협상 추진

※ 몽골(동북아), 키르키즈스탄(중앙아), 네팔, 부탄, 스리랑카(남아시아), 이란, 터키(서남아) 등 핵심국가 위주로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AFoCO 사무국 운영 지원(협정 제4조)

o 사무국은 이사회를 보좌하는 실행기구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계획 및 활동에 관한 조정, 모니터링, 보고의 역할을 담당

o 사무총장 인선을 통한 안정된 조직체계 구성 및 운영정착 지원

- 제2차 이사회(’ 13.1월, 미얀마)에서 사무총장을 선임하고, 사무총장이 아세안 및 한국측 신규 직원 채용 추진시 전문인력 추천

※ 이사회는 기구 운영을 위한 예산의 승인 및 의사규칙 등의 채택을 담당하는 최고 의결기구

o 협정 이행을 위한 3개팀(기획, 대외협력, 사업팀) 운영 지원

- 사무국 조직은 현재 2개팀(인사기획팀, 해외협력팀)으로 운영 중으로 ’ 13년 1개팀 추가 조직 구성 지원
- 현재 9명 근무중(정규직 6명, 계약직 3명), ’ 13년에는 12명 근무예정(사무총장, 전문가, 행정직 등 정규직 3명 인력 채용)
  - ■ 인사기획팀 : 사무국의 예산, 인사, 복무 관리 등 사무국 운영을 총괄
  - ■ 해외협력팀 : 국제회의(이사회, Working Group 등) 및 기구 확대를 위한 협상을 담당
  - ■ 전략사업팀 : 對 아세안 사업의 계획, 진행, 평가, 환류와 동북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 제3국과의 협력사업을 담당

〈AFoCO 사무국 조직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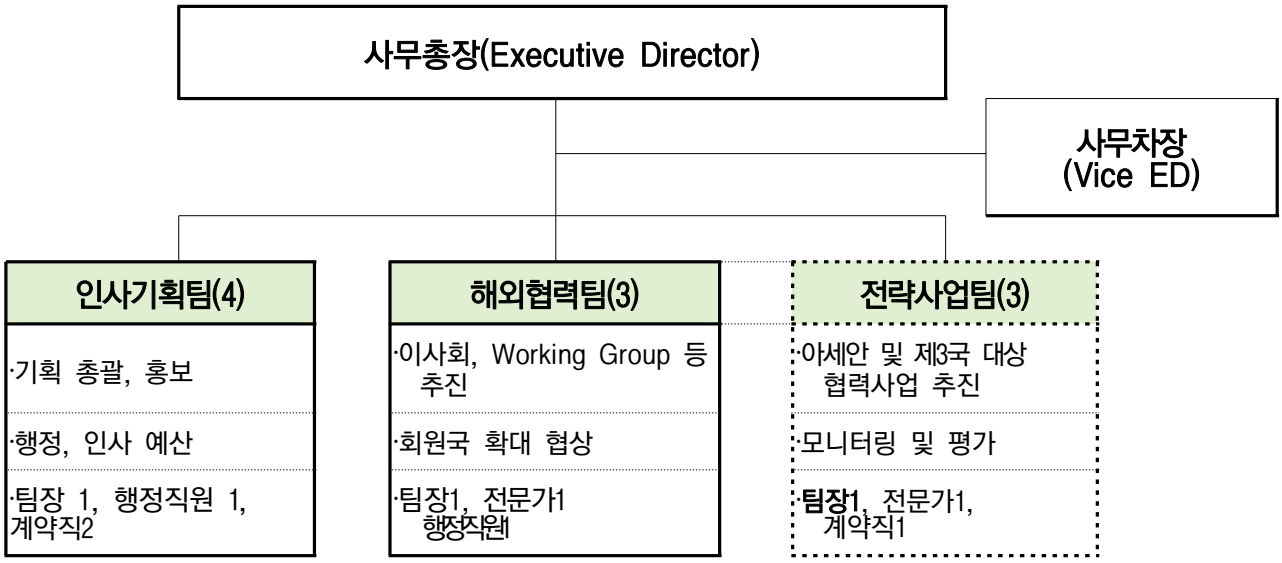

2) AFoCO 협력사업 추진(협정 제2조, 제3조)

o 지역협력사업
- 2개사업, 300만불(’12~’13)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주관으로 전 회원국에서 실행

o 개별협력사업 및 신규협력사업 개발
- 개별협력사업은 7개사업(’12~’13)
- 신규협력사업은 5년 장기계획으로 산림훼손지복구 및 역량강화 관련 1개 사업, 총사업비 500만불(’13년도 100만불)

o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참여 및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확대
- 연관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추진

o 대표적인 사업(Landmark)의 발굴 및 추진
- 메콩강 유역 산림 및 유역 관리를 위한 지역 기기 훈련원 설립 등
- 북한 산림복구, 새마을 정신 보급 등과 연계된 프로젝트 발굴
- 홍보 및 연계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참여 및 민관협력사업(PPP) 추진

3) AFoCO 회원국 확대(협정 제6조, 제7조)

o 2차 이사회시 기구 확대와 평가를 위한 작업그룹 결성 등을 의결토록 추진하며 기구 확대와 산림협력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13년 상반기)
- 회원국 확대 협상 및 신규 협정(기구확대협정) 문안 초안작성

o 주요 추진내용
- 기존의 한-아세안 협력사업(’12년)에 대한 조속한 사업이행과 지역협력사업(’13년)에 대한 사업개발 지원
- 아세안과의 협력은 기후변화 대응(REDD+) 역량 강화 및 회원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 메콩강 유역국가에 대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최빈국(CLMV)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제3국과의 협력은 협력국가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되 산림복원에 중점
  ※ 핵심대상국가(안) : 몽골(동북아), 키르기즈스탄(중앙아시아), 네팔, 부탄, 스리랑카(남아시아), 이란, 터키, 레바논(서남아 및 중동)

4) 이사회 및 작업그룹 참여(협정 제4조, 제7조)

o 이사회는 조약의 의사결정 및 조정기구로서 한국 및 아세안(10개국) 산림분야 고위급 공무원, 아세안사무국 대표(1인, 자문역)로 구성됨

o 협정 후속조치 이행
- 협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정이행평가 TF 구성 및 착수
- 회원국확대 작업그룹을 설치(’13년 상반기)하여 협상을 주도

o 제2차 이사회 의제(안)
- ’13년도 사무국 운영계획 승인
- 사무총장(ED) 선임 등 사무국 운영방안
- 사무국 운영경비에 대한 각국 분담 규모 및 방안
- 협력사업 등 연간 사업계획 승인
- 기타 국가 및 단체와의 협력방안
- 조약 이행 평가 계획 승인
- 회원국 확대 추진계획 승인 등

5)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협력기반 구축

o AFoCO를 산림분야에서 아시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로드맵 수립
- 회원국 및 NGO·국제기구·아세안 산림기관·산림투자기업(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등의 자발적 기여금, 선진국의 ODA 자금 활용 방안 모색 등

o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AFoCO사업개발 및 확대
- 관련 국제기구 및 NGO : UNCCD, FAO, CIFOR, ITTO, UNFF, IUFRO, IUCN 등

o 선진국의 ODA 기금, 국제기구 산림관련 재원을 AFoCO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o 주요 추진 내용
- 기존 산림관련 국제기구와 네트워킹 구성 및 공동사업 제안 추진
-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REDD 및 사막화방지 사업 발굴 등
-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추진
  ※ 국제기구 초청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가 기회를 적극 활용

6) AFoCO 홍보 추진

o 주한대사 초청세미나(상 · 하반기)
- AFoCO에 대한 아세안 국가 한국주재 외교관의 이해도 증진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연례행사(상반기)
- 향후 가입국(몽골, 키르키즈스탄, 네팔 등)에 따라 확대 실시(하반기)

o 외신 기자 간담회(해외 기자단 및 국내 외신 기자단)를 사무국과 공동 추진

o 브로셔 안내책자 및 백서 발간 등

라. 추진일정

o AFoCO 사무국 운영 지원
- AFoCO의 안정적인 지원과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2013. 1~12월
- 정부법무공단 및 법원행정처 등 수시 법률자문 추진 : 2013. 3~11월
  ※ 산림기본법 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책 대비) 일부 개정

o AFoCO 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추진
- 핵심국가 Focal Point 선정 및 양자협상 추진 : 2013. 1~4월
- 회원국 확대를 위한 제3국 초청 워크숍 : 2013. 6월
- 확대논의를 위한 작업그룹 구성 및 회의 : 2013. 1~12월

o 협력사업 추진
- 협력 분야별 수요 조사 : 2013. 1월
- 협력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13. 2월
- 회원국 사업별 제안서 접수 및 검토 : 2013. 3~4월
- 승인 및 사업착수 : 2013. 4월
- 협력사업 추진 및 평가 : 2013. 5~12월
  ※ AFoCO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별 및 지역협력사업, 신규협력사업 추진

o 이사회 및 작업그룹 참석
- 제2차 이사회 개최를 위한 AFoCO 사무국 협의 : 2013. 1월
- 제3차 이사회 준비 : 2013. 12월

o AFoCO 홍보 추진
- 브로셔, 안내책자, AFoCO 추진백서 발간 : 2013. 1~3월
- 주한 대사 초청설명회(상반기 아세안, 하반기 중앙아시아) : 2013. 6월, 10월

7. UNCCD COP10 의장국 역할 수행

목 표

◇ 성공적인 UNCCD COP10 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창원이니셔티브와 DLDD 논의 주도의 초석을 마련

가. 정책여건

o 사막화와 토지황폐화, 가뭄(DLDD[7]) 문제의 해결이 빈곤 감소를 위한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산림은 DLDD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

o UNCCD COP10에서 총 41개 결정문과 함께 협약 프로세스의 전환점이 될 "창원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으며, 차기 당사국 총회까지 의장국 역할 수행 의무

o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 주요 개도국 및 UNCCD 사무국은 우리의 전반기 의장국 수행에 긍정적인 평가와 UNCCD내 창원이니셔티브 및 DLDD 논의를 지지

o '12년 6월, Rio+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써 한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결과문서에 '토지황폐화 중립세계 - a land degradation neutral world(LDNW)' 문안을 반영함으로써 녹색 경제 이슈 선도

※ 창원이니셔티브를 LDNW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제안, Zero Net Land Degration(ZNLD)을 통해 LDNW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창원이니셔티브의 핵심

나. 기본방향

o 차기 총회 개최 시까지 의장국으로서 협약 결정사항 이행 및 사막화방지 국제논의 주도

- COP 10의 결정사항인 GM(Global Mechanism, UNCCD의 재정체계)의 이전 및 10개년 전략 계획(2008-2018)의 중기 평가 등을 추진
- 협약내 창원이니셔티브의 역할 강화를 추진

o 국제사회에서 DLDD 인식 제고 및 UNCCD 인지도 상승에 기여

- UN총회,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 등에서 DLDD에 대한 심각성 역설
- UNCCD 사무국과 함께 DLDD 관련 이슈의 선점을 통해 UNCCD의 위상 강화에 기여

o 차기 총회시 창원이니셔티브의 정식 의제화 및 ZNLD의 논의를 개시

다. 세부추진계획

7) DLDD : Desertification, Land Degradation and Drought

1) UNCCD COP10 의장단 회의 개최 및 주재

o 의장단 회의 매년 2회 개최(1회 의장국 개최, 1회 사무국 개최)

o 의장단 회의 주요 의제
- Rio+20 총회의 후속조치 점검
- UNCCD 사무국, GM 및 부속기구 등 작업 계획 조정
- CRIC, CST 활동 상황 점검
- 10개년 전략계획 중기평가 후속 조치
- 창원이니셔티브 진행상황 점검
- 제11차 당사국총회 준비상황 점검 및 문서 검토
- 예산, GM의 거버넌스와 조직정비 후속조치

2) UNCCD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o UN 총회 결정문에 DLDD 이슈를 UNCCD 협약 내로 이끌어오는 노력을 강화

o UNCSD에서의 DLDD 논의의 중요성을 부각

3) 제11차 당사국 총회시 창원이니셔티브의 정식 의제化 및 ZNLD 논의 개시를 위한 노력

o COP 10 고위급 회의에서 많은 당사국의 환영(Welcome)을 받은 창원이니셔티브를 COP11 결정 문서에 'Take note' 또는 'Adopt' 수준으로 격상

※ 창원이니셔티브를 UNCCD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시킴과 동시에 "Zero Net Land Degradation"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 부각

o UNCCD COP 11 이전까지 주요 사전회의에 적극 대응하여 창원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 역량을 집결
- 제3차 과학기술위원회 특별회의(CST-S3) 및 제2차 과학대회 참석·대응
- 제1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11), 지역그룹 회의 참석 및 대응

o 제11차 당사국 총회(COP 11) 참석 및 협상 과정에 참여

※ 창원이니셔티브 정식 의제화 대응 T/F 구성

라. 추진일정

o 제3차 CST 특별회의(CST-S3) 및 제2차 과학대회 : 2013. 2월

o 제3차 의장단 회의 및 제3차 IWG 회의(독일 본 예정) : 2013. 4월

o 제11차 협약이행검토위원회(CRIC 11, 독일 본 예정) : 2013. 4월

o 제4차 의장단 회의 및 제4차 IWG 회의 개최(서울 예정) : 2013. 6월

o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 참가 및 부대행사 개최 : 2013. 6월

o COP 11 준비 지역그룹 회의 참가 : 세부일정 미정

o 제11차 당사국총회 의제 검토 워크숍 : 2013. 9월

o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독일 본 예정) : 2013. 10월

8.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

목 표

◇ 창원이니셔티브의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 UNCCD 10개년 전략계획('08-'18)의 성공적 이행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UNCCD내 위상 제고

가. 정책여건

o UNCCD는 재원 부족, DLDD 관련 과학 기반 조성 미흡 등의 이유로 협약 이행이 어려움

o 협약 차원에서 창원이니셔티브가 UNCCD 10개년 전략계획 이행과 장기목표 설정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o UNCCD COP 10에서 많은 당사국이 창원이니셔티브에 지지와 환영을 보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큰 기대를 표명

나. 기본방향

o 창원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운영에 재원의 배분과 적극적인 참여

o 협약 이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학기반 구축 및 DLDD 이슈의 홍보를 위한 생명의 토지상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동북아 소지역 행동계획 등을 주도하여 아시아의 사막화 방지 허브 역할을 위한 기반 구축

o 창원이니셔티브에 기반한 순토지황폐화제로(ZNLD) 의제 추진을 위한 협상을 개시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가,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운영

o 체계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성화
- 산림청, UNCCD, UNEP로 운영위원회 구성
  ※ 제10차 총회기간 중 3자 MOU 체결, ’12. 5월 GDP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신규 사업 논의, 예비분석 실행, 사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o 건조지의 토지황폐화 식생 복원 사업 추진
- 황폐산림 복원을 통한 산림생태계서비스 증진 기반 마련
-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 및 친환경 녹색성장 경험 전수 등 능력배양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에서 신규 시범사업 발굴 및 운영

2) UNCCD 협약이행 강화를 위한 과학기반 구축 및 생명의 토지상 운영

o 목표 :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DLDD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목표 설정 및 실천 지원

o 영향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 과학 전문가 그룹 운영 지원

o 토지황폐화 경제성 평가(E-LD : Economics of Land Degradation) 연구사업 지원
- ‘순토지황폐화제로’ 연구 및 의제화로 창원이니셔티브 지위 강화
- 네트워킹을 통한 E-LD 아시아허브 구축, 국가별 사례연구 추진 및 보고서 발간 등

o UNCCD 목표설정 관련 작업그룹 지원

o UNCCD 과학자문기구 설립 관련 특별 작업그룹 지원

o Land for Life Award 운영위원회 참석 및 수상자 선정·수여에 참여

3) 동북아 DLDD 네트워크 및 황사방지 프로그램 운영

o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 및 소지역 행동 계획(SRAP)을 주관
- 한 · 중 · 몽 3자 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및 네트워크 포럼 개최
- SRAP 이행 평가, 시범사업 개발 및 이행
- SRAP 조정 작업 수행
- AFP 등 지역협의체 및 ADB 등 재정기구와 공동협력 추진
-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및 지원
  ※ AFP(아시아 산림 협력, Asia Forest Partnership), ADB(아시아 개발 은행, Asia Development Bank)

o 동북아 DLDD 방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중국-몽골 국경지역 황사 발생 방지 프로젝트 지원

※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타당성 조사 및 중기('13~'15) 운영계획 수립 용역수행 중

4) 순토지황폐화 제로 의제화 추진

o Rio+20 정상회의 주요성과인 순토지황폐화 의제화를 추진

- 의제 초안 작성 및 문안(초안) 협상을 개시
- DLDD·토양 관련 국제회의, UNCCD 부속 회의 개최 및 지역그룹 회의 참가를 통해 지지 기반 확보를 추진

라. 추진일정

o 순토지황폐화 제로 의제 초안 작성 : 2013. 2월

o 창원이니셔티브 후속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013. 2월

o 토지황폐화 경제학 아시아 허브 구축 세부계획 수립 : 2013. 2월

o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운영위원회 참가 : 2013. 2월

o 건조지 녹색성장 파트너십 인셉션 워크숍 : 2013. 3월

o 토지황폐화 경제학(ELD) 중간보고서 발표(한국 개최 예정) : 2013. 6월

o 순토지황폐화 제로 의제화를 위한 지역그룹 협상 : 2013. 8월

9. 녹색 ODA 사업 확대로 해외산림협력 강화

목 표

◇ 개발도상국 산림협력 ODA 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 정비
◇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 증진으로 열대 목재자원 확보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Rio+20 총회시 그린 ODA의 확대를 천명, GCF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ODA 기여 확대 요구

o 양자 산림협력 확대를 통한 산림외교 다변화 및 협력 강화 기반 조성

o 산림경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사막화 및 황폐산림 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산림녹화 및 산림환경 복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증가할 전망

나. 기본방향

o 기존 ODA 협력은 강화하고 신규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ODA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ODA 확대를 추진

o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사업은 AFoCO 협력사업으로, 아프리카·남미 지역은 창원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

o ’12년 수립한 몽골 그린벨트 후반기(2012~2016)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목표(3,000ha) 달성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녹색 ODA 전략 수립 및 산림분야 ODA 사업 발굴과 확대

o ODA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직, 법, 제도 및 예산 확보 등 장기 전략 수립
- 수요 증대, 사업 수행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ODA 사업 계획 수립
- 국가별 CPS, KSP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극대화
- 기존 국제기구 및 국내 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o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까지 확장하여 추진하고, 창원이니셔티브의 건조지녹화파트너십을 남미로 신규 확대
  - AFoCO 회원국 확대 협상 및 UNCCD 성과 등과 연계하여 신규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

o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보 추진

2) 국가개발협력전략(CPS)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산림협력사업 성과 제고

o 인도네시아 이탄림(peatland) REDD+ 시범사업(14천ha) 2년차 사업 이행

o ’12년 마련한 함발랑 녹색협력단지(630ha)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녹색협력단지(630ha) 조성사업의 단계적 이행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KIFC) 운영 활성화
  - 산림협력센터를 인도네시아 산림협력의 핵심 조직으로 발전
    ·정부간 산림협력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 투자기업의 산림컨설팅, 기업애로 해소 등 인니 정부에 대한 메신저 기능

3) 황사방지 국제협력 대응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동북아 협력단계 진입

o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후반기 사업계획(’12. 10월)에 기반하여 몽골그린벨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목표(3,000ha) 달성
  - ’13년 사업계획(안)
    ·예산 : 1,163백만원
    ·사막화방지 조림(100ha) : 룬 솜, 달란자드가드
    ·싹사울복원 조림(340ha) : 달란자드가드
    ·양묘사업(2개소)
    ·연수생초청 : 단기(10명), 장기(2명, 26개월)
    ·공동연구사업(6과제) 등

o 중국 민간사막화 방지 조림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 ’13년 사업계획(안)
    · 예산 : 298백만원
    · 대상지 : 중국 쿠부치사막
    · 수행기관 : 녹색사업단(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주요내용 : 사막화방지 조림, 조림기술지도, 녹색봉사단 파견 등

4) 개발도상국과 산림협력 강화 및 산림협력 지원체계 정비

o 개발도상국과의 인적교류 확대 및 현장 적용가능 지식 위주의 교육 실시

o 산림분야 국제협력사업 운영 전문가(PM)의 장·단기 해외파견
  - 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등 해외 사업단에 실무급 전문가 파견 지속 추진

o 민간부문의 사막화방지 활동 참여 촉진 지원
  - 민·관 정보교류를 통한 민간 사막화방지 활동의 사업 효과 제고
  - 사업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녹색사업단을 통해 관리

라. 추진일정

o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 2013년 운영계획 수립 : 2012. 12월

o 국제산림협력 ODA 10개년 계획 수립 : 2012. 12월

o 한-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사업계획 수립 : 2012. 12월

o 민간 사막화방지 조림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3. 1~2월

o 중국 황사방지 협력사업 현지 조사 : 2013. 5월

o 한-아프리카 산림협력 워크숍 : 2013. 6월

o 제7차 한-몽 공동운영위원회 : 2013. 7월

10. 다자간 산림협력 확대

목 표

◇ UN 3대 협약 내 산림분야 역할 확대 및 협약을 통한 국내 산림정책 확장의 대외 기반 제공
◇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한 산림분야의 역량을 제고

가. 정책여건

o Rio+20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생물다양성 손실, 사막화 확산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녹색경제로의 이행 등 국제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

o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개최(’11) 이후 사막화 이슈를 선도하면서 UN 3대 환경협약[8)]과 시너지 효과 창출에 노력
- Rio+20 행사 시 지구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협약 공동선언문 채택(’12.6.2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등 그린 리더십 발휘
- 산림경관 복구를 위해 IUCN과 고위급 대화를 추진(’12.9.10, 제주)

o 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및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 유치, 그린 ODA 확대 등 적극적으로 국제 환경협력 추진
- Rio+20에서 정부는 그린 ODA를 50억불까지 확대하기로 발표

o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REDD+)이 지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

o 국제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인력 확보, 능력 배양 등 대책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UN 3대 환경협약 내 산림분야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REDD+ 등 기후변화협상 대응 및 GCF 유치 후속대책 지원
- CBD 내 생태계 복원, 지구분류이니셔티브,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CBD COP 12 한국 유치에 따른 산림복원 이니셔티브 개발 등을 추진
- UNCCD 의장국 역할 수행을 추진

8) 3대 협약 :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o 3대 협약 내 국제산림동향을 국내 산림정책 확대의 대외 기반 제공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막화방지 내 산림의 역할 증대에 대한 최신 정책 및 과학적 근거를 국내에 전달
- 전문가 그룹 조직 등 국제협상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 이행 준비 지원

o 국제기구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한 역량강화를 추진
- UNEP, FAO 등과의 기존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World Bank, ADB[9] 등과의 신규 협력 채널 구축을 노력
- IUCN, SER[10], IUFRO 등 국제 NGOs 등과의 실질 협력을 통한 산림분야 외연을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UN 3대 환경협약 회의에 산림분야 역할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

o REDD+ 등 기후변화협상 대응 및 GCF 유치 후속대책 지원
-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 개도국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산림탄소 축적 증진(REDD+)은 협상 내·외의 추진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 GGGI, GCF와 적극 접촉하여 산림분야 역할 중요성 강조 및 인식 제고
- 정부의 GCF 유치 후속대책에 산림복구/REDD+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추진 등 산림분야의 역할 강화

o 생물다양성협약 의제 대응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책 마련 지원
- 산림생물다양성, REDD+, 생태계복원, 지구분류보전전략 등 우리청 소관 의제에 대해 우리 청이 주관부처의 위상을 갖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
  ※ CBD COP 11 의제 중 산림관련 의제인 지구식물보전전략 및 지구분류화 사업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관부서임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관련 규정 제정, 정책 수립 등 이행 기반 마련 지원

o Rio+20 정상회의 이후 녹색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
- 산림분야 녹색경제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논의방향 파악 및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9) ADB : Asian Development Bank
10) SER : Society for Ecological Restoration

2) 국제산림동향을 국내 산림정책 확대의 대외 기반을 제공 및 국내이행 준비를 위한 체계 마련

o 3대 협약별·국제기구별 전문가 pool을 구성·운영하여 협상 대응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제협상 전문가들의 안정적인 협상 참가 및 대응 지원
- 본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별 담당자 지정
- 전문가들의 협상 참가 및 국내 이행 지원을 위해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반영할 필요

o 국제협상 동향 전파를 위한 정례 보고회 및 뉴스레터 발간

- 산림분야 주요 이슈 추진 동향, 협상 결과 등을 분기별 뉴스레터로 발간
- 주요 협약(UNFCCC, CBD) 당사국 총회 결과에 대한 보고회 개최

o 해외 파견자(고용휴직, 유학 등)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동향 등 많은 정보 입수

- 고용휴직 파견자들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활동보고토록 조치
- 유학파견자에 대해서는 유학국가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임무 부여

o 관련 부서의 협상동향 파악 및 국내 이행 준비를 위해 회의 참가 확대

3) UNEP 및 IUC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신규 협력채널 구축

o FAO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사업 추진

-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A/R CDM 및 REDD+ 능력 배양사업의 가시적인 추진 성과 도출

  ※ 북한관련 개도국 사업추진시 산림자원과 협조

o 협력 채널을 구축한 IUCN, UNEP 등과의 산림경관 복구협력 강화

- 우리 산림녹화 성공경험을 기반으로 IUCN과 협력을 통해 산림경관 복구 고위급 대화 등을 주도 및 지속 참여
- UNEP를 통한 REDD+ 및 아프리카 진출의 협력 파트너로 활용

o World Bank, ADB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 채널 구축

- World Bank와 개도국 REDD+ 능력배양 협력사업 개발(GCF 활용)
- ADB와 아시아 지역 산림복구/사막화방지 협력사업 개발(AFoCO 활용)

o 유엔산림포럼,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 참가 및 대응

4) 우리 주도의 이니셔티브 활성화 및 신규 이니셔티브 개발

o 동북아 사막화방지 네트워크(DLDD-NEAN) 운영 활성화 추진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 마련 및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추진
- 정보 공유, 인력 양성, 사업 추진 등 협력 프로그램을 전담할 인력 보강

o CBD COP12 유치를 계기로 산림경관복원 관련 이니셔티브 개발을 추진하여 산림분야의 확대에 기여
- 우리나라 개최가 확정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4) 시 채택 또는 논의할 이니셔티브를 개발(’13~’14 정책연구 과제로 수행)
-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전파할 정책, 연구 성과, 기술 및 경험관련 자료 확보 및 정리
- IUCN, UNEP 등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이니셔티브 채택 관련 국제적 공조 및 협력 강화

라. 추진일정

o 제1차 생물다양성협약 IPBES[11] 회의 : 2013. 1월

o 제10차 유엔산림포럼(UNFF) : 2013. 4월

o 세계산림자원평가(FRA2015) 과학기술연락관 회의 : 2013. 5월

o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및 특별작업반 회의 : 2013. 6월

o 제11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 : 2013. 9월

o 제5차 세계복원생태학컨퍼런스(IUCN, SER, IUFRO 등) : 2013. 10월

o 제5차 세계식물원총회(GBGC) 아시아지역 GSPC 워크숍 : 2013. 10월

o 제25차 FAO 아·태지역 산림위원회 : 2013. 11월

o 제49차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 : 2013. 11월

o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 : 2013. 11월

---

11) IPBES : Intergovernment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산 림 자 원 국　소 관

1. 새로운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산림정책 마련

목 표

◇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산림정책의 발전

가. 정책여건

o 새로운 정부출범에 따른 국정이념, 중점과제 등의 변화에 따라 산림정책 추진 여건 변동

o 산주, 임업인, 일반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림정책 추진 필요

o 기후변화 대응, 산림산업 발전 잠재력,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확대, 국제협력 활성화 등 신규 영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나. 기본방향

o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정책 마련

o 중장기 산림·임업 분야의 발전방향과 과제의 구체화 추진

o 타 분야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산림정책의 발전과 위상 제고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새정부 국정이념에 부합하는 중장기 산림정책 마련

o 새정부의 국정과제 설정 등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 정책 발전 T/F 구성·운영

- 새로운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산림정책 발굴·개발 추진
- 산림관련 국제적인 여건 변동, 전망,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

o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림부문의 위상 제고

- 새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수립 시 산림분야 과제 반영 적극 추진
- 해당 산림분야 과제에 대한 사업부서 등의 이해도 제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 타 분야 관련 정책과의 협력과 연계성 강화

o 녹색성장 등 범정부 시책의 추진성과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협력과제 발굴, 추진방식 논의 등을 위해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과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 구성·운영
- 워크숍 등 실무차원의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실질적 협력 추진과 추진 공감대 형성

3)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고시

o ’12년에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새정부 국정과제 중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완성도 제고
-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산림분야의 발전방향과 국정과제와의 정합성을 강화
- 공청회, 부처 의견조회, 국토계획 평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 확정·고시

o 지역 산림계획 변경 수립 지원 추진
- 사업물량, 투융자계획을 시달·반영하고, 지역특화 사업 등 발굴 추진

4) 산림기본법 개정 추진

o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산림정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 지구환경보전 의무 이행,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과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산림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근거 마련
- 법령 제정(’01) 이후 거의 변동이 없었던 만큼, 그동안의 여건 변화와 금후 정책추진 방향을 충실하게 반영

라. 추진일정

o 새 정부 국정이념 대응 산림정책 발전 T/F 구성 : 2013. 1월

o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고시 : 2013. 3월

o 제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 2013. 5월(대전광역시)

o 제2회 녹색성장 3청 융합 워크숍 개최 : 2013. 6월

o 산림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13. 9월

2. 산림분야 일자리 대책 추진

목 표
◇ 산림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13~’17년) ◇ 안정적인 평생고용 시스템 구축

가. 정책여건

o 국내·외 장기 경기침체로 청·장년 실업문제 심각성 부각

o 산림분야 일자리정책을 장기 안정적 전문일자리 정책으로 전환 필요

o 산림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활용한 전문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계

나. 기본방향

o 산업육성, 인력양성이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

o 새로운 인력양성 기반의 조기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o 산림일자리의 사회적 기능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사회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의 전환 추진

o 기존의 실업대책 위주 일자리정책에서 장기 안정적 전문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육성,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일자리정책 추진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대책” 구체화)

o (가칭)「산림산업 고용촉진 및 인력양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 착수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법률 벤치마킹 및 검토

※ 상반기에 용역추진 및 법률안 마련, 하반기에 입법추진

o 산림일자리 정책전담 인력·조직의 확충 및 실행기관 역량강화

- 본청에 (가칭)「산림인력고용과」신설 및 한국임업진흥원에 「고용지원센터」 설립

※ ’14년 초 설립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 등 추진

2)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잠재력의 발굴과 육성

o 각종 산림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잠재력 확대 추진

-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관리 전문화, 새로운 시장창출 등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시행

o 산림분야 전문자격증 제도 확대 및 지원

- 산림탄소상쇄, 산림경영인증, 산림생산·유통인증(CoC), 목제품 품질인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심사자격제도의 신규 도입 검토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자격제도 도입(’11)에 따른 양질의 교육기관 지정·지원 및 감독 강화

o 산림분야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림비즈니스 모델」개발 등 창업지원 정책 추진

※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과 ’14년도 예산확보 추진

o 산림 일자리 구인·구직자 연계를 위한 채널 구축

- 산림박람회와 연계하여 대학, 목재업계, SK임업 등 대기업을 참여시켜 산림분야 일자리 고용박람회 정기적 개최(’13년 상반기) 추진
- 일자리 컨설팅서비스(한국임업진흥원), 일자리 구인 · 구직자 연계를 위한 산림취업 포털시스템 개설추진 등을 위한 사전준비

o 산림전공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 기반 마련

- 국유림사업·산림산업 현장연계 실습, 직업 멘토링 등 「관 · 산 · 학 협력파트너십」구축
- 대학별 특성화 연구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산림복지, 기후변화, 산림생태, 국제산림협력 등 전문분야별로 대학을 특성화하여「기초연구지원 사업단」으로 지정 · 육성

※ (’12) 6개 사업단(37억) → (’13) 7개 사업단(45억)

※ 지역대학-기업-지방산림청 간 교육지원을 위한 MOU 체결 추진

o 산림특성화고의 운영 활성화 지원과 지정 확대 추진
- 기 지정된 한국산림과학고(경북 봉화)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3억) 및 숲 가꾸기 등 현장중심의 실습형 산림특화교육, 산림정책 특강 등을 실시
- 특성화고 확대 : (’12) 1 → (’13) 2 → (’15) 3개소(강원권, 영남권, 호남권)
※ 한국임업진흥원에 관련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관리 실시

o 한국농수산대학 산림조경학과의 조기 정착 지원
- 커리큘럼 마련, 산림사업 현장연계, 기술교육 등에 대해 지원 추진
- 졸업생이 임업경영시 임업후계자에 준하는 경영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3) 산림일자리의 사회적 기능 확대

o 단기일자리 인력을 장기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기능인 훈련강화를 위한 임업훈련원 등 교육체계 개편
- 단기일자리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구축 추진

o 녹색일자리사업의 안전성 제고와 근무여건 개선
- 현장 안전기준 강화, 장비보급 확대, 편의시설 개설 등 추진

o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지정 확대(현행 6개 → ’13년도 11개)
- 국유림 대부료 감면 등 산림형 사회적기업에 맞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o 귀산촌 은퇴자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체계 구축
- 은퇴자 경영컨설팅제도 및 산촌마을기업과 연계한 발전모델 정립

라. 추진일정

o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수급대책” 추진 : 연중

o (가칭)「산림인력고용과」신설 및 한국임업진흥원「고용지원센터」설립추진 : 연중

o 상반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3. 4월

o 하반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2013. 9월

o 산림분야 일자리 고용박람회 계획 수립 및 개최 : 2013. 4~6월

3. 녹색일자리 사업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을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 38,257명, 예산액 : 9,273억원 -

가. 정책여건

o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성장 동력의 필요성 대두에 따른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자원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필요

-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 및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산림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o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제691호, ’09.2.11)에서 발표한「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중 녹색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 창출 속도와 투자조정의 용이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o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직접적으로 기여

나. 기본방향

o 그동안 육성과 보호위주의 산림정책 페러다임을 탄소순환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다양한 산림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

o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숲가꾸기 산물 수집확대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 촉진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선도적 기여

o 산림분야 녹색뉴딜사업(1핵심, 5연계)을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o 녹색일자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

다. 세부추진계획

1) ’13예산 및 고용계획

구분	사 업 명	고용계획		예산(억원)
		상시인원(명)	연인원(천명)	
계		38,257	8,027	9,273
핵 심	녹색 숲가꾸기	19,064	4,443	4,909
연 계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16,183	2,834	3,773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288	70	143
	산림서비스증진	2,221	555	234
	생태숲 조성	75	18	89
	생활림조성·관리	426	107	125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가) 녹색 숲가꾸기

o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909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64개 창출

- 숲가꾸기(250천ha), 산물수집(150만㎥) : 11,891개
- 묘목생산(42백만본), 조림(20천ha) : 3,143개
- 임도사업(간선 및 소형임도 704㎞, 구조개량 400km) : 4,030개

나) 산림재해예방 및 훼손산림복원

o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사전예방 및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지에 대한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에 3,773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6,183개 창출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9,057명) : 9,057개
- 산림병해충 방제(89천ha) 및 예찰·방제단(1,000명) 운영 : 4,050개
- 산림복원(65ha) 및 사방댐(785개소) 시설 : 3,076개

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o 숲가꾸기 산물 등 산림부산물을 펠릿 등의 원료로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 및 화석연료 대체사업에 143억을 투자하여 일자리 288개 창출

- 펠릿제조시설(3개소) 및 보일러(2,346대) 보급 : 238개
- 산림탄소순환마을(2개소) 조성사업 신규 추진 : 50개

라) 산림서비스증진

o 산림서비스도우미(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 생태관리인 등)를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 배치하여 숲의 다양한 이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에 234억원 투자하여 일자리 2,221개 창출

-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 1,408개
- 산림재해모니터링 배치 : 813개

마) 생태숲 조성

o 산림생물자원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산림식물의 현지내 보존 및 생태계 교란 외래수종 특별관리사업에 89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75개 창출

- 생태숲(19개소) 조성 : 75개

바) 생활림 조성·관리

o 도시 및 생활권내에 숲을 조성·관리함으로써 녹색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에 125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426개 창출

- 도시숲 모델(2개소) 및 전통 마을숲(6개소), 학교 숲(145개소), 국유지 도시림(2개소), 국유지 무궁화동산(11개소) 조성 등 추진

라. 추진일정

o 녹색일자리사업 추진실적 입력 : 매월 말일(월1회)

- 산림청 지식포털 게시판 일자리창출 코너 활용

o 녹색일자리사업 추진결과 보고 : 연말

o 녹색일자리사업 홍보(미담사례 등) : 수시

〈붙 임〉

2013년 녹색일자리사업 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억원, 명)

구 분	사 업 명	세부사업명	예 산	사 업 량	인 원	
					상시인원	연인원
합 계			9,273		38,257	8,027,124
녹색숲 가꾸기	소 계		4,909		19,064	4,443,590
	숲가꾸기	계	2,679		11,891	2,873,840
		정책숲가꾸기	2,473	250천ha	9,891	2,373,840
		숲가꾸기 패트롤	23	75명	75	18,750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0	200명	200	50,000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63	1725명	1,725	431,250
	묘목생산	묘목생산	53	42백만본	943	235,750
	조림사업	조림사업	848	20천ha	2,200	528,000
	임도사업	임도사업	1,329	704㎞(간선및소형) 400km(구조개량)	4,030	806,000
산림재해 예방및 훼손산림 복원	소 계		3,773		16,183	2,833,750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312	9,057명	9,057	1,358,550
	산림병해충 방제	계	704		4,050	860,000
		산림병해충방제	558	89천ha	3,050	610,000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146	1,000명	1,000	250,000
	산림복원	산림복원	65	65ha	165	33,000
	사방사업	사방사업	2,692	785개소(댐) 447개소(준설)	2,911	582,200
산림바이오 매스활용	소 계		143		288	69,620
	산림바이오매 스활용 촉진	산림바이오매스활용 촉진	117	3개소(펠릿제조시설) 2,346대(펠릿보일러)	238	57,120
	산림탄소순환 마을 조성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26	2개소	50	12,500
산림서비스 증진	산림서비스 증진	계	234		2,221	555,250
		산림서비스도우미	143	1,408명	1,408	352,000
		산림재해모니터링	91	813명	813	203,250
생태숲조성	생태숲 조성	생태숲 조성	89	19개소	75	18,214
생활림 조성관리	생활림 조성관리	생활림 조성관리	125	2개소(도시숲모델) 6개소(전통마을숲) 145개교(학교숲) 11개소(무궁화동산조성) 2개소(국유지도시림) 1개소(도청이전신도시기념숲) 1개소(광주하계U대회경기장주변녹화) 1개소(산림바이오휴양밸리)	426	106,700

4.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목 표

◇ **취약계층 및 청장년실업자 등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숲가꾸기 및 산림서비스증진)에 고용하여 산림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고용인원 : 14,112명, 예산액 : 2,913억원 -

가. 정책여건

o 정부에서 추진하는 3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필요

o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해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활용에 대한 사업 확대 절실

o 최근 웰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산림휴양 등에 대한 수요 증가

o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산림재해가 대형화되고,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산림재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 전문임업기능인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전문기술훈련 후 정착하도록 유도

o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을 확대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에너지 대체효과 제고

o 휴양림 등에 산림서비스도우미를 고용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재해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강화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상설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13예산 및 고용계획

사 업 명	고용계획(명)	예산(억원)	고용기간
계	14,112	2,913	
숲가꾸기사업	11,891	2,679	10 ~ 12월
산림서비스도우미	1,408	143	10월
산림재해모니터링	813	91	10월

2) 적기사업추진을 위해 지침마련, 참여자 선발 등 사전준비 철저

o 취약계층, 청·장년실업자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예산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및 참여자 선발 등 준비

- 모집공고 및 안내는 현수막, 지역방송,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o 매월 계획된 인원(상시고용인원)을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선발·관리 철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업참여자가 연 200일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200일 이상 근로자 현황은 9월부터 보고)

o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 고용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공고, 선발처리상황 및 참여자 등록, 지원금관리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중복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기타 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장 선정 및 추진요령 등은 별도 시달하는 『'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3) 예산집행 및 관리 철저

가) 투명한 임금지급 방안강구

o 임금은 주급 또는 월급 형태(매월 25일 기준)로 지급하되, 반드시 참여자의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급

- 공공산림가꾸기 : 일반 40,000원/일, 기술 45,000원/일(부대비 5,000원 별도)
- 산림서비스도우미(7개사업) : 41,000/일(부대비 5,000원 별도)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o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시 부대비는 제외

나) 『산림서비스도우미』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관리

o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 선발 및 예산 집행
- 2013년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 33%

o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산림서비스도우미 7개 사업은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참여율 향상에 노력

다) 사업내역 변경 승인절차 이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o 산림서비스도우미 중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세부사업(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산림휴양문화과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라) 목적 외 예산집행 및 근로자 고용 금지

o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자산취득비(산림서비스도우미 활동장비 등)는 예산내역서에 있는 목적대로 집행(2008 예산·결산 국회 심의시 지적사항)

o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을 사업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 외의 업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2007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o 참여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 유도
-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 2주 교육실시(산림조합중앙회 3개훈련원)
- 산림서비스도우미 : 3~5일 교육실시(산림교육원 등)

o 교육경비 및 임금 지급방법
- 교육경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
  ■ 교육경비 : 산림교육원(25,000원/일), 산림조합중앙회훈련원(36,000원/일)
-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에는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 지급
- 참여자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에 준하여 지급

5) 참여자 노무관리

o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예외규정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 가능

o 일자리 참여자의 모집·선발 등의 관리 철저로 퇴직금 지급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참여자선발은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선발기준을 공개하여 선발하고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 또한,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적극 설명
- 특히,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매년 같은 근로자들이 선발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하여 관리

◀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자 퇴직금 관련 질의회신(노동부) ▶

o 산림청 운영지침은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그 결과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o 또한 업무가 매번 반복되어 수행되나 임시적 성격의 사업일 경우,

- 공개채용 결과 일부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다 해도 이는 우연한 결과일 뿐인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전년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될 수 있음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1144(2009. 9. 17)〉

6)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3차 효율화방안 추진

o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6개)

- 산림서비스도우미 및 산림병해충방제(예찰·방제단운영) : 50%
- 산림재해모니터링 및 산불방지대책(산불전문예방진화대) : 40%
- 숲가꾸기 : 20%, - 국제산림협력(해외인턴지원) : 10%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붙임 1〉 참조

o 전문지식 및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일자리부터 전문화된 상설일자리로 발전시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7) 추진사항에 대한 중앙점검 실시

o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일자리 소관부서 주관으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지도 · 점검 실시(8~9월)

o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라. 추진일정

o ’13년 근로자 신청·접수 및 선발 : 2012. 12~2013. 1월초

o ’13년 일자리사업 착수(예산배정 즉시) : 2013. 1월초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3. 3~10월

o 각 일자리 소관부서별 중앙 현장지도 · 점검 실시 : 2013. 8~9월

o 고용실적 보고(매월) : 다음달 5일까지(붙임 3)

o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현황보고(반기보, 붙임 4)
- 상반기 : 2013. 7월 5일까지
- 하반기 : 2014. 1월 5일까지

〈붙임 1〉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table>
<tr><th>구 분</th><th>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th></tr>
<tr><td>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td><td>•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 13년)
<table>
<tr><th>구 분</th><th>1인가구</th><th>2인가구</th><th>3인가구</th><th>4인가구</th><th>5인가구</th><th>6인가구</th><th>7인가구</th></tr>
<tr><td>2013년
최저생계비</td><td>572,168</td><td>974,231</td><td>1,260,315</td><td>1,546,399</td><td>1,832,482</td><td>2,118,566</td><td>2,404,650</td></tr>
<tr><td>150%</td><td>858,252</td><td>1,461,347</td><td>1,890,473</td><td>2,319,599</td><td>2,748,723</td><td>3,177,849</td><td>3,606,975</td></tr>
<tr><td>보험료
(가입자분2.9%)</td><td>24,889</td><td>42,379</td><td>54,824</td><td>67,268</td><td>79,713</td><td>92,158</td><td>104,602</td></tr>
</table></td></tr>
<tr><td>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td><td>•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td></tr>
<tr><td>여성가장</td><td>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첨 부 서 류</th></tr>
<tr><td>배우자
無</td><td colspan="2">•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td></tr>
<tr><td rowspan="9">배우자
有</td><td>가출·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
<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td>질병</td><td>의사의 진단서</td></tr>
<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
<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
<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td></tr>
<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
<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td></tr>
<tr><td>고령자
(만 55세 이상)</td><td>• 주민등록번호</td></tr>
<tr><td>장애인</td><td>• 장애인증명서</td></tr>
<tr><td>북한이탈주민</td><td>•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td></tr>
<tr><td>결혼이주자</td><td>•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비자), 가족관계등록부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td></tr>
</table>

〈 붙임 2 〉

2013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계획(총괄)
(총 14,112명, 291,290백만원)

□ 숲가꾸기 분야 : 11,891명, 267,897백만원

○ **정책숲가꾸기(9,891명, 247,283백만원)**

- 임업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숲가꾸기 실시(1973년부터 실시)

○ **공공산림가꾸기(2,000명, 20,614백만원)**

- 저소득 청·장년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에 고용(2005부터 실시)

□ 산림서비스도우미 : 1,408명, 14,285백만원

○ **숲해설가(490명, 5,550백만원)**

- 산림문화·휴양 이용객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탐방 서비스 제공

○ **숲생태관리인(158명, 1,830백만원)**

-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올바른 산행문화를 확립하고, 휴양림 내 산림을 휴양에 적합한 쾌적한 숲으로 조성·관리

○ **숲길체험지도사(302명, 2,925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숲길안내 제공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74명, 621백만원)**

-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수목원코디네이터(72명, 635백만원)**

- 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수목원 안내 및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도시녹지관리원(243명, 2,099백만원)**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안내 및 생태교육,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피해 등 도시녹지자원의 조사·관리

○ **학교숲코디네이터(69명, 625백만원)**

- 식재·관리 및 수목관리 컨설팅 지원 등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산림재해모니터링 : 813명, 9,108백만원

○ **산림재해모니터링(813명, 9,108백만원)**

- 산림재해분야(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림훼손 등)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

〈 붙임 3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실적(OO월)

[기관명 :]

(단위 : 명, 백만원)

사업별	세부사업	계획 인원 (명)	인원지원실적(명)							예산액 (백만원)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비고
			연고용인원			지원 인원	1일 고용 인원	여성 참여 인원	200일 이상 고용 인원		누계			국 비			지방비			
			누계	전월	금월						계	전월	금월	소계	전월	금월	계	전월	금월	
합 계									9월 부터 작성											
산 림 서비스 도우미	소 계																			
	숲 해 설 가																			
	숲 생 태 관 리 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마을운영매니 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너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재해감시원																			

※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하시고 서식은 절대 변경 불가

※ 작성요령('12년부터 고용인원보고 월보, 예산집행현황도 월보)

- **연고용인원** : 1일고용인원×고용일수(주차, 연가 등 유급휴가 포함)
- **지원인원** :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원(누적 수치로 작성)
- **1일고용인원** : 1일 고용하는 상시인원(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
- **여성참여 인원** : 본사업이 성별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여성참여율 통계작성에 필요
- **200일이상 고용인원** : 근로자 개인이 200일이상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수
  * 1년동안 본사업에 200일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9월 이후부터 누적수치로 작성

〈붙임 4〉

2013년 상/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참여자 현황

〈기관명〉 (단위 : 명)

사업명	참여인원(A)	참여인원 중 취업취약계층 채용현황							비취약계층(C)	비율(B/A)
		계(B)	저소득층	6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자,결혼이주자		
합계										
소계										
공공산림가꾸기										
소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소계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소계										
산림재해감시원										
소계										
해외인턴지원										
소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는 "취업취약계층의 범주"를 숙지하여 작성

5. 산림탄소 거래체계 구축 · 운영

목 표

◇ 국제기준에 적합한 산림탄소상쇄제도 거래 기반 구축
◇ 임업인, 산주,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 활성화

가. 정책여건

o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한「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13.2)

o 미래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하여 국가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응수단으로 산림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비의무감축기업과 국민에게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나. 기본방향

o「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o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탄소 상쇄 및 크레딧 거래 기반 구축 추진

o 기후변화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탄소흡수원법 하위법령의 차질 없는 제정 추진

o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원활하게 마무리
- (규제 및 법제처 심사) ’13.1 → (차관회의) ’13.2 → (공포 · 시행) ’13.2.23.

2)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산림탄소 거래 기반 구축

o **(운영표준)** 알기 쉬운 산림탄소상쇄 방법론 작성 및 국제인준 추진
- MRV(측정 · 보고 · 검증)체계, 거래방법과 절차, 거래 지원체계 마련

o **(운영체계)** 사업단계별로 전문화되고 독립적인 운영조직 구성
- 산림탄소센터(녹색사업단), 인증기관(임업진흥원), 정보 · 통계(산림과학원)

o **(거래기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안정화된 거래체계 기반 마련
- 산림탄소등록부 구축, 웹 기반 거래표준 마련, 투명한 거래가격 공개 등

3)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운영

o **(사업종류)** 확대된 종류별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세부대책 강구
- 실현 가능하고 임업인, 산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부대책(안)
  ※ 산림경영 : 탄소수익규모(50ha) 이상으로 집단화한 배출권 공유·분배 모델 강구
  ※ 목제품 이용 : 목재기업이 소비자의 배출권을 되사는「탄소 보증제」검토·추진
  ※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RPS) 기업이 바이오매스 배출권을 구입하여 할당량을 상쇄하는 방안을 지경부와 협의 추진

o **(참여대상)** 산림탄소상쇄 참여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 임업인·산주 :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기술지원, 거래 수수료 지원 방안 등
- 기업 : 다양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회 개최로 참여를 유도
- 국민 : 목제품·바이오 에너지 이용 등 일상 참여를 위한 홍보

o **(시장운영)**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를 지원하고, 자발적 시장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안정화 시그널도 제공

4)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및 시민사회·지자체와 거버넌스 강화

o **(참여기반 확대)** 범부처·전문가 참여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

o **(지역특성 반영)** 지자체, 지방청별 특화된 산림탄소상쇄 모델 개발

5)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법정사무 이행 준비 철저

o 탄소흡수원 지수 측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등 법정사무에 대한 계획적 추진 체계 마련

라. 추진일정

o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2월) 운영(안건 발생시)

o 탄소흡수량 정보·통계 체계 구축 : 2013. 6월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와 연계

o 산림탄소등록부 운영 :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모델 개발(2013. 10월)
  ※ 기존 시범운영시스템 연계 활용(산림과학원 연구과제 수행중, ’12~’13)

o 탄소흡수원 지수 개발 및 시범 적용 : 2013. 12월

o 현업담당자, 기업 등 교육 실시 :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회씩

o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운영(이행준비) : 연중

6.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목 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기반구축 및 국내 산림인증제 도입

가. 정책여건

o 국제적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평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경영인증의 필요성 인식 확산

o 몬트리올프로세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08)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련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필요

나. 기본방향

o FSC 산림경영인증림 유지 및 국내 산림경영인증제 도입

o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의 국제기준 산림경영인증림 유지

o 국유림의 FSC 산림경영인증림 8개소 유지 및 심사기관 다변화

- 산림경영인증림의 유지 개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경영계획구 단위에서 당해 기관의 전체 경영면적으로 확대하여 인증심사 추진

  ※ 난대연, 홍천, 인제, 평창, 양양, 울진, 보은, 함양 등 8개소 유지심사

- 산림경영인증림 생산량 증가를 통한 산림경영인증 목재의 인지도 제고 및 유통·활용기반 마련

o 산림경영인증 심사기관의 다변화로 경쟁체제을 통한 업무효율성 모색 및 심사비용 절감 도모(FSC 인증사 2개소, 국내인증제도 도입 등)

2) 국내 산림경영인증제 도입 및 활성화 제도 마련

o 국내 "산림경영인증제" 도입을 위한 가칭 한국산림인증기구 설립

- 한국임업진흥원 주도하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협회 등 업계의 동의 확보 후 추진

  ※ PEFC의 국제상호인증은 1개국 1산림인증단체 원칙을 고수

- 지위 및 성격이 독립적이고 제3자 인증기관의 성격을 분명하게 함
- 설립에 필요한 기준지표 및 심사원 자격 등 심사체계를 분명하게 함
- 이사회, 전문가회, 사무국, 감사위원회, 평의회로 구성하되 이사회는 사회명망가로 구성하고, 평의회 기구는 환경NGO,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함

※ 유럽·북미 상호인증기구인 PEFC와의 상호인증 협의 등은 추후 추진

o 국내의 "산림경영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3)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o 몬트리올프로세스 기준과 지표[12]가 '08년 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관련 기준과 지표[13]는 '05년 개발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14년 국가보고서[14] 작성에 대비하여 기준과 지표의 개정 검토 필요

※ 몬트리올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헬싱키프로세스(범유럽프로세스)의 기준과 지표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기준과 지표 선정

- 기준과 지표 개정에 따라 「산림기본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등의 개정여부 검토

라. 추진일정

o FSC 산림경영인증 유지심사(홍천 등 8개소) : 2013. 2~10월

o 한국임업진흥원 산하에 국내인증기구 설립 : 2013. 상반기

o 국내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2013. 상반기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준과 지표 개정 검토 : 2013. 하반기

---

12) 몬트리올프로세스 SFM C&I 개정 내역 : 7개 기준 67개 지표 → 54개 지표
- 정량지표(1~6기준, 47개 지표 → 44개 지표), 정성지표(7기준, 20개 지표 → 10개 지표)

13) 우리나라 SFM C&I 개발 내역 : 7개 기준 28개 지표

14) '09년 국가보고서 작성과 같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

7. 한국임업진흥원 전략적 경영 이행

목 표

◇ 전략경영체계에 부합하는 현장·고객 중심의 사업추진
◇ 신규사업의 조기 정착 및 고유 사업영역 개발
◇ 성과중심의 미래 지향적 기관경영 내실화

가. 정책여건

o 산림과학원·산림조합·녹색사업단과 차별화된 기관 정체성 확립 요구

o 산림탄소흡수원법, 목재이용법 등 진흥원의 역할 확대

o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노력 및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

나. 기본방향

o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o 산림탄소인증, 산림인증, 목재이용 등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o 정부정책의 성실한 이행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

다. 세부추진계획

1) 친환경 목재산업 육성 및 활성화

o 목제품 품질인증 품목 확대(임의제) : 9품목 → 10품목

o 목제품 품질표시제 확대 운영(의무제) : 4품목 → 8품목

o 목재제품의 신기술 지정 및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 규정 제정, 시스템 마련,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2) 특별관리임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o 산양삼 테마랜드 조성사업 추진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원
- 사업내용 : 산양삼 교육센터, 홍보관·전시관·판매장, 체험숲 조성

o 우수 산양삼 인증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산양삼 재배지 모니터링 27개소 운영
- 불법유통 신고소 운영 및 계도단속, 정기적 시장조사(30회)

3) 산림자원 및 임업경영 정보의 고도화

o 국가산림자원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표본점 설계 · 관리(813개소)

o 산림입지토양도(1:5,000) 제작 및 산림소득작물 재배지 토양조사

o 임업통계조사, 임가경제조사, 임산물생산비조사 등 임업통계 신뢰도 제고

4) 임업기술의 실용화 · 산업화 촉진

o 현장 밀착형 임업기술 보급 확산
- 현장실습교육 확대 및 맞춤형 현지설명회 개최(25회/14품목)

o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임업기술 거래기관 지정
- 기술거래서 교육 이수(상반기), 기술거래기관 지정 신청(하반기)

o 귀농귀촌 수요자를 위한「One stop 산림경영컨설팅」실시

o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지정(11개 기업)

5) 신규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구축

o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 탄소흡수원 인증위원회 구성, 탄소상쇄 시범사업 운영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사업 인프라 구축
- 국내 산림인증제 도입, 인증사무국 설치, 인증 시범사업 운영

6) 고객가치 경영체계 확립

o 고객만족(CS) 전략 로드맵 수립 및 실천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CS 부문 우수 공공기관 벤치마킹 및 전략 수립(1월)
- 사회봉사활동, 전문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1사1촌 결연활동 등 나눔 문화 확산

o 전략적 경영관리 및 성과중심 인사관리체계 정착
- 성과와 연동된 보상체계 확립 : 전직원 성과연봉제 실시

7)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독립사옥 마련

o 신사옥 건립시 세종시 부근으로 옮기는 방안, 민원인의 접근 편리성, 업무처리 효율성,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탄소인증센터 및 경영전략팀 신설 : 2013. 1월

o 독립사옥 마련 계획 수립 : 2013. 1월

o 창립기념 임업발전토론회 개최 : 2013. 2월

o 제2회 전국 산양삼 전시회 개최 : 2013. 6월

o 2013년도 신규사원 17명 채용 : 2013. 6월

o 목재분야 · 시험 및 분석분야 전문기관 인증(KOLAS) : 2013. 연중

8. 녹색사업단 발전방안 수립 · 이행

목 표

◇ 국내 신규 사업영역 확대와 안정적 사업추진 동력 확보
◇ 해외조림 성공모델 구축과 민간 해외산림투자 지원 강화
◇ 산림탄소센터의 조기 사업기반 구축

가. 정책여건

o 녹색자금사업 중심의 단조로운 사업구조로 신규사업의 확대 발굴이 필요

o 안정적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정부의 해외조림투자 지원과 민간참여 확대 추세

o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상쇄 관련 사업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정책 · 사업 확대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사업 강화를 위한 산림청 위탁 · 용역사업의 확대 추진

o 해외조림 성공모델 구축과 국제협력 · 컨설팅을 통한 민간 해외산림투자 지원

o 신규사업 확대 및 국가산림사업 발굴 · 지원을 위한 기관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및 운영 시스템 구축

가) (가칭)사회복지나눔숲 시설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시범운영

o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형 산림휴양시설로 조성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설계 및 친환경적 신재생 에너지형으로 시설
- (시설개요)
  ▪ 위치 · 규모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국유림, 30ha(사업지구 10ha)
  ▪ 투 자 재 원 : 104억원(녹색자금)
  ▪ 개 원 예 정 : 2014년

나) 백두대간숲생태원을 통한 사회복지나눔숲 프로그램 시범운영

o 프로그램 개발 : 백두대간숲생태원을 통해 ’ 11. 12~’ 12. 2월 완료

o (프로그램 시범운영)
- 운영기간 : (1차) ’ 12. 3~’ 12. 12월, (2차) ’ 13. 3~’ 13. 12월
- 프로그램 : 숲 유치원, 창의적 체험활동, 산림치유 등 4개분야 200여개

2) 해외산림자원 보급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조림 성공모델 확립

가)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

o 조림지 위치 :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섬 스마랑

o 조 림 규 모 : 1,000ha

o 조 림 수 종 : 람또르, 글릴리시디아

나) 파라과이 용재수 조림사업

o 조림지 위치 : 파라과이 중남부 지역

o 조 림 규 모 : 1,000ha

o 조 림 수 종 : 유칼립투스 그란디스

다) 뉴질랜드 장기 용재수 조림사업

o 조림지위치 : 뉴질랜드 북섬 East Coast 지역

o 조림면적 : 500ha

o 조림수종 : 라디에타 파인, 유칼립투스 파스티가타

3) 권역별 국제협력 전담체계 구축 및 ODA사업 확대

가) 권역별 국제협력 전담체계 구축

o 국제산림협력 확대로 협력의제·사업 발굴·추진 등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녹색사업단 내 전담조직 구축
- 글로벌사업본부에 권역별 담당자를 배치하고, 국제산림 정보관리, 협력의제 발굴, 관련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상시적 추진

나) 해외 조림사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ODA사업 확대 추진

o 산림협력사업 및 ODA 관련 의제·사업 아이템 발굴

o 국가별 해외현지법인의 업무영역 및 추진체계를 확대하여 조림사업과 함께 ODA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림탄소센터의 사업기반 조기 구축

o ’13.2월「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추어 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제도 정비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해외산림조사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에 관한 사항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 정비

라. 추진일정

o 사회복지나눔숲 조성
  - 시 공 : 2012. 12~2014. 12월
  - 프로그램 시범운영, 운영전략 수립 : 2013. 3~12월

o 해외조림
  - 인도네시아 : 2013. 2월
  - 파라과이 : 2013. 9월
  - 뉴질랜드 : 2013. 6월

o 권역별 국제협력 전담체계 구축 : 2013. 2월

9. 산림분야 R&D 추진 역량 강화

목 표

◇ 임업인과 함께하며 미래 희망을 여는 산림과학연구

가. 정책여건

o 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임업연구(R&D) 수요 증대
-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임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필요성 증가
- 소득수준 향상, 여가시간 증대 및 숲 치유 열풍 등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 기능에 대한 연구 수요 급증

o 기후변화대응 등 산림역할 증대
- 기후변화 관련 Post-2012 대응 및 대형화·빈번화 되고 있는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o 지역 기반형 연구기반 구축
- 현장에 기반한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산림자원 고부가가치화 실현

o 대학, 지자체 등 연구역량 제고
- 산림관련 대학 연구능력 강화를 통한 기초연구기반 확충 및 지역 소득품목개발 강화

o 임업인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연구 강화
- 밤, 떫은감 등 단기소득원 신품종 육성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R&D 투자

o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재해 방지 연구 강화
- 산림기후모니터링(20억), REDD+(8억), 산림재해저감연구(44억) 등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분야 대학(대학원) 특성화를 통한 미래 산림전문인력 양성

o 산림전공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관·산·학 협력 파트너쉽 구축
- 국유림 연계 현장실습, 산업현장실습, 직업 멘토링 등

o 석·박사 등 고급 전문인력이 첨단 임업기술 및 정책개발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학별 특성화 연구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 산림복지, 기후변화, 산림생태, 국제산림협력 등 전문분야별로 대학을 특성화하여 「기초연구지원사업단」으로 지정·육성

2)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FTA 등 국제화·개방화 대비

o 고부가 특용 임산자원의 발굴, 단기소득원을 이용한 복합경영모델 연구 등 임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연구투자 확대
- 임산물 연중재배 방법 개발, 신품종·가공품 개발연구 및 효과분석 연구 등 임업인 숙원 연구사업 추진

o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등 현장에 기반한 품목별 전문연구소를 설립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생산, 유통 지원 등 One-Stop체계의 집약적 연구 추진

3) 기후변화대응 연구력 강화

o 범부처 다목적 타워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 정밀한 기상관측망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장기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마련

o 산림재해 및 복원기술 선진화
- 산불·산사태·병해충 등의 피해 예측 및 저감기술개발의 선진화, 고도화를 추진하여 산림분야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

4) 소속 연구기관 연구조정 및 역량강화

o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간 연구분야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구중복성 문제 해결
- 연구설계, 연구성과 평가 등을 공동으로 심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중복성문제 해결 및 연구 시너지효과 제고

라. 추진일정

o 산림분야 연구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3. 1월

o 소속 연구기관 업무성과 및 업무계획 보고회 : 2013. 1월

o 2013년도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공고 : 2013. 2월
  - 기초연구지원사업단, 기획연구과제, 자유공모과제 등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 : 2013. 2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승인 및 선정·최종평가 : 2013. 3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사업단, 기획) 협약 : 2013. 3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기초연구지원사업단 중간평가 : 2013. 5월

o 산림과학기술개발사업 현장실태조사 : 2013. 8월

o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작성 : 2013. 11월

o 산림과학기술위원회 2013년도 사업성과 의결 : 2013. 12월

10. 조 림

목 표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

- 조림 20,000ha, 49,231천본, 848억원 -

가. 정책여건

o 세계적인 산림면적 감소 및 경제성장으로 인한 목재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목재자원 공급을 위한 경제림육성이 시급

o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요증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녹색일자리 공급확대 필요

o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낮아 산주들이 목재생산용 장기수 조림을 기피하고, 산업화 연계가 가능한 특용자원의 식재를 선호

o 대면적 벌채를 지양하고 친환경 벌채를 통한 생태적 산림복구 순환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산림관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

o 휴식, 치유, 교육의 공간으로 숲이 부각되고 있으며 숲을 찾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산림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확대

나. 기본방향

o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우량 목재자원 공급기반 조성
- 노령목 및 이용가치가 적은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 개벌 · 인공조림 위주의 갱신은 천연하종갱신, 복층림 조성 등으로 다양화

o 목재펠릿, 펄프재 등 바이오매스 공급을 위한 바이오순환림 조성 추진
-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 지속 추진
- 맹아갱신, 속성수 식재 등 저비용·고효율 단벌기 경영림 조성

o 도로변 경관조림 및 지역 특화림 조성으로 미래 산업자원으로 육성
- 산불피해지 복구,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추진
- 약용·식용·공업용 등 특용자원의 단지화 조성으로 산림자원의 산업화 유도

〈2013년 조림계획 : 20,000ha, 848억원〉

구분	사업내용	'13년 조림계획 (국고보조금)
① 경제림조성	▪ 국고 보조율 : 70%	▪ 14,685ha, 493억원 ·국유림: 1,630ha, 62억원 ·민유림:12,855ha, 431억원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조림 및 단기소득 조림 -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 3,000본/ha, 479만원/ha	▪ 14,685ha, 493억원 ·국유림: 1,630ha, 62억원 ·민유림:12,855ha, 431억원
② 큰나무조림	▪ 국고 보조율 : 50%	▪ 3,440ha, 205억원 ·국유림: 840ha, 76억원 ·민유림: 2,647ha, 129억원
가. 큰나무공익조림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수종 식재(수고 1.5m 내외) ▪ 350본/ha, 1,167만원/ha	▪ 1,040ha, 63억원 ·국유림: 40ha, 5억원 ·민유림: 1,000ha, 58억원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 산사태, 산불·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을 위한 조림 ▪ 1,500본/ha, 887만원/ha	▪ 2,400ha, 142억원 ·국유림: 800ha, 71억원 ·민유림: 1,600ha, 71억원
③ 유휴토지조림	▪ 국고 보조율 : 70%	▪ 1,000ha, 20억원 ·민유림: 1,000ha, 20억원
	▪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해 특용수, 조경수 등을 식재 ▪ 800본/ha, 282만원/ha	▪ 1,000ha, 20억원 ·민유림: 1,000ha, 20억원
④ 지역특화조림	▪ 국고 보조율 : 70%	▪ 875ha, 93억원 ·국유림: 480ha, 63억원 ·민유림: 395ha, 30억원
가. 금강소나무육성	▪ 강원·경북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금강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400ha, 13억원 ·국유림: 300ha, 11억원 ·민유림: 100ha, 2억원
나. 안면소나무육성	▪ 충남 태안지역의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 대경재 생산을 위한 안면소나무림 보전 및 후계림 육성 ▪ 천연하종, 인공식재, 숲가꾸기 등 350만원/ha	▪ 100ha, 2억원 ·민유림: 100ha, 2억원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 강한 해풍,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지역 산림의 녹화 ▪ 객토, 유기질비료, 물주기,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등 2,012만원/ha	▪ 120ha, 18억원 ·국유림: 20ha, 4억원 ·민유림: 100ha, 14억원
라. 운두령특수활엽수림 조성	▪ 운두령 특수활엽수 시범단지 조성, 산림관리 및 모니터링 등 11억원	▪ 30ha, 11억원 ·국유림: 30ha, 11억원
마. 석포모델숲조성	▪ 경기도 용인지역 대면적 기부산림을 국유림 경영 모델숲으로 조성 및 관리 ▪ 벌채지 조림, 산림공원 등 시설 44만원/ha	▪ 30ha, 13억원 ·국유림: 30ha, 13억원
바. 득량만난대특화림조성	▪ 전남 보성지역 난대수종 특화림 조성 및 관리 ▪ 해안지역 경관 및 방풍 수림대 조성 1,750만원/ha	▪ 95ha, 12억원 ·민유림: 95ha, 12억원
사. 수익형산림경영 모델림 조성	▪ 지속가능한 고수익 순환구조의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 및 관리 ▪ 조림, 숲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등 24억원	▪ 100ha, 24억원 ·국유림: 100ha, 24억원

다. 세부추진계획

1) 경제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4,685	1,830	12,855
사업비	49,323	6,239	43,084

※ 국고 보조율 : 70%

o 경제림육성단지(450개, 292만ha)를 중심으로 경영목적에 맞게 조림방법과 식재본수를 다양화하여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림 단지 조성**
>
> ┌ **목재자원 단지** : 건축재, 가구재, 합판재 등 용재수종
> ├ **바이오매스 단지** : 펄프재, 표고자목, 펠릿원료 등 속성수종
> └ **특용자원 단지** : 옻, 닥, 죽(竹), 헛개, 황칠, 등 특용수종

〈경제림 조성의 종류〉

① 목재생산조림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하는 조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백합나무 등 지역별 중점 조림수종을 단순화하여 대면적·집단화 조성

※ 조림지 여건을 고려하여 소묘, 중묘, 대묘, 움싹, 파종, 천연하종, 복층림조성 등 적절한 조림방법을 적용

② 바이오순환림조성

·목재펠릿, 펄프재, 표고자목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산림을 조성

·백합나무, 참나무류,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으로 조성

※ 최종적으로 대경재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밀식 조림하여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③ 특용자원조림

·단기소득 창출이 가능한 특용자원의 대단지 조림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화 기반조성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종 및 옻나무, 두릅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자원 수종을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재

※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구매하여 식재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게 실행

가) 목재생산조림

o 경제성과 이용가치를 고려한 조림수종의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성 증진

- 현재 경제림 조성의 조림수종이 지나치게 많아 묘목생산, 식재 및 수확벌채의 비효율성 등 임업경영의 수익성이 저하
- 목재, 바이오매스의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별 조림수종은 단순화하고 대면적으로 규모화하여 조림

  ┌ 확대 : 소나무, 낙엽송, 졸참·굴참나무, 유망자생수종

  ├ 축소 : 잣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 현수준 유지 또는 확대 : 삼나무, 편백 등(기후변화 대비 수종)

o 벌채 시 전목·전간재 집재를 활성화하여 임목 부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조림예정지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

- 원목반출 후 조재산물의 임내정리에 따른 추가비용을 절감하고, 부산물 수집으로 바이오매스 원료공급 및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은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대규모 집단화 추진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강원·경북	경기, 충남·북	전남·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큰나무공익조림, 유휴토지조림 등 경관수종, 유실수·특용수는 지역특성 및 산주 수요를 반영하여 조림(붙임 조림권장 수종 참조)

o 묘목의 종류 및 식재본수는 현지 입지여건과 산림경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실행

- 소묘·중묘·대묘, 움싹·파종·천연하종, 복층림조성 등 조림지 여건에 맞는 다양한 조림방법을 적용

  ※ 목재생산 목적의 대묘조림은 경제림조성에 포함하여 추진

- 목재생산조림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 ha당 3,000본을 기준으로 수종별 특성과 입지여건에 따라 조정 식재

  ·일반 노지묘, 침엽수 용기묘(2-0), 활엽수 용기묘(1-0) 3,000본/ha 식재

·비옥지에 낙엽송을 조림하는 경우 2,000본/ha 식재
·대경재 생산을 위해 백합나무를 조림하는 경우 1,100본/ha 식재
·백합나무로 바이오순환림 조성시는 2,000본/ha 이상 식재
·소나무, 잣나무, 편백 등 대묘는 1,500본/ha 식재

〈주요 수종의 묘목규격〉

수종별	소묘	중묘	대묘	비고
소나무	1-1	2-0(용)	1-1-2	
낙엽송	1-0	1-1	-	
잣나무	2-2	2-3	2-2-3	
편백	1-1	1-1-1, 2-0(용)	1-1-2, 1-2-2	
삼나무	1-1	1-1-1	-	
리기테다소나무	1-1	2-0(용)	-	
백합나무	1-0, 1-1	-	-	식재후 대절
가시나무류	-	2-0(용)	-	

※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묘목을 수급(종묘 생산지증명 등)

o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사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규격 묘목으로서 묘령 및 규격이 큰 중·대묘 조림을 확대
- 산림내 유기물이 축적에 따른 조림목의 경쟁 식생 번성에 대응하고, 농·산촌의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증가에 대처
- 경제림 조성을 위한 소나무, 낙엽송, 편백 등 중점 조림수종의 묘목 크기를 상향 조정하되, 속성수, 활엽수 조림은 중·대묘 조림 지양
- 중·대묘 식재본수는 묘목 규격 상향에 따라 적정비율로 하향 조정
  ※ 소묘(3,000본/ha)와 대묘(1,500본/ha)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비옥도와 생장속도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하여 적정 본수 산출

o 용기묘 조림은 우량 대경재 생산이 가능한 침엽수 용재수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 용기묘 생산 효율성, 현지 적응성이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확대
-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육성단지를 위주로 용기묘 조림 추진
  ※ 단벌기 경영 목적의 산림은 용기묘 조림 대상에서 제외(상수리나무 등)
  예) 표고자목 생산, 목재칩 생산을 위한 바이오순환림조성 등

o 리기다소나무림, 불량활엽수림 수종갱신 지속적 추진
-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벌채시기에 도달한 녹화수종,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은 경제성이 높은 수종으로 갱신

o 천연하종갱신, 맹아갱신 등 저비용 · 고효율 조림 확대

- 개벌 · 인공조림 위주의 갱신에서 인공조림과 병행한 맹아 · 천연하종 갱신 및 복층림 조성 등을 확대하여 저비용 조림 실현

o 조림목의 절단 방지 및 효율적인 풀베기 작업을 위해 조림목 표시봉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고, 대나무 등 환경친화적인 천연소재 사용

o 허가(신고)에 의한 벌채지 및 훼손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무조림 및 조림명령 철저 이행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식생기후대 북상에 따른 조림수종의 변경은 지역별로 점진적으로 조정

- 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종 등 난대 수종을 온대 중부지방까지 확대
- 온대 중·남부 지역 잣나무·리기다소나무림 등의 수확지에 기후변화대응 시범조림을 추진하여 점진적 변화를 유도
- 편백 등 기후대 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을 확대하되, 조림수종의 조정은 산림기후대 북상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

o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조림 및 대체수종 개발

- 지방청별로 3~5ha를 시험조림한 후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와 연계하여 적응성 및 생육상황 모니터링

  ※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연구소 : 난대 유망수종 자원화 연구('08~'12)

- 북부·동부·중부는 편백 등 난대수종, 남부·서부는 붉가시나무 등 난대·아열대 수종 시험 식재

  ※ 리기테다소나무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온대중부 지역까지 조림 확대

나) 바이오순환림조성

o 목재펠릿, 펄프재, 보드·섬유판, 표고자목 등 산림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 속성수 식재 또는 움싹갱신(생태조림)을 활용하여 바이오순환림을 조성

-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에 따라 '20년까지 10만ha 조성
- 소·중경재 단벌기 순환림 또는 대경재 생산림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로 활용

  ※ 실행요령은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바이오순환림 조성계획'(자원육성과-940호, 2009.2.26.) 및 '바이오순환림조성 실행계획'(산림자원과-3673호, 2009.12.18.) 참조

o 조성대상지는 가급적 토지생산성이 높고, 임도 등 기계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선정

- 맹아갱신, 백합나무 등 속성수 조림지는 바이오순환림으로 우선 조성

o 펠릿공장, 탄소순환마을 등 수요처와 국·사유림을 연계하여 대면적 단지화 조성을 중점 추진

- 기관별 바이오순환림 시범단지 운영 및 연차별 조성계획을 준수하여 추진

  ┌ 대면적 시범단지(개소당 50ha 이상) : 지자체(도) 및 지방청별 2개소

  └ 국·사유림 연계 시범단지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북부, 중부, 서부 각 1개소

  ※ 시·도별 연차별 조성계획(변경) 및 시범단지 내역은 붙임 참조

o 불량림 벌채, 비료주기 등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셈적용 등 원가계산에 차질 없도록 반영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공정산출 및 설계 참고사항

  ·불량림의 벌채가 수반되는 경우는「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 의하여 벌채공정 반영

  ·임산물운반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 요령으로 공정 반영

  ·조림목의 빠른 생육을 위하여 반드시 전면적 비료주기 작업 실행

  ·기타 식재공정 등은 일반 조림사업에 준하여 설계

o 조림수종은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식재본수는 대상지별 입지여건과 묘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식재수종 : 참나무류, 아까시나무, 포플러류,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자작나무는 온대북부 지역에 식재)

- 식재본수

  ┌ 백합나무, 포플러류 : 2,000본/ha 이상

  └ 기타수종 : 3,000본/ha 이상

  ※ 백합나무 2천본구 식재간격은 2×2.5m 또는 5×1m 등 현지여건에 따라 조정하고, 대절 후 2개 이상 움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시 정리

  ※ 백합나무는 한건풍 · 동해 우려가 없는 적지에 한정하고 조림면적을 축소

- 바이오순환림조성 시 임야하단부, 주거지·경작지 주변에 특용·유실수종을 병행 식재하여 산촌주민 소득증대 지원(조림면적의 10%)

o 척박지, 능선부 및 산정부 등 백합나무 식재가 부적합한 대상지는 임지여건을 고려하여 침엽수 용재수종을 대상교호 또는 군상혼효로 식재하되, 간벌재를 바이오매스, 산업용재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ha당 3,000~5,000본까지 밀식

  ※ 대상·혼효 식재한 용재수종은 바이오순환림 단지면적에 포함

o 조림비용의 절감과 조림지 사후관리 어려움을 감안하여 움싹, 천연치수 등 자연복원력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 조림 추진

- 자연복원력을 최대한 이용하고, 움싹, 천연치수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 식재(300본~1,000본/ha)
- 보완식재하는 묘목은 움싹, 천연치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성수로 식재

※ 바이오순환림 관리대장은 「조림사업 설계·감리시행지침」의 '조림지관리대장'으로 통합관리

o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매뉴얼 및 연차별 운영 모식도 등 체계화(국립산림과학원)

- 바이오순환림 조성 시험연구를 통해 기후대별 수종개발과 식재본수, 간벌시기, 간벌량 및 적절한 수확기 등 효율적인 시업체계 규명

다) 특용자원조림

o 약용, 식용, 공업용 등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특용수종을 단지화 조림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림자원 조성

- 특용자원 단지 조성계획, 특용수종 조림 적합지, 산업화 연계 효과와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 선정

※ 유망 특용자원(예시)

* 옻나무(옻칠공예, 식약재), 닥나무(한지산업), 대나무(죽공예), 헛개나무(식약재), 박달나무(운동기구), 황칠나무(전통도료), 산수유(식약재), 동백나무(유지), 참죽나무(가구재, 식약재) 등

* 산림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 허가·신고대상 수종은 제외

〈대상지 선정시 고려사항〉

■ 효과적인 산업화 성공을 위해 대면적 단지화 대상지 우선 선정 ■ 단순하게 수실을 채취하여 소비하는 수종보다는 원료, 가공품으로 2, 3차 산업화 유발 효과가 큰 특용자원 발굴 ■ 식재방법은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통상의 조림방법으로 실행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 사업자 사업비 투입 및 개별적으로 인허가) ■ 대상 수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산림의 조성이 아닌 재배·경작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관목류, 만경류 등은 제외 ■ 지역별 고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유망 특용자원의 개발

o '13년 사업계획 : 2,000ha(국비 11,643백만원)

- 민유림 1,700ha(9,894백만원), 국유림 300ha(1,749백만원)
  * 경제림조성 단가적용(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o 특용자원 조림 사업비는 단가(4,788천원/ha당)에 구애받지 말고 경제림조성 전체 통합 예산을 활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한 사업비를 반영 집행
- 특용자원 조림 사업단가 : 4,788천원/ha당(특용자원 묘목구입비 포함)
- 식재본수는 비옥도, 묘목의 크기 등 토양 및 수종별 특성에 따라 조정
  ㄱ 유실수(감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등) : 400~800본/ha
  ㄴ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o 보조방법은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발주하거나, 현금보조방식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묘목을 직접 구매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추진
- 산주희망, 지자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비 또는 민간보조로 편성

o 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수를 조림하는 산주에게 특용자원조림을 우선 지원
- 기 조성된 운재로·작업로의 유지 보수와 비료주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정 반영

〈기존 조림사업과 비교〉

구 분	('12년) 특용수 식재	('13년) 특용자원 조림
목 적	경제림조성 활성화를 위한 산주 소득지원	특용자원의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특용수 단지 조성
지원대상	경제림 사업량에 따라 일괄배정 (경제림의 10% 범위)	수요조사에 따라 선별 지원 (개소별 면적제한 없음)
식재방법	마을·경작지 주변 소규모 식재	대규모 단지화 조림
규 모	개소당 ○ha	개소당 ○○ha ~ ○○○ha
임산물 생산공급	산주가 개별생산 및 소득	대량생산·공급을 통한 산업화 연계(협약체결 등)

※ 목재생산, 바이오순환림 조성 시 10% 범위 유실·특용수종 식재는 계속 실행

2) 큰나무조림

가) 큰나무공익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040	40	1,000
사업비	6,300	467	5,833

※ 국고 보조율 : 50%

o 경관조성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

-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 등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되, 가급적 지자체별 역점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 제고
- 경관수종(수고 1.5m 내외)은 350본/ha 기준으로 식재하되, 조림목의 크기에 따라 식재본수를 가감하여 실행
- 경관조성, 산불예방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목류, 조경수 식재 가능

나) 산림재해방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2,400	800	1,600
사업비	14,186	7,093	7,093

※ 국고 보조율 : 50%

o 산사태, 산불, 병해충 및 태풍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예방으로 산림경관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

- 산사태 피해지는 우선 복구를 지원하고, 주택가, 농경지 주변 산사태 우려지는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 산불 및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등 병해충피해지는 자연복구와 병행하여 인공복구 추진
- 경작지, 주거지 주변 태풍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방풍림 조성

o 식재수종은 대묘(1,500본/ha) 이상 큰나무를 식재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소묘 또는 관목류 식재 병행

- 피해목 벌채, 비료주기 및 대묘식재 등 기본 공정에 반영

o 태풍으로 인하여 부러지거나 쓰러진 입목 피해지는 2차적인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목을 제거하고 집단피해지는 재조림 추진

- 단목(單木), 소규모 분산 피해지는 숲가꾸기 산물처리 방법에 따라 조재 후 임내 정리 또는 매각 처분

- 피해목 제거 후 재조림이 필요한 집단 피해지는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 후 조림 계획에 반영

※ 「산림자원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물처리

3) 유휴토지조림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000	-	1,000
사업비	1,973	-	1,973

※ 국고 보조율 : 70%

o 한계농지, 마을 공한지 등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유실수·특용수·조경수·용재수종 등을 식재

┌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의 한계농지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지적법」제5조에 의하여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유휴토지조림 5개년 계획' 참조(산림자원팀-1731호, 2006.11.27.)

o 조림수종은 유실수, 산지과수, 특·약용수 위주로 추진하되, 목재생산 목적의 장기수 조림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조림

※ 밤나무는 과잉 생산을 감안 지원대상 수종에서 가급적 제외

o 국고보조 단비는 경제수조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자력 부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단비) 범위 안에서 지원

┌ 산지과수, 유실수(매실, 감, 호두, 대추, 자두나무 등) : 400~800본/ha

├ 특·약용수종(옻나무, 두릅나무 등) : 1,500본/ha

└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수종(장기수조림) : 3,000본/ha

※ 조림지 사후관리의 비용절감을 위해 식재시 부직포 등 잡초제거 비용 지원

o 유휴토지 조림 후 5년간은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을 의도적으로 이동, 판매, 고사시킬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 조치

o 기후변화 대응 신규 산림조성에 대한 산림사업 실적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반드시 계획량 이상으로 추진

- 한계농지 이외에도 식생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공한지, 도심지 자투리 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하천변에도 조림 가능

4) 지역특화조림

가) 금강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400	300	100
사업비	1,295	1,050	245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목재가치가 높고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종임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숲에 낙엽이 쌓여 씨앗발아가 어렵고, 낙엽활엽수와의 경쟁에서 쇠퇴

〈분포현황〉

o 금강소나무는 강원, 경북의 백두대간에 주로 분포(373천ha)

- 강원(강릉, 삼척 등) : 226천ha(국유림 28%, 민유림 72%)
- 경북(봉화, 울진, 영양 등) : 147천ha(국유림 25%, 민유림 75%)

※ 금강소나무(*P. densiflora* for. *erecta*)는 소나무(*Pinus densiflora*)의 한 품종으로 곧고 통직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음

〈사업개요〉

o 우리나라 대표수종인 강원·경북지역 금강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특수재 및 고급대경재 생산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문화재용 특수재, 고급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우량형질로 육성

- 솎아베기 : 동령림은 생육밀도 조절, 다층림은 상층의 송지채취 또는 산불피해를 입은 대경목 위주로 실시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위주의 금강소나무 육성

o 임지의 여건에 따라 모수작업, 모두베기를 통하여 적정 임분 관리
- 남향 또는 남동향 사면의 노령목 주벌 수확지는 모수작업을 적용
- 벌기에 도달한 임분 또는 과거 송지채취·산화피해를 받은 노령목 분포지역은 모두베기 실시
- 단순림, 혼효림, 단목림 등 임분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현장토론 등을 거쳐 적정 작업종을 결정하여 시행

o 후계림 조성은 일조량, 토질, 경사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천연하종 및 파종조림으로 갱신하고, 식재조림을 병행 실시
- 천연하종 및 파종은 일조량이 많아 종자 발아율이 높은 남동, 남서사면에 실시
- 어린묘, 대묘, 용기묘조림은 모든 곳에 조림이 가능하나 북향의 경우 생육이 다소 저조하므로 신중히 식재

o 금강소나무 생육분포도 작성 및 DB화하여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이력 기록 관리 및 사후관리 철저
- 후계림 보전을 위한 인공갱신 시험시업지에 대한 생육상황 조사
- 문화재용 특수재 목재생산림 지역 등 사후관리 철저

o 대관령, 소광리 등 지명도가 높은 지역은 금강소나무 시범전시림으로 조성하고 숲 체험 교육장으로 이용

나) 안면소나무육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00	-	100
사업비	245	-	245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안면소나무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재 등으로 공급된 목재가치가 높은 우리나라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우수경영산림으로 선정

o 병해충,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후계림 육성이 시급함

※ 안면소나무 보전·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08년, 충청남도)

〈분포현황〉

o 충남 안면읍·고남면 일원에 4,802ha 분포(공유림 3,550ha)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안면소나무림은 약 2,770ha
    ※ 수령 80~120년(직경 30㎝ 이상)의 성숙림은 381ha(141천본) 분포

〈사업개요〉

o 형질이 뛰어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안면소나무림의 보전·관리 및 후계림 육성으로 문화재용 고급대경재 생산 및 관광 자원화
  -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 숲가꾸기로 우량임분 육성
  - 천연하종, 파종조림, 식재조림 및 비료주기 사후관리로 후계림 조성

〈추진요령〉

o 밀도조절 등 숲가꾸기 및 후계림 조성을 통해 문화재용 고급대경재를 생산하는 우량림으로 육성
  -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동령림은 밀도조절을 실시하고, 성림지는 솎아베기 후 안면소나무 복층림으로 조성
  - 천연하종, 파종 및 인공식재로 후계림을 조성하여 안면소나무림 확대

o 강산성 토양은 질소질 비료와 석회를 시비하고, 솎아베기로 토양내 공기유통 및 수분흡수 촉진하여 안면소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교정

o 안면소나무림에 생육하는 리기다소나무는 벌채하여 안면소나무 후계림으로 조성하고, 부실초지 등 유휴지는 복구조림 실시

다) 섬지역산림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120	20	100
사업비	1,811	402	1,409

※ 국고 보조율 : 70%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강한 해풍과 척박한 토양 등 열악한 자연환경으로 훼손되고 있는 섬 지역 산림의 녹화 및 식생복원으로 산림경관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o 자생수종의 식재 및 보육,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섬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필요

〈추진방향〉

o 자생수종 중심의 조림 · 숲가꾸기 추진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o 섬지역 고유의 산림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o 주거지역, 관광지 및 뱃길 가시권 지역의 산림을 우선 추진

〈사업개요〉

o 자생수종 중심으로 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방법을 적용하고, 신속한 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적용

- 난대지역은 동백나무, 후박나무, 돈나무 등 난대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섬 지역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조림을 확대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유기질비료, 수목 운반시 수분접착 마대 활용 등 신속한 산림녹화를 위한 특수공정 개발·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o 숲가꾸기, 병해충방제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사업 제외대상

·일반 산림지역에서 실행하는 조림 및 숲가꾸기 적용이 가능한 지역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우려되어 사방사업이 필요한 지역

·국립공원으로서 조림 및 숲가꾸기가 불가능한 지역

·수목식재 등 산림조성 대상지가 없고 관목류 · 초본류 식재만 가능한 지역

라) 득량만난대특화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95	-	95
사업비	1,164	-	1,164

※ 국고 보조율 : 70%

o 전남 보성 득량만 일원 해안산림에 난대지역 산림식생기후대의 특성에 맞는 경관조성 및 태풍·해일 등 재해방지를 위한 숲 조성

- 난대지역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남해안 풍치에 어울리는 경관림 조성
- 내염성이 좋고 병충해, 태풍, 산사태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

o 참식나무, 황칠나무, 후박나무 등 난대 해안지역 자생수종으로서 교목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고유의 산림생태계로 복원
- 큰나무를 식재하여 활착률을 높이고 객토, 비료주기, 물주기 등 신속한 산림 조성을 위한 특수공정 적용
- 식재수목의 규격 및 식재본수는 현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o 숲가꾸기, 덩굴류 및 생태계교란종 제거 등 건강한 산림가꾸기 추진
- 치수보육, 움싹조절 등 숲가꾸기를 병행 실시하고, 자생수종으로서 형질이 우량한 나무는 보육작업
- 산림경관을 해치는 덩굴류와 생태계교란종은 제거
  ※ 단비표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실제 사업실행은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마) 운두령특수활엽수림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096	1,096	-

※ 국고 보조율 : 100%

o ’06년 FSC 인증을 취득한 운두령 지역 특수활엽수 조림지에 산림경영과 목재생산 기술개발·연구를 위한 시범단지 조성(북부지방청)
- 소 재 지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원 국유림 170ha
- 조림수종 : 자작나무, 물박달나무, 들메나무, 피나무, 굴참나무, 산벚나무, 가래나무, 물푸레나무 등(’77~’88년 조림)

o 기존 조림지와 연계한 조림확대 및 숲가꾸기로 활엽수 조림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 및 방문자 기술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
- 활엽수 특수용재 생산을 위한 연차별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활엽수림에 대한 체계적인 무육·관리 기술 정립
- 지황 및 임황인자 DB구축과 하층식생 천이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목생장량 변화 측정 및 희귀·유용식물 등 실태조사 추진
- 임업종사자, 학술분야 등 관계자의 조림지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정책홍보 안내시설 등 편의 시설물 설치

바) 석포모델숲조성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0	30	-
사업비	1,334	1,334	-

※ 국고 보조율 : 100%

o 용인·안성일대 대면적 기부산림을 산림기술 교육·문화·체험 공간 등 모델숲으로 조성하여 산림정책 및 대국민 산림교육·홍보장소로 활용

- 소 재 지 : 용인시 이동면 묵리 산59번지 외 46필지
- 면 적 : 662ha (용인시 관내 600ha, 안성시 관내 62ha)

o 벌채지의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통한 기념공원 조성, 작업임도 등 산림경영기반구축 사업과 경계측량 및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림보호 시설

5) 설계·감리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6,000	945	5,055
사업비	1,782	377	1,405

※ 국고 보조율 : 70%

o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및 공무원이 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시행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관리계획 등 기관별로 수립한 조림계획은 기본설계로 활용 가능

o 실시설계는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당해년도 사업 실행전에 실시하거나 전년도에 실시

- 현장대리인 자격요건, 동력식혈기 품셈기준 등 개정된 설계지침 준수

o 이윤율, 간접노무비 등 원가계산 요율 기준은 「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을 적용

- 간접노무비는 조경업종으로 적용하고, 일반관리비는 전문공사로 간주

o 조림사업 실행자(시공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으며, 1회 풀베기 이후 조림지 활착상황을 포함하여 감리 실행

o 임업기계화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동력식혈기 및 비료주기 품셈기준을 신설

o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변경에 따라 간접노무비의 적용비율을 종전 전문공사에서 조경업종으로 적용

o 산림경영정보 DB 구축과 조림통계의 전산화를 위해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전자파일로 관리

-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시 작업지시도, 필지별 사업내역서를 전자파일로 제출받아 지자체·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

※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조

6) 비료주기

o 산불피해지 등 지력회복이 필요한 산림과 척박지 등 재해우려지에 우선 실시하고, 바이오순환림, 경제수조림지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실행

- 경제림조성, 산림재해방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에 포함된 비료주기 공정 활용하여 조림사업과 병행하거나 분리하여 별도 사업으로 실행

〈 ’13년 비료주기 관련 총사업량 〉

(단위:ha, 천㎏)

구분	계		경제림조성 (30㎏/ha)		산림재해 방지조림 (90㎏/ha)		금강·안면 소나무육성 (360㎏/ha)		섬지역 산림가꾸기 (700㎏/ha)		득량만난대 특화림조성 (180㎏/ha)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면적	시비량
계	17,800	938	14,685	441	2,400	216	500	180	120	84	95	17
민유림	14,850	689	12,855	386	1,600	144	200	72	100	70	95	17
국유림	2,950	249	1,830	55	800	72	300	108	20	14	-	-

주) 해당 사업에 기본공정으로 포함된 비료주기임

o 조림목의 뿌리가 활착된 5~6월경(식재 1개월 이후)에 실시하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름, 가을철에도 시비

- 초기생장 동안 많은 양분이 요구되는 낙엽송이나 활엽수류는 조림 후 3년간 집중적으로 시비

- 비료주기는 실행시기에 따라 식재작업과 동시 발주하거나 분리하여 개별사업으로 추진(전년도 조림지 등)

- 이듬해 시비할 경우에는 봄철 나무심기가 집중되기 전에 우선 실행하여 조림사업 노동력 분산

※ 시비 작업요령은 「산림과 임업기술(II)」 산림조성편(229쪽), 붙임 ‘백합나무 바이오순환림 조성 및 관리 요령’, 조림설계지침 참조

7) 조림지가꾸기

(단위 : ha, 백만원)

구분	계	국유림	민유림
사업량	35,663	3,800	31,863
사업비	17,817	3,431	14,386

※ 국고 보조율 : 50%

o 조림지 사후관리의 사업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풀베기 및 덩굴제거를 통합사업으로 실행

- 덩굴류가 없는 조림지는 기존대로 풀베기만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덩굴류 제거사업을 별도 시행

〈풀베기 작업요령〉

o 작업시기는 5~7월에 실시하고, 연 2회 실시할 경우 8월에 추가 실시

-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하며, 특히 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수종보다 우선 실시
- 비료를 준 조림지는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는 연 2회의 풀베기 실시
- 한해·풍해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9월 이후의 풀베기는 피함

o 조림 당년도를 포함하여 3~5년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 수고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 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

- 잣나무, 소나무류는 5~8회, 낙엽송, 참나무류는 5회를 기준으로 풀베기 대상물의 생장상황에 따라 가감

o 작업방법은 예초기, 낫 등을 이용하여 현지여건에 알맞게 적용하되, 조림목의 식별이 어려운 조림지는 조림목 보호를 위해 인력으로 둘레베기 실시 후 예취기 사용

-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림지 여건에 따라 작업 횟수, 공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실시

o 풀베기 기간이 끝나면 어린나무가꾸기를 조속히 실행하여 공백기간 동안 조림목이 천연치수, 움싹에 의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지 관리 철저

〈덩굴제거 작업요령〉

o 조림지 및 도로변에서 산림에 피해를 주는 칡, 가시박 등 덩굴류 제거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에 따라 조림지 및 도로변 덩굴류 집중 제거
- ’09~’10년에 기실행한 ‘덩굴류 집중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재발생한 덩굴류는

봄철 조림사업이 완료되는 5월부터 집중 제거

- 조림지는 가급적 숲가꾸기 기능인력을 투입하고, 도로변 등 성림지 덩굴제거는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

※ '덩굴류 제거 5개년 계획' 참조(자원육성과-1270호, 2008.12.5.)

〈덩굴제거 우선순위〉

① 조림지

② 고속도로변 〉 국도·지방도변 〉 마을도로, 농로 등

※ 도로에서 조망되는 가시지역은 모두 제거대상에 해당함

③ 그밖에 일반 산림지역

※ 산주,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피해가 신고된 산림은 우선 제거

o 덩굴류 제거시에는 맹독성 약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썩는 비닐랩밀봉, 기계 및 인력굴취 등 친환경적인 제거 방법을 확대

- 덩굴의 종류와 양을 고려하여 작업횟수를 연간 2~3회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 입목이나, 야생동식물, 경작지, 수자원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인력에 의한 제거

o 약제처리 시에는 토양 및 수질오염 등 산림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

-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 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
- 약제처리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가 예상될 경우 약제처리 작업을 중지
- 디캄바액제는 증발에 의한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온(30℃ 이상)에서 작업 중지
- 약제처리 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o 조림 후 5년이 경과된 조림지로 조림목이 피압되어 생육에 지장이 있는 조림지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하여 조림 성공률 제고

8) 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o 농·산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임업여건 변화에 따라 기계

화 도입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사업비 절감

- 식재구덩이 파기,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사업의 기계화 작업을 확대로 작업의 효율성 제고

o 조림용 동력식혈기를 도입하여 작업의 편리성과 조림목 활착률 제고

- 동력식혈기 사용시 곡괭이 등에 의한 인력작업에 비해 식재구덩이를 충분히 팔 수 있어 뿌리 활착에 도움
- 용기묘 식재시에는 가급적 'OK 식재기'를 활용하고, 식재기 사용이 어려운 석력지 등은 인력 또는 기계에 의한 식혈방법 적용

o 조림용 동력식혈기 작업시 적정한 소요인력, 기계경비 등은 품셈기준 적용

- ha당 3,000본 식재시 보통인부 10.3인 및 5인당 동력식혈기 1대 적용
- 동력식혈기 감가상각비, 식혈날 등 소모품 대가 및 유류대 등 연료비 적용

※ 동력식혈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조림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고

o 덩굴제거,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작업시 기계이용 활성화

- 덩굴제거 대상지 여건에 다라 인력굴취, 비닐랩밀봉과 병행하여 칡뿌리 절단기 적극 활용
- 풀베기 작업은 예초기 사용을 확대하되, 조림목 피해가 없도록 표시봉을 설치하고 낫에 의한 둘레베기 실행 후 작업

※ 풀베기 및 덩굴제거 공정 및 품셈은 개정된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참고

9) 밀원수 조림

o 주요 밀원수종인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들의 조림 기피 및 생리적 쇠퇴현상 등으로 분포면적이 크게 감소

- '60~'70년대 국토녹화기에 아까시나무를 연료림으로 조성하였으나, 이후 경제발전으로 연료재를 활용하지 않아 대부분 소규모로 분포
- 아까시나무에 대한 산주의 거부감으로 조림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며 채밀수종이 아까시나무에 편중

o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조림 추진

- 바이오순환림 조성시 꿀의 채밀량이 많은 백합나무를 지속적으로 조림하고, 경관조림 및 가로수종에 적합한 이팝나무, 마가목 등 밀원수종 조림

- 유휴토지에 특용수종 조림시 헛개나무, 마가목, 층층나무, 음나무 등 조림 지원

〈주요밀원수종〉

개화기	교목류	소교목류	관 목
3 월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회양목, 매실나무	진달래
4 월	왕벚나무, 산벚나무, 마가목		산딸기, 복분자딸기
5 월	아까시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오동나무, 백합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족제비싸리, 찔레나무, 말발도리, 쥐똥나무
6 월	밤나무, 헛개나무, 감나무, 참죽나무, 피나무, 황벽나무, 산딸나무		싸리나무류
7 월	황칠나무	모감주나무, 좀목형	싸리나무류
8 월	음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릅나무	
9 월		붉나무, 산초나무	
10월		차나무	

o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밀원수종 산림의 조림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유림은 바이오순환림과 연계하여 아까시나무림 단지조성

※ ’10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에서 각 3ha 이상 조성 추진중

- 공유림은 지자체에서 시범단지 조성(도별 1~2개소)
- 사유림은 밀원수종 조림 희망지역에 조림사업비 우선 지원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계획〉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합계	228ha	6	6	27	106	75	8
지자체	13개 시·군	남양주시(3) 가평군(3)	강릉시(3) 양구군(3)	영동군(27)	공주시(100) 논산시(3) 보령시(3)	곡성군(50) 구례군(23) 강진군(2)	안동시(3) 영양군(5)
수종		헛개나무 피나무	미정	아까시나무	아까시나무 옻나무 등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6955(2011.11.21.)호

o 숲가꾸기 작업시 아까시나무, 싸리나무 등 밀원식물 존치

※ 3ha 이상 밀원산림 분포 : 3,741개소, 29,278ha(’10년)

10) 특수·도입수종 시험조림

o 산벚나무, 우산고로쇠 등 자생수종과 메타세콰이아,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

루브라참나무 등 도입수종의 시험조림으로 다양한 조림수요에 대처

- 묘목 및 조림대상지를 제공하고 종자채취, 양묘, 조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시업내용을 사진 및 문서로 상세히 기록·관리(지방산림청)
- 시험조림지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적응시험 및 모니터링 연구 등 시험조림지 관리 지도

11) 제68회 식목일 기념행사 추진

o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 추진

- 세계적인 이슈인 지구온난화, 황사 등 지구 환경문제 해결을 나무심기로 상징화

o 기관별 식목일 기념행사는 국가기념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4월5일 식목일 당일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산불예방 등 기관실정에 따라 조정

- 어린이, 지역주민, 기업 등 많은 국민들이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심기 체험행사 및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전개

〈국민참여 식목일 행사 대상지〉

① 2013년 조림지

-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재해복구지, 지역특화숲 등 조림사업 예정지

② 생활권 주변지역

- 공원, 도시녹지대, 기관청사 주변, 마을 또는 아파트단지내 공한지, 주요도로 및 철도 조망권내 산림

③ 지역축제, 국제행사 개최지

- 지역별 대표적 축제장소 주변, 국제행사 장소 등 기념조림 및 기념식수

12) 조림용 묘목의 조사 및 검사

o 조림용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종묘사업실시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규격측정 등 묘목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수급

- 조사·검사 결과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묘목의 출하를 금지하고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실행
- 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이끼류 등 묘목의 건조

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물수세미는 곤포당 4㎏ 이상의 짚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 사용

- 묘목의 포장 외부에 묘목의 규격, 생산지, 생산자 등의 품질표시를 명확히 하여 출하

o 묘목의 품질표시 위반, 출하금지 또는 소독·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종묘생산업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엄정히 집행

- 국유양묘장, 민간양묘장 및 종묘생산업자의 생산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산림청, 시·도에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묘목의 품질검사 뿐만 아니라 양묘사업 공정 준수 여부 등 묘목 생산체계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추진

13)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

o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위해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금액 확정 등 정산 및 잔액 반환 철저

- 정산 확정 후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별도 고지에 따라 납부기한 내 조속히 납부
- 잔액 보조금의 반납 지연 시에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당년도 보조금 교부를 보류하는 등 불이익 강화가 불가피

o 경제림조성, 유휴토지조림 등 산림소유자의 부담금이 있는 보조사업은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정산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산주(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징수하여 사업 실행
- 단,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산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비로 수익자부담금을 대체(추경 편성 등)하여 사업 실행

※ ’14년 사업부터 수익자부담금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전대비 철저

o 산림소유자가 직접 수행하는 간접보조사업은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영수증 등을 확인 및 정산

- 지자체 예산편성 시 민간보조 사업을 확대하여 벌채·조림 활성화 유도

14) 조림 사업장 현장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o 조림사업 현장에서 불법적인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현장 대리인 선임계, 작업원 운영계획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림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현장 투입 여부를 수시 점검
- 감리 용역의 과업으로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사항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 사업방지 및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에 대해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o 조림사업 실행지의 필지별, 계약 건별 사업실행 이력 관리 철저

- 사업완료 즉시 필지별 사업내역서, 조림지 관리대장 작성 등 DB 관리
- “조림사업실적 통계”에 의한 세부 인자별 조림실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적 관리(재원별, 소유별, 대상지별, 실행주체별 등)
- 활착률조사 표준지는 GPS 좌표를 기록하고 가능한 도면화하는 등 사후 현장 검증 등에 대응자료 구축

o 조림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조림 사업지의 세부사업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 관리 및 실적 보고 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o 각종 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조림지 활착률 조사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조사에 이용된 표준지에 대한 좌표기록 유지 등 사후 검증에 대비

o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한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의 사업이력 처리 활성화(지방산림청)

라. 추진일정

o ’13년 조림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 2012. 12월

o 지역별 조림계획수립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2. 12~2013. 2월

o 봄철 나무심기 및 제68회 식목일 행사추진 : 2013. 3~4월

o 풀베기, 덩굴제거 등 조림지 사후관리 : 2013. 5~10월

o 조림지 활착상황조사 : 2013. 6~9월

o 가을철 나무심기 추진 : 2013. 9~11월

o ’14년 조림설계 및 조림예정지정리 : 2013. 11~12월

〈붙임 1〉

조림 권장 수종

□ 경제림 조성용 집중 조림수종

강원 · 경북	경기,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참나무류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참나무류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지역별 산림식생기후대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림수종 선택

□ 바이오매스용 조림수종

○ 포플러류, 아까시나무, 참나무류, 백합나무, 자작나무 등

□ 조림 가능수종(78개)

구분		조 림 수 종
용재수종 (27)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편백, 삼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분비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음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피나무, 노각나무, 서어나무, 가시나무,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이태리포플러, 물푸레나무, 오동나무, 황철나무, 들메나무
경관수종 (20)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벚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나무, 가죽나무, 당단풍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꽝꽝나무, (백합나무)
유실 · 특용수종 (16)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밤나무, 옻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동백나무, 후박나무, 황칠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음나무)
기타 수종 (15)	내공해수종	산벚나무, 사스레피나무, 오리나무, 참죽나무, 벽오동, 까마귀쪽나무, 해송, 버즘나무, (은행나무), (상수리나무), (가중나무), (때죽나무)
	내음수종	주목, 녹나무, 전나무, 비자나무, (서어나무), (음나무)
	내화수종	황벽나무, 굴참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 조림 권장수종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 식재 가능

〈붙임 2〉

’13년 특용자원 조림 추진계획

(단위:ha)

기관별	특용자원조림 수종	’13년 사업면적	
		단지면적	계획면적
계	25개 수종	2,296	2,000
민유림	16개 수종	1,843	1,700
경기	헛개나무	200	200
강원	옻나무	30	200
충북	아카시, 헛개, 산수유, 백합나무, 대추, 음나무	453	200
충남	감, 호두, 음나무, 다래, 옻나무	106	200
전북	감, 호두, 고로쇠, 아카시	25	200
전남	헛개나무, 황칠, 산수유, 산딸, 아카시, 떫은감	650	300
경북	헛개남,, 황칠, 고로쇠 등	100	100
경남	편백, 고로쇠, 옻나무, 음나무, 두릅, 산초, 헛개, 산딸, 호두,	379	300
국유림	19개 수종	453	300
북부청	아카시, 닥, 참죽나무 은행나무, 구상나무	91	50
동부청	박달나무, 헛개, 마가목, 거제수, 옻나무, 음나무, 단풍나무	95	80
남부청	산수유, 박달, 산딸, 고로쇠 음나무, 옻나무, 참죽나무	87	90
중부청	닥나무, 옻나무, 음나무	80	20
서부청	고로쇠, 가래나무, 호두, 후박, 황칠, 헛개, 아카시, 느릅나무	100	60

※ 지역실정에 맞는 특용수종의 지속적 발굴 및 단지화 확대

11. 숲가꾸기

목 표

◇ **산림을 경제 ·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

- 기능별 숲가꾸기로 전면 개편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

-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현장관리 강화로 사업 성과 제고

o 숲가꾸기 : 250천ha (국유림 45천ha, 민유림 205천ha)

o 산물수집 : 150만㎥ (국유림 40만㎥, 민유림 110만㎥)

※ 예산 : 247,283백만원 (국유림 76,976백만원, 민유림 170,307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은 경제 · 사회 ·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체로 인정

o 지금까지 목재생산 위주로 관리되던 산림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 · 이용되어야 할 공간으로 변화

o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산림관리 방식도 자연과 인간이 균형 잡힌 생태적 접근법을 추구

o 국내 · 외 산림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산림사업을 대표하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시기가 도래

나. 추진방향

o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09~'13)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o 국내 · 외 숲가꾸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o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o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숲가꾸기 내실화 도모

o 숲가꾸기 산물수집을 통해 목재 ·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o 재해예방 차원의 숲가꾸기를 통해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o 현장에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 · 감리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o 숲가꾸기 국고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o 현장 중심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부실사업 근절

o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정책 분야

1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 5차년도 마무리

o ’13년까지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편익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 125만ha, 산물수집 650만㎥ 추진

o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 주요추진 방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추진
-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 탄소최적화 경영을 위한 숲가꾸기 제도 및 시업체계 마련
-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질 향상 및 기술인력 관리 개선

o 이를 위해, 금년도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내실화하고, 산물수집을 통해 산업용재 및 에너지 자원으로 공급
- 숲가꾸기 계획면적 : 250천ha(국유림 45천㏊, 민유림 205천㏊)
- 산물수집 계획면적 : 100천ha(국유림 20천㏊, 민유림 80천㏊), 150만㎥

2 국민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별 숲가꾸기 추진

1) 「경제림 가꾸기」와 「공익림 가꾸기」로 구분 추진

o 산림의 경제적 이용에 중심을 두는 「경제림 가꾸기」와 보전·환경 등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공익림 가꾸기」로 구분하여 시행

o 계획 단계부터 사업 물량을 구분하여 배정하고 사업 방식도 차별화
- 숲가꾸기 사업량 250천㏊을 경제림과 공익림으로 각각 50%씩 구분
  ※ 국유림 기능별 관리계획 : 45천㏊ (경제림 22.5천㏊, 공익림 22.5천㏊)
  ※ 민유림 기능별 관리계획 : 205천㏊ (경제림 102.5천㏊, 공익림 102.5천㏊)

2) (경제림가꾸기)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약적 사업 실행

o 전국 450개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숲가꾸기 추진

- 사업종 및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행하여 사업성과 제고

※ 솎 아 베 기 : 인공림, 소나무 동령림으로 인공림과 유사한 임분

※ 천연림 보육 : 미래목 기준, 지위·소밀도 중 이상, 집약적 경영이 가능한 임지

※ 천연림 개량 : 지위·소밀도 중 이상

3) (공익림가꾸기) 기능별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o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립공원, 도심 생활권, 야생동물 관리, 대나무 숲, 사찰림, 학술림 등 숲의 기능과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숲가꾸기 실시

- 별도의 사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 사업관리 방식을 적용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산림자원 육성 종합계획('12.5) 및 주요 기능별 숲가꾸기 가이드라인(별도 보급)에서 제시하는 기능별 산림관리 방식을 참고

4) 전국 단위의 「산림기능 구분도」를 제작하여 일선 현장에 보급

o 웹 기반의 사유림 기능 구분도를 제작·보급하여 현장 활용성 증진

5) 천연림 보육·개량 사업 축소 및 질적 개선방안 마련

o 기존 천연림 보육·개량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분석(생산기술연구소)

o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불필요한 사업 축소

o 식생 유형별(소나무, 활엽수) 생장 특성 및 생산 목표를 고려한 숲가꾸기 작업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성과 제고

- 소나무 및 활엽수 천연림 숲가꾸기 체계구분 의사결정 흐름도 제시

6) 국유림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다층림가꾸기 추진

o Ⅳ영급 이상 되는 국유림을 대상으로 다층림가꾸기 추진(1천㏊)

- 실시설계부터 후계림 수종 선정, 예정지 정리 등 조림계획을 사전에 반영하여 기존 숲가꾸기 방식과는 차별화

- 다층림 조성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과거 시행착오 최소화

o 다층림 조성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방식 적용 유도
- 형질우량림 뿐만 아니라 형질불량림 등에 대한 적극적 갱신 유도방안으로 활용
- 숲가꾸기와 조림의 개별 분리추진에서 벗어나, 숲가꾸기 과정에서 불량임지는 일정 면적으로 벌채 후 공지조림(인공조림 또는 천연하종 등)을 통해 갱신하여, 숲가꾸기와 조림이 연계된 개념으로 추진

7) 국립공원 등 법적제한림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o 그동안 방치되어 생태적으로 취약한 인공림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
-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MOU('12.2.27)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

o 숲의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피해목 제거, 자생수종 복원 등 차별화된 정교한 숲가꾸기를 통해 숲의 건강성 회복

3 숲가꾸기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화 도모

1) 숲가꾸기 사업 보조율 개선

o 산림의 공공재적 특성과 숲가꾸기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산주의 수익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현행) 국 50% : 지 40% : 자 10% → (개선) 국 50% : 지 50%

◈ **제도개선 이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금**을 산주(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포함)로부터 **징수**하여 사업 실행
- 단,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산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비로 수익자부담금**을 **대체(추경 편성** 등)하여 사업 실행

2)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을 객관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o 산림경영계획,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등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 반영하고, 유역완결원칙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선정

o 명확한 사유 없이 솎아베기가 수반되는 사업을 5년 이내 반복 실행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 철저
- 자연재해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복 실행 가능

3) 사업 공고 제도를 명확하게 하여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차단

o 사업 동의서에 대해 ‘무응답’ 대상지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확하게 ‘소재 불분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공고
  - 사업 동의서가 반송된 경우라도, 바로 공고하지 않고, 여러 경로로 산주의 주소 파악을 위해 노력한 후 공고 절차 이행

o 산주의 정확한 주소 파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지자체 세무부서의 협조를 받아 사업동의서 발송(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
  - 사업 동의서 발송 시 ‘숲가꾸기 사업안내 리플렛’ 등 설명자료 첨부

o TV 공익광고 등 산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방안 마련
  - 인터넷 신청서비스 확대, 산주 컨설팅 등을 통해 동의율 제고

o 숲가꾸기 설계, 시공 시 산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오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사업 실행 전 반드시 산주 ·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수막·안내판 게시

4) 「사유림 경영정보 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이력관리 강화

o 숲가꾸기 실적은「조림·숲가꾸기 이력관리 시스템」에 입력 의무화 추진

o 숲가꾸기 월간 추진실적보고서(월보)를 시스템 출력물로 대체하고, 각종 평가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

4 산물수집 및 재해에 강한 산림 육성

1) 숲가꾸기 산물은 목재 · 바이오에너지 자원으로 재활용

o 설계 단계부터 산물수집 · 활용을 고려한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생산량 증대
  - 수집량 : (’12) 150만㎥ → (’13) 150만㎥

o 이용 목적을 고려한 생산재 공급으로 자원의 효용가치 제고

o 작업임도 개설 및 임업기계화를 병행하여 생산비용 절감

2) 숲가꾸기 산물 처리로 재해요인 사전 제거

o 산불·수해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의 산물을 반드시 수집하여 활용하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옮겨 부식이 촉진되도록 단목 처리
  - 계곡부의 홍수위 폭 만큼의 거리, 도로·임도·농경지, 호소 등 수변부의 만수위와 하천의 홍수위로부터 등으로부터 사면거리 30m 내외 지역

o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내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

3) 재해 우려지역에 공익림가꾸기를 실행하여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o 도심 생활권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차원의 숲가꾸기 확대
-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에 숲가꾸기를 우선 실시하여 나무의 뿌리발달 촉진 등 재해에 대한 저항성 증진
  ※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이 가능(산자법 제23조 참조)

o 산불,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실시
- 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소나무단순림에 숲가꾸기 확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한 소나무류 숲가꾸기 사업은 금지함
- 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구역 외곽 선단지역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숲의 건강성 회복 및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증진

5 녹색댐 조성사업

1) 사업 추진체계

o 산림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
- 양 기관이 “녹색댐 조성사업” 공동 추진 협약 체결(’07.11.20)

o 사업 시행 절차
- 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기본설계(한국수자원공사) → 연간 사업 계획 수립(산림청) → 실시설계, 숲가꾸기, 감리(국유림관리소, 시·군)

2) 사업 추진요령

o 기본설계에 따라 가급적 댐 유역별 사업량 전체를 묶어서 일괄 실시설계 및 사업 실행

o 세부적인 사업요령은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참조하여 실행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표준 매뉴얼의 수원함양림 작업 기준

o 녹색댐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는 기존의 숲가꾸기 사업비를 활용

o 실시설계서 검토를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에 감리 용역을 발주

o 녹색댐 추진 실적자료 관리 철저
- 기 기본계획 수립 완료(’05~’11년, 26개댐)한 댐 유역의 지자체별(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실적자료 정리 및 이력 관리 철저
  ※ 기본계획에 의한 댐별, 연도별, 개소별 현지 숲가꾸기 추진실적(’06~’12년) 관리

6 (가칭) 제3단계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14~’18) 수립

o 국내·외 숲가꾸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

o 지속적인 숲가꾸기 추진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논리와 명분 도출

실무 분야

1 숲가꾸기 설계·감리 품질향상

1) 기본 사항

o 50ha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개소는 반드시 설계·감리 실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등에 따라 현지여건에 맞게 시행
- 부실 설계·감리 근절·방지를 위한 자체적으로 사전교육 등 강화

※ 감리자의 실시설계 사전검토 강화, 감리원의 역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의 품질향상 도모

o 소규모(50ha 미만) 산주 직접 사업지는 지자체에서 위탁 설계·감리업체 지정

- 위탁 설계·감리업체의 완료 보고서 수리 후 보조금 지급
- 산주부담금을 원가 계산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추진

·숲가꾸기 사업의 조기발주 및 연중 사업실행을 위하여 익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설계를 통하여 전년도에 50% 이상 사업면적 확보 및 설계 완료

o 현장과 부합하는 숲가꾸기 설계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 정확한 현지조사, 산림 여건을 반영한 숲가꾸기 설계도·서 작성
- 특히, 전 구역을 천연림 개량과 같은 단일 사업종으로 설계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천연림 갱신 등 다양한 작업종 반영
- 숲가꾸기 기계화작업로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정은 추가 반영

※ 기계화작업로는 2011년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모델숲 조성계획(산림자원과-1651호 ’11.4.7)에서 제시한 품셈을 기초로 하여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

o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부수적(附隨的)인 산림사업이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산림사업 통합 설계 시행

- 숲가꾸기 대상지 내에 일부 면적이 포함되는 송이산 가꾸기, 단기소득 임산물 식재, 피해목 제거 등 포괄적인 숲가꾸기 사업 범위에서 실행
- 단, 숲가꾸기를 수반하는 경우 유사한 작업은 숲가꾸기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물과 단기소득 묘목대 등은 집행 불가

2) 세부 적용 기준

o 수수료 및 일반관리비는 산주실행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미반영

o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부가가치세를 미반영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되,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 계약시에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방지(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대급 지급시 정산처리)

o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윤과 수수료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과 수수료는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o 숲가꾸기 품셈 적용시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 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함

o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시행자가 보험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처리하며, 관계법령에서 매년 고시하는 내용을 확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 04-159-8, ’08.12.29)
·산재보험료 : 2천만원 미만 사업인 경우도 가입(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1.3%(사용자 부담금, 국토해양부 고시) ※ 1개월 미만의 일일 고용사업인 경우에도 보험료 반영(고용보호법 제2조 6호) ·국민연금보험(국토해양부 고시) ※ 단 1개월 이상 사업인 경우만 적용 ·국민건강보험(국토해양부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o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사용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지출하고,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는 업체에 지출시 반드시 세금고지서를 첨부하여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4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

o 숲가꾸기 설계도·서에 의거 실행되지 않은 공정과 실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정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감액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처리

② 숲가꾸기 예산 집행 철저

1) 예산 집행 및 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매월 집행률 및 실집행률을 파악하고 있으니,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 현지 집행 추진

- 시·도(시·군·구)의 예산 편성시 세부사업명을 '정책숲가꾸기(보조)', '공공산림가꾸기(보조)'로 통일하여 향후 예산집행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치

o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선금규정을 적용하여 선금의 지급으로 노임체불 등을 방지하고, 업체의 부담 경감

- 계약 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
- 선금은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숲가꾸기 사업의 선금 지급 요령 〉

·근거 법령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

·근거 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8, 2008.12.29)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제32조부터 제38조)'

※ 회계예규에서 선금의 사용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비의 대부분이 노임인 숲가꾸기 사업에 선금 지급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

2) 숲가꾸기 국가 보조금 정산 철저

o 총 사업비의 실 집행액을 기준으로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여 정산 처리

※ 숲가꾸기 기준 보조율 : 국고 50%

o 현실적으로 산주의 수익자부담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비 추경 편성 또는 기 확보된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도록 하여 정산 처리

■ **유형별 보조금 정산 방식**

①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으로 정산

② 수익자부담금 미 징수로 인해 지방비로 대체할 경우

▹ 지방비로 추경 편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으로 정산

▹ 추경 미 편성, 기 확보된 지방비로 대체 : 국고 40, 지방비 40 으로 정산

※ 지방비 대체를 위한 지방의회 승인 필요, 국고 10 반환 및 사업량 축소 불가피

▹ 추경 미 편성, 지방의회 미 승인 : 국고 50 반환 및 사업 추진 불가

3 사업장 지도 감독 등 현장관리 강화

1) 외부 모니터링 확대 및 인적자원 실무역량 강화

o 외부 전문가에 의한 설계 · 감리를 확대하여 전문성 제고

- 익년도 사업지에 대한 사전설계로 설계 품질향상 및 행정력 절감

※ 외부 설계 · 감리 물량 : 국유림 18천㏊, 민유림 161천㏊

o 중앙 차원의 숲가꾸기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

- 정부 · 학계 · 외부전문가 등으로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감사 수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사업 방지 및 기술적 컨설팅 제공

o 숲가꾸기 현장 특임관 운영

- 산림관련 기관 퇴직자 등을 활용하여 숲가꾸기 사업장 상시 모니터링 실시

o 숲가꾸기 실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력 향상

- 숲가꾸기 담당자 현장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위탁교육 실시(상반기)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훈련원에 위탁하여 3일 집합교육으로 실행

- 도 주관으로 해당 시 · 군에 소재한 설계 · 감리 및 시공업체 소속 산림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2) 선목사업 분리발주 및 사업 시행자 자격확인 철저

o 설계용역 의뢰 단계에서부터 설계·감리용역의 규모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이 배치 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

o 선목과 솎아베기를 분리발주 할 수 있으며, 선목은 반드시 선목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 실행

o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아닌 산주 실행사업은 미래목 선정, 작업자의 자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미래목 선정자 실명 기록 유지)

o 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감리 및 사업담당 공무원은 작업원 운영계획서(숲가꾸기 설계 ·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6호 서식)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 점검

※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이어야 하며, 산주, 독림가, 임업후계자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작업인원의 30% 이상이어야 함

- 감리 용역시 계약사항에 하도급 사례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추가

- 사업담당 공무원은 준공 처리 전에 감리자로 하여금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문서 보관
- 현장 지도 점검 시 하도급 사례에 대한 작업자들의 신고 강화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
- 불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숲가꾸기 작업원 기준 미달 시 사업을 중지시키고, 시공업체에 시정명령 조치

※ 사업시행자의 작업원 운영계획서상의 작업원 명단(자격 등)과 현장 근로 작업원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

o 자격미달 또는 자격 중복 기술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한 사업, 위법 및 지침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 철저
-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과의 등록인력 중복 여부 점검
- 설계·감리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는지 수시 점검
- 사업계약시 담당자는 계약업체의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을 반드시 확인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http://fec.foa.go.kr/legal/)' 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현장대리인의 이중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o 현장 점검 실행 시 부실사례를 발견할 경우, 一罰百戒 차원에서 시공업체 및 감리자 등 산림기술자에 대해 의법 조치

3) 일정규모 이상의 숲가꾸기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 정례화

o 50㏊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자체 · 지방청 주관으로 분기별 일제점검 추진

o 부실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동일사례 재발 방지

o 지방청 · 지자체는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숲가꾸기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

〈 숲가꾸기 기술 위원회 〉

o 목적과 구성
- 목 적 : 숲가꾸기 사업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사업에서 거버넌스 확대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제고
- 구 성 : 공무원, 학계, NGO, 산주(공 · 사유림), 전문가 등
- 역 할 : 숲가꾸기 사업의 모니터링, 기술지도, 제도개선 의견제시, 홍보 등

o 시·군, 국유림관리소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지 자체 평가를 실시
- 시기 및 횟수 : 상·하반기 각 1회

o 도, 지방청별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4)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활성화

o 숲가꾸기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체 현장 토론회 추진
- 도·지방청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상의 산림 기능별 토론
  * 숲에 대한 경영목표, 작업방법, 작업강도 등 토론
  * 임업기계장비의 활용, 산물수집 확대 방안 등 숲가꾸기 기술 공유
  ※ 산림청에서는 자체 현장토론회시 지자체와 · 지방청 요구에 따라 지원

o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사업 추진 및 장기 모니터링 추진

5) 숲가꾸기 안전사고 예방

o 작업 실행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수칙 반드시 준수

o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구급약품 비치, 상황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o 안전깃발 릴레이, 안전캔디 데이, 1일 안전인사 등 현장 무재해를 위한 안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별 안전사고 예방 우수사례 전파

6) GPS를 이용한 표준지 보존·관리

o 숲가꾸기 사업의 표준지는 반드시 GPS좌표를 기록하고 도면화
- 표준지는 지형도상에서 일정 격자의 교차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임도변, 도로변 등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

·표준지 설치 목적은 사업비 산출근거, 작업단·영림단에게 작업방법의 현장 설명에 활용, 사업 전 · 후의 대조구 역할 등으로 사업면적에 포함됨.
·표준지 조사는 '수평 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함.

o 표준지에 대해서는 사업 전후 대비, 사후 점검이 용이하도록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보존
- 도로변, 주요 시설 가시권 등 경관적 목적이 있을 경우 숲가꾸기 작업을 하도록 설계서에 반영하고, 사업 실행 사유를 설계도서에 기록

7)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o 국가 산림자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 업무(종자, 묘목, 조림, 숲가꾸기, 벌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정보통계담당관실)

o 산림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 및 교육을 통한 활용성 증진
- 사업 대상지 조사, 실시설계, 현지점검, 준공검사 등을 시스템에서 처리
- 시스템 운영 교육 지속 실시(정보통계담당관실 협조)

4 숲가꾸기 사후관리 및 홍보

1) 숲가꾸기 사업 실적자료 관리 철저

o 계약 건별, 필지별 등 숲가꾸기 사업 이력에 대한 DB 구축
- 「사유림 경영 DB 구축 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력 관리 철저

o 숲가꾸기 추진 과정상의 사진 등 자료관리 철저
- 주요 사업지의 세부사업 추진 공종별로 전·중·후 대비 사진기록관리 및 실적 보고(월보 등)시 현장 사진중심의 보고체계 강화
- 민원 발생 우려지 등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영상자료로 기록 관리

2) 숲가꾸기 사업 평가

o 기관평가
- 민유림 : 수시 현장 점검 및 지자체 합동평가(행정안전부 주관)에 의함
- 국유림 : 소속기관 평가 계획에 의함

o 숲가꾸기 사업 현장 품질평가
- 숲가꾸기 품평회를 통해 품질향상, 기관간 정보 교류 및 우수사례 전파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 담당자의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제공

※ 세부 평가 계획 및 일정은 별도 통보(하반기)

3) 숲가꾸기 사업 홍보 강화

o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주요 사업지별 「숲가꾸기사업 발대식」개최를 통해 숲가꾸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 언론매체, 반상회보,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o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의 숲가꾸기 홍보 입간판 정비
- 노후화된 홍보 입간판 도색 또는 철거, 입간판 주변 풀베기 등 수시 정비

o 숲가꾸기 사업 효과 등 홍보를 강화하여 산주의 자발적 신청 참여 유도
- TV 공익광고, 리플렛, 포스터 제작,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 동원

o 숲가꾸기 사업이 수해 등 재해를 유발하거나 밀원수종·꿀벌을 감소시킨다는 등 잘못된 언론보도 사전 대응
- 숲가꾸기 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순기능에 대해 홍보 강화

4) 숲가꾸기 기간 행사 추진

o 숲가꾸기 기간(11.1~11.30) 행사를 범국민적 행사로 확대 실시
- 숲가꾸기 1일 체험 시 학생,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의 참여 확대
-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병행하고 홍보 강화

o 산림청 및 산하기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숲가꾸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에 대하여 숲가꾸기 장소 제공 및 장비대여, 기술지도

5) 사랑의 땔감나누기

o 사랑의 땔감 나누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물의 일부를 지역내 취약계층(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공공시설(양로원, 마을회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
-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연중 실시하되, 동절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집중지원
- 2013년 지원 목표량 : 10천 세대에 50,000㎥ 지원 (1세대 당 평균 5㎥ 지원)

라. 추진일정

o 2013년도 숲가꾸기 발대식 : 2013. 1월

o 2013년도 숲가꾸기 사업 시책 설명회 : 2013. 1월

o 숲가꾸기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 2013. 상반기

o 숲가꾸기 기간행사 계획 보고 : 2013. 10. 15일

o 숲가꾸기 사업 품질 평가 : 2013. 11월

o 지역별 숲가꾸기 현장 토론회 : 2013. 매월

o 숲가꾸기 사업장 일제점검 결과보고 : 2013. 3·6·9·12월

o 2012년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 : 2013. 3월

o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 2013. 10 ~ 2014. 2월

o 숲가꾸기 기간행사 실적 보고 : 2013. 12. 5일

※ 매월 5일 기준으로 숲가꾸기 추진실적(월보) 제출

12. 공공산림가꾸기

목 표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의 활용 제고**

o 고용인원 : 2,000명(국유림 75, 공 · 사유림 1,925)

※ 예산 : 20,614백만원(국유림 2,295, 공 · 사유림 18,319)

가. 정책여건

o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른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축소 방침에 따라 고용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

o 인력 의존도가 높은 숲가꾸기를 통해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 등 농산촌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o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 · 재생 에너지원인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물수집의 확대와 임업 기능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

o 산림재해의 예방·복구, 도로변 경관림 조성,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수원함양림 육성 등 공공성이 높은 산림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나. 추진방향

o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계층, 장기 실업자, 휴 · 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의욕 고취

o 저소득계층 및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집중적인 산림기술교육을 통해 산림분야 직업인으로 양성

o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내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산림 현장 민원의 조기 처리에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 확대 투입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조사 및 체계적인 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DB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공통사항

1)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개요

o 3개 분야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

o 운영 인원 : 2,000명
  - 지방청 : 75명(숲가꾸기 패트롤 75명)
  - 지자체 : 1,925명(수집단 1,725명, 자원조사단 200명, 숲가꾸기 패트롤)
    ※ 지자체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인원(도별 5명, 8개도 40명)은 지자체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인원 내에서 별도 선발하여 운영

o 운영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o 사업 추진 :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가능한 조기에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2) 주요 사업 내용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및 정책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 활용 촉진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자원 조사 업무와 산림사업 DB구축 등의 관리 등

o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덩굴류, 병해충, 산림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현장 민원 처리

3) 모집 공고 및 신청 자격

o 신청 및 선발 기관
  - 민유림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201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시·군·구 '공동모집·선발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모집(접수)·선발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사업 참여자 신청접수는 '공동모집·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하되 가능한 일정한 신청기간(상반기 : 1.20~26, 하반기 : 5.20~26)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중 대기자를 선발하여 결원발생시 추가 선발 가능

※ 단, 숲가꾸기패트롤·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지침-공공산림가꾸기사업 Ⅳ.Ⅴ에서 정하고 있는 선발기준 등에 따라 시·군·구 사업실행부서 주관으로 별도 모집(접수)·선발

- 국유림 공공산림가꾸기 :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모집(접수)·선발

※ 신청서 접수현황을 대장으로 작성 관리하며, 우편접수를 허용

o 숲가꾸기패트롤·숲가꾸기자원조사단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는 전년도말 또는 연초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공고한 후 공개채용 실시

o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선발 시 작성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여 수시 고용하거나 또는 추가모집 가능

o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 재학생

4) 사업 참여자 선정

o 사업 참여자 선정주체

-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
- 지방자치단체 : 도지사 및 시장·군수

o 참여자 정보 및 근로내역 실적 관리

-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 실적관리프로그램(www.ilmoa.go.kr)dp 월간실적과 참여자 정보를 입력

※ 월간 실적 : 중도탈락·종료 등 사업별 참여자 관련 상황과 예산집행 상황 등

※ 참여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기본 정보 등

o 취약계층 고용 기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 참여자 선정 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실질적 취업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숲가꾸기 패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제외)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table>
<tr><td>구 분</td><td>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td></tr>
<tr><td>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td><td>•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한도(’ 13년)
<table>
<tr><td>구 분</td><td>1인가구</td><td>2인가구</td><td>3인가구</td><td>4인가구</td><td>5인가구</td><td>6인가구</td><td>7인가구</td></tr>
<tr><td>2012년 최저생계비</td><td>572,168</td><td>974,231</td><td>1,260,315</td><td>1,546,399</td><td>1,832,482</td><td>2,118,566</td><td>2,404,650</td></tr>
<tr><td>150%</td><td>858,252</td><td>1,461,347</td><td>1,890,473</td><td>2,319,599</td><td>2,748,723</td><td>3,177,849</td><td>3,606,975</td></tr>
<tr><td>보험료(가입자분2.9%)</td><td>24,889</td><td>42,379</td><td>54,824</td><td>67,268</td><td>79,713</td><td>92,158</td><td>104,602</td></tr>
</table></td></tr>
<tr><td>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td><td>•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
* 담당자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
• 청년(만 29세 이하)은 졸업일 기준</td></tr>
<tr><td>여성가장</td><td>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2">첨 부 서 류</td></tr>
<tr><td>배우자
無</td><td colspan="2">•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td></tr>
<tr><td rowspan="9">배우자
有</td><td>가출·행방불명</td><td>실종신고서</td></tr>
<tr><td>장애</td><td>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td></tr>
<tr><td>질병</td><td>의사의 진단서</td></tr>
<tr><td>군복무</td><td>복무확인서</td></tr>
<tr><td>학교 재학</td><td>재학증명서</td></tr>
<tr><td>교도소 입소</td><td>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td></tr>
<tr><td>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td><td>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인서</td></tr>
<tr><td>이혼소송 제기</td><td>이혼소송확인서</td></tr>
<tr><td>기타 가족 생계 부양</td><td>통·반장의 확인서(검토)</td></tr>
</table></td></tr>
<tr><td>고령자(만 55세 이상)</td><td>• 주민등록번호</td></tr>
<tr><td>장애인</td><td>• 장애인증명서</td></tr>
<tr><td>북한이탈주민</td><td>•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td></tr>
<tr><td>결혼이주자</td><td>•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비자), 가족관계등록부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td></tr>
</table>

5) 임금 및 교육 훈련

o 인건비 지급 기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 일반인부 : 40,000원/1일, 기술인부 : 45,000원/1일(일반인부임+기술수당)
- 부대경비 : 5,000원/1일(간식비 3,000, 교통비 2,000)

·기술수당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소정근로(일급)에 포함하여 “통상임금”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며, 기술 인부임 지급대상일 경우 모두 지급
·단, 부대경비는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기술인부는 작업조장, 기계톱, 가선집재 등의 기능을 요한는 작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숲가꾸기 패트롤〉

- 인 부 임 : 55,000원/1일
- 부대경비 : 5,000원/1일(간식비 3,000, 교통비 2,000)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과 기술수당의 별도 구분 없이 일괄 인부임 성격으로 지급
·인부임은 유급휴일(주차·연차휴일) 및 교육기간에도 동일금액(55천원/1일)으로 지급
·단, 부대경비는 실제 근로에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

o 교육 훈련
- 근로자 기술교육은 2주의 교육기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의 경우는 신규 3주, 보수 1주의 교육을 추진
- 교육기간 중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임을 지급

※ 근로자 전원 교육이수 추진

6) 안전 관리

o 안전 관리
-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조치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현장에 구급약품 비치
-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초 건강진단 실시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o 안전 장구 구입
- 사업 시행기관별로 작업자별 개인 보호구 구입 지급

※ 개인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작업장갑, 무릎보호대, 통신장비 등

- 여성 근로자의 참여 증가에 따라 필요시 탈의 및 간이화장실로 이용 가능한 텐트형 파라솔 등 편의시설 구입·제공

7) 대행 제도

o 행정력 절감을 위한 대행제도 시행
- 근로자 선발, 예산 집행을 제외한 현장 기술지도 업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산림조합계통조직)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

※ 지자체 수수료 요율은 순수 인부임의 7%로 대행할 수 있음

세부 사업별 기준

1)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o 선발 대상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과 업무보조요원으로 구분하여 선발
  ※ 단, 업무보조요원은 미취업자,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및 산림조합 퇴직자 등으로 전체 참여자의 10% 이내에서 선발
- 지방자치단체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단원 선발

o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20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침(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o 시행 대상사업은 공공성이 높은 산림사업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사업종별 사업 추진 요령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름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관련 기술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위한 산물수집 중점 실행
- 특히, 도로변·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과 재해위험지역의 숲가꾸기 산물은 전량 수집을 원칙으로 추진

o 주요 사업내용
-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관리 사업(덩굴류 제거 등)
-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생활권 주변 산림정비 사업
- 숲가꾸기 이후 산물 발생대상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 산불, 풍수해, 병행충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2)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o 숲가꾸기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대상지 자원조사 등 조사인력 지원
- 산림자원조사 정보 및 산림사업 실행이력 관리 등 산림정보 전반에 관한 DB구축 등 조사·관리요원으로 활용

o 대상 기관 : 숲가꾸기 자원 조사가 필요한 도(道) 또는 시·군

o 고용 대상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등 「20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침(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의한 자격대상자

o 기술 교육
- 신규교육 3주, 보수교육 1주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일정은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실행 가능

3) 숲가꾸기 패트롤

o 전국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 및 산림 내 민원 등 긴급사항의 처리로 생활권 주변 숲을 변화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행정 구현
- ’10년 북부·남부·중부지방산림청의 시범 운영사례를 확산시켜 ’11년 부터 지자체 등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

o 운영기관 : 5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 8개 도 (23개단)
- 지방청 : 북부·동부·남부·중부·서부지방산림청 (15개단)
- 지자체 :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 (8개단)

o 주요 사업내용
- 주요 도로변 등 산림 내 덩굴류,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주거지, 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산림정비
-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처리 및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 현장 활동 기록유지 및 기타 사업기관이 지시한 제반 산림업무

o 숲가꾸기 패트롤 구성 및 운영
- 숲가꾸기 패트롤은 1개단에 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
- 지방청(국유림관리소 포함)은 숲가꾸기 패트롤 모집공고에 의하여 근로자를 선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고용 배정인원 내에서 숲가꾸기 패트롤 단원을 별도 선발(5명 내외) 운영
- 임업훈련기관에서 임업기술 교육을 이수하고 기계톱 등 장비활용이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로 채용
-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에 필요한 차량, 기계톱, 예취기, 안전장구 등 기계·장비·물품은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 시·도(산림환경연구소 및 사업소 등)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포함) 소속으로 운영
  ※ 다만, 시·도의 경우 지역여건 및 실정에 따라 주요 시·군에서 운영 가능
- 시·군의 행정구역 구분 없이 가능한 도 및 지방청의 행정·관할구역 단위로 활동

o 임금지급
- 주 5일 근무 원칙으로 1일 급여는 인부임 55,000원과 부대비 5,000원을 지급. 다만, 기술수당은 1일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숲가꾸기 패트롤 근로자 고용 즉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가입 조치

o 관련예산 배정
- 지방산림청 : ’13년 숲가꾸기 패트롤 예산 활용
- 지자체(8개도) : ’13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예산 활용

o 기타 세부사항은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지침’ 및 「20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침-공공산림가꾸기사업」을 적용

교육훈련 및 점검단 운영

1) 기술교육훈련

o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확대 등을 위해 숲가꾸기 일자리 근로자 2,000명에 대한 기술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
- 숲가꾸기 기술교육(패트롤) : 115명(2주)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 : 1,685명(2주)
- 숲가꾸기자원조사단교육 : 200명(4주)

2) 사업 점검단 운영

o 공공산림가꾸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체 점검단을 구성하고 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이상)

o 인건비 적정 지급 여부, 사업추진 실적, 일자리 창출 홍보, 안전사고 예방 노력도 등 중점 점검

라. 추진일정

o 근로자 신청·접수, 선발 : 2012. 12 ~ 2013. 2월까지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시·군구 ‘공동모집·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함.

o 근로자 기술교육 : 2013. 2~7월

o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물수집 등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장 점검 : 2013. 5월, 10월

o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매월)

o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운영성과 보고 : 2013. 12월까지

13. 종묘생산관리

목 표

◇ **산림용 종묘의 국가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 우량묘목 생산 및 국유양묘장 운영체계 개선으로 경영효율화 도모**

o 사업량 : 종자 50톤 및 묘목 60백만본 생산, 산간양묘장 3개소

가. 정책여건

o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안정적 묘목생산을 위한 시업포지 및 노동력 확보 등 기반 확충 및 위축된 양묘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양묘장의 운영개선 필요

o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농촌인력 고령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요구

o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직배양묘목 생산 등 선진 양묘 기술 정착이 필요하며, 활착률 및 산지 적응성 제고를 위한 기반 확보 필요

나. 추진방향

o 종자공급원의 환경개선사업 등 효과적 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 향상 및 종자의 생산·유통·관리의 국가관리체계를 강화

o 종묘의 생산체계 개선을 통해 조림정책과 연계하고, 국유양묘장의 운영체계 개선 및 시업기술 개발을 통해 양묘산업의 활력도 증진

o 간이온실 확충 등 시설양묘 확대를 통한 양묘장 재해예방 및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조직배양묘목 생산 확대 등 선진양묘기술 정착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 강화

가) 종자공급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우수종자 생산성 향상

o 종자공급원(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의 효과적 관리

- 지역별「종자공급원 일제정비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수종에 대해서는 조성 · 지정 등 확대 추진

- 숲가꾸기, 병채충 방제, 임도 등 관련사업과 연계한 종자공급원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 추진

o「중장기 산림종자 종자수급 계획」에 따른 채종원 관리 및 확대
- 채종원 확대 : (’12) 652ha → (’13) 667ha
  ·2025년까지 채종원 1,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 90%이상 공급
  ·「채종원 관리 실태조사」시 문제점으로 제기된 다목적 채종원, 위탁 채종원 등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주요 조림수종 종자는 채종원, 시범사업·특색사업 등을 위한 종자는 채종림(임분)에서 채취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유도
- 지구온난화 및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용수종을 발굴하고, 이에 따른 채종원 조성
- 지방청 및 도에서는 채종원 확대를 위하여 소관 국·공유림 지역 채종원 조성 부지 확보 등 적극 협조

o 지방청 및 각 도에서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채종림(임분)에 대한 지속적인 적정성 검증 및 정비 실시
- 노령, 기준미달 채종림은 해제하고 지역별 조림 수종 위주로 추가 지정
  ·소나무, 낙엽송, 편백, 느티나무 등 주요 조림수종은 확대, 상수리, 자작나무는 축소, 채종원산으로 전량 수급 가능한 잣나무는 제외
  ·채종림(임분)은 가급적 국·공유림을 중심으로 지정하되, 지정·해제 시에는 반드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
  ※ 채종림(임분) 확보가 어려운 희귀 수종은 단목형태 또는 소수의 우량입목에 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협의하여 채종목으로 지정
- 기관별 조림계획에 상응한 수종별 종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채종림(임분)을 확보(지방청·도)
- 지역별 국·공유림 등을 이용한 난대유망수종, 특용자원 채종림 조성(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협조)
- 채종림·채종임분에 대한 유전자원 조사·수집(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공급원의 임황, 지황, 유전자원 현황, 기반여건, 위치정보, 존치적 정성 등 전반적인 현황 자료 조사·수집(’13년도 국유림 280ha)

o 숲가꾸기, 작업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을 통해 채종림(임분) 종자 결실환경 개선 사업을 실행하여 종자 생산성을 극대화
- 종자결실환경 개선사업 : 관리도로, 종실가해 해충방제, 밀도조절 등
-「채종림 운영 매뉴얼」을 활용한 종자공급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환경개선

나) 산림용 우수종자 생산 및 기계화

o 산림용 종자는 반드시 검증된 종자공급원에서 채취하여 우수종자를 공급
- 우수 산림용 종자생산 : 50톤
  ·종자공급원 외에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종자채취 현장지도 점검 강화
  ※ 싸리, 아까시 등 북한황폐산림복구용 종자는 일반 우량임분에서 생산 가능
- 채종원산 종자는 소량이라도 반드시 채취하여 우수 산림용 종자 공급
  ·채종원산 종자 공급 목표 : 30% 이상

o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조림정책 변화에 따른 종자생산 확대
- 주 수종 : 소나무, 낙엽송, 편백, 잣나무, 삼나무, 백합나무, 가시나무류
- 바이오순환림 : 백합나무, 리기테다소나무, 포플러, 아까시, 참나무류

o 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화 및 전문인력 육성 추진
- 각 도에서는 종묘생산업 등록자, 임업종묘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종자채취단'을 구성하고 도급계약으로 종자채취 실시
  ※ 도급계약 설계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종자채취 표준 작업공정 활용
- 종자예찰 등 종자관련 업무에「숲가꾸기 패트롤」적극 활용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지침」에 '종자관련 업무'를 포함 예정
- 채종원 종자채취 작업 시 기계(버켓크레인 등) 사용 활성화

다) 산림용 종자 유통·관리 강화

o 산림용 종자 국가관리체계(생산-검사-보관-유통) 강화
- 국가지정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은 검증된 종자 이외의 사용은 제한
- 종자유통시장에 대한 조사·분석 및 보고(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지방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운영

o 종자저장시설 운영 활성화
- 종자결실(풍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종자수급(국가비축)을 위하여 종자저장고 운영(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저장고(GeneBank) : 최대 51톤 저장규모
  ※ 면적 1,808㎡(2층), 단기수급 종자저장(51톤), 장기보존 종자저장(15만점) 등

o 산지증명제도 운영
- 산림사업용 종자의 산지증명제도 정착(산지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종자는 종자검사 불가)
- 불량종자의 차단 및 산지확인을 위하여 원산지 식별기술 개발

2) 우량·건전 묘목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조성

가) 묘목생산 및 기반 강화

o 우량묘목의 생산·공급

- ('12) 44백만본(20천ha) → ('13) 60백만본(30천ha)

o 묘목생산 체계 재정립

- 기후, 수요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묘목생산체계 구축

·(국유림) 적지적수 및 계획적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벌채 · 조림계획과 연계한 종묘생산 선-순환체계 마련

※ 벌채 · 조림계획(5년전) → 종자채취(4년전) → 묘목생산(3년전) → 조림(당년도)

※ 3년간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조정 · 실행

·(민유림) 지역별 생산추이, 수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생산패턴 조사 후 국가 심의를 통한 생산량 결정

※ 정책적 측면 및 지역 향토수종, 산주 수요 등 지역적 측면을 안배

※ 지역적 대표수종의 주산단지 조성을 통한 숲의 브랜드화 유도

현 행	개 선
▪ 상향식(Top-down) ▪ 생산량 중심의 산주 배분 ▪ 종자 및 묘목 확보량 위주 ▪ 민간 중심의 소품종 집단 양묘 생산지정 [지자체] → 묘목생산 [대행생산자] → 조림실행 [지자체]	▪ 상 · 하향식(Top-down+Bottom-up) 혼합 ▪ 정책 + 지역 수요 반영 ▪ 지역적 특성화 및 브랜드화 중심 ▪ 국가와 민간의 다품종 맞춤 양묘 패턴조사 [지자체] → 패턴심의 [산림청] → 생산지정 [지자체] → 묘목생산 [대행생산자] → 조림실행 [지자체]

o 목재생산 등 경제림 육성을 위한 「**지역별 집중 조림수종**」 위주로 묘목생산

강원 · 경북	경기	충남 · 북	전남 · 북, 경남	남부해안 및 제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소나무 편백 백합나무	편백 삼나무 가시나무류

※ 백합나무는 수요 및 적정 대상지에만 식재하도록 생산량을 축소

o 형질이 우수한 묘목 생산·보급을 위한 클론임업의 활성화

- 조직배양에 의한 클론묘목 생산기술 개발을 확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12까지) 백합나무 → ('13) 백합나무, 강송, 낙엽송, 테다 등

※ 클론묘목 수종다양화 계획에 따른 기술 개발·이전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클론생산) → 국·민유양묘장(묘목으로 육성) → 산지조림용으로 공급

·조직배양묘 생산 : ('12) 25만본 → ('13) 30만본

o 간이온실 확대 보급 등 시설확충을 통한 우량묘목 생산기반을 강화

- 시설양묘 확대 : ('11) 20% → ('13) 25% → ('15) 30%
- 양묘장에 대한 토양조사 실시(국립산림과학원) 및 토양개량사업 확대

나) 묘목 품질향상

o 우량묘목의 생산성 검증을 위한 시험사업

- 루브라참나무 시범림 조성을 위한 시범양묘 추진

·루브라참나무 도입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상수리나무와의 산지 비교시험을 위한 시범양묘 실시(국립산림과학원, 국유양묘사업소)

※ 루브라참나무 1,000kg(144천본), 상수리나무 800kg(66천본)

- 백합나무 적정 파종량 구명을 위한 현지 실연사업 추진

·백합나무의 적정 종자 파종량 조사를 통해 올바른 시업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실연사업 실시(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묘협회)

o 산림용 종묘가격 산정 체계 개선

- 수종별·묘령별 종묘가격 시업기준 등 적용인자 정비

·수종별 시업기준 및 시업공정의 재정비, 선진국 종묘가격체계 검토

- 시험연구를 통한 수종별 시업기준의 재정립

·연차별 3~5개의 수종을 선정하여 시업연구 결과를 통한 묘령별 시업기준의 재정립(국립산림과학원)

o 조림용 묘목검사 강화 및 묘목생산자 실명제 정착

- 묘목검사는 경력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철저히 이행

·병해충 진단, 도장묘목 판단 등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행

·품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출하금지 및 소독·폐기 등 조치 실행

·포장 시 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등 건조방지 재료를 충분히 넣고 포장

- 묘목검사 실명제 실시(조림지 사후관리대장에 명기)
- 양묘시업 포지에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번호가 표시된 표찰 설치

※ 종자(산지증명)→양묘장(산지표시)→묘목수급(산지, 생산·검사자)→조림(산지, 생산자)

o 묘목의 품질향상을 위한「품질인증제도」도입

- 묘목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산림용 묘목품질인증제' 단계적 도입

※ 묘목의 외형적 규격 뿐 만 아니라 병해충 등 내적 형질 품질검사 도입

<산림용 묘목 품질 인증 제도 체계(안)>

인증 신청 (생산자)	→	접수 (인증기관)	→	심사 (인증심사위원회)	→	인증 및 인증서 교부
						↓
묘목 유통	←	시판품 검사 (지방청 등)	←	묘목 출하	←	묘목 생산 (생산자)

3) 국유양묘장 운영개선을 통한 경영활성화 도모

o 산간양묘장 조성을 통해 중·대묘 생산성 및 산지 적응성 제고

- 기후 및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13 신규)

·우량 중·대묘 생산 및 대북 지원·동계올림픽 경관 등 묘목수요에 대응

※ 대관령(신규조성), 양구(리모델링), 봉화(기반조성(1년차)+부대시설(2년차))

- 지역별 중심양묘장과의 유기적 연계로 묘목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지역 중심양묘장과의 연계, 기후 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지 선정

※ 역할 구분 : 중심양묘장(소묘, 용기묘 중심), 산간양묘장(중·대묘 중심)

o 민간위탁 양묘장의 직영전환을 통해 국유양묘장 활성화 도모

- 민간위탁 국유양묘장의 직영화로 국유양묘장 경쟁력 강화(3개소)

·고비용, 품질 및 기술력 저하, 연속성 단절 등 내재된 문제점 해결

※ 직영화 대상(20.2ha) : 춘천양묘장(5.9), 삼성양묘장(8.0), 남원양묘장(6.3)

- 조림사업 확대에 따른 직영 양묘장 확대 및 사업 연속성 확보

·생산량 유지, 시범양묘·재배시험 등 기술 배양을 통한 묘목 생산성 제고

o 국유양묘장의 운영체계 재편으로 활력도 증진 및 특성화

- 중심양묘장과 부속양묘장으로 기능을 구분하고, 지역적 대표 수종 양묘로 특성화 및 민유양묘장 선도 경영

·(현행) 직영(5)+위탁(3) → (개선) 중심(6)+부속(5)

* (중심양묘장) 소묘·용기묘 중심의 지역별 대표 수종을 생산·공급

* (산간양묘장) 산지적응 등을 위한 중·대묘 위주의 묘목생산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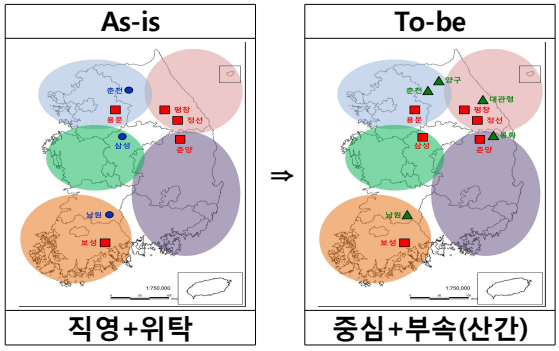

4) 민간양묘장 묘목생산기반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o 묘목 대행생산자를 확대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 양묘사업 경쟁력 강화

-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 지정을 확대(각 도)
- 양묘장 재해예방 시설 등 묘목생산기반조성 지원을 강화
  ·종묘생산기반 : 종자(40톤), 토양개량(12ha)
  ·시설양묘기반 : 간이온실(14동), 관정(대형 3공, 중형 5공)
  ·클론생산기반 : 조직배양시설(2동), 클론재배시설(2동)
- 민간 양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협의
  ·저온저장시설 및 클론생산비용 등 민간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목생산기반사업의 확충을 위해 지속적 관계기관 협의 및 확보

o「전국 양묘기술세미나」발전방안 모색

- 「전국 양묘기술세미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진방식 도입 검토
- 양묘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초단체 공무원 등 참여범위 확대

라. 추진일정

o 2013년 종묘가격 협의회 및 결정 : 2012. 12. 14.

o 민간위탁 국유양묘장 직영전환 : 2013. 1. 1.

o 산간양묘장 조성 : 2013. 1. 1.

o 2013년 파종용 종자 확보상황 파악·보고 : 2013. 1. 10.

o 채종원, 채종림, 채종임분 등 종자공급원 정비현황 보고 : 2013. 2. 5.

o「내나무 갖기 캠페인」 : 2013. 2. 15. ~ 4. 15.

o 2013년 양묘시업 상황 파악·보고 : 2013. 5. 31.

o 2013년 종자결실 예찰 조사·보고 : 2013. 8. 1.

o 2013년 묘목생산 실태 조사·보고 : 2013. 10. 31.

o 2013년 제41회 전국 양묘기술세미나 개최 : 2013. 11월

o 2013년 종자채취 결과 파악·보고 : 2013. 11. 30.

14. 산림생명자원관리 및 신품종 개발 지원

목 표

◇ **산림생명자원의 국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품종 개발 지원**

o 산림생명자원 조사·수집 : ('12) 110만점 → ('13) 120만점

o TG(Test Guideline) : ('12) 147종 → ('13) 181종

o 품종보호 출원 유도 : ('12) 167품종 → ('13) 197품종

가. 정책여건

o 나고야의정서('10.10 채택) 발효에 대비하여 국내 산림생명자원의 주권 수호와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이 큰 산림 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 마련 필요

- 생명자원의 배타적 권리와 자원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심화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 필요

※ 산림생명자원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이나 국내 자원은 대부분 미개발 상태

o 품종보호 대상이 모든 식물로 확대・시행('12)됨에 따라 잠재적 가치가 높은 산림식물의 신품종 육성 활성화와 종자산업 육성지원 필요

나. 추진방향

o 3개 책임기관*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특성평가, 보존, 이용활성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산림생명자원의 국가관리체계 확립

※ 3개 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o 품종보호 대상 종 확대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통해 과학적이고 공정한 출원품종 심사와 재배 시험 수행

o 산림생명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육종가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으로 신품종 개발 촉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13년도 시행계획 수립·이행

o 식물, 미생물, 곤충, 종자 등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
- 표본 제작 등을 통해 수집한 산림생명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자료 구축

o 산림생명자원의 현지내외 보존과 복원·증식 기술 개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현지 내 보존 지역의 유전다양성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보존 기술 개발 연구
- Gene Bank 및 종자 은행 등을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현지외 보존 확대
- 유용산림생명자원의 증식 기술 및 클론묘 생산 기술 연구

o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특성 평가 강화
- 산림생명자원의 형태적 특성 및 생리 생태적 특성 조사·연구
- 신품종 개발 및 출원 심사 기준이 되는 특성조사 요령 개발
- 신품종개발 및 출원심사의 기준이 되는 특성조사요령 개발
  ※ 특성조사 요령 : (’12) 147종 → (’13) 181종

o 산림생명자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DB구축 및 신물질 추출 연구 진행
- DB 구축을 통해 3개 책임기관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연계성 확보
- 신물질 추출 연구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산업화에 기여

[’13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이행 근거]

o 근거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o 대상(책임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o 내용 : 책임기관별 소관 생명자원의 조사·수집, 평가, 보존, 정보화 등

2)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비 및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확대

o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국외 동향 파악 및 가칭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국내입법 추진에 대한 적극적 대응

o 산림 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Help Desk를 운영하고 산림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 제공

o 민간 연구소, 대학, 지자체, 공·사립수목원을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여 관련기관 간 연구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관리기관 지정·운영 : (’12) 21개 → (’13) 26개

3) 산림분야 신품종 보호 출원 유도 및 육성가 지원

o 신품종 육종가 지원확대를 통해 산림 분야 신품종보호출원 적극 유도

※ 출원 건수 : (’12) 167품종 → (’13) 197품종

o 신품종 육성 민간 육종가 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및 ‘품종보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원격서비스 제공

- 육종가 및 재배자를 대상으로 신품종 출원 기술교육 및 지원방안 마련

※ 세미나 등 교육실시 : (’12까지) 3회 → (’13) 4회

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신품종 심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출원품종의 재배시험 및 특수검정 기술개발

- 출원 품종의 재배 시험 포지를 확보하고 재배심사를 확대하여 품종 등록 건수 증가에 기여

※ 재배시험: (’12) 61품종 → (’13) 70품종

※ 재배시험포지 확보: (’12) 예정지 선정 · 협의 → (’13) 남부권, 15ha

- 신품종 심사 및 개발에 필요한 대조품종을 수집하여 품종보존원 조성

※ 품종보존원 : (’12) 미선나무 등 70품종, 0.4ha → (’13) 80품종, 0.4ha

o 품종심사 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인력 확충 : ’13년도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반영

- 품종심사 관련 장비 등 : 기능성 품종 출원과 분쟁종자 대비시험을 위한 HPLC, DNA분석장비, 버섯재배 심사 관련 시설의 확충 추진

5) 품종 등록·보급 확대 및 신품종의 유통질서 확립

o 로열티 문제에 대비한 국내 개발 신품종의 신속한 출원등록 및 보급

-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직무육성 품종의 신속한 등록 추진

- 품종보호 대상 종 확대 후 1년 이내 출원을 유도

o 출원품종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단속

- 품종심사기관(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과 종자업 등록기관(시 · 도) 합동으로 계도·단속

※ 유통질서 계도·단속기간 : 3~11월

라. 추진일정

o 2013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수립 : 2012. 12월

o 2013년도 산림생명자원 시행계획 사업 수행 : 연중

o 품종출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처리, 재배시험 : 연중

o 나고야의정서 발효 대응 인식제고 : 연중

o 품종심사 관련 인력・장비 등 인프라 확충 : 연중

o 품종보호제도 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개최 : 2013. 3~4월, 10~11월

〈 붙임 1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현황(2012년)

구분 연번	기관명	자원명	수집자원 구분	보존점수	지정년도	지정기관
1	㈜ 참농지기	대추나무	영양체	18품종 280점	2010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	제주대학교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잔디 무궁화	종자, 영양체	5품종 84점 6품종 585점	2011년	〃
3	목포대학교 한약자원학과	약용식물	종자 영양체	178종 1,100점	2012년	〃
4	(재) 하동녹차연구소	차나무	영양체	12품종 1,300점	〃	〃
5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난대산림식물	영양체	10종 390점	〃	〃
6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용재수종	영양체	88수종 29,954점	〃	국립산림과학원
7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용재수종	영양체	17수종 100,657점	〃	〃
8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용재수종	영양체	2수종, 5,631점	〃	〃
9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용재수종	영양체 균주	3,668수종 13,270점 53종 195균주	〃	〃
10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도립화목원	강원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	국립수목원
11	경상남도 금원산생태수목원	경남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	〃
12	충청남도 금강수목원	충남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	〃
13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충북지역 희귀특산식물	종자 영양체	118종 69종	〃	〃
14	대구광역시 수목원관리사무소	경북지역 희귀특산식물	영양체	50종	〃	〃
15	전북산림환경연구소 대아수목원	전북지역 희귀특산식물	종자 영양체	100종 50종	〃	〃
16	기청산식물원	울릉도지역 희귀특산식물	종자 영양체	103종 62종	〃	〃
17	(재) 한택식물원	국내야생종	종자 영양체	100종 50종	〃	〃
18	제이드가든	경기동부권 야생종, 외국종자	종자 영양체	344종 105종	〃	〃
19	㈜ 아침고요수목원	백두산지역일원 야생종	종자 영양체	135종 93종	〃	〃
20	서울대학교 수목원	국내야생종	영양체	111종	〃	〃
21	신구대학교 식물원	무궁화, 라일락 품종 및 국내야생종	종자 영양체	105종 464종	〃	〃

〈 붙임 2 〉

품종보호제도

❑ 목 적

o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서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임.

❑ 배 경

o 『지적재산권보호』를 정한 WTO/TRIPs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

※ ’12년 11월 현재 70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02년 50번째 국가로 가입

❑ 추진상황

o ’06. 10월 UPOV 산림분야 종합대책을 수립

o ’08. 4월 행안부와 소요정원 및 조직 협의(4급, 33명)

o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직제개정(’08. 8. 12), 개원(’08. 9. 10)

지정·고시	산림청 소관 식물
’08. 3월 (15종)	떫은 감, 산수유, 밤, 느티, 벚, 단풍, 대추, 표고,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천마
’09. 5월 (일부제외)	복분자딸기 등을 비롯한 나무딸기류(Rubus屬)를 제외한 모든 산림식물
’12. 1월 (모든 종)	품종보호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역할

o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역할은 ① **품종보호제도 시행**, ② **산림유전자원의 관리**, ③ **채종원 조성 등 산림용종자 국가관리**

구 분	인 원	주 요 업 무
전 체	33명	품종보호와 산림자원관리로 녹색부국 창출
품종심사과	17명	신품종출원 심사, 개발 지원, 재배시험 등
종묘관리과	16명	산림종자 생산·유통, 산림유전자원관리

〈 붙임 3 〉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열티(royalty)

❑ 품종보호제도에 따른 로열티(royalty)란?

o 신품종 사용자가 개발자에게 내는 일종의 사용료임.

※ 법적근거 : 종자산업법 제62조(전용실시권) 및 제64조(통상실시권) 등

❑ 신품종 개발자는 전용·통상실시권을 통해 수익창출

① 전용실시권 : 개발자와 사용자의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고 금액은 개발가치에 따라 달라짐.

② 통상실시권 : 사용자가 상품(절화, 과실, 종자, 묘목 등) 판매량에 따라 개발자에게 주는 대가

사례1) 개발자와 1,000짜리 상품 500개에 대하여 통상실시 계약을 한 경우

☞ 로열티 : 1,000원×3%(로열티비율)×500개(계약수량) = 150,000원

☞ 납부방법 : 계약자와 사용자의 계약에 의해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 산림분야에서 예상되는 로열티 문제는?

o 산림분야는 ’08. 3 .1일자로 밤, 대추, 감, 느티, 표고버섯, 쑥 등 15종을 시작으로 ’12. 1. 7일자로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고시(농림부 고시 2011-178, ’11. 11. 2)

o 지적재산권(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에 등록해야 하지만 산림분야는 아직 외국 개발 품종이 국내에 등록된 사례가 없어 로열티 지불사례는 없음. 그러나 현재 4건 (대추1, 표고1, 기린초2)의 외국품종이 출원되어 현재 재배시험 중에 있음.

- 품종보호출원에서부터 신품종 요건 심사와 재배시험(DUS test) 등을 거쳐 등록까지는 평균 2~3년이 소요되고 외국품종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거나 상품성 등 경제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로열티 부담이 적어짐.

※ ’08년도에 출원된 일부가 재배시험을 마치고 ’12년까지 10개의 품종이 등록됨(밤나무9, 곰솔1).

❑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한 사전 요건 및 절차

- 품종명칭(Denomination : 반드시 하나의 품종명칭을 가질 것), 신규성(Novelty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일 것)
- 재배시험(DUS test)
  ·신품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인 구별성[15], 균일성[16], 안정성[17] 등을 확인하기 위한 Field test.

품종보호출원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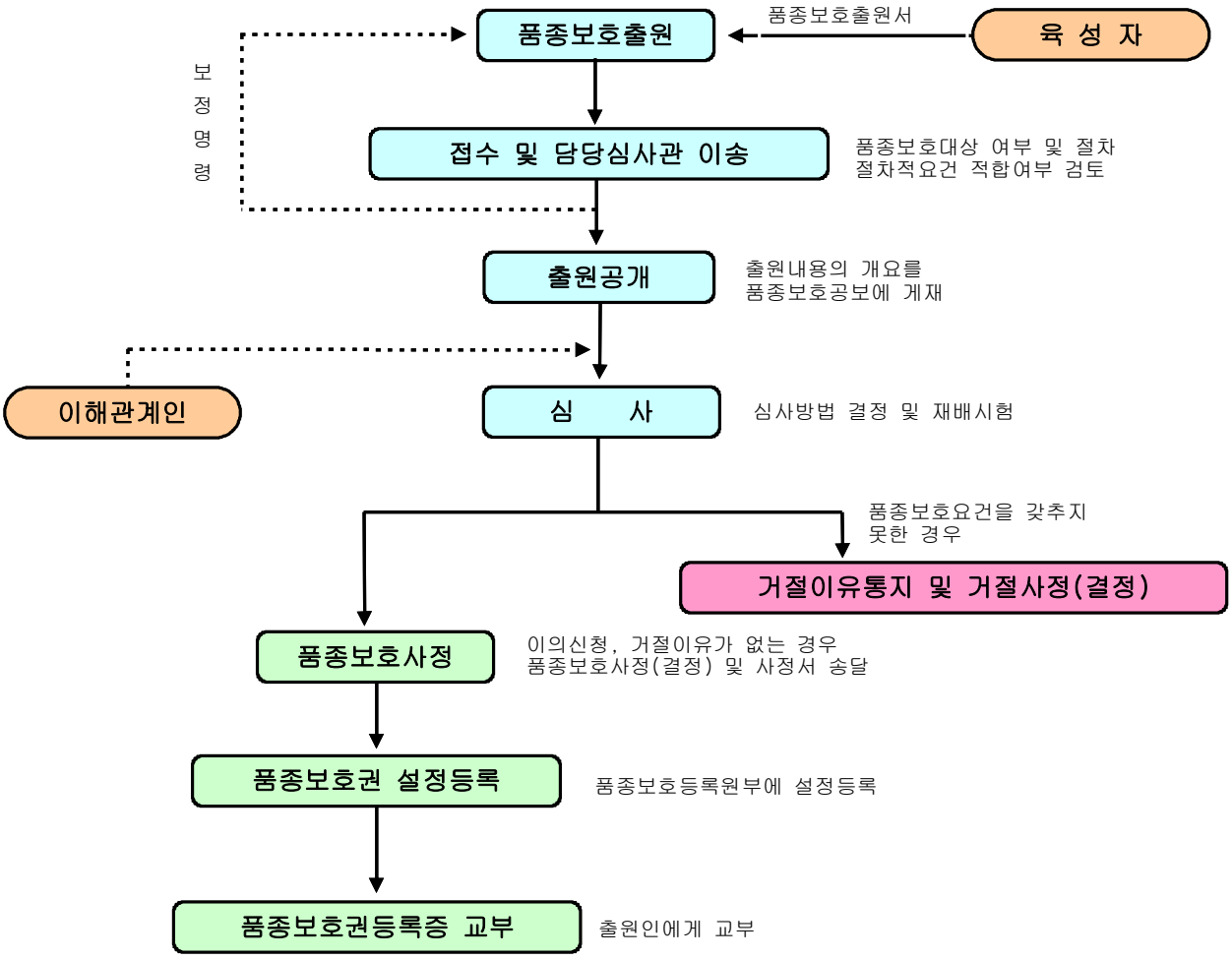

□ 품종보호존속기간 : 20년(과수, 임목은 25년)

15) 구별성(Distinctness) : 알려져 있는 다른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별될 것

16) 균일성(Uniformity) : 본질적인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할 것

17) 안전성(Stability) :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연차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변하지 아니할 것

〈 붙임 4 〉

품종보호출원 현황

No.	출원번호	종 명	품종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1	2008-01	밤나무	대한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4. 21
2	2008-02	밤나무	미풍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4. 21
3	2008-03	백운풀	백약	도****	2008. 5. 14
4	2008-04	표고버섯	하나참	㈜하나바이오텍	2008. 5. 26
5	2008-05	밤나무	대보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6. 9
6	2008-06	밤나무	박미1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6. 9
7	2008-07	밤나무	박미2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6. 9
8	2008-08	표고버섯	산림9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08. 7. 25
9	2008-09	표고버섯	산조702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8. 12. 5
10	2008-10	감나무	이대시	강****	2008. 12. 10
11	2008-11	감나무	대흑시	이****	2008. 12. 10
12	2008-12	황해쑥	섬애	배****	2008. 12. 31
13	2008-13	황해쑥	사자발1호	강화군수	2008. 12. 31
14	2008-14	황해쑥	싸주아리1호	강화군수	2008. 12. 31
15	2008-15	애기기린초	백두애기	박****	2008. 12. 31
16	2008-16	애기기린초	금강	박****	2008. 12. 31
17	2008-17	벌개미취	왕무늬	박****	2008. 12. 31
18	2008-18	벌개미취	햇살	박****	2008. 12. 31
19	2009-1	표고버섯	산조103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2. 26
20	2009-2	표고버섯	산조108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2. 26
21	2009-3	표고버섯	산조109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2. 26
22	2009-4	표고버섯	산조701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2. 26
23	2009-5	표고버섯	HS607	우치보리 ******** 다카노 ******	2009. 2. 26
24	2009-6	표고버섯	산림7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2. 26
25	2009-7	표고버섯	산림10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2. 26
26	2009-8	감나무	상감둥시	경상북도지사	2009. 2. 26
27	2009-9	감나무	수홍	경상북도지사	2009. 2. 26
28	2009-10	감나무	미려	경상북도지사	2009. 2. 26
29	2009-11	감나무	상주둥시	경상북도지사	2009. 2. 26
30	2009-12	밤나무	연청	충청남도지사	2009. 2. 26
31	2009-13	밤나무	왕률	충청남도지사	2009. 2. 26
32	2009-14	밤나무	만중	충청남도지사	2009. 2. 26

No.	출원번호	종 명	품종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33	2009-15	밤나무	추광	신****	2009. 2. 26
34	2009-16	밤나무	대명왕밤	변****	2009. 2. 26
35	2009-17	곰 솔	안수미금송	송****	2009. 6. 3
36	2009-18	곰 솔	안수황금송	송****	2009. 6. 3
37	2009-19	곰 솔	안수호반송	송****	2009. 6. 3
38	2009-21	주 목	금빛노을	박****	2009. 6. 29
39	2009-22	잔 디	홍띠	강****	2009. 7. 27
40	2009-24	털부처꽃	드와르프 핑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09. 8. 3
41	2009-25	대추나무	까오숭6호 티엔신	까오숭구 농업개량장 황****	2009. 8. 11
42	2009-26	잔 디	필버그	이****	2009. 8. 12
43	2009-27	소나무	학솔	임****	2009. 8. 14
44	2009-28	곰 솔	대송석화	김****	2009. 8. 24
45	2009-29	먼나무	금부	김****	2009. 10. 9
46	2009-30	표고버섯	산조110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10. 29
47	2009-31	표고버섯	가을향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11. 9
48	2009-32	산양삼	지동	강****	2009. 11. 9
49	2009-33	구절초	국야선녀	이****	2009. 11. 25
50	2009-34	구절초	국야연가	이****	2009. 11. 25
51	2009-35	좀개미취	국야청파	이****	2009. 11. 25
52	2009-36	음나무	청송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12. 24
53	2009-37	음나무	청산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12. 24
54	2009-38	음나무	청순1	국립산림과학원장	2009. 12. 24
55	2009-39	감나무	거묵둥시	김****	2009. 12. 21
56	2009-40	금잔디	세밀	최****	2009. 12. 23
57	2009-41	표고버섯	참아람	산림조합중앙회장	2009. 12. 23
58	2009-42	지리대사초	카지노	박****	2009. 12. 31
59	2009-43	등골나물	스네이크	박****	2009. 12. 31
60	2009-44	억새	파도	박****	2009. 12. 31
61	2009-45	인동덩굴	스마일	박****	2009. 12. 31
62	2009-46	주름잎	화이트체크	박****	2009. 12. 31
63	2009-47	부처꽃	탑	박****	2009. 12. 31
64	2010-1	곰솔	서주황금솔	유****	2010. 2. 2
65	2010-2	곰솔	황심솔	유****	2010. 2. 2

No.	출원번호	종 명	품종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66	2010-3	아까시나무	유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0. 3. 16
67	2010-4	아까시나무	지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0. 3. 16
68	2010-5	아까시나무	대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0. 3. 16
69	2010-6	아까시나무	서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010. 3. 16
70	2010-7	감나무	옥시	박****	2010. 4. 1
71	2010-8	밤나무	장원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4. 15
72	2010-9	밤나무	자홍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4. 15
73	2010-10	산사나무	대홍	황****	2010. 4. 30
74	2010-11	장수버섯	장생	농촌진흥청장	2010. 4. 30
75	2010-12	표고버섯	지앤에이01	김****	2010. 5. 20
76	2010-13	돌나물속	보수초	백****	2010. 6. 4
77	2010-14	소나무	우림황금1호	임****	2010. 6. 9
78	2010-15	대추나무	황실	정****, 김****	2010. 7. 9
79	2010-16	소나무	향곡송1호	김****	2010. 8. 4
80	2010-17	소사나무	후광	김****	2010. 10. 5
81	2010-18	사스레피나무	황청목	김****	2010. 10. 5
82	2010-19	상수리나무	미설목	김****	2010. 10. 5
83	2010-20	표고버섯	에이치비엘이1호	㈜하나바이오텍	2010. 10. 6
84	2010-21	표고버섯	에이치비엘이2호	㈜하나바이오텍	2010. 10. 6
85	2010-22	우묵사스레피나무	백산	백****	2010. 10. 6
86	2010-23	구절초	국야명진	이****	2010. 10. 13
87	2010-24	구절초	국야상월	이****	2010. 10. 13
88	2010-25	개미취	국야청해	이****	2010. 10. 13
89	2010-26	해국	국야백해	이****	2010. 10. 13
90	2010-27	좀개미취	국야백파	이****	2010. 10. 13
91	2010-28	금꿩의다리	서동명	서****	2010. 10. 27
92	2010-29	현사시나무	소생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0. 20
93	2010-30	현사시나무	호매실1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0. 20
94	2010-31	헛개나무	풍성1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0. 29
95	2010-32	헛개나무	풍성2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0. 29
96	2010-33	헛개나무	풍성3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0. 29

No.	출원번호	종 명	품종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97	2010-34	표고버섯	수향고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1. 15
98	2010-35	표고버섯	여름향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1. 15
99	2010-36	표고버섯	천백고	국립산림과학원장	2010. 11. 15
100	2010-37	감나무	황금초롱	이****	2010. 11. 29
101	2010-38	표고버섯	산조704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10. 12. 23
102	2011-1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	국립산림과학원장	2011. 1. 17
103	2011-2	백화등	비룡	배****	2011. 1. 19
104	2011-3	표고버섯	소룡원	박****	2011. 3. 22
105	2011-4	표고버섯	산조705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11. 4. 4
106	2011-5	표고버섯	산조706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11. 4. 4
107	2011-6	표고버섯	산조111호	산림조합중앙회장	2011. 4. 4
108	2011-7	소나무	서주지룡송	유****	2011. 9. 1
109	2011-8	어리병풍	제왕1호	이****	2011. 9. 1
110	2011-9	꾸지뽕나무	봉황1호	전****	2011. 9. 1
111	2011-10	꾸지뽕나무	봉황2호	전****	2011. 9. 1
112	2011-11	두릅나무	해뜰날3호	(주)해뜰날참두릅영농조합 정****	2011. 9. 30
113	2011-12	소나무	행복	김****	2011. 11. 2
114	2011-13	말오줌때	백황	김****	2011. 11. 2
115	2011-14	대추나무	천황	인****	2011. 11. 2
116	2011-15	마가목	개운	국립산림과학원장	2011. 11. 3
117	2011-16	마가목	상운	국립산림과학원장	2011. 11. 3
118	2011-17	마가목	명운	국립산림과학원장	2011. 11. 4
119	2011-18	밤나무	한가위	김**** 등 4인	2011.11.3
120	2011-19	표고버섯	다산향	박**** 등 4인	2011.11.16
121	2011-20	표고버섯	천장1호	박**** 등 4인	2011.11.22
122	2011-21	표고버섯	풍년고	박**** 등 4인	2011.11.22
123	2011-22	개미취	백자원	최****	2011.11.22
124	2011-23	구절초	티엔이피에이치알101	최****	2011.12.6
125	2011-24	기린초	돗토리후지타1고우	후지타 ****	2011.12.6
126	2011-25	기린초	돗토리후지타2고우	후지타 ****	2011.12.15
127	2011-26	곰취	태곰	신****,우****	2011.12.15
128	2011-27	표고버섯	산조 303호	고**** 등 7인	2011.12.15
129	2011-28	표고버섯	산조 707호	노**** 등 8인	2011.12.22
130	2011-29	산초나무	한초 10호	한****	2011.12.22
131	2012-1	동자꽃	흰각시	박****	2011.12.26
132	2012-2	동자꽃	미려	박****	2012.1.5
133	2012-3	쪽	나람블루	김**** 등 4인	2012.1.5
134	2012-4	곰취	쌈마니	서**** 등 6인	2012.2.13
135	2012-5	곰취	다목이	서**** 등 6인	2012.2.27

No.	출원번호	종 명	품종명칭	출원인	출원일자
136	2012-6	곰취	곰마니	서종택 등 6인	2012.2.27
137	2012-7	감나무	금홍동시	이기우 등 6인	2012.2.27
138	2012-8	감나무	연홍반시	이기우 등 6인	2012.3.26
139	2012-9	감나무	선홍둥시	이기우 등 6인	2012.3.26
140	2012-10	원추리	황춘	김현진 등 5인	2012.3.26
141	2012-11	찔레꽃	노을향기	김현진 등 6인	2012.3.27
142	2012-12	털머위	오로라	김현진 등 6인	2012.3.27
143	2012-13	비비추	월출	김현진 등 6인	2012.3.27
144	2012-85	다래	청가람	엄남용 등 4인	2012.3.27
145	2012-107	잔대	하랑	이희두 등 5인	2012.2.1
146	2012-140	원추리	옐로썸머	이진재 등 8인	2012.2.8
147	2012-141	원추리	스칼렛썸머	이진재 등 8인	2012.2.23
148	2012-142	원추리	오렌지썸머	이진재 등 8인	2012.2.24
149	2012-14	꾸지뽕나무	대품	이야성 등 10인	2012.2.24
150	2012-15	표고버섯	선우	장미향 등 10인	2012.5.3.
151	2012-16	표고버섯	선형	장미향 등 10인	2012.5.3.
152	2012-17	털목이버섯	풍운	장미향 등 10인	2012.5.3.
153	2012-18	털목이버섯	품작	장미향 등 10인	2012.5.3.
154	2012-19	백리향	산유청향	김용연	2012.5.3.
155	2012-20	소나무	우림황금2호	임희원	2012.6.4
156	2012-21	구절초	웅진선모	류창선	2012.6.11
157	2012-22	감나무	무안미목	김정일	2012.10.10
158	2012-23	찔레꽃	해피폴	박공영	2012.10.15
159	2012-24	복분자 딸기	정금1호	김세현 등 4인	2012.10.17
160	2012-25	복분자 딸기	정금2호	김세현 등 4인	2012.10.15
161	2012-26	복분자 딸기	정금3호	김세현 등 4인	2012.10.15
162	2012-27	복분자 딸기	정금4호	김세현 등 4인	2012.10.15
163	2012-28	복분자 딸기	정금5호	김세현 등 4인	2012.10.15
164	2012-29	호두나무	영동	황석인 등 3인	2012.10.15
165	2012-30	호두나무	보름달	황석인 등 5인	2012.10.15
166	2012-31	호두나무	칠선	황석인 등 5인	2012.10.15
167	2012-32	감나무	사랑시	송인규 등 5인	2012.10.15

15. 남북 산림협력 사업

목 표

◇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한 제도 및 대북용 종묘 준비를 통해 한반도 녹화 기반 마련**

가. 정책여건

o 북한의 산림 황폐는 한반도 생태계 단절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며 향후 남북통일 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함

- 산림 황폐는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산사태 등 재해 피해를 가중하여 농업, 사회 기반 시설을 파괴함으로서 사회 불안을 야기

o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산림 협력은 비정치적 분야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실질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나. 추진방향

o 안정적인 북한 산림 복구 준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o 남북 관계 개선에 대비한 대북용 종자 및 묘목 준비

o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담당자 교육 훈련

o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할 연구 진행

다. 세부추진계획

1)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산림 협력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o 산림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북한 산림 협력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o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에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통일부 등과 협의하여 산림분야 남북 간 대화채널 마련

o 새 정부 대북 정책에 기반한 남북 산림 협력 기본 계획 및 단계별 로드맵 마련

2) 대북용 종자 확보 및 묘목 생산 확대

o 지방청은 잣, 아까시, 싸리 등 대북용 종자를 일반 산림용 종자와 병행 채취하고 생산지를 표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이송하여 저장

- 국립품종관리센터는 채취된 종자에 대한 발아 실험 실시

※ 채취된 종자별로 저장기간 종료 시 전량 폐기

o 한대 수종(대북용) 묘목 생산 및 북한용 유실수 시범 양묘 확대

- (신규) 한대 수종(대북용) 묘목 생산을 위한 산간양묘장 조성

※ 대관령, 양구 등 북한과 가깝고 기후대가 비슷한 지역에 조성

- (확대) 평창, 용문, 춘양 양묘장의 대북용 포지 내에 블랙초코베리, 블루베리, 비타민, 호두 등 유실수 시범 양묘

※ 3개 양묘장에 북한용 포지 5,000㎡ 조성 완료('12)

- (전환) 직영화 대상 양묘장 중 춘천양묘장을 대북용 묘목 생산 기지로 활용 검토

3)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사업 역량 강화

o 지자체 및 민간단체 주관으로 추진하는 대북사업(양묘장조성, 병해충 방제, 조림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 전수

- (양묘장 조성) 양묘장 적지, 수종별 양묘 시업방법, 토양·양묘포지 관리 등 양묘장 조성과 묘목생산과 관련된 전문가 자문 등
- (종자) 민간단체가 산림종자용 종자 구입 요청 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보관된 대북용 종자 공급
- (병해충 방제 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산림병해충 피해 판단 및 피해지 조사를 요청할 경우 산림청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지원

o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남북 산림 협력 사업의 시너지 효과 제고

o 대북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북한 산림 및 임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상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 추진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계관 간담회 개최 계획(안)〉

- 대상 : 산림청,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민간단체 관계자
- 내용 : 추진 실적,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 교환

〈남북 산림협력 관계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 ’12. 5. 27 ~ 5.31
- 대상 : 공무원, 녹색사업단 등 산하기관·단체 담당자 등
- 내용: 양묘, 조림, 협상능력, 인력관리 등에 대한 주제로 실시

4)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관련 정보 수집 및 간접적으로 북한 산림 복구 추진

o 북한 산림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 획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o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FAO를 통해 개도국(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개도국(북한) A/R CDM 및 REDD+ 워크숍 개최 및 교육 훈련 사업 실시
- A/R CDM, REDD+ 사업 추진을 위한 양묘장 및 시범사업 추진

※ FAO와 개도국(북한)의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사업 진행 중(’09~’13)

〈북한 내 A/R CDM 등 기후변화 역량 강화 사업 여건〉
o ’05년 제18차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일방(Unilateral CDM)’ 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북한에 조림 CDM 사업이 가능함
o ’08년 북한 내 국가 CDM 사업 승인기구(DNA)가 설치됨

5) 북한 관련 연구 및 북한 산림 복구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전개

o 국립산림과학원 등을 통해 남북 산림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자료 구축 등을 위한 연구 진행

-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정세 및 상황변화 대응 산림복구 지원 모델 개발

o 식목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산림황폐 실태를 홍보하여 북한 나무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오피니언 리더로 하여금 북한 산림 복구 필요성에 대해 칼럼 및 기고

6)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한 공동 나무심기 등 추진

o 통일부 등 관계 부처, 북한과 협의하여 북한 산림복구 필요성 확산 및 남북 산림협력 교두보 확보를 위하여 남북 공동 나무심기 행사 추진

- 남·북한 공동 나무심기 및 종자·묘목을 지원하여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산림청 주관 공동 나무심기 행사(예시)

o 산림청 주관 공동 나무심기 행사(예시)
- 기　　간 : 식목일 전후(제68회 식목일과 연계하여 추진)
- 참여 단체 : 산림청, 민간단체(겨레의 숲, 미래숲 등 참여)
- 대상 지역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지원 묘목 : 잣나무 대묘 또는 상록수

o 북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자재 및 기술 인력 지원

라. 추진일정

o 북한 산림 복구 등 남북 산림 협력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중

o 북한 산림복구 대비 종자·양묘 계획 수립 : 2013. 2월

o 남북관계 개선 시 공동 나무심기 행사 추진 : 2013. 3~4월

o FAO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능력배양 운영 : 2013. 상반기부터

o 북한 산림복구용 종자 채취·저장 : 2013. 11월

o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계관 간담회 개최 : 연중

o 남북관계 개선시 대북 산림협력사업 지원 : 연중

o 남북산림협력관련 홍보활동 전개 : 연중

16.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 운영

목 표

◇ **저비용 고효율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체계 및 모델 개발**

◇ **시범경영계획구 운영 정착 도모 및 국유림내 확산 추진**

- 조림(100ha)·숲가꾸기·벌채 등 통합실행, 24억원 -

가. 정책여건

o 현재의 영급구조는 숲가꾸기 등 가꾸는 시기가 중심인 3~4영급이 대부분이나, 10년 후에는 목재생산을 통한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5~6영급이 주류를 이루는 시기가 도래

o 산림녹화와 산지자원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산림에서 소득을 얻어낼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새로운 산림정책과 경영기법 개발 필요

o 국유림에서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상을 제시하고 공·사유림으로 확산하여 임업선진국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o 시범경영계획구별 특성에 맞는 경영목표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실시

o 저비용 고효율 산림사업 및 경영관리 기법의 개발 지속 추진

o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시범경영계획구 운영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 경영계획 확정 및 실시

o 산림조사, 전차기 분석,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경영계획구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시범경영계획 확정

- 계획구별 경영전문관이 수립한 경영구상안에 대한 발표·보고회 개최(1월)

o 확정된 경영계획에 따라 벌채, 조림 등 시범사업을 실행

- 계획구별로 수립한 경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내실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경영계획 수정·보완
-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도 등 기반시설 확대

2) 저비용 고효율 산림사업 및 경영관리 기법의 개발 지속 추진

o 대학교수,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로 계획구별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 강화 및 고효율 경영관리 및 산림작업방법 모색

- 경영전문관, 과학원, 컨설팅팀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지속 추진

o 작업방법의 현장적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및 공유

- 학계·연구기관·현장이 융합될 수 있도록 R&D사업과 연계 추진

3)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시범경영계획구 운영 확산

o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 운영 및 경영전문관 책임경영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각종 지침 등의 개정 및 행정지원 강화

- 경영전문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국유림관리소 조직체계 개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등 행정장비 등을 적극 지원

o 시범경영계획구 운영 성과분석·환류 및 국유림내 확산 추진

- 경영계획구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
- 지방산림청 실정에 따라 시범경영계획구를 추가 지정하여 운영 확산

라. 추진일정

o 국유림시범경영계획구 경영구상 발표회 : 2013. 1월

o 시범경영계획구별 사업 추진 : 2013. 2~11월

o 경영계획구별 현장토론회 : 2013. 2~11월

o 경영전문관 정책연수 : 2013. 6월

o 2013년 상·하반기 성과보고회 : 2013. 7월, 12월

〈붙 임〉

국유림 시범경영계획구 현황

(단위 : ha)

국유림 시범경영계획구					비고
지방청별	계획구명 (국유림관리소)	면 적	임·소반	전문관	
	6개구	31,389	169개임반	8명	
북부청	가리산 (홍 천)	6,564	25개임반 562개소반	2명	
동부청	봉 평 (평 창)	8,628	71개임반 320개소반	2명	
	가리왕산 (평 창)	4,026	23개임반 193개소반		
남부청	장군봉 (영 주)	8,376	37개임반 243개소반	2명	
중부청	샘봉산 (보 은)	1,131	1개임반 63개소반	1명	
서부청	민주지산 (무 주)	2,664	12개임반 164개소반	1명	

17. 임업진흥권역 관리

목 표

◇ 임업진흥 지역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으로 사업실행 기반 마련
◇ 임업진흥권역 도면 및 대장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

가. 정책여건

o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목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임업진흥권역을 내실있게 관리하여 체계적인 산림사업 추진 필요

o 임업진흥권역 내 산림소유자의 경영관리 욕구는 산림자원의 조성·육성뿐만 아니라, 휴양 등 산림의 적극적 이용증가 등 수요가 다양해지는 추세

나. 기본방향

o 임업진흥권역을 임산물 생산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각종 산림사업의 체계적 실행

o 국고보조금 산림사업 우선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임업진흥권역 관리

o 임업진흥권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면 및 대장 정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지역별 임업진흥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o 지역별 임업진흥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기반 마련
- 지역별 진흥계획 및 시·군 실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의견수렴 및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수립방법 및 계획의 내용 등 확정
- 임업진흥 실행계획 수립 지침 또는 매뉴얼 제작·보급

o 제3차 임업진흥계획('08~'17)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별 진흥계획 및 시·군 실행계획 수립
- 시·군에서는 보급된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
  ※ 지역별 임업진흥계획 및 시·군 실행계획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법정의무계획임

2) 임업진흥권역에 대한 산림사업 체계적 추진 및 관리

o 임업진흥권역별 지역특성, 산림소유자의 수요, 제3차 임업진흥계획의 지역별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2013년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1월)
  - 조림·숲가꾸기 등 각각의 사업예산 및 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임업진흥권역에 우선 반영 추진

o 조림·숲가꾸기 등 개별 사업계획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3) 임업진흥권역의 체계적 관리

o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른 도면 및 대장 관리 철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 관리요령」 및 '임업진흥권역 관리 업무매뉴얼' 에 따라 체계적 관리
  - 2012년도말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상황 등 관리현황을 2013. 1. 20까지 보고(시·군→도→산림청)

o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권역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방안 마련(10월)

라. 추진일정

o ' 12년도 임업진흥권역 사업 추진실적 및 관리현황 보고 : 2013. 1. 20일까지

o 임업진흥 실행계획 수립 지침 또는 매뉴얼 제작·보급 : 2013. 6월

o 지역별 진흥계획 및 시·군 실행계획 수립 추진 :2013. 6월부터

o 임업진흥권역 관리방안 마련 : 2013. 10월

18.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목 표

◇ **목재펠릿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 o 보급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목재펠릿 수요 확대
- o 목재펠릿 소비자 신뢰 구축 및 보일러 품질 향상

◇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 o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통한 산림바이오매스 원료 공급 기반 확충
- o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을 통한 목재펠릿 가격 경쟁력 확보

가. 정책여건 (신명조, 16포인트 진하게)

- o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 중요성 대두
- o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1% 보급을 골자로 한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2008.8.)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는 조기에 성과 창출이 가능
- o 최근 신재생에너지 목재펠릿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원료 공급처 확보의 필요성 증대

나. 기본방향

- o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관시스템 구축 확대
- o 목재펠릿 수요 다변화를 통한 이용 저변 확대 및 소비량 증대
- o 목재펠릿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홍보 활동 전개
- o 목재펠릿 수요 급증에 대비, 공급 체계 구축 및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목재펠릿 수요 확충을 위한 난방기(보일러, 보급) 보급

- o (지방자치단체 보급사업) 농산어촌 주택용,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구 분	주택용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용
보급 대상	농산어촌 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주거 지역
보일러 용량	20,000Kcal/hr 내외	20,000Kcal/hr 내외	-
보급량(예산)	2,000대 (2,820백만원)	300대 (705백만원)	1개소 (150백만원)
기준단가	4,700천원	4,700천원	300,000천원
지원율(%)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50/20/30

* 주택용,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산림청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12.12월 현재 5개) 제품만을 보급

* 도시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가능

*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가능

*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은 30가구 이상 집단 주거 지역에 설치하되, 필요 시 10가구 이상 집단 주거 지역에도 설치 가능

o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목재펠릿의 연중 대량 소비가 가능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12.12월 한 달간 공모를 통해 2013년 지원사업 대상 업체 선정

  ※ 후보업체를 동시 선정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

- 목재펠릿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해 보급 대상을 확대

  ※ 스팀보일러 : (기존) 1톤/hr 이상 → (변경) 0.5톤/hr 이상

  ※ 스팀보일러용 연소기 : (기존) 1톤/hr 이상 → (변경) 삭제

  ※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 (기존) 60만Kcal/hr 이상 → (변경) 20만kcal/hr 이상

- 보일러 지원대상 업체와 목재펠릿 제조업체간 계약 체결 의무화

  ※ 공모 신청 시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MOU 체결하고,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에 MOU 체결업체와 목재펠릿 계약 체결 의무화(사용량의 30% 이상을 3년간 의무 사용)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민간보조(산림청)

- 보급량 및 예산 : 40대(스팀 2톤/hr 기준), 60억원

- 지원단가(지원조건) : 3억원/대(국고 50%, 자부담 50%)

o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목재펠릿 보급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공공 기관에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 2012년 말까지 수요 조사 후 필요 기관에 보급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국가직접(산림청)
- 보급량 및 예산 : 보일러 5대(530백만원), 난로 100대(200백만원)
- 지원단가 : 보일러 106백만원/대, 난로 2백만원/대
- 지원조건 : 국고 100%

2) 목재펠릿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시설 효율개선 사업 지원

o 2012년 11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 신영이앤피(충북 청원) :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 규모 증설(2톤→4톤)
- 단양산림조합 : 자동포장 시설 설치, 투입 이송라인 개선 등
- 세종시산림조합 : 목재 파쇄기 설치, 목재펠릿 저장 시설 증설 등

o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보조(해당 시·군)

o 예산 및 지원조건 : 1,2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 목재 에너지림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o 새만금 지역, 주요 강유역 등 유휴토지에 목재 에너지림 50ha 조성
- 새만금 지역 45ha, 수변 구역 4ha, 도로변 유휴 토지 1ha
  ※ 이태리 포플러, 버드나무 등 속성수 50만본 식재
- 식재·관리 기계장비를 활용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생산 비용 절감

o 목재 에너지림 조성과 연계 인근 지역에 산림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가공·이용 및 전시·홍보·체험 공간으로 조성
- 2013년 기본 조사 및 실시 설계를 통한 효율적 사업실행 방향 제시

4) 목재펠릿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o 소비자 신뢰 구축 및 산업용 보일러 품질 향상을 위한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 기준' 마련
- 인증 기준 마련하여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에 인증 요구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에너지기술연구원)

o 부도 등 보일러 제조업체 폐업에 대비 등록 관련 서류 제출 강화
- 인증받은 보일러 설계도서
-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업체명, 연락처)
- PCB에 대한 로직 정보·샘플 및 제어기 부착 센서에 대한 정보

o 발전소 등 대규모 목재펠릿 수입에 대비 목재펠릿 품질기준 개정
- 무기물 함량(비소·수은 등 중금속 8종)에 대한 기준 마련
- 임산부산물 펠릿에 대한 품질 기준 추가 개정
※ 국립산림과학원장 고시를 개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 예정

o 목재펠릿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 기준 마련
※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14년부터 시행 예정

o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폐업 업체 보일러 등에 대한 A/S 강화
- A/S 전담반에 상시 A/S 기사를 1명 고용하여 운용
- 사후관리모니터링위원회가 하자보수보증보험을 통한 A/S 비용 청구를 대행하는 등 불량 업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토록 조치

o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목재생산업 등록제' 도입('13.5월 시행)
- 보급사업으로 보급한 보일러 사용자는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제품 중 품질·규격에 부합된 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
- 품질을 조사하여 수시로 유통되는 펠릿에 대한 품질검사·공표

o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제도 운영방안 마련
- 목재펠릿 제품에 탄소발자국과 탄소흡수량을 표시하도록 조치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시 일정량 이내의 탄소가 소요된 제품을 30%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제도 마련 후 '13년 하반기부터 시행

라. 추진일정

o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2013. 1월

o 목재펠릿 보일러 A/S 전담반 상시 기사 고용 : 2013. 1월

o 목재펠릿 품질기준 개정 : 2013. 1월

o 목재 에너지림 조성 춘기 식재 : 2013. 4월

o '목재생산업 등록제' 도입 : 2013. 5월

o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인증 기준' 마련 : 2013. 10월

o 목재 에너지림 조성 추기 식재 : 2013. 10월

o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 점검 : 상·하반기 2회

19. 국산 목재의 안정적 수급 관리

목 표

◇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2016년 자급률 20% 달성(’13년 17% 달성 목표)
◇ **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목재 공급으로 목재 이용 확대**

가. 정책여건

o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 규제, 자국의 자원 보호 등으로 목재 수입 여건 악화

o 신재생에너지의무사용제도(RPS) 도입으로 인해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급증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친환경 목재 이용 활성화 및 목재산업 진흥 기반 마련

o 친환경 소재인 목재 활용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용은 증대되나 벌채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벌채 확대는 어려운 실정

나. 기본방향

o 벌채 제도 개선 및 산주 지원을 통해 벌채 확대 유도

o 국내외 목재류 수입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목재 수급 조절로 능동적 대처

o 목재이용 캠페인 등을 통한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목재 생산 확대

o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목재 수요 예측과 공급으로 안정적 수급

o 임목부산물의 적극 활용을 통해 늘어나는 목재 바이오매스의 원료난에 대처

다. 세부 추진계획

1) 목재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 및 국산재 공급 확대

o 국내 목재생산 잠재력을 고려한 목재수급 전망 수립

- 목재 자급률 : (’12) 16% → (’13) 17%
- 국산재 생산량 : (’12) 4,450천㎥ → (’13) 4,900천㎥
- 국유림의 목재 공급 확대 : (’12) 61만㎥ → (’13) 70만㎥
  ※ 입목처분·직영벌채 공급 확대 : (’12) 128,600㎥ → (’13) 135,600㎥

o 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한 목재생산 정책 추진
- 제재용 목재 수요는 감소하고 한옥용 등 특수용재 수요 증가
- 펄프·칩, 산림바이오에너지용 등 파쇄된 목재를 활용하는 시장 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임목 부산물 생산 활성화

o 자연재해 피해목, 수익간벌지 등 벌채되어지는 입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벌채 산물의 이용을 증대
- 태풍 및 설해 등 자연 재해 피해목에 대하여 신속한 보고 체계 정비
- 긴급 벌채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피해목을 통해 산주 소득 확보

2)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목재산업 기반 구축

o 친환경 벌채 설계·감리제도 확대를 통해 벌채사업 품질 향상
- ’12년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반영
- 설계·감리비, 기계화 작업로 단비를 현실화하고 사유림 지원 확대
  ※ 국유림 50ha(5개 지방청), 사유림 300ha(8개도)

o 개선된 원목 규격에 따른 목재가격을 매각 기관 및 산주에게 정보 제공
- 국내 원목을 수종별·용도별로 산원가격, 분기별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제공하므로 지방청 시가 조사 부담을 줄이고, 산주·매각자에게 정보 제공
- 원목 규격 개선에 따른 임업 기능인 및 담당자에 대해 권역별로 교육 실시

o 기존 대금사정 프로그램(엑셀)을 간소화하여 국가산림자원화를 통해 전산시스템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
- 과거 불합리한 인자를 현행화 · 간소화하고 기초 금액 산정을 최소화

o 목재 관련 통계 자료의 정확도 제고
- 주요 목재 수출입국에 대한 목재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입 여건에 민감한 목재 산업체의 수급 변화에 대응
- 목재이용 실태조사는 펠릿, 산림에너지용도 업종을 확대하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기관인 임업진흥원으로 위탁조사를 추진

라. 추진일정

o ’13년도 목재수급전망 수립을 위한 기관별 수요 조사 : 2012. 12월

o 목재이용실태조사 및 원목 시가 위탁조사(임업진흥원) 실시 : 2013. 1월

o 대금사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T/F 운영(정보통계팀) : 2013. 1～12월

o ’13년도 목재수급 및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심의회 개최 : 2013. 1월

o ’13년도 원목 품등 규격 적용에 따른 지방청 순회교육 : 2013. 1～2월

o ’13년도 목재수급 점검 및 간담회 개최 : 2013. 5월, 9월

o 입목벌채허가신고실적 및 용도별 목재공급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o 지방청 목재생산 분야 평가 : 2013. 11월

20. 목재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목 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기반 조성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저장고로서의 목재이용 활성화
◇ 종합적인 목재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하여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산업부문 탄소저감을 위하여 탄소저장고로서 목재이용 확대 필요성 대두

o 웰빙, LOHAS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더불어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생활용품, 목조주택(한옥) 등 목재이용 수요의 지속적 증가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나. 기본방향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o 기후변화 및 FTA에 대응하여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o 목재이용·가공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고품질 저가의 목재제품 생산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하여 목재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목재체험 공간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체계적인 목재산업 육성 정책 추진

o 벌목업 · 제재업 · 목재유통업 등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시행
- 목재생산업 종사자는 「목재법」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

o 목재이용·가공·유통시설 개선 및 현대화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목재제품 생산
- 목재유통센터(여주·동해) 및 목재집하장(전남 나주) 시설 보완

o 목재산업 클러스터화 및 목재전문 산업화 단지 조성 지원
- 인천 북항 배후단지 및 전남 장흥 목재산업화 단지

o 목재산업 육성 및 국산목재 사용 확대를 위한 임업정책자금 지원
- 목가공 시설, 국산원자재 구입 등 5개 분야 164억원

o 목재산업 분야 등록협회 사업현황 및 실태조사
※ ’12 목재산업 등록 법인 : 22개(사단 20, 재단 2)

2) 「목재법」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및 이행기반 구축

o 「목재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통계기반(통계청) 및 부패영향(권익위) 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o 전국단위 목재이용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 목재이용 전반 통계 ·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o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정책 종합심의를 위한 목재이용위원회 설치
- 목재이용 활성화 분야 및 목재산업경쟁력 분야 등 2개분과 20명

o 목재문화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 목재문화진흥회 설립을 위한 준비기획단 운영 (6개월)

3)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수요 촉진

o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목재제품 전체 품목으로 확대
- (’12) 4품목 → (’13) 8품목 → (’14) 15품목 → (’15) 17품목
※ 확대 품목에 대한 고시(안) 마련 및 공고

o 목재제품 조달 규격 및 품질 표준화를 통한 공공기관 수요 촉진
- 조달 납품 품목중 판재 및 각재류에 대한 규격 · 품질 기준 표준화

o 품질관리 집행력 제고 및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규격 · 품질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o 다양한 인증 · 인정제도 도입 ·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전통 목재제품 인증, 목재제품 명인 인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등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목재제품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 소비자단체, 산림청 등록 협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

4) 목재이용 촉진을 위한 「I LOVE WOOD」캠페인 추진

o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를 통하여 목재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목혼식 페스티벌, 목재산업박람회, 목재의 날, DIY 목공체험 등

o 목공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체험시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목재문화 체험장 5개소 조성, 목재체험교실 20개소 운영 등

o 「목재문화정보 시스템(e木구비)」 개선 및 이용자 접근성 강화

라. 추진일정

o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 2013. 1~5월

o "I LOVE WOOD"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

o '13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공모 : 2013. 2월

o '13년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주관 단체 공모 : 2013. 2월

o 인증 · 인정 제도 등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2013. 3월

o 목혼식 페스티발 개최 : 2013. 9월

o 목재산업박람회 계획수립 및 행사개최 : 2013. 10월

o 목재문화활성화 사업 추진성과 분석·평가 : 2013. 12월

o 목재문화정보 시스템(e木구비) 운영 : 연중

o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시행 : 연중

21. 임업기계화 촉진

목 표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 및 작업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o 기계장비 보급 : 256대(지방청 43, 지자체 213)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이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

o 사유림은 전문 인력 부족, 임도 등 작업여건 미비 등으로 국유림에 비해 임업기계화 수준은 낮은 실정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을 통한 기계화영림단 양성 및 기계장비의 보급으로 사유림 기계화 산물수집의 도입여건은 성숙

나. 기본방향

o 숲가꾸기 산물 수집량 증대에 대비한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o 사유림의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산물수집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

o 임업기계지원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내실 있는 운영

다. 추진계획

1) 임업기계장비 개발·보급 및 기계화영림단의 지속적 양성

o 임업기계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

- 「전간재 · 전목 집재시스템」과 「임업기계작업 품셈」, 「임업기계의 형식 승인 및 성능 인증 시스템」 개발 방안 마련
- 한국형 핵심 임업기계장비(프로세서, 임내차 등) 연차적 개발
- 임업기계장비 개발 시 소형 작업도구(덩굴제거 낫 등) 개발도 연구사업 추진

o 임업기계장비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구입 기종 선정(1월중)
- 기계장비는 지역실정, 사업량, 장비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
-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은 기본 장비를 세트화하여 보급 추진
· 기본 장비 셀 :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소형윈치, 2드럼 윈치류
- 화물차량·가공장비는 목재펠릿 제조시설이 있는 시·군에 우선 배정

o 임업기계장비는 상반기 중 구입완료 될 수 있도록 조달계약 등 조기발주
- 자체개발 장비는 제작기간, 성능검증 등을 고려하여 납품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생산업체와 사전에 조율
- 신규로 개발 보급된 구입 장비는 성능, 안전성 검증을 위해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수 조치
※ 기 개발되어 공식 검사필증 등이 있는 기계장비는 전문기관의 검수 제외

o 현재의 '기능인 영림단'을 '기계화 영림단'으로 단계적 전환 육성
- (민유림) : 기계화 시범사업 시군과 연계하여 도별 1개단을 양성
※ 시범사업 추진(시·군) : ('10) 8 → ('11) 16 → ('12) 24 → ('13) 32
- 선정된 기계화영림단에 대하여는 임업기계훈련원의 기계화영림단 과정 등 기계화 교육 과정을 우선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o 벌채목 대경화에 따른 적합한 기계의 집중 보급
- 중 · 소경목 집재장비에서 고성능 장비로 보급기종 전환

2) 기계화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o 지방청은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숲가꾸기 모델 숲 등에서 임업기계장비 실연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기계화 촉진

o 지자체별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확대 추진(24→32시군)
- 숲가꾸기 사업량, 임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도별 4개단씩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여 시범운영(특·광역시, 제주도 제외)
- 숲가꾸기 산물수집 장비는 기계화영림단을 양성하는 시군에 우선 배정, 기타 운반·가공장비 등은 지자체 수요 및 영림단 현황 등을 감안하여 배정
- 기계화영림단 운영 시 · 군에 대하여는 연중 사업이 가능하도록 숲가꾸기 사업량, 작업임도 등의 기반시설을 타 시·군보다 우선하여 배정
- 지자체별 현지 실정에 부합되도록 기계화 영림단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교육훈련, 장비구입, 산물수집 설계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
- 지자체별 보유 임업기계장비는 정책숲가꾸기 도급계약 시 산물수집이 계획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기간 중 산림조합 등에 장비 대여

o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 운영
- 원활한 사업 실행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기술자문평가단 및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지도 및 모니터링 실시
·기술자문평가단 : 공무원,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 분기별 지도
·기술지원반 : 국유림 기계화영림단 등으로 구성, 관할지역 순회지도

o 윈치류 등 산물수집 장비의 사용법 및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마련
- 소형 윈치류 및 트랙터집재기 사용법에 대한 현장 매뉴얼 작성

3) 임업기계장비의 보관 등 사후관리 철저

o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장비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 임업기계장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장비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 기관별 보유한 기계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내용연수 경과 장비 등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불용처리
-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용일지 기록관리

o 임업기계장비 보관 장비고 설치
- 장비고 등이 없어 장비가 분산 관리되거나 야외에 보관되고 있는 장비는 간이 장비고 또는 컨테이너를 확보하여 장비를 보관

4)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o 산림조합중앙회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의 기계화 중심점으로 육성
- 지자체의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량 등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자체 사업물량 확보에 노력
- 기계운전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강화 및 현장 토론회 등 실시
- 기계장비의 가동률 제고를 위하여 인근 지자체 및 일반산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홍보(산림지, 전문지, 등) 실시
- 상·하반기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o 지방산림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지방청 보유 중·대형 임업기계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청 소관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
- 북부·남부청에서는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성과를 반기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

5) 임업기계 오퍼레이터 민간자격 신설

o 임목생산시대 진입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의 기술수준 등을 인정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
-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o 추진체계
- 민간자격 신설 등록 후 국가공인자격으로 운영
·자격종목(3개) : 임업기계 오퍼레이터(우드그랩, 가선집재, 트랙터집재)
·자격관리자 : 임업기계훈련원
※ 「자격기본법」상 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

6)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등 임업인 지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임업기계장비 구입 등

o 산림조합에서는 산주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기계장비(동력기계톱 등 15종)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관련규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는「산림사업 종합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임업인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 지원자격 : 임업기계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지원조건
·임업기계장비 구입자 : 금리 3%,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30백만원)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 : 금리 4%, 융자비율 70%, 융자한도 100백만원)
※ 2013년도 종합자금 신청 : 2013. 1. 20일까지 해당 산림조합
- 자금용도
·임업기계장비 구입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산림경영·이용·가공용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금
※「생산」관련 대상 장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에서 정한 임업기계장비(15종)

나)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업무 철저

o 산림조합중앙회는 면세유류의 공정한 공급 관리를 위해 전년도 기종별 면세유 사용량을 종합 분석하여 산주 및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정

o 임업용 면세유류는 기획재정부에서 상·하반기 공급한도량 배정전이라도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o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 2회이상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타용도 등으로 부정사용 되지 않도록 지속적 지도·감독 철저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신고된 임업기계는 보유현황을 재신고(2년마다)토록 하고, 신고 기간내 재 신고하지 않은 임업기계는 면세유류 공급 대상에서 제외

라. 추진일정

o 임업기계장비 구입 : 2013. 6월까지

o 임업기계장비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o 임업기계장비 자체 실연회 및 토론회 : 수시

〈 지방산림청 보고 〉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임목생산 실적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3. 12. 31

〈 지자체 보고 〉

o 임업기계장비 구입상황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기계화 산물수집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고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3. 12. 31

〈 산림조합중앙회 보고 〉

o 2013년도 임업용 면세유류 한도량 신청 : 2013. 1. 18

o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 보고 : 익월 15일까지

o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 : 분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면세유류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 보고 : 2013. 12. 31일까지

o 임업기계장비보유 및 운영현황 보고 : 2013. 12. 31일까지

22. 전문 산림기술자 양성

목 표

◇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따른 숲가꾸기 등 녹색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산림기술자 양성**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o 제5차 산림기본계획('08~'17) : ('07) 10,000명 → ('17) 20,000명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 의 국가 비전 아래 마련된 "기후변화 산림종합대책"에 의한 숲가꾸기, 수종갱신 등 산림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도시 녹색공간 확충과 산림서비스 생산 증진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산림공원, 치유의 숲과 수목장림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 추진

o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전문화된 임업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양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o 영림단의 소득 및 고용제도 불안정 등으로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또한 산림사업 실행시 안전사고 재해율이 높은 편임

나. 기본방향

o 건전한 산림사업 법인체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기술자의 적정 수급 및 능력 함양으로 사업 품질 향상 도모

o 숲가꾸기, 산림서비스증진분야 등 산림사업의 확대 및 기계화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 및 영림단 조직·운영의 활성화

o 전문 임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로드맵 구축

- 다양한 산림수요를 담당할 분야별 전문기능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o 산림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교육시스템 및 전문 임업기능인력을 내실 있게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 정비 및 교육시설 확충

다. 세부추진계획

1)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투명한 관리
-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 및 산림기술자 자격 등록사항을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및 산림사업법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상시 지도·감독

o 산림정책 활용을 위한 산림사업별 수주실적 등 자료 조사

2) 산림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산림기술자 관리 및 지도 강화

o 「산림기술진흥법」 제정 등 관련 법 제 · 개정
- 산림분야 기술인력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 실태점검 및 산림기술자 이력관리
- 기술자격을 통합 관리하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o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

3) 임업기능인 양성 및 교육

o 녹색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산촌 지역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임업기능인으로 유도

o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전문 산림작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림단원들에게 임업기계분야 교육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

가) 기능인영림단 교육

o 기능인영림단원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과정별로 전문 산림기술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

o 산림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
- 영림단원 교육시 과목별 안전한 산림작업 실행요령 방법을 구성하고,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및 실습 시간을 확대 운영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사고예방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
- 산림분야 안전사고예방 요령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임업기능인 기술교재의 안전예방 분야를 재편

o 임업기능인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간담회) 정례화
- (개최시기) 그동안 추진되어 온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모여 교육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상·하반기)으로 간담회 개최
- (참석대상) 산림조합중앙회 및 3개 임업훈련원 등 이해당사자
- (주요과제) 임업기능인 교육내용, 교육생의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등

o 현장위주의 체험식 임업전문 교육훈련 실시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구성을 차별화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이론교육보다 숲을 보는 기술, 기계 활용 및 수리·정비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현장 교육 강화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기능인영림단원에 대한 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작업의 질 향상 및 교육이수자 이탈 등에 수시로 대비

o 교육훈련은 사업이 없는 시기(1~2월, 12월)에 집중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o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기술교육에 차질 없도록 비상체계 가동

o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경우 교육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실시

다) 산림경영자 양성

o 교육인원 : 100명(3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12주

o 교육기관 : 임업기계훈련원(강릉)
- 교육대상, 기간, 내용, 교육이수자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o 취업알선 홍보 등을 통해 현장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방안 강구

라) 산림토목기능인 양성

o 교육인원 : 60명(2회 교육실시)

o 교육기간 : 3주

o 교육기관 : 임업기술훈련원(양산)

o 교육내용 : 산림토목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능인력 양성

4) 영림단 조직·운영

가) ’13년 영림단 조직

o 민유림 영림단은 신규 조직 및 이탈인원에 대한 보강 : 10개단, 120명

o 국유림영림단은 기존 영림단의 이탈인원에 대하여 보강하되, 사업량 확대 등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조직 확대

나) 민유림 영림단 운영

o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소속 영림단의 임업기술능력 향상 및 영림단 구성요건 확보를 위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인원(전체 구성인원의 60% 이상)이 반드시 산림경영기술 2급 자격증 소지

o ’13년에 신규 조직된 민유림 영림단에 대한 산림사업 장비 지원(85백만원)

※ 산림사업 장비 : 안전장구(안전복, 안전화, 안전모 등), 기계톱, 예불기 등

다) 국유림 영림단 운영

o 국유림 영림단원의 안정적인 소득지원 방안 적극 추진

- 국유림 산림사업은 소속 기능인영림단을 적극 활용하되, 기계화영림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기계화 촉진을 유도
- 소득이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사업물량 책정
- 국유림 산림사업 관련「대행·위탁 사업에 관한 규정」제정

o 산림사업 계약 시 참여하는 영림단의 구성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실행 중에도 수시 점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3에 따라 국유림 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육성

5)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개최

o 개최시기 : 2013년 하반기

o 임업기능인의 기술발전 및 사기진작, 임업기계화 촉진 등을 위해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및 임업기계장비 실연회와 연계하여 추진

- 산지에서 임목생산 장비 등을 활용한 기능경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

6)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o 산림자원 성숙에 따라 본격적인 산림경영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며 숲가꾸기, 벌채생산, 임도·임업기계 등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기술인력 수요 증가

o 산림분야 특성화고 지원을 통하여 기능인, 기계화 영림단 등 젊은 임업경영인력 양성

o 임업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임업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산학겸임교원" 또는 "외부강사" 등으로 위촉하여 최신 현장기술 교육 지원

o 교육과정 시설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o 임업경영 인력수요와 산림분포를 감안, 우선 1개교 시범운영
- 대상 : 경북. 봉화. 춘양.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 지원규모 : 300백만원/년
※ 교육과정 개발·운영(200백만원), 임업실험·실습 기자재 구입(100백만원)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실행 주체별 산림사업 추진실적 보고 : 2013. 2. 20.

o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실태조사(시·도) : 2013. 4~6월

o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및 산림기술자 운영실태 점검 : 연1회

o 임업훈련원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기능인영림단 운영실태 점검 : 상반기

o 임업기능인 기능경진대회 개최 : 하반기

o '13년도 임업기능인훈련 교육훈련계획 보고 : 2013. 12. 31일

o 임업훈련원 교육실적 보고(반기보) : 반기종료 익월 10일까지

o '13년도 영림단(국 · 민유림) 운영실적 보고(연보) : 2013. 12. 31일

23.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 표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산림사업은 지형이 험한 산지에서 부피가 크고 무거운 목재를 다루므로 다른 업종의 작업보다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광업, 건설업, 임업을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함

o ’11년 산림사업 재해율 분석결과 전체 업종 산업재해율 평균(0.65%)보다 3.2배, 건설업 등에 비하여 약 3배 더 높은 추세임

- 광업 9.12% 〉 임업 2.11% 〉 제조업 0.97% 〉 건설업 0.74%

o 산림사업 재해율 증가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림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08) 5.4% → (’09) 6.2% → (’10) 6.6% → (’11) 6.5% → (’12) 7.2%

나. 기본방향

o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협력체계 강화

- 산업안전전문기관과의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협의회 활성화
- 산림사업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통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 실행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 안전사고 다발기관에 대한 산업안전문기관과의 합동 특별 점검으로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대폭 강화
- 사업착수와 동시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현장 확인 지도·감독 강화
- 산림사업 시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시 안전수칙 등 준수토록 지도·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관리제 추진

- 산림사업 사업시행 기관별로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하여 안전사고 예방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 저감

※ ’12년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목표관리 재해율 2.1% 이하 설정

o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 기관별 재해발생현황 매월 분석 및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다양한 홍보자료 제작·보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

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 협약사항에 대한 실질적 공동사업 추진
- 산림사업분야 안전사고 예방 제도개선 및 안전교육 공동 실행
- 산림분야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합동 점검 등 공동 실시
- 안전한 산림사업 실행을 위한 교육·홍보자료의 보급 확대
  ※ 산림사업 재해예방 업무협약 기간('11. 7. 7 ~ '13. 7. 6) 연장

o 기 구성된『산림사업 안전관리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 참여기관·단체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관한 본부 역할을 수행
- 「산림사업 안전사고 반으로 줄이기」공동 캠페인 전개
-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재해원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가) 산림사업 착수와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o 숲가꾸기 등 작업 착수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 임업훈련원 교관 등을 초빙하여 현장중심의 예방교육을 이수한 후 작업 착수

o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일 경우에는 발대식 날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및 참여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 한 후 작업착수
- 작업 착수 후 주기적으로 안전한 산림작업요령 등 보수교육 실시
- 안전거리 확보 및 안전한 기계사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등 상황별 처치방법의 실습교육 강화

나) 임업훈련원(기술, 기계, 기능인)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o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목 재편 및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방법으로 내용을 개편
- 응급처치 위주의 교재내용을 산림사업별 안전작업 요령으로 재편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o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안전교육 강화
-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위탁교육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점실시
- 필요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다) 사업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는 사업 착수 전 현장에 부합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후 작업 착수
- 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 조직편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 포함

o 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에 관해 조치할 사항
-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기계톱 등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 구급낭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제비치 등

3)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안전 예방활동 강화

가) 산림사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o 사업시행자는 위험한 산림사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하고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보호구 의무착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9호) 제31조 및 제32조

o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는 참여제한 조치 등 행정적 제재 조치
- 연속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는 산림사업 퇴출 조치 시행

나) 작업장 5대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수칙 낭독

①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②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③ 안전작업 요령을 숙지한다. ④ 산림작업 시 작업에만 집중한다. ⑤ 작업시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o 기계톱 등 위험장비 사용시 안전한 사용법 반복 교육 실시

o 작업현장에 안전수칙, 안전교육일지 등을 비치 및 기록 관리

다)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 보고

o 작업 착수 전 작업반장은 반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건강유무 확인

o 감독공무원 및 감리자는 작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점검일지에 기록 · 관리

o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고, 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 및 환자 이송

o 자치단체 및 지방청 등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 발생 시 산림청 목재생산과(FAX : 042-471-1446)로 신속 보고

4) 농약 등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강화

가) 화학약품 약제 처리방법 이행 철저

o 덩굴류 제거, 병해충 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해 화학약품 사용시 작업자, 지하수, 야생동물 등을 오염시키므로 각별 주의

o 화학약품 처리방법을 준수하고 작업반장은 약제처리 관리 감독을 강화

나) 화학약품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지도 감독 강화

o 산림사업 시 취급되는 약품은 고독성 농약 등이므로 안전관리 수칙 준수

o 화학약품 작업일은 수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우천 등에 대비

5) 산림재해 통계자료 구축 및 취약 사업장 집중관리

가) 기관별·월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분석

o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 구축 · 활용(본청)
- 기관별 재해발생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매월 재해원인 및 재해 발생형태를 분석(지자체 등)

나) 산림사업 재해발생 취약 사업장의 집중관리

o 안전사고 취약 사업장은 지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지도·점검
- 재해다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조사 분석
- 중대재해 발생지 등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청 관계자와 합동으로 안전예방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 후 행정조치

o 자치단체, 지방청 등에서는 현장 출장 시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연접된 사업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병행 점검

6)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책 추진

가) 산림사업 안전관리 예방 목표관리제 설정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치를 설정함으로 안전사고 예방관리 목표의식을 높이고 산림사업 재해율을 낮추는 계기 마련

o 산림사업 재해율 목표 설정
- 목표치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상시인원 대비 재해자 2.1% 미만
- 기관별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 제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공 표창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확대에 대비한 다양한 안전사고 활동으로 산림사업의 재해자 및 재해율을 최소화한 공적이 있는 자 대상
·훈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1점), 산림청장(3점)

나) 기관장·부서장의 적극적 안전대책 실시

o 자치단체장·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점검

7) 산림사업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보급

가) 산림사업 재해예방 교육·홍보 자료 개발 · 보급

o 산림사업 참여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 휴대용 수첩, 리플렛, 교육용 PPT 자료, 동영상 등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림작업 매뉴얼 제작

o 사업종별 안전사고 예방에서 사후조치까지 처리요령이 담긴 매뉴얼 제작

o 매뉴얼 제작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결의대회 : 최초 사업 발대식 개최 시

o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교육
- 현장 예방교육 : 매일, 정기 안전교육 : 매월 1회 이상

o 기관별 산림사업 재해 통계자료 구축 : 2013. 3. 31까지

o 안전사고 다발기관 및 재해발생 취약사업장 지도·점검 : 상·하반기

24.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

목 표

◇ 임도의 적극적 확충으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 활성화와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 강화로 임업생산성 향상

o 사업량 : 간선임도(390km), 작업임도(314km), 구조개량(400km), 보수(3,480km)

o 사업비 : 189,923백만원(국비 132,946, 지방비 37,985 자부담 18,992)

가. 정책여건

o 숲가꾸기 산물수집 및 임업기계화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임도 필요성 증가

o 기후변화로 대형화 · 빈발화에 따른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요구

o 임도를 이용한 여가·휴양·레포츠 등 다양한 기능의 국민적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경제림육성단지 위주의 임도신설로 산림사업 및 임업기계화 효율성 증진

o 산림자원량을 고려하여 간선·작업임도의 병행 시설로 임업생산성 향상

o 임도설계·시설기준 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임도 시설

o 노후화되고 재해안전 시설물이 부족한 임도는 ’14까지 구조개량 완료

o 휴양·여가·산악레포츠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병행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1) 임도신설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간선임도		작업임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704	102,041	390	67,043	314	34,998
민유임도	479	63,707	300	46,929	179	16,778
국유임도	225	38,334	90	20,114	135	18,220

가) 노선선정

o 간선임도는 제3차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반영된 예정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타당성 평가 결과 적합한 개소에 설치

- 지역(산)별로 국·사유림간 및 자치단체간의 연계성과 기존도로(임도로 활용가능한 산림내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활용성이 높게 선정
-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산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임도노선을 선정하고 노선 완결하여 임도 이용도 증진(’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작업임도는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 등 일련의 산림사업(수종갱신·조림·숲가꾸기·간벌)이 집중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

- 하나의 노선은 반출계통을 같이하는 유역단위로 선정(가급적 3km 이내)
- 기계화 등 산림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일괄시스템 운영이 필요한 지역
- 노선은 등고선 방향으로 산복임도로 선정하고, 계곡·능선임도는 지양
- 대면적 숲가꾸기 대상지로 국유림 또는 공·사유림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사업실행주체를 달리하는 산림도 포함하여 실행함으로써 활용도 제고(지자체 ↔ 지방산림청간 협조 → 사업 비중이 큰 기관주도로 추진)
- 기존의 임도, 또는 기타 도로에 연결하여 시범림·특수림 등 산림관리, 재해예방, 테마임도 조성 등을 위한 순환임도 조성이 필요한 지역
- 운재로, 진입로 등 폐기된 산림 내 도로를 이용하여 임도시설이 가능한 노선(임도시설 후 활용도, 시설비 등을 검토하여 반영)

※ 과다한 산림훼손이 예상되는 지역, 집중호우 시 민간피해 우려지역, 지형적 여건으로 구조물 시공이 과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은 임도신설 대상에서 제외

o 임도신설 대상지를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용산지 위주로 사업추진 확대

- 경제림육성단지 내 기반시설 확대추진 계획

구 분	경제림단지		임도시설 확대비율(%)				비 고
	개소	면적(천ha)	(현행)	2013	2014	2015	
민유임도	345	2,339	47	50	55	60	* ’16년 이후는 실행현황 검토 후 “간선임도 설치계획(’16~’20)”에 반영하여 추진
국유임도	105	580	85	85	85	85	

※ 각 도 및 지방산림청 별 총괄 사업량을 기준으로 확대 추진

나) 사업추진

o 월동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4월말까지 설계완료 및 5월말까지 시공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개소별 월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임도사업 설계의 품질향상"을 위해 임도신설 실시설계 비용 산출 시 기본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3조 3항"(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을 준수하여 실행
- 노선 설계시 지형여건과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기계화 작업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설계실명제 준수

o 임도신설 사업비를 구조개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없도록 목적별 계획대로 집행하되, 계약잔액을 이용하여 추가시설 가능

- 민유임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은 최대한 재해위험시설 보완 및 유지관리 등 임도사업에 집행('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임도사업비는 예산물량·단비에 구애됨이 없이 현지 지형여건에 부합되게 설계·시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활용도가 높게 개설

- 급경사지의 임도시설에는 작업현장의 시공여건을 감안하여 층따기 등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종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 작업임도는 옆도랑을 현지여건에 맞게 적정규모로 설치하되, 지형여건상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미설치 가능

o 임도의 시공품질 향상과 재해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도감리대상 확대 실시

- 감리대상이 건당 기존 2억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o 민유임도 사업의 경우 산주 부담금(사업비의 10%)은 예산부족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지원

- 임도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14년도 예산작업시 산주부담금은 지방비로 전환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추진('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14년에 시설할 신설예정 임도의 타당성 평가는 '13. 10월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평가시 사유림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와 병행 실시

- 실시설계 완료 후 산주부동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완료 후 설계 등 사업추진('12년 감사원 감사 검토사항)

2) 구조개량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400	300	100
사업비	20,652	13,990	6,662

o 기존임도의 구조개량은 지역완결 원칙으로 시공하되, 집중호우 시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 실행(’14년까지 완료 목표)

- 임도 피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지, 일반주민 이용율이 높은 임도
- 전간재 반출이 어려운 구간은 선형개량, 작업공간 확보 등 병행 추진
- 기존 구조개량을 실시하였거나, 최근 시설한 임도(하자보수기간 도래)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시 추가 실시(필요성 및 사업실행 근거 명문화)

o 산림 내 타용도 도로를 임도로 전환한 노선 중 산림사업이 시급한 지역, 재해발행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지역 등

- 사설임도도 국·공설임도로 필요한 지역은 소유자 동의를 얻어 편입 추진
- 편입된 사설임도 및 타용도 도로는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 재해안전성 강화

o 각종 구조물 시공은 필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시공하되, 시공편의 중심으로 필요성이 낮은 공종 및 과다시공 지양

- 임도하단부에 주택 등 피해예방을 위한 구간은 재해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타 지역은 산림사업과 임업기계화에 필요한 공종위주 검토
- 구조개량 사업시 노면포장위주의 시설지양(’12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o 휴양림주변, 도시근교, 특히 경치가 좋은 노선 등 일반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임도는 기능 다양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 만족도 제고

- 테마임도는 임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하되,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
- 특정 단체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 유도

o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계획의 사전 통보 및 임도주변의 산원주민 의견 반영 등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조치 필요

- 임도의 타당성평가시 지역주민의 대표를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 청취
- 다수민원 및 유사민원 반복 등으로 임도사업 추진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실시

3) 보 수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3,489	1,289	2,200
사업비	8,542	6,021	2,521

o 보수사업 대상지는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임도이며, 해빙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여 1차 보수는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
-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임도피해지역 보수는 계약잔액을 이용하여 추진
- 특정지역 또는 특정 목적에 많이 활용되는 임도는 이용자 자율보수 유도

o 해빙 후와 우기 중에 임도관리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상시관리 체계 강화
- 임도관리원은 해빙기 후부터 바로 임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2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우기 중에 집중적으로 활용
  ※ 임도관리원은 지역별로 배치하되 임도시설 거리. 관리의 난이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인원 및 예산단가를 현지 실정에 맞게 자체 조정
- 국유임도의 경우, 민간위탁 사업대상 지역을 포함하여 배치·활용

o 국유임도의 일부구간(2,200km)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되, 기타 노선은 자체장비 및 임도관리원을 활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 실시
- ’13. 2월 중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우기 전에 사업 완료
- 민간위탁 : 1회 보수 6월 중순까지 완료, 2차 보수는 9월말까지 완료

4) 간선임도 사전설계 실시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합 계	민유임도	국유임도
사업량	175	137	38
사업비	1,712	1,226	486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 단비 : 12,782천원/km(220,000천원 × 5.81%)

o 적설기 임도 측량·설계로 인한 현지 지형여건의 판단미비와 임도의 설계·시공의 지연에 따른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사전설계 신규 추진

o 간선임도 사전설계비를 시·군 및 관리소별 균등배분을 억제하고 아래 대상지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등 집약적이며 연속적으로 임도신설 지역
- 동절기 적설량이 많아 3월말까지 현지측량이 어려운 지역
- 측량·설계업무가 상반기에 편중되어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
- 기타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판단하여 전년도 사전설계가 필요한 지역

o 사전설계 대상지는 ’14년도 간선임도 신설사업 노선으로 설계하되, 사전설계 노선에 대한 ’14년도 설계비 반영예산은 ’15년도 사전설계비로 집행
- 간선임도 사전설계비는 ’13년 1회 반영되며, 이후는 기 설계노선 구간의 설계비를 이용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5)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운영

o 산림 경영·관리를 위한 최적의 임도노선 배치와 산림사업 집약화를 통한 경영모델 제시하고, 임도시설 교육장소로 활용될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
- 시범단지 : 10개소(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방산림청)

o 임도시설 시범단지는 노선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13년에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실시 후 연차별 사업 추진
- 산림자원량을 고려한 간선·작업임도의 노선 및 기계화 작업공간 배치
- 연차별(’13~’16) 노선별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확정
- 시범구역내 편입된 사유림은 기본설계시 산주동의 완료

라. 기타 사항

o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산림토목사업 실행체계 제도개선」지침(치산복원과-55, 2008.4.8.)의 공개경쟁 비율 확대
- 각 시·도 및 지방청 단위 사업금액의 25% 이상 임도사업 공개경쟁 실시

o 임도시설 건당 사업규모가 2억원 이상일 경우에 차상급기관의 설계심사를 통하여 품질향상 도모(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o「환경영향평가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 타 법률로 규정한 평가사항을 준수하여 임도가 재해유발 원인이 되는 사회적 책임성에 적극 대비

마. 추진일정

o 임도담당자 정책·기술 교육 실시 : 2013. 2~3월
- 지자체 담당자 인사이동 후 각 권역별(4개) 현지교육 실시
  ※ 신규 임도담당자는 산림교육원의 임도시공 교육과정을 최대한 이수

o 도 및 지방산림청 별「임도시설 시범단지」사업 추진
- 임도시설 시범단지 기본설계 실시 : 2013. 2~4월
- ’13년도 임도시설 시범단지 실시설계 및 시공추진 : 2013. 4~11월
※ 임도시설 시범단지 내 임도신설은 ’13년도 임도시설 우수사례로 제출

o 임도(간선·작업)신설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3. 1~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3. 5~11월
- 익년도 신설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산주동의 : 2013. 10월
- ’14년도 간선임도 사전설계 : 2013. 7~11월

o 구조개량사업
- 대상지 검토 및 실시설계 : 2013. 2~4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3. 5~10월

o 임도보수 및 민간위탁사업
-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 : 2013. 2~3월
- 시공계약 체결 및 완료(준공 및 보완) : 2013. 4~6월

o 임도시설 호우피해 예방사업
- 임도하단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지 추가 조사완료 : 2013. 3~6월
- 집중호우 대비 임도노선 일제점검 및 재해위험 예방조치 : 2013. 5~6월

o 임도사업 성과평가
- 행안부 합동 및 지자체 자체평가(민유임도) : 2013. 3월, 11월
- ’13년도 국유임도 사업평가(지방산림청 등) : 2013. 11월

o 임도시설 우수사례 및 연찬회 개최 : 2013. 10월
- 임도시설 우수사례 제출 현황 및 수상에 따른 사업량 배정 실시

25. 도시숲 조성·관리

목 표

◇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색공간을 확충**

o 녹색쌈지공원 조성	: 118개소(75㏊)	14,785백만원
o 생활환경숲 조성	: 17개소(22㏊)	2,773백만원
o 산림공원 조성	: 31개소(209㏊)	13,318백만원
o 도시숲 모델 조성	: 2개소(30ha)	2,000백만원
o 국유지 도시숲 조성 · 관리	: 조성 2개소(27ha)	500백만원
	관리 6개소(28ha)	100백만원
o 도시녹지관리원	: 273명	3,817백만원

가. 정책여건

o 급격한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해 도심 속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

o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고조되면서 생활권의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

나. 기본방향

o 도시숲이 체험 및 교육 활동의 장소가 될 있도록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조성하고 편의시설, 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

o 가로수 등 기존 녹색인프라와 연결되도록 하여 녹색네트워크를 구축

o 시민들이 만남과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하고 시민단체 · 기업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 조성·관리 방안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녹색쌈지공원 · 생활환경숲 조성

가) 대상지

o **녹색쌈지공원** : 시민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건물사이의 자투리땅 등에 조성

o **생활환경숲** :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위한 공단, 주요병원, 요양소 등의 건축물(옥상·벽면녹화) 및 주변, 폐기물 매립지, 하천·제방부지 등 주변에 조성

나) 조성방법

o 대상지의 규모, 인접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
- 동·읍 또는 시·군·구내의 기존 도시숲 배치와 규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는 녹색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규모 있는 도시숲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설계
- 신청 및 설계 단계부터 산림사업으로 발주·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o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공원형, 경관형 등은 생태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도시숲 조성
- 주민 이용도와 숲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숲의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산림문화(이야기)공간을 조성

o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사업은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 잔디밭 조성이나 관상수 식재 중심의 조성방식 지양
- 시설물은 이용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
- 표지석 등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 편의시설, 기반시설, 체육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 도시숲 조성사업비 외의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시설

o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 추진
- 토양이 척박한 경우 토양개량 등 먼저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대책마련 후 조성 추진

o 교목 중심으로 숲을 조성하되 관목·초화류를 적절히 보완
- 주변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자생 초화류를 섞어 심어 심미적 경관 창출

o 준공검사 시 설계의 식재규격 점검 등 엄정한 기준 적용
- 식재목의 규격 외에도 건강성·수목 활력 등을 점검

o 독립적인 비오톱(Biotop)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
- 큰나무 위주의 제한된 수종보다는 면적, 위치 등을 감안 다양한 식생 도입

o 도시 녹색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성
- 인공지반녹화, 벽면녹화 등 다양한 녹색네트워크 구축

2) 산림공원 조성

가) 대상지

o 도시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도시내 국 · 공유지의 산림
-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
- 다른 법에 의한 제약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치를 이미 취한 지역

o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도가 높은 산림공원 확대 조성
- 산림서비스림을 산림공원으로 조성할 지자체는 국유림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이행
- 산림서비스림의 매수 취지를 살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확보

o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소관 사업은 이용도가 높은 도심의 산림과 국유지 도시숲 조성 · 관리사업 예정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되 다른 법에 의한 제한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 도시숲 조성 · 관리의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장기적인 사업추진 기반 마련

나) 조성방법

o 자연적·사회적 및 인문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하되 경관적 요소를 반영하여 조성
- 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은 공원형 및 방풍·방음형으로 조성
- 도심 속에 고립되어 방치된 경우에는 생태형으로 조성

o 사업은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성
- 조망점 중심으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경관 숲가꾸기 실시
- 보완식재가 필요할 경우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 실시

o 시설물은 이용도 및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설치
-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는 입지여건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설치
- 주변 숲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 표지석 등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o 자연재해의 안전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이용시설물 설치 등
-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 자연재해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설치
- 과다한 이용으로 훼손된 산림공원은 복구사업 반영 등 재해안전성 확보

다) 지역주민·단체·기업 등과 도시숲 조성 · 관리

o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조성
-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설명회 개최
- 규모가 큰 조성사업은 수목의 생태환경 고려 및 전문가 자문 · 협력

o 단체·기업이 참여한 도시숲 조성
- 향토기업 등 지역별 연고기업에 대한 도시숲 사업의 참여 확대

o 도시숲은 조성 후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게 하여 애착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관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
- 그린오너제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제도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도시숲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
- 시민이 참여한 도시숲은 명칭을 부여하고,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제시

3) 도시숲 모델 조성

가) 대상지 선정

o ’13년도 도시숲 모델 조성사업은 공모하여 대상지 선정 완료(’12.11.4)
- 충북 청원은 생태·자연체험형으로, 강원 춘천은 수변형·문화형으로 조성
  ※ ’14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시 지자체의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반영

나) 조성방법

o 설계 단계부터 지역 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모델로 조성
- 조성지의 규모, 입지 여건, 이용도 등을 종합하여 도시숲 모델을 개발하되, 수변 등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특색있는 유형의 모델조성
- 숲의 생태환경 및 경관 가치를 고려하고 도심내 녹색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보도블럭 등의 인공적인 시설물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대부분 수목식재 등 식생 위주(잔디 제외)로 시설
- 단순한 단목 위주의 식재를 지양하고 숲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표지석 등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산림청 명칭 및 로고를 포함하여 설치

o 시민참여 확대 및 전문가 자문 등 참여
- 모델(시범)사업은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여 설계 추진
- 현장설명회 등에 지역주민·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공감대 형성
  ※ 도시숲 모델 조성사업은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등을 산림청으로 제출

4) 국유지 도시숲 조성

가) 국유지 도시숲 조성 · 관리

o 2013년도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제4회 국유지 도시숲 설계공모대전 작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

- 숲가꾸기, 숲길 등 관련 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업 추진

o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

o 향후 국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지는 매수한 산림서비스림을 우선하여 추진

나) 산림서비스림 매수지 관리 철저

o 산림서비스림 매수지는 당초의 매수 목적과 관리계획의 목적에 부합토록 재산관리에 철저

- 해당 기관별로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용관리토록 조치

※ 『산림서비스림 운영 · 관리 지침』에 따라 당초 도시숲 조성을 목적으로 공모·매수한 임지의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토록 사후관리 철저

-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속히 조성하도록 지자체와 협의

- 지자체가 산림서비스림을 도시숲 등으로 조성할 경우에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산림사업" 또는 "국유림의 대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

5)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o 담당업무 : 도시숲 자원조사,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 방제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o 사업규모 : 273명(지자체 263명-제주 30명 포함, 지방산림청 10명)

o 사업예산 : 3,817백만원(국비 2,389백만원, 지방비 1,428백만원)

o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60%, 지방비 40%), 직접사업 100%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특회계 예산이며 국비 70%임

o 선발기준 및 자격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운영지침 참조

o 도시숲 및 가로수 등 관련 정책과 기술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에서 3월 중 연 1회, 200명 교육예정

6) 효율적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o 도시숲 조성사업 적기 추진
- 규모 있는 조성사업 대상지는 특별관리 현장책임관 지정·운영
- 사업추진 전년도부터 행정절차 이행조치 및 사전설계 등 추진

o 조성된 숲은 지자체, 기업 및 단체,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지자체 또는 기업·단체, 지역주민간의 공동 관리모델 발굴
·개인·단체 등과의 도시녹지 사후관리 위탁(협약) 및 민간단체 운영 활성화(예, [사]광양도심숲가꾸기위원회 구성·운영)
-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제정 운영 및 민간참여 제도 등 마련
※ 공모사업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조성된 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리 지원
-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보완
- 도시숲을 통해 산림자원을 만들고, 미래에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창출
·신규 조성사업지의 경우 미래의 문화유산을 위한 스토리텔링 개발

o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신규 조성 시 민원반영
- 이용자만족도 조사는 시설·안정성·자연경관과 조화·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이를 차후 조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o 도시숲 조성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특별관리 현장책임관 제도 강화
- (종전) 사업규모 5억원 이상 → (조정) 사업규모 3억원 이상

o 도시숲 사업지는 “00숲” 등으로 이름 부여(예 : 토리숲, 하림숲 등)

7) “HUG(Human Union Green) 숲” 조성 및 사례 발굴

o 녹색쌈지공원, 산림공원, 학교숲, 전통마을숲 등을 연결하는 “HUG 숲” 조성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상호 소통하는 공간 창출
- 도시숲의 역할이 단순한 녹색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증가
-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 도시숲이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HUG 숲 조성

o 도시숲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녹색네트워크 연결 및 도시숲 조성사업 확대 유도
- 서로 분리된 도시숲을 연결하는 사업을 통해 녹색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스토리를 부여하여 이용을 활성화한 사례를 발굴
-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시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방안 검토

8) 녹색도시(Green City) 우수사례 선정

가) 사업목적

o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이 우수한 사례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를 전파

o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해 ’05년부터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실시

나) 사업내용

o 사업대상 : 2006년도 이후 신규로 조성한 도시숲 및 가로수

o 신청방법 : 각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신청

o 추진절차 : 선정계획 통보(7월) → 접수(8월말) → 서류심사(9월) → 현장심사(10월) → 선정 및 시상

※ “HUG(Human Union Green) 숲” 사례 발굴, 지자체의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반영

o 시상내용 : 11개 기관(최우수 1, 우수 3, 장려 7)

- 최우수 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패 수여 및 최우수지역 인증
- 우수 및 장려 기관은 산림청장상패 수여

o 사례집 발간 : 녹색도시(Green City)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9) 제5회 대한민국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가) 사업목적

o 기존 공원과는 차별화 된 녹색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계획설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

o 산림청의 도시숲 정책방향에 맞추어 인위적 시설물 위주를 지양하고 산림형에 가까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유도

나) 사업내용

o 참여대상 : 도시숲 설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및 대학생

o 사업방법 : 위탁사업으로 추진

o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작품제출 → 작품심사 → 선정 및 시상

o 시상내용 : 18개 작품(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입선 10)

- 최우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장, 우수, 장려 및 입선은 산림청장상장 수여

o 사례집 발간 : 도시숲 설계 공모·선정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10) 「도시림 기본계획」 변경 및 지자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확대

o 도시림 기본계획('08~'17)을 변화된 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전면 변경(3월)
- 변경된 도시림 기본계획을 지자체에 전파하여 조성·관리계획 수립 유도

o 도시림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수립 여부를 도시숲 모델 사업지 선정,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 등에 반영

11) 도시숲이 다양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유형별 조성·관리 방안 마련

o 도시숲을 유형별(생태형, 자연체험형, 보건·휴양형, 문화형 등)로 구분하고 차별화된 조성·관리 방안 마련

o 「유형별 도시숲 조성 · 관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 도모

라. 추진일정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계획 통보 : 2012. 12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실무교육(2회) : 2013. 2~3월
o 도시림 기본계획(변경) 통보 : 2013. 3월
o 도시녹지관리원 교육(1회) : 2013. 3월
o 도시숲 설계 공모대전 개최 : 2013. 3~10월
o 도시숲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3. 5월
o 도시숲 조성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13. 6월, 11월
o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여부 조사 : 2013. 6월, 11월
o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 : 2013. 7~11월
o 2014년도 도시숲 모델사업 공모 : 2013. 8~10월
o 유형별 도시숲 조성 · 관리 매뉴얼 보급 : 2013. 12월
o 도시숲 조성사업 실적 제출 : 2014. 1월
o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실적 제출 : 매 분기별 익월 5일까지

26. 학교숲 조성·관리

목 표

◇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및 생활권 지역 주민에게 녹샘쉼터를 제공하여 부족한 생활권 녹지공간 확대**

o 학교숲 조성(보조) : 145개교, 4,35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을 위한 학교숲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학교숲이 갖는 환경개선 효과 및 이를 활용한 자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

o 학교숲은 생활권 녹지확보를 위한 최적의 공간

- 학교는 생활권에 일정 위치마다 체계적으로 조성되어 있어 숲 조성을 통한 도시 녹색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

나. 기본방향

o 학교의 여건이나 주변환경을 반영한 유형별 학교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의 확보 및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 및 녹색쉼터를 제공

o 학교숲 설계 및 조성시 자연체험 또는 생태교육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하고 정서함양 도모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토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학교숲 조성사업

o 학교숲 조성사업 추진체계 : 개교당 60백만원(국비 50%), 1년, 지자체 보조

o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기준

-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의 녹지량이 적어 숲 조성 효과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및 자연환경학습 등 가능성이 높은 학교
- 교장,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의 학교숲 조성의지가 높은 학교
- 학교숲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

- 위 선정 기준의 부합여부가 비슷할 경우는 학교숲 조성면적이 0.05ha(500㎡) 이상이거나 행정구역상 읍이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 선정

※ 기존의 산림청 학교숲 조성사업에 선정되었던 학교는 제외

【 학교숲 조성학교 선정 체계 】

【단계】	【주요 내용】	【수행주체】
공고 및 접수 (9~10월)	• 각 시·도별 익년도 학교숲 조성사업량 배정·통보 •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1차심사 (9~10월)	•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를 광역자치단체에 통보	기초자치단체
⇩		
최종선정 (10~11월)	• 익년도 학교숲조성 대상학교 최종 선정 - 지역적 균형, 학교구성원의 참여도를 고려 • 최종 선정 결과를 산림청에 통보 • 선정된 학교는 기초자치단체를 통하여 통보	광역자치단체
⇩		
선정 결과의 홍보 (10~11월)	• 선정된 학교의 인터넷 및 언론매체에 공고	산림청
⇩		
협약체결 (12월)	• 기초자치단체-학교숲 조성학교간 협약 체결	기초자치단체 · 학교

o 학교숲 조성 시 고려사항

- 자연성 확보
  - ·자연스러운 숲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
  - ·자연성을 떨어뜨리는 조형적이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 지양
  - ·개별 수목들의 자연스러운 수형을 유지한 상태로 조성
- 기능성 실현
  - ·학교숲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
  - ·소음방지, 기후조절, 정서함양, 시각차폐 등 숲이 갖는 기능을 강화
- 교육성 강화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학교숲 설계 및 조성
  - ·학교숲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

나라꽃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긍지를 나타내는 의미 깊은 꽃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숲 등 친숙한 일상 가까이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무궁화 식재를 확대

o 학교숲 조성 강화를 위해 「학교숲 조성 설계 심의회」 제도 도입
  - 시·도별로 학교숲 조성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 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

o 학교숲 사후관리 강화 및 교육적 활용도 제고
  - 학교숲 조성학교와 기초자치단체간 조성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여 사후관리강화
  - 학교 교사에 대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등 교육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 제고

o 학교숲 조성시 일률적인 예산지원(개교당 6천만원)보다는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학교숲 조성, 관리 및 활용분야에 우수한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선정에 따라 해당 지자체, 지도교사, 학생 등 인센티브 부여 확대

o 학교숲 활용 촉진방안 수립에 따른 추진
  - 학교숲 활용 협의체(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 주민 등)를 구성 및 운영
  -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교숲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학교숲 조성 분야별(조성-관리-활용) 방안에 따른 학교숲 조성 성과 제고

2) 기업(삼성화재)참여 학교숲 조성사업

o 학교숲 조성 및 사업비 : 2개교, 200백만원(개교당 100백만원)

o 산림청·기업·학교·시민단체간 MOU 체결을 통해 상생(相生) 전략 수립 및 활성화

o ‘기업-정부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기업 참여 학교숲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지자체 주관 지역 연고 기업과의 학교숲 조성사업 적극적 참여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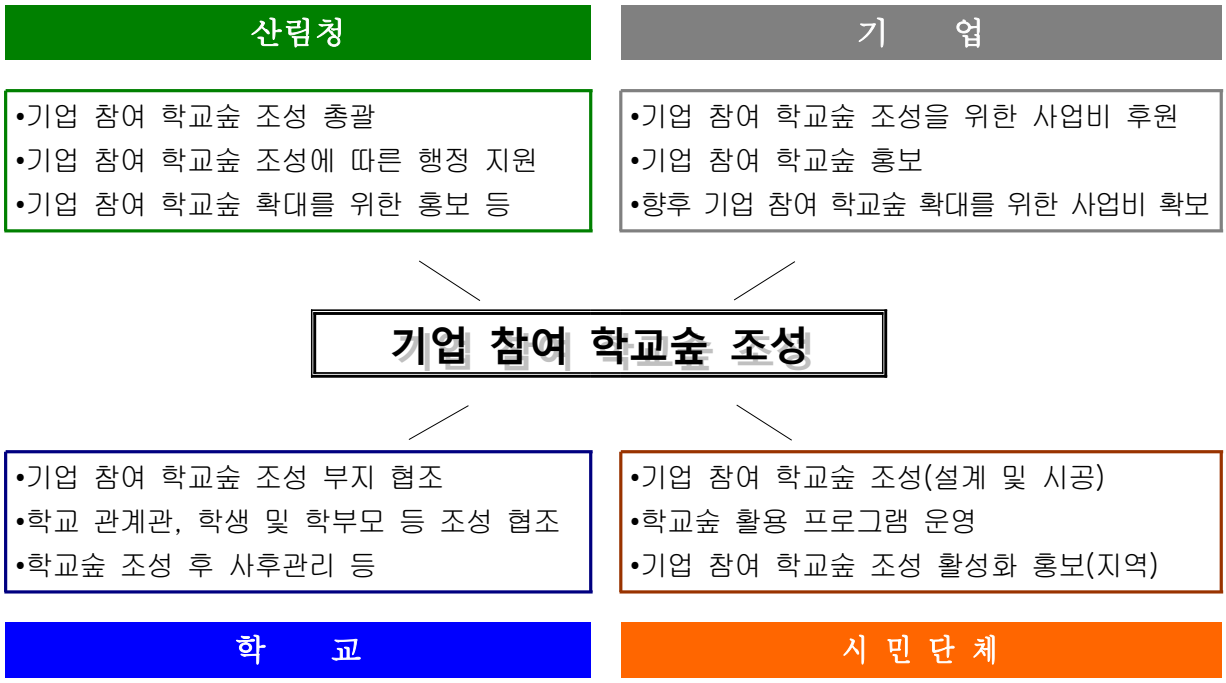

3) 학교숲코디네이터

o 목적 및 운영방향

- 학교숲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수종 식재·관리 컨설팅, 현장지원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 산림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녹색일자리 제공

o 사업개요

- 사업규모 : 64명
- 사업예산 : 895백만원(국비 537백만원/지방비 358백만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60%, 지방비 40%)

o 주요업무

-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사후 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배치 등 식재계획 수립 컨설팅
  ·주요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 자문
  ·학교숲 조성에 따른 수목 식재·관리 등 현장 기술자문 및 지원
-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학교숲 활용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모니터링
  ·학교구성원,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 형성방법 안내
- 학교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학교숲 설명 및 교육 지원
  ·학교숲 자원 조사 및 DB구축,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 기타 선발권자가 학교숲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o 추진체계

- 산림청 : 총괄
  ·학교숲코디네이터 추진지침수립, 예산확보, 행정지원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 자체 : 사업추진
  ·학교숲코디네이터 선발, 지역학교별 수요조사 및 배정, 근로감독 등
  ·학교숲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 학교공원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예정인 학교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
- 학교숲코디네이터 : 근무 및 활동일지 기록

라. 추진일정

o ’12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2013. 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채용공고 및 선발 : 2013. 1월

o 시·도별「학교숲 조성 설계 심의회」구성 및 운영 : 2013. 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채용 결과보고 : 2013. 1. 30

o 학교숲코디네이터 교육훈련 : 2013. 2. 22~24

o 기업참여 학교숲 조성 : 2013. 3~6월

o ’13년도 학교숲 조성사업 현장 점검 : 2013. 5월, 10월

o 학교숲 우수사례 선정 : 2013. 9월

o ’14년도 학교숲 조성학교 공고 및 선정 : 2013. 9~11월

o 학교숲코디네이터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2014. 1. 10

27. 전통마을숲 복원

목 표

◇ **훼손·소멸되고 있는 전통마을숲 복원 및 보전을 통해 생태·환경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유산을 육성**

o 전통마을숲 복원 : 6개소, 3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농·산촌 주민의 고령화 및 건물·도로 등 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전통 마을숲의 훼손·단절이 우려

o 전통마을숲은 역사·풍수·사회문화적 이유로 주민들이 조성 또는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온 산림문화유산으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증가

나. 기본방향

o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 시키고, 주변 산림과 연계한 산림경관자원으로 육성

o 토착신앙, 역사·전설·구전 등 마을숲의 문화자산을 계승하며, 마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속문화 공간으로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전통마을숲 복원

o 복원방향

- 전통마을숲의 유래, 역사·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마을의 특색 있는 산림문화자산으로 조성
- 전통마을숲이 지닌 경관/풍수, 환경조절, 문화/종교, 휴양/관광, 자연/생태적 특성을 회복하여 특색 있는 마을숲으로 조성
- 마을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산림문화와 역사를 잇고 마을숲을 교육 및 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성화

【전통마을숲의 기능에 따른 조성방향】

경관/풍수	•마을숲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마을숲의 조형미적 기능을 고려 •풍수적인 비보(裨補)[18], 압승(壓勝)[19], 수구막이[20] 등 전통마을숲 기능 제고
환경조절	•방풍, 방사, 온도·습도 조절, 그늘 제공 등 마을숲을 통한 미기후 개선·조절 •수문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양유실방지 기능을 향상
문화/종교	•전통놀이, 축제, 제례 등을 위한 공간으로 유도하고 원형 복원에 주의 •마을 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유도
휴양/관광	•휴양·휴식을 위한 공간과 마을숲이 보호되어야 할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 •생태관광, 체험, 교육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식재 및 공간구성

※ 마을숲은 기능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조성방향을 설정

o 사업대상지 선정 체계

- 사업대상지는 서류·현장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최종 선정 (※ 기 사업지원 개소는 대상지에서 제외)
- 선정 방식 : 1차 서류평가 → 2차 현장평가 → 3차 최종선정

【단계】	【주요 사항】	【수행주체】
서류접수 (8~9월)	• 16개 시·도별 대상지 선정 제출 → 산림청	지자체
⇩		
서류평가 (9월)	• 마을숲자문위원회 구성 • 서류평가 - 각 시·도별 신청 개소 중 선정기준을 통하여 평가	산림청
⇩		
현장평가 (9월)	• 서류평가 결과 선정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산림청
⇩		
최종선정·통보 (10월)	• 서류·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대상 선정통보	산림청

o 전통마을숲 주요 선정기준

- 마을숲의 역사·문화적, 경관·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 주민참여 의지가 높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마을숲 복원여건이 좋은 지역
-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높은 지역
- 마을숲의 복원 및 후계림 조성 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계획된 지역

---

18) 비보(裨補) : 풍수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완해 주는 것

19) 압승(壓勝) : 풍수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눌러 제압하는 것

20) 수구막이 숲 : 마을의 앞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출구나 지형상 개방되어 있는 마을 앞부분을 은폐하기 위한 숲

o 2013년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대상지(국비 50%, 지방비 50%)

시 · 도	명 칭	개 소	면 적 (ha)	사업비 (백만원)
대전	진잠향교마을숲	대전 유성구 교촌동 154 외3필	0.5	100
강원	호산리 마을숲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산50	0.3	80
전북	사곡리 마을숲	남원시 덕과면 사율리 239-1외5	0.6	100
전남	봉곡 마을숲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980-9	0.65	100
경북	어은골 마을숲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 831-2	0.3	80
경남	웅양동호숲	거창군 웅양면 동호리 1069	2.0	140

o 전통마을숲 추진시 고려사항

- 마을숲의 복원방향과 부합되게 복원하며, 마을숲이 자연스러운 경관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인공적 시설물 및 재료의 사용은 지양
- 마을숲에서 이루어지던 당산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외부인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굴하여 그 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마을숲의 특성을 살린 산림문화 행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복원

2)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o 전통마을숲의 복원 확대 및 제도 개선 기반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확대 방안 마련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o 전국 전통마을숲의 유형별 분석과 중장기적·체계적인 복원 대책 마련

- 2011년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 파악 결과 : 전국 15개 시·도 1,346개소

o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복원사업지(59개소)에 대한 성과 분석 등

3)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추가

o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추가

-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산림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마을숲 현황 추가

o 전통마을숲 현황자료에 포함된 개소 내에서 복원사업 추진

라. 추진일정

o 실시 설계 및 사업착수 : 2013. 1~3월

o 전통마을숲 기본계획 자문회의 개최 : 2013. 2월

o 전통마을숲 복원 추진상황 현장 점검 : 2013. 5월

o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3. 6월

o 전국 전통마을숲 현황자료 보완 및 갱신 : 2013. 6월

o 2014년도 사업희망 대상지 조사 : 2013. 8월

o 2014년도 사업대상지 현장 심사 및 최종 선정 : 2013. 9~10월

o 2013년도 전통마을숲 복원 완료보고 : 2013. 12월

28. 산림경관 보전·관리

목 표

◇ 산림경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산림경관 창출

가. 정책여건

o 국토 경관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경관의 핵심요소인 산림경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경관법」 제정(’07.11),「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수립(’09.12) 등

o 국토의 미적가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녹색관광’의 전략적 육성으로 산림의 역할이 증가

- 친환경적인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 새로운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분야 인프라 중요성 대두

나. 기본방향

o 산림경관의 지역별 다양성과 특이성을 바탕으로 산림경관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향 정립으로 경관·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

o 산림경관자원을 발굴하여 시각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산림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산림경관관리 모델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o 국토의 핵심 골격인 내륙, 해안, 하천별 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산림경관관리 기반 마련

o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

- 국토 품격 향상을 위한 산림경관벨트별 기본방향 및 목표
- 산림경관의 특징,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산림경관관리지역에 대한 산림경관관리 추진방향의 제시
- 기타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과 지자체 산림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o 산림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림경관을 고려한 산림시업 방법 및 경관시업 기준 검토 및 제시
- 거버넌스형 산림경관관리체계(계획-실행-이용관리) 방안 마련
- 산림경관의 변화(훼손, 개선 등)에 대한 지표 마련을 통하여 가치평가 기준 검토

o 산림경관관리지역(100개소)에 대한 목표 및 산림경관 보전·관리 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마련하여 산림경관사업 추진
- 산림경관관리지역 : 내륙 54개소, 해안 30개소, 하천 16개소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내륙	54	1	1	-	2	-	5	9	6	4	7	10	4	5
하천	16	-	1	-	-	-	-	3	4	1	2	2	1	2
해안	30	2	-	1	-	2	1	6	-	2	3	8	2	3
계	100	3	2	1	2	2	6	18	10	7	12	20	7	10

o 지자체 산림경관 실행계획 수립
- 산림경관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특정경관으로 분류되어 비의무사항이나, 산림경관 관리 기본계획(산림청, 2009) 및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산림경관 실행계획 수립

2)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 활용

o 산림경관 계획 수립요령, 산림경관의 기초, 산림경관 세부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수록한 산림경관 계획·관리 업무편람을 산림사업시 적극 활용하여 보다 더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관리

o 향후 현장에서 발굴되는 문제점 및 산림사업별 규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경관을 고려한 산림사업을 시행토록 유도

라. 추진일정

o 국가산림경관벨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 2013. 2~12월

29. 가로수 조성·관리

목 표

◇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통해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 강화 및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로 가치 있는 녹색도시 구현**

o 지속적인 가로수 조성 : 469㎞, 15,064백만원

o 명품 가로숲길 조성 : 42㎞, 2,225백만원

가. 정책여건

o 가로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수요자 요구의 다양화

o 단순한 도로 부속물에서 문화·예술·관광 요소를 연출하는 역할 · 기능 강조

o 도시 녹색 네트워크의 핵심이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아이콘으로 부상

나. 기본방향

o 지역고유의 문화, 역사 및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있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

o 차별화된 가로 문화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체계적인 수형관리

o 가로수의 건강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o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강화를 통해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 확립

다. 세부추진계획

1)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o 지역별 환경 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명품 가로숲길 조성 · 관리로 도시 경관 창출 및 랜드마크화 유도

o 사업내용

- 가로숲길 신규 조성사업 : 역사·문화적 연관성, 향토수종, 주민요구 등을 고려한 합리적 수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보완 식재
- 특색있는 수형관리사업 : 수종별 생리, 특징을 살리는 수형모델을 개발하여 도시경관을 고려한 가지치기 및 수형관리로 특색있는 가로경관 연출

- 생육환경 개선사업 : 토양오염, 답압, 지하구조물 등 지하부 생육조건을 고려하여 토양개량, 관수 등 가로수 생육기반을 개량
- 도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을 위한 테라피스트리트 시범조성(2~3개소)
- 차 없는 가로숲길, 지역축제와 연계한 가로숲길 조성
- 병해충 방제 등 건강한 가로수 관리

2)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

o 지자체별 수립된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

o 가로수 미조성 도로, 통행이 많은 도로 등에 우선적으로 가로수 조성

o 도로폭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열 식재 보다는 다열·복층구조의 식재를 유도하여 보다 풍요로운 가로공간을 형성하고 가로수목의 안정성 확보

o 대로변은 쾌적한 교통환경 및 녹음제공을 위해 큰나무 위주로 식재하고 상가주변은 간판가림 등의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목류 및 화단으로 조성

o 생육공간이 협소한 지역 등에는 아교목, 관목을 식재하거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도시녹지 조성

o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 「소나무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안(도시숲경관과-1500호, 2010.5.28)에 따라 조성

3)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o 토양 양분부족, 협소한 생육공간 및 답압된 토양 등으로 정상 생장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유공관 설치, 투수층 확대 등 생육환경개선을 통하여 가로수의 정상적 생장을 유도

o 단목으로 조성된 가로수는 관목, 초화류 등을 함께 식재하여 생태적 완충공간(띠녹지, Green Way)을 조성하여 투수량 확보, 생태적 건강성 증진

o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분석을 통한 생육환경 특성별 개선사업 방법 및 공종을 체계화하고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

4) 특색있는 가로수 수형관리

o 도시의 역사·문화 등을 잘 나타내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로서 수형조절이 용이한 가로수를 조성
-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실행하여 명품거리로 육성
-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을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가로수용 무궁화를 활용

o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종전 일반회계 지원사업에서 ’11년부터 광특회계로 전환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 편성 등에 대한 방안 강구

o 아름다운 가로수 경관조성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상가간판 가림 등 민원해소와 지역도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

o 가로수 수형은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따라 관리 (도시숲경관과-1077호, 2010.4.12.)

5)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

o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 지자체별 “(가칭)가로수조성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로수 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한전선로 주변 가로수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방안 마련

o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 프로그램 개발
- 가로수 인근 거주자에게 그린오너제 등을 도입하여 가로수 보호관리 책임감 고취
- 가로수 수종, 특성 등 정보를 담은 QR코드 표찰 부착 등

o 도로 및 환경 유형별 가로수 조성 관리모델 연구 추진(기획연구과제, ’12년부터 2년간)
- 도로 및 주변환경 유형에 적합한 세분화된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가로수 기능을 극대화
- 가로수의 구체적인 수형기준, 체계적인 조성·관리시스템 구축

o 가로수 관리는 생육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하고 태풍 등 재해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관리 철저
- 가로수 재해예방 및 복구 매뉴얼에 따라 추진(도시숲경관과-2367호, 2011.7.28)
- 가로수 피해 발생시 피해상황을 재해상황실과 도시숲경관과에 보고(도시숲경관과-2447호, 2012.9.14.)

o 도심 야간 경관을 위해 설치하는 장식전구에 대해 설치 및 관리 철저
- 장식전구의 설치시기는 나무들이 완전히 휴면상태가 되는 12월부터 설치
- 장식전구의 철거시기는 상록침엽수는 일 최저기온이 영상이 되기 전인 2월말까지, 낙엽활엽수는 3~4월 중 꽃이 피기 전 또는 잎이 나기 전에 철거

- 장식전구의 철거 시에는 남겨진 전깃줄이나 철사 줄이 줄기 나무껍질 안쪽의 사부(篩部, 양분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막아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한 수목의 생장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에 매어놓은 전깃줄이나 철사줄 등을 완전히 제거

o 가로수 조성시(신규, 보완 등)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무바, 철사 등은 제거

o 가로수 열매의 낙과,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민원 요인 사전 제거
- 주변 환경, 공해 정도에 따라 열매에 중금속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일괄 채취하여 폐기하거나 식용 부적합 푯말 설치
- 은행열매는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잦으므로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일괄 채취, 채취허가 제도 운영, 불법채취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1년도 개발한 "은행나무 암수 감별법"에 따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만 식재토록 계획 수립

o 경찰청과 협조하여 중앙분리대에 가로수 조성을 통한 사고율 감소 등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

6) 가로수 조성관리의 내실화

o 가로수 관리 전문인 양성을 위한「가로수 기술자반」민간 위탁교육 지속 실시
- 연 2회, 100명(2월중) 산림교육원 활용

o 가로수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 가로수 조성·관리의 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법상의 가로수 관련 규정의 개정 협의
- 가로수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라. 추진일정

o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실적('12년말) 보고 : 2013. 2월

o 가로수 기술자반 민간위탁교육 : 2013. 2월

o '14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지 검토 : 2013. 5월

o 사업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시·도) : 상·하반기

o 가로수조성 및 관리실적 보고(시·도) : 2013. 12월말

o 도로 및 환경유형별 가로수 조성·관리 모델 용역 추진 : 연중

o 관련 부처간 가로수 업무 협의 및 법령·규정 개정 : 연중

30. 나라꽃 무궁화 확대 보급

목 표

◇ **생활권 주변의 무궁화 보급 지속 확대 및 문화 운동의 내실화 추진으로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 강화**

o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2개소, 600백만원

o 무궁화 문화행사 : 심포지엄(6월), 전국축제(8월) 등

가. 정책여건

o 최근 들어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지면서 그에 따른 국가상징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

o 무궁화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여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 수립 시행

o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 및 참여 증가

나. 기본방향

o 무궁화로 특성화된 도시·동산·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무궁화 명소 조성

o 무궁화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축제)행사, 전시공연의 확대 및 지원

o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한 무궁화 문화 및 홍보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특화된 무궁화 볼거리 명소 조성

o 무궁화 중심·거점도시 조성

- 무궁화로 특성화된 도시를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무궁화 보급·확대를 위한 거점지역으로 활용
- 무궁화 중심도시로 홍천군과 보령시·완주군에 무궁화 수목원·박물관·테마공원 등 관련 시설을 패키지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

- 2013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9	’10	’11	’12	’13
계	15,760	900	3,340	2,500	3,150	5,870
홍천	4,500	900	1,000	700	1,000	900
보령	7,660	-	340	600	1,750	4,970
완주	3,600	-	2,000	1,200	400	-

※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합한 금액임

o 무궁화동산 신규 조성 및 조성지 관리

- 생활권내 소규모 자투리, 공한지 등을 활용하여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기존 무궁화 조성지 등을 집중 관리하여 국민들의 관심유도 및 이미지 개선
- 관공서, 학교 등에 무궁화를 식재하여 나라꽃에 대한 의식 제고
- 무궁화 관리사업은 무궁화동산·거리에 가지치기(수형조절), 시비,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 『무궁화 가로수 수형관리 지침』에 의거 특색있는 무궁화 조성 및 사후관리 철저

- 2013년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 12개소, 600백만원(국유지 1개소 포함)

·무궁화 관리사업 : 20개소, 100백만원

2)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강화를 위한 문화행사 내실화

o 『제23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개최

- 목적 :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참여 확대
- 일시 : 2013년 8월 초·중순 (광복절 기념)
- 장소 : 지자체 4~5개소

o 추진방침

- 민간단체·지자체가 주관하여 축제계획 수립 및 집행하고 산림청은 축제기본방향 설정, 정보제공 등 행사가 내실화 되도록 지원
- 체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o 무궁화 전시회 개최와 지원 확대

- 무궁화 관련 사진, 그림, 설치미술, 공연 등 개최와 지원
- 관공서, 주요 KTX 역 광장 등에 무궁화분화 전시회 개최

o 연중 지속적인 무궁화 문화행사 확대 추진
-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4월), 무궁화 심포지엄(6월), 제2회 무궁화문학상 공모전(6월~9월), 무궁화 디지털공모전(7월~10월), 무궁화 전국축제(8월),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 순회 교육(9월~11월) 실시
- 기타 1~2개 행사를 추가 발굴하여 실시

o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 바로알기" 심포지엄 개최(6월) 및 토종무궁화에 대한 실태조사
- (심포지엄) 나라꽃 무궁화의 문헌 등에 나타난 역사에 대한 고찰 등
- (실태조사) 역사적·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실태 파악

o 무궁화가 우리 민족의 꽃임을 알리는 세계화 사업 추진
- 지자체, 무궁화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해외에 소재한 무궁화공원 관리사업 및 정기 교류 추진(일본 사이타마현 무궁화자연공원 등)

o 무궁화에 대한 정보교환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정례적인 워크숍을 지자체에서 순회 개최

3) 무궁화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o 심고 가꾸는 정책과 국민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무궁화 확산정책에서 나아가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무궁화 문화 정착
- 국민참여와 민관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무궁화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과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포럼 활성화
- 민간의 무궁화 운동 지원과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 거양

o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
-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온라인 무궁화 게임 개발, UCC 제작·보급
- 단체 또는 협회를 활용한 무궁화 소재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개발 및 상용화
- 무궁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여 무궁화 문화 운동 확산 추진

4) 무궁화 확대 보급를 위한 정책 발굴 및 법제화 추진

o '08.10월 수립된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확산 종합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무궁화의 보존 및 확대 보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o 무궁화 보존 및 보급, 선양, 무궁화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추진

5) ’13년 무궁화 보급 및 선양유공자 포상

o 나라꽃 무궁화 선양 유공자 포상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 무궁화 선양유공 민간인 및 공무원 등 발굴 포상

o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상징 유공자 포상중 무궁화 분야에 대해 조정협의

라. 추진일정

o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행사 개최 : 2013. 4월

o 무궁화 심포지엄 개최 : 2013. 6월

o 제2회 무궁화문학상 공모전 개최 : 2013. 6월

o 무궁화 보존 및 확대 보급 종합계획 수립 : ’13. 6월

o 무궁화 법제화 추진 : 2013. 상반기

o 무궁화동산 조성 및 조성지 관리사업 지도·점검 : 상·하반기

o 무궁화디지털 공모전 개최 : 2013. 7월

o 제23회「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개최 : 2013. 8월

o 무궁화 관련 사업 공모 추진 : 2013. 9월

o 무궁화 조성·관리사업 실적보고 : 2013. 12월

31. 새만금 그린네트워크 구축

목 표

◇ **간척지인 새만금 특성을 고려한 수목식재 조성기술 개발 및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반영된 산림사업의 추진 기반 확립**

o 새만금MP 반영사업 : 새만금 수목원,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

가. 정책여건

o 새만금사업은 1991년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다 2007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농업·산업·관광·도시·환경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

o 새만금위원회에서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 확정 (’11.3월)

- 새만금 수목원,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등 산림사업 반영

o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2012.11.22, 본회의 의결)

- 6개 부처에서 추진하던 새만금사업을 새만금개발청 신설 및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사업의 효율성 증진

나. 기본방향

o 새만금 간척지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

o 기후변화,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녹지공간 확보

o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이므로 사전에 녹지축을 규모있게 설계하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

다. 세부추진계획

1) 「새만금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 기본계획」 수립

o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상의 복합도시용지에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의 조성 규모, 적합수종, 산림청 역할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정립

o 새만금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 기본계획에 의한 새만금지역내에서 녹지축, 해안방재림의 추진 기반 확립

2) 간척지 수목생육기반조성 기술개발 지속 추진

o ’09년부터 일반토양 사용 없이 해저 준설토에 대해 잔디 종자 직파에 의한 지표 고정 공법개발과 수목생육기반 조성기술, 방풍시설 설치 유형별로 방풍시설이 수목의 활착과 생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 추진중

o 새만금 지역에 대한 수목생육기반 기술개발 연구 지속 추진(기획연구과제, ’11~’13년, 7억원)

- 국립산림과학원, 순천대, 전북대, 전북산림환경연구소 컨소시엄

3) 새만금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 업무협의 추진

o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새만금위원회 및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부처와 「새만금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근거한 산림사업 반영 협의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협의
- 산림사업(수목원, 녹지축, 해안방재림)에 대한 새만금개발청과 업무소관 명확화

o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사업 반영 및 추가 사업 발굴

- 새만금사업중 산림사업으로 수목원, 도시림·생활림·가로수 조성사업 명문화

라. 추진일정

o 새만금 녹지축 및 해안방재림 조성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13. 4월

o 새만금 수목생육기반 연구 관련 세미나 개최 : 2013. 7월

o 새만금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업무협의 : 연중

o 수목생육기반 조성 기술 개발 지속 추진 : 연중

산림이용국 소관

1. 산림복지지구(단지)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목 표

◇ 산림복지지구(단지)의 원활한 입지를 위한 법률안 마련
◇ 산림복지지구(단지) 운영을 위한 산림서비스 등 컨텐츠 발굴
◇ 민자유치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 정책여건

o 산림의 휴양·치유효과를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보건·복지수요에 기여해야할 필요성 증대

o 산림복지관련 사업추진 지원 법제도가 없어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사업 추진되는 실정임

o 기존의 자연휴양림 등 단기체류형 관광·휴양모델이 아닌, 요양과 치유를 위한 장기체류, 거주까지 가능한 친환경 주거지 모델로 차별화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지구(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적 입지유도를 통한 합리적 · 체계적 산림복지지구(단지) 지원체계 마련

o 산림복지지구(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 원활한 입지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등 주도적 산림복지정책 추진

o 산림휴양 · 치유 · 교육 등 산림의 복지적 요소를 활용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산림복지지구(단지)를 조성 ·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 법적 제도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복지지구(단지)의 원활한 입지를 위한 법률안 마련

o 지구(단지)지정을 통해 휴양 · 장기체류 · 정주 등을 포괄하는 산림복지지구(단지) 제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 원활한 입지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등 산림의 복원 및 관리를 동시에 의무부과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체계 구축

o 산림복지지구(단지)는 기존의 산림복지 기능과 주거 · 휴양 · 산림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산림복지를 기반으로 산림경영 기능을 수행하는 특화된 조직이 필요

- 산림의 공익기능 창출 및 산림경영, 산림복지지구(단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가칭) ‘산림복지공단’ 설립 근거 마련

2) 산림복지지구(단지)운영을 위한 산림서비스 등 컨텐츠 발굴

o 산림복지지구(단지) 유형별 · 수요계층별 프로그램 발굴

- 산림복지지구(단지)는 각종 산림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산림조성, 텃밭까지 포함하며 건강인 · 준환자 · 환자 등에게 맞춤형 컨텐츠 제공

o 지자체 · 민간과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림복지지구(단지)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안) 마련 · 추진

- 산림을 활용한 교육 · 체험 · 휴양 · 정주 · 요양시설 등 광역적 연계 프로그램화, 다양한 유형 및 입지의 산림복지지구(단지)의 공급체계 추진

o 산림복지지구(단지)의 민자 유치 및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산림복지의 구체적 컨텐츠 발굴 필요

라. 추진일정

o (가칭) 「산림복지지구(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특별법 제정(안) 마련 등 : 2013. 상반기
- 산림복지지구(단지) 시설 경영관리방안 등 마련 : 2013. 하반기

o 산림복지지구(단지) 시범사업(안) 마련 등 : 2013. 하반기

2. 미래 산지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목 표

◇ 산지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이용할 수 있는 산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 미래 산지관리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제 발굴
◇ 산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효율적인 산지관리체계 지원

가. 정책여건

o 산지를 잘 보전하면서 서민생활 및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체계적·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o 전국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체계(기본-지역계획)를 수립하여 산지를 보다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착화

o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산지관리정보를 온라인으로 지속 제공

나. 기본방향

o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는 관할구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o 산지특성평가제도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적기에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및 제도개선 보완

o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하고 숲을 잘 가꾼 산주에게는 보상을 실시하여 산지와 산주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

o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확산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및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산지관리체계 정착화

o 산지관리기본계획(2013~2017)을 바탕으로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관할구역의 산지에 대하여 2013년말까지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추진

- 산지관리지역계획을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 도시관리계획 등 지역의 특화된 산지관리체계 가이드라인 제시

o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사항

- ’12년까지 완료한 산지이용실태조사(’09~’12, 640만ha)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
-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지역조사’ 연구용역 결과 반영

※ (’13년)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위탁사업비(1,620백만원)

2)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고시 추진

o 산지가 갖는 입지·공간적 특성을 평가하여 보전적성이 낮은 보전산지를 합리적·계획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고시 추진

- 산지특성평가제도에 대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및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 조정대상, 지표 기준 등 제도개선 추진

※ (’12년) 산지특성평가제도 개선 및 법제도화 연구(국립산림과학원)

※ (’12년) 산지특성평가 지표 발굴·개선 연구(한국산지보전협회)

o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3)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현실화를 위한 실증 연구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의 방법론 모델은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배율표 및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추가 연구(’12~’15)를 한 후, 법령에 기반한 제도화(’16~) 추진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는 산주의 산림투자로 공익가치 증진 시 이에 상응한 크레딧을 부여하고, 산지개발자는 크레딧을 매입하여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적 균형 추구

o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그룹 운영

- 보고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운영하여 상시적 의견수렴 및 반영

4) 산지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

o 현재의 산지구분 정보와 더불어 기존의 산지전용지 등 산지이용실태와 생태·환경적 요소 및 입지 특성을 DB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도면에 표시하여 산지관리체계 구축 등 기초자료로 활용

- (’09) 73만ha(22개 시·군·구) → (’10) 203만ha(106개 시·군·구) → (’11) 200만ha(126개 시·군·구) → (’12) 167만ha(230개 시·군·구)

5) 산지관리정보체계 안정화 추진

o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산지정보시스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산지구분 조정에 필수적인 지역 · 지구 변동사항 등 유관 DB모니터링 및 산지정보시스템 지원 고객지원센터 전담 운용(☎1588-3493)

o 산지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산림교육원 교육과정에 산지정보시스템 활용과정을 운영하여 현업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3기 → 4기 확대 예정)

라. 추진일정

o 산지전용권거래제도 연구용역 추진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1차년도 연구용역 완료 : 2013. 4월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2차년도 연구용역 추진 : 2013. 5월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관련 실무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개최 : 수시

o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고시 추진

- 개정(안)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 2013. 상반기
- 개정(안) 고시 추진 : 2013. 하반기

o 산지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 추진 : 2013. 상반기

o 산지정보시스템 운영교육 실시 : 2013. 3월, 6월, 9월, 11월

o 산지정보 온라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 관리 : 연중

〈참 고〉

산 지 구 분 현 황

ㅁ 연도별 산지구분 현황

(단위 : 천ha, %)

연도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비고
		소계	임업용	공익용		
1981년	6,514 (100)	4,931 (76)	-		1,583 (24)	최초 지정
1991년	6,493 (100)	4,901 (75)	-		1,592 (25)	일제 정비
1997년	6,452 (100)	4,977 (77)	3,548 (55)	1,429 (22)	1,475 (23)	체계 개편
2008년	6,441 (100)	4,961 (77)	3,258 (51)	1,703 (26)	1,480 (23)	일제 정비
2009년	6,431 (100)	4,957 (77)	3,257 (51)	1,700 (26)	1,474 (23)	
2010년	6,433 (100)	4,947 (77)	3,276 (51)	1,671 (26)	1,486 (23)	
2011년	6,431 (100)	4,947 (77)	3,280 (51)	1,667 (26)	1,484 (23)	

ㅁ 시·도별 산지구분 현황(2011. 12월말)

(단위 : 천ha)

구분	계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비고
		소계	임업용	공익용		
합계	**6,431**	**4,947**	**3,280**	**1,667**	**1,484**	
서울	14	11	-	11	3	
부산	36	21	1	20	15	
대구	48	42	3	39	6	
인천	41	18	10	8	23	
광주	19	16	-	16	3	
대전	28	24	3	21	4	
울산	67	55	23	32	12	
경기	552	389	239	150	163	
강원	1361	1187	737	450	174	
충북	502	394	263	131	108	
충남	443	262	207	55	181	
전북	453	337	207	130	116	
전남	704	512	374	138	192	
경북	1368	1,101	831	270	267	
경남	707	547	371	176	160	
제주	88	31	11	20	57	

※ 연속지적도상 구적 면적임.

3. 효율적인 토석채취 및 산지복구 강화

목 표

◇ 채광 · 토석채취지에 대한 주기적 관리 · 감독체계 도입
◇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등 토석채취 허가기준 강화
◇ 산지훼손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기 복구 등 사후관리 강화

가. 정책여건

o 감사원 산지이용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시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경계 침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o 국무총리실 합동으로 '골재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화 제도 결정

o 자연경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석채취허가 기준 등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

o 산지전용 후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채광 · 토석채취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비영리법인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사후관리 강화
  - 토석채취지 경계침범 및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감사원 감사 지적

o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산지관리법 및 채석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의무화 제도 도입

o 자연친화적 채석제도 정착을 위한 토석채취허가기준 등 제도개선 발굴
  - 토석채취가 환경파괴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필요

o 산지훼손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 지도점검을 통해 적기 복구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채광 · 토석채취지에 대한 주기적 현장관리체계 도입

o 비영리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채광·채석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조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제도 강화 추진(감사원 지적사항)
- 경계 침범 및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심의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o 채광 · 토석채취지 문제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안 및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마련

2)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

o 자연친화적 토석채취를 위한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체계 제도 도입
- 토석채취업자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o 토석채취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 실시

o 토석채취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업체를 발굴하여 표창하고 업계에 홍보하는 등 자연친화적 토석채취제도 정착 도모

3) 자연친화적 토석채취허가기준 조기 정착

o 자연친화적 토석채취허가기준 마련 추진 및 허가기준 조기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개소 : 토석채취허가지 800개소 중 200개소
- 시기 : 연중
- 내용 : 경계 침범 및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o 토석채취지에 대한 주민생활 피해 등 사례 분석 및 개선안 마련

4) 2013 한국산림토석협회 역점 추진사업 지원

o 토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홍보
- 산림토석 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에 관한 홍보

o 토석산업 지원 등을 위한 정책 · 제도의 조사 및 연구
- 토석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
- 산지관련 법률과 현지 실정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

5) 채석단지 및 토석채취지 실태점검

o 채석단지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 개소 : 2012년말 채석단지 지정된 16개소
- 조사시기 : 2013. 4∼10월
- 조사방법 : 전문가와 합동 실시
- 조사내용 : 사업계획서, 심의조건 이행 여부 및 운영실태 조사

o 전국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합동조사 실시(6∼10월)

6)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산지전용 · 채광지 ·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이행 실태 점검
- 허가기간이 종료된 사업지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도별 자체 조사 및 공동조사(도별 3개소 이상) 실시
- 시기 : 2013년 상반기

o 불법전용지 관리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을 통해 위탁조사 실시
- 조사주체 : 한국산지보전협회(산지관리법 제44조의2)
- 조사시기 : 2013년 연중
- ('12) 충북 시범실시 → ('13) 4개 시 · 도 조사
- 해당 자체단체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복구명령 등 사후관리 조치

라. 추진일정

o 채광 · 채석지에 사후관리 개선안 마련 : 2013. 4월

o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 개선안 마련 : 2013. 4월

o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복구이행 상황 점검 : 2103. 5월

o 불법전용지 실태조사 : 2013. 10월

o 채석단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3. 10월

o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실태점검 : 2013. 11월

4. 국유림의 기능 및 국유림경영 정책 강화

목 표

◇ **국유림의 역할 재정립 및 경영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강화**
◇ **국유림 경영계획 제도개선 및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학술·연구용 산림의 지원체계 구축**
- 산림조사 153천ha·경영계획 작성 173천ha(사업비 1,641백만원) -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산림·국유림 역할을 계속 강조
o 지방분권 강화 등으로 국유림의 기능강화 등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
o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계획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필요
o 지자체·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유림 이용 수요 증가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반 조성 필요
o 학술·연구용 국유림 수요 증대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나. 기본방향

o 국유림의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수요 충족과 현장여건에 부합한 경영계획 수립
o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반영된 국유림의 거버넌스 구축
o 지자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파트너십 강화
o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국유림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
o 학술림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국유림정책 방향 설정 및 지자체와 협력강화

o 국유림의 역할 재정립 및 경영정책 강화로 공·사유림 선도적 사업수행
o 지자체의 관심사업 지원 등 협력방안 추진

o 지자체·산주·시민사회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 특수성과 국유림 행정을 접목시킨 모델을 제시

2) 국유림정책 발전을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 개최

o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유림경영방향 공감대 형성

o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산림소득 등 지역사회 발전방안 강구

o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성공사례 발표 및 문제점 제시와 지방산림청 현안사항에 대한 효율적 해결방안 강구

3) 시범경영계획구의 체계적인 관리로 경영계획 선도적 역할 수행

o 시범경영계획구 운영관리 규정,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충분히 이해 한 후 사업추진

- 시범구(6개) : 북부 홍천(가리산), 동부 평창(가리왕산·봉평), 남부 영주(장군봉), 중부 보은(샘봉산), 서부 무주(민주지산)

o 시범경영계획구 운영시 새로운 산림경영·관리기술 개발을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범적 운영 추진은 가능

※「국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제610호) 참조

4) 생물다양성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학술·연구용 산림 지원

o 국립대학에서 산림관련 학술연구, 시험사업, 인재양성 등을 위해서 대학교 자체의 학술림(연습림), 연구림 조성을 위한 임지 확보가 필요

※ 현재 6개 국립대학교 약 4,000ha의 산림을 학술림(연습림)으로 활용

o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산림복지 등 신규수요로 학술림 필요성과 확대가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 학술림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적극 지원

5)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운영 등 추진

o ’13년도 차기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계획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산림조사 (개소)	**11개소**	2개소 (청평, 원주)	3개소 (진부, 사북, 교가)	1개소 (춘양)	3개소 (음성, 옥천, 제천)	2개소 (부안, 남원)
경영계획 (개소)	**11개소**	3개소 (성산, 매화산, 신남)	2개소 (강릉, 평창)	3개소 (영양, 김천, 양산)	1개소 (단양)	2개소 (진안, 남해)

o 산림조사는 직영 산림조사, 용역 산림조사로 구분 추진하고 용역사업은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추진요령에 따라 추진

o 제1차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수립·운영

o 국립공원지역이 포함되는 경영계획구에 대하여는 국유림 경영계획 수립시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

가)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산림조사

o 사업량

(단위 : ha)

구 분	계	%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계	152,608	100	18,140	68,135	18,914	21,456	25,963
직 영	75,508	49.5	18,140	27,166	8,611	9,769	11,821
위탁(용역)	77,100	50.5	-	40,969	10,303	11,687	14,142

o 산림조사 일반

- 직영조사 및 위탁(용역) 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조사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기 착수로 동절기 이전에 조사 완료
- 산림조사시 산림입지도, 적지적수도, 항공사진, 산림토양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밀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

o 직영 산림조사

- 조사반별 월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조사 추진
- 가급적 비녹음기에 산림조사를 추진하고 녹음기에는 전산 내용입력 등 내업 실시

o 용역 산림조사

- 세부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초 산림조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
-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항공사진, 적지적수도, 산림기능평가도, 산림토양도, 산림입지조사자료, 재산목록, 임야도, 국유림종합계획서 등 지원

o ’14년도 산림조사 사업계획량 조사·보고

- 계획기간 만료 경영계획구, 신규매수지, 사권설정지 해제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14년도 산림조사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나)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o 사업량

(단위 : ha)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면 적	173,337	36,510	40,950	43,996	28,532	23,349
계획구수	11	3	2	3	1	2

o 국유림경영계획 일반

-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 기능이 최적 발휘되도록 계획 작성
- 산림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자와 부합되도록 지역산림계획 및 국유림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영계획서 작성
- 환경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계획이 되도록 작성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을 현실에 맞게 개정
-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정보체계의 운영 및 여건변화에 따른 내용 등

다) 국유림경영계획 평가 실시

o ’13년도 평가대상 경영계획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연간 평가	103	27	18	21	18	19
중간 평가	10	4 (창촌, 여주, 서울, 고양)	1 (정선)	3 (문경, 현동, 울산)	2 (공주, 논산)	-
최종 평가	11	3 (성산, 매화, 신남)	2 (강릉, 평창)	3 (영양, 김천, 양산)	1 (단양)	2 (진안, 남해)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실행평가(연간·중간·최종평가)는 경영계획구별로 실시

o 각 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한 경영계획구의 운영 상황 및 성과분석 결과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공유

o 평가 및 분석결과는 다음연도 또는 차기계획에 반영
- 미래지향적인 경영계획 운영 및 방향제시, 각종 사업계획 등 변경

라)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운영 강화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2012. 12월 구축되는 산림자원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 국유림경영계획 변경기능 개발, 임·소반도 현행화, 시스템 성능 개선 등

o ’13년도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등 운영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 산림사업 실적을 해당 지방청·관리소에서 실시간으로 경영계획부에 입력하고, 입력사항 분석·검색을 통하여 국유림경영정보 공유

o e-푸른샘(산림청지식포탈시스템)의 “행정정보시스템-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

o 각 지방산림청 및 관리소별로 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책임관리제(반드시 팀장급을 책임자로 지정) 운영

o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계획 담당자뿐만 아니라 각 사업담당자도 시스템을 적극 사용하도록 운영

마) 지방산림청·관리소 등의 관리자가 해야 할 사항

o 계획수립 및 운영중인 경영계획구의 경영계획부 자료 입력
- 용역사업으로 입력한 DB자료(산림조사부, 경영계획서, 갱신대장, 조림 및 사후관리 대장, 임·소반 수치도면 등)에 대한 수정·보완
- ’11년도 산림조사결과 및 ’12년도 경영계획 작성 자료 입력

o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중간·최종평가 실시

o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의 지방청 자체 사용자 교육 실시로 시스템 활성화 도모

7) 산림경영대행제도 활성화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대상지 발굴 및 실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o 타부처 국유림현황 및 수요조사 결과
- 부처별 국유림현황 : 137,461ha
  ·국방부 75,477ha, 교육과학기술부 30,400ha, 문화재청 12,083ha, 국토해양부 4,061ha 등
- ’12년 수요조사 결과 : 4개 부처 9,687ha(국방부 7,615ha, 교육과학기술부 65ha, 국가보훈처 180ha, 국토해양부 1,827ha)

o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영대행 적극 추진
- ’12년 수요 조사지(9,687ha)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조사
- 산림사업 기정 예산(숲가꾸기 사업비 등) 최대한 활용 협의 추진

8)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o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방청별 반드시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의 개최

o 구성위원으로는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등을 다양하게 위촉
-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o 위원회 소집, 서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요 국유림사업 등을 자문

o 『국유림법』 시행규칙 제4조(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에 따라 일정 면적의 구애없이 주요사안(재산처분 등)이 있을시 포함하여 개최·심의 추진

o 예산배정 현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계	지방청별					비고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산림경영계획 작성	40,000	8,000	8,000	8,000	8,000	8,000	

라. 추진일정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파악 : 2013. 상반기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평가(국유림관리소), 중간·최종평가(지방산림청) 실행 및 반영 : 2013. 4/4분기

o 정책강화를 위한 국유림관리소장 현장토론회 개최 : 2013. 하반기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예규) 개정 추진 : 2013. 하반기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추진 : 연중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 : 매 분기별 1회 이상

〈 보고사항(지방산림청 → 산림청) 〉

o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수시보고

o ’14년도 산림조사(경영계획구별) 계획량 보고 : 2013. 3월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경영대행 사업 가능임지 조사 결과보고 : 2013. 7월

o 산림조사 및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완료보고 : 2013. 12월

o 국유림경영계획 작성현황 보고(총괄) 보고(경영정보시스템) : 2014. 1월

o 국유림경영계획 연간·중간·최종 평가결과 보고 : 2014. 1월

5.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목 표

◇ ’30년까지 국유림률 32% 달성을 위해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o ’13년 사유림 매수 10,175ha(사업비 73,220백만원)

◇ 비예산 국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경영임지 확보
  o 사유림 매수외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등

◇ 보존부적합 재산의 교환 매각을 통한 정리 및 국유림 확대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등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국유림 지속적 확대」 필요

o 지속적인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국가의 산림경영임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산림경영 및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제한림 등의 매수를 통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가 동시에 필요

o 국유림 확대재원(세입 증대)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교환, 타부처 국유림 사용승인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비예산 국유림 확대가 절실

나. 기본방향

o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에서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되, 거점지역 확보보다는 지역별로 국유림이 균형적으로 분포되도록 추진

o 산림으로 환원할 수 없고 보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재산은 가급적 교환으로 처분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의 효용성을 제고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도 매각보다는 사유림과 교환하여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o 공공기능과 활용가치가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유재산을 관리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매각보다는 국유림 감소를 위하여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 추진

o 관리되고 있지 않은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사용승인, 기부채납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직영임지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유림 매수

가) 사업량 및 예산

(단위 : ha, 백만원)

기관별	계		산림경영임지		대나무생태보전숲 및 곶자왈보전림		소양강 탁수저감		백두대간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면적	예산
계	10,175	73,220	10,110	65,720	50	5,500	10	1,500	5	500
북부청	210	3,320	200	1,820	-	-	10	1,500	-	-
동부청	303	1,830	300	1,530	-	-	-	-	3	300
남부청	2,300	12,475	2,300	12,475	-	-	-	-	-	-
중부청	2,611	23,688	2,610	23,588	-	-	-	-	1	100
서부청	4,721	28,407	4,700	26,307	20	2,000	-	-	1	100
제 주	30	3,500	-	-	30	3,500	-	-	-	-

※ 산림경영임지 매수는 실거래 단가를 고려하여 지역별 사업량을 조정하여 추진
- (계획) 13,144ha, 500만원/ha ⇒ **(조정) 10,110ha, 650만원/ha**

※ 대나무생태보전숲은 서부청(20ha), 곶자왈보전림은 제주특별자치도(30ha) 사업량

나) 추진요령

① 공통사항

o 국유림 분포률이 높은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국가관리가 꼭 필요하고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지구·지정된 산림을 위주로 매수하고, 국유림 분포률이 낮은 지역은 산림경영에 유리한 사유림을 위주로 매수

o 매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연초에는 당해 연도의 목표 물량, 하반기에는 다음 해의 목표 물량 확보
- 매도 승낙한 사유림에 대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매수 추진

o 홈페이지(지자체 포함), 신문·방송·잡지 및 인터넷, 현수막, 전단지, 반상회지, 스

티커, 광고 전광판 등 모든 홍보수단과 방법으로 연중 활용(특히 지역 CATV, 교차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진

o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수 절차와 감정평가 자료 제공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행위를 공개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임야는 취득 제한 등 엄격 심사
- 감정평가법인에 자료제공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수준으로 공개

o 매수대상지내 입목조사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목가격이 가격결정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목조사 실시
- 매수대상지가 30ha 이상인 경우는 산림조합중앙회 등「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

②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o 기관별 국유림 분포률과 신청된 물량 및 지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량을 배정하되, ha당 단가는 집행기관별 차등하여 추진
- 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가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매수 계획량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국가 경영임지는 국유림 안 또는 연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어 집약적으로 경영·관리가 가능한 임지를 우선 매수(확대권역·거점지역 위주매수)

o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위주로 매수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 해소
-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산림경영이 가능하고 국유림관리소별 계획대비 25%범위 내에서 매수 추진하되, 기관별 연간 매수 계획 물량 확보 달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

o 산림경영임지에 게재 · 연접된 토지(전 · 답 등)는 현실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토지인 상태로는 매수를 엄격히 금지함. 다만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거나 현황임야인 경우에는 현황대로 감정하기로 한 후 매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ha당 매수 단가를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매수 가능

③ 제주 곶자왈보전림

o 희귀 산림생태 보전을 위한 생태등급 1~2급지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단지화가 되도록 매수 추진

- 조천(선흘)·한경곶자왈 지역 위주 대상지를 선정하여 매수 추진
- 공유지분의 산림(토지 포함)은 면적 과반수 이상의 지분 소유자가 매도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

④ 대나무생태보전숲

o 대규모 면적에 생육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한 대나무 숲의 사유림 매수

- 대나무 숲 주변의 체계적인 시업을 통해 추가 조성이 가능한 임지 등
-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구역을 확정하여 매수

⑤ 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o 강원도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소양강 상류인 양구군(해안지구), 홍천군(자운지구), 인제군(가아지구) 지역의 산림과 인접한 고랭지 밭 등을 매수

o 대상지 선정시에는 실제 토사유출방지 효과가 큰 곳을 위주로 매수하여 예산투자의 실효성을 높임

⑥ 백두대간 지역 등의 산림(토지 포함)

o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 청구한 사유 토지 등을 우선 매수

o 기타 일반 산림은 산림경영임지 및 보전림 예산으로 매수

⑦ 사유림매수 사업 민간위탁

o 사유림 매수 사업량 일부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 추진(토지매입비 78억원)

- 지방산림청 실정에 맞게 관리소 단위로 지역을 지정하여 지방산림청의 직접 매수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산림소유자의 혼선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가 매수할 대상지역의 범위를 시·군 단위 또는 관리소 단위로 지정하거나 지역 산림조합원의 소유 산림을 위주로 추진하되, 계획물량의 목표달성이 안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o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지방산림청장이 매수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매도승낙서 접수, 현지조사, 매수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수업무 일체의 대리권을 행사
- 위탁수수료는 매수 실적에 따라 정산하고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성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의사항 포함) 제출

o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국유림관리소장으로부터 행위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

2) 교환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

o 다른 법률과 공공목적에 따라 처분이 불가피한 국유림도 매각보다는 교환을 통해 국유림 감소를 최소화
- 인허가 등 협의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을 조건으로 협의

o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연고매각 대상 국유림의 처분은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으로 추진
- 면적이 시 지역은 1ha 이상, 시 외의 지역은 2ha 이상인 경우에는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

o 국유림 교환 시 입목조사 원칙. 다만, 공유림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입목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입목조사는 사유림 매수 시 입목조사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입목조사 비용은 소유자가 각각 부담

3)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집행

o 국유재산종합계획은 연간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목적으로 하므로 취득하거나 처분(매각·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계상
- 각 지방청은 ’14년도 국유재산 관리 · 처분계획을 5월말까지 제출
-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에는 취득·처분, 행정재산 사용승인, 개발 및 사용허가·대부, 유가증권 등 국유재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반영
  ※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분야) 국유림관리과-3664, ’12.10.12)호 참조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 등도 협의단계에서 사전 파악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반영 후 집행
- 예산집행전 디지털예산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형태로 입력

o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더라도 환경부가 요청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저촉되거나, 당해 연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 불가

- 엄격한 실질심사 후 관련법령 및「국유재산 종합계획」,「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처분지침」에 적합한 경우에 집행
- 당해연도「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 추진

4) 국유재산 일반관리

o「국유재산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되, 청사, 관사, 양묘장, 임도(운재로 시설용 토지 포함), 자연휴양림, 시험포지, 산림경영임야 등 실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또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예) 마을숲 조성계획, 저목장 또는 운재로 시설계획 등

o 국유림의 종류가 현실 이용현황 및 장래 활용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림 구분 기준에 따라 재구분 조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4호에 따라 대부되지 아니한 불요존국유림이 대부된 국유림과 서로 연접되어 그 합산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

·특별시·광역시 : 2만제곱미터 이상

·제주특별자치도(동 지역만 해당)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 5만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 : 10만제곱미터 이상

o 분할·합병 등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은 수시로 국유재산대장(카드대장, 전산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즉시 정리한 후 관리

5) 타부처 미활용 국유림 사용승인

o 기획재정부·국방부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을 파악(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반회계)하여 산림경영관리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재산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총괄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림은 해당 관리청 소관의 다른 국유림과 교환 형식으로 상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

o 조달청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이관 대상으로 분류된 유휴 행정재산 중 우리 청에서 활용하고자 인계하지 않은 재산은 국유림경영계획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

6)「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o「국유림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본청 및 지방청 관계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T/F팀 구성
- 개정령안 입안에 필요한 자료 수집 후 토론회를 정례화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확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운영 : 2013. 1. 1부터

o 사유림매수

-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 : 2012. 12월
-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 연중(상반기 : 주간보고, 하반기 : 월간·주간보고)
- 사유림매수 실적보고 : 2013. 12월

o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등

- 2013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 : 2013. 1월
  ※ 기획재정부(총괄청)에 제출 : 2013. 1월
- 2013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제출(기획재정부) : 2013. 6월
  ※ 각 지방청은 국유재산 관리 · 처분계획을 6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o 2012년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 제출 : 2013. 1월

o 2012년 유휴행정재산 실태조사 결과보고 : 2013. 1월

o 2013년 국유재산 매각 · 교환실적 결과보고 : 2013. 12월

o 국유림의 종류 구분 및 재구분 : 연중

o 타부처 소관 국유림 사용승인 신청 : 연중

6.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사후관리 강화

목 표

◇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의 합리적인 관리
◇ 불법무단점유지 근절을 위한 스마트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가. 정책여건

o 지역 균형 발전 및 국가기반시설 확충 필요에 따른 미개발 산림의 수요 증가

o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및 농산촌 주민 소득사업 요구 증가 추세

o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국유림을 활용하여 농림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

o 국유재산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대부·사용허가 요구 및 무단점유 빈번

o 산림으로 환원할 수 없는 시설부지와 농지 등 무단점유지 정리를 통한 국민 애로사항 해소 요구가 증가

o 무단점유지 감시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무단점유지 근원적 정리가 어려움

나. 기본방향

o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기반사업에 포함되는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는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운용

o 대면적 신규 대부·사용허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환으로 실시하여 경영임지 감소 방지

o 농림어업인을 위한 대부·사용허가는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운영하여 불편을 해소하되 장기대부를 억제하여 국유림의 사유화 방지

o 대부·사용허가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국유림관리 체계를 확립

o 기존 대부·사용허가 정보를 일제 정비하고 통계분류를 정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 실시

o 항공사진을 이용한 국유림의 감시를 통해 불법 무단점유지 색출 및 방지

다. 세부추진계획

1) 신규 대부 · 사용허가 관리체계 정비

o 국유림 비율이 높은 지자체 등에서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사업이나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잔여재산의 효용도와 기대이익 등에 대한 균형 있는 검토를 거친 후 대부 및 사용허가를 결정

- 근거 법령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신규 대부 · 사용허가 실시
- 산지전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피해를 최소화

o 국유림의 유상 대부 ·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부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입 확충

- 신규 대부 · 사용허가시 유 · 무상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계약체결
-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른 대부료 감면 여부 판단
- 대부심사시 사용 용도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법률 및 요율을 정확히 적용

o 신규 대부 · 사용허가 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실대부지 발생을 방지

o 요존국유림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유림법 개정 추진

2) 대부지 관리 및 실태조사 제도 개선

o 용도별 대부지 실태조사 점수 체계를 개선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정량화 하여 관리 실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o 타용도 사용, 상습 · 고액 대부료 미납 등 대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실 관리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불량대부지로 처리

- 계도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경우는 사례별로 정리하여 기준을 정하고 시정여부를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정비
- 대부지실태조사 시 수집된 체납대부자의 세부정보를 채권징수 부서와 유기적으로 공유하여 채권징수 강화 및 미수납 채권 방지

o 대부지실태조사는 면적별, 중요도별 대부지를 선별하여 소속 기관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 지방청, 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 서귀포시 등 각 기관의 인력 및 대부지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사대상을 차등 선정

o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부지 실태조사가 되도록 견제 시스템 운영

- (산림청 국유림 실태조사 지도·점검) 일선 관서의 올바른 대부지 실태조사를 위해 대부지 선정 및 평가사항을 지도 점검
- (지방청 간 대부지 교차조사) 1차 소속 기관간의 교차조사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표본 검수 및 우수 관리 사례 발굴 전파

o 항공사진을 이용한 대부지 관리
- 실태조사 전 항공사진과 사업계획도를 확인하여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 산지전용 사항을 의무적으로 파악
- 실태조사 시 양식에 따른 항공사진을 첨부하여 연차별 변동 사항 관리

o 대부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후관리 철저
- 출장보고서,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사진 등 자료 입력

o 청문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국유림으로부터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시설물의 제거 등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처분시도 미리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3) 무단점유지 색출 시스템 강화

o 무단점유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단점유지 색출 시스템운용
- 무단점유감시원의 항공사진 판독기술 교육 및 운용을 통한 능력강화 및 효율적인 인력 운용
- 항공사진을 통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점유를 근원적으로 차단

o 색출된 무단점유지는 지역주민에게 국유림의 무단점유가 경범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중단하기 위해 엄중히 처리

o 신규로 발견된 무단점유지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의 의법 조치와 아울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추진

o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의 불법점유도 예외 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점유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
- 국유림 무단점유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지체하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4) 무단점유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비임야)의 정리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적법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를 받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개선(법령개정 추진)

o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칙)을 신설하여 산림환원이 불가능한 장기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법령개정 추진)

5) 골프장 대부료 반환 소송에 대한 대응 강화

o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골프장 업체의 대부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현행 국가-변호사 업무협약 관계를 공고히 유지

o 본청-지방청-관리소-변호사의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여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건별 다른 사항은 유연하게 대처

o 골프장 소송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운용 및 국고세입 유지

라. 추진일정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계획 시달 : 2013. 2월

o 국유림 무단점유지 조사 방안 마련 : 2013. 5월

o 장기무단점유지 정리 추진 : 연중

o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및 후속조치 : 2013. 3 ~11월

o 국유림 대부지 지도·점검 실시 : 2013. 9~10월

7.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목 표

◇ 관리가 부실한 조림대부·분수림의 입목을 매수한 후 직접 경영하여 공익적 기능 확대

o ’13년 입목매수 1,500ha, 180천㎥ (사업비 2,88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92년부터 추진 중인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사업은 ’12년말 현재 80%를 사들여 잔여 매수지는 20%(22천ha)

o 조림대부·분수림은 수대부자 등이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숲가꾸기, 간벌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아 관리가 소홀

o ’05년도를 정점으로 이후 매수량과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계속적으로 적정 규모의 매수를 유지 필요

o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림에 대하여 매수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매수 추진

나. 기본방향

o 장기적인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체·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리하는 대규모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도신청을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 매수 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예산집행 및 사업 추진 완료

o 입목가격 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입목수량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수대부자 등에 대하여도 감정평가법인 선택권을 부여

o 조림대부 · 분수림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대부지 실태조사에 따른 부실대부지는 반환을 적극 유도하여 직영임지 확보

- ’13년 기간 만료지 : 14건 132ha(조림대부 3건 25ha, 분수림 11건 107ha)

다. 세부추진계획

1) 조림대부 · 분수림 내 입목매수를 통한 경영임지 확보

o 사업량 : 1,500ha, 180천㎥(2,880백만원)

o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산림청별 조림대부·분수림 입목매수 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사업량을 배정

(단위 : ha, 천㎥, 백만원)

구 분	총계	북부청	동부청	남부청	중부청	서부청	제주도
면 적	1,500	48	400	800	92	10	150
수 량	180	6	40	90	13	1	30
예 산	2,880	115	705	1,350	195	15	500

o 매수안내

-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계획을 ’13. 1월에 산림청·지방산림청·제주특별자치도·산림조합중앙회 등 관련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언론에 홍보하여 조기에 매수완료
- ’13년 1월말까지 조림대부 · 분수림 내 입목매수계획을 관내 조림용 대부지의 수대부자 및 분수림 설정을 받은 자(이하 “수대부자등”이라 한다) 전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으로 매도 권유

o 매수대상지 선정

- 매도승낙서가 제출된 임지는 입목수량·추정금액, 매수 우선기준 등을 현지 조사하여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
- 연중 추가적인 매도승낙을 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입목수량 조사

- 건당 면적이 30ha 미만인 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건당 면적이 30ha 이상인 임지는 산림청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제1호 각목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조사한 입목수량을 2개 감정평가법인에 제시하여 가격감정을 의뢰
- 입목조사시 고사목·산불 및 병해충 피해목·기타 용재 가치가 없는 입목과 국가소유의 입목은 제외하고 평가실시

o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된 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재평가
- 관리소장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입목수량 및 가격산출근거와 설명서를 제출받아 검수
- 조림대부·분수림의 수대부자 등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기반시설(임도)에 투자비용 보전을 위하여 현존가치를 감정 평가하여 가격결정에 반영

o 대부지(분수림) 소멸통지 및 국유림 종류 재구분
- 입목대금 지급과 동시에 수대부자 등에게 서면으로 대부계약(분수림 설정)이 소멸되었음을 통지하고, 요존국유림(행정재산)으로 국유림 종류 재구분(의무)과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하여 직영임지로 관리 철저

라. 추진일정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사업계획 공고 : 2013. 1월

o 조림대부·분수림 내 입목매수 추진 및 결과보고 : 연중

8. 국가소송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

목 표

◇ 국가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유재산권 보전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이행 철저로 소유권 확보

가. 정책여건

o 정보공개 등 사회여건 변화로 국가소송은 감소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국유화된 무주부동산 및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 증가

o 일선 소속기관 국가소송 수행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대응능력 미흡

나. 기본방향

o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소송 수행자의 실무능력 배양

o 지방청 소송수행에 대한 본청의 지원 · 감독 · 평가기능 강화

o DMZ일원 지적복구 임야에 대한 산림청소관 국유화 추진

o 지적관련 공부정리 등 국가소유권 확보 조치철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소송 수행자의 소송대응 능력 배양

o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소송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

o 관할 검찰청의 국가소송 실무교육 이수

o 기 발간 배부한 국가소송관련 업무편람을 적극 활용 실무능력 향상
- 국가소송업무편람, 국가소송백서, 국유재산등기 실무편람

2) 국가소송 승소율 제고

o 소송가액이 높거나 규모가 큰 재산은 본청과 지방청이 공동수행
- 소송가액 10억원 이상, 면적 100㏊ 이상

o 산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유형의 고액소송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
  - 골프장 대부료 관련 소송, 헌법소원 청구사건 등

o 지방청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은 본청과 연계하여 공동대응

o 수시로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승소율 제고

3) 국가소송수행 지휘체계 확립

o 국가소송의 소제기, 응소 · 판결 등 진행상황 보고 철저로 공동대응 강화

o 국가소송 수행자의 불변기간도과 등 소송해태사례 방지 철저

o 국가소송 사건 처리부 및 소송기록부 작성 비치

4)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o 지적공부 정리 등 국가소유권 확보조치 철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o 권리보전조치 유형별 미 정리 사유를 철저히 검토하여 정리

o 토지(임야)대장 · 국유재산대장 · 등기부 · 지적도등 지적공부 확인철저

라. 추진일정

o 국가소송 수행자 전문교육 이수 : 연중 수시

o 국가소송수행 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

o 국가소송 수행 및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실태 지도점검 : 2013. 6월, 12월

9. 지방산림청 업무효율성 제고

목 표

◇ **국유림행정 일선 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으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가. 정책여건

o 국유림행정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접근성 저하

o 현장중심의 업무로 자율과 창의적 활동이 요구

o 새로운 임업기술이나 선진화된 임업경영기법 등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접촉할 기회가 부족

나. 기본방향

o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 선진 임업기술과 행정시스템에 대한 체험위주의 국제적 안목배양과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o 산림수련관을 운영하여 산림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편안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

o 산림관련기관·단체의 교육, 회의 등을 통한 산림경영의 역량강화 도모

o 산림수련관의 안전관리 철저 및 쾌적한 편의제공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1) 지방산림청 운영지원

o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20백만원
- 산림청 : 국유림경영·관리분야 우수공무원 선발 포상
- 지방청 : 우수경영팀 선발 포상

o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해외 정보교류를 위한 정책연수 실시
- 방문 국가에 대하여 현장 체험 등 정보교류를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연수생들이 보람을 느끼고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계획연수 추진
-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수 추진 :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
※ 최근 5년간 해외연수 실적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수국가	스페인·터키	인도네시아·싱가폴	호주·뉴질랜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몽골·일본
연수인원	23명	16명	16명	36명	57명

o 산림사업 관학연구 개발비 지원(북부, 동부, 남부) : 150백만원

2) 산림수련관 운영·관리

o 수련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철저
-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 기능저하 등 하자발생 여부를 점검 조치
- 건물 등 시설물 주변 또는 진입로 주변의 위험요소 사전 제거

o 수련관의 노후시설 분야는 연차적으로 보수공사 추진
- 노후시설은 지방산림청별 대 수선비를 우선 반영하여 보수 추진

o 수련관 운영관리
-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낭비요인 수시확인 개선
- ’13년도 운영예산 : 206,172천원

기 관 별	북 부 (설악산)	동 부 (양 양)	남 부 (포 항)	중 부 (신진도)	서 부 (변 산)
금액(천원)	23,210	38,880	23,822	62,212	58,048

※ 수련관 안내실에 지역특산 임산물 판매처 안내서 및 홍보물 비치

라. 추진일정

o 지방청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 2013. 상반기(5∼6월), 하반기(9∼10월)

o 우수 경영팀 선발 계획 수립 및 예산 재배정 : 2013. 11∼12월

o 국유림경영·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분야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 2013. 11월

o 산림수련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실태점검(지방산림청) : 연중

10. 산림복지 서비스 구축

목 표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휴양, 교육, 문화, 치유, 일자리 등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도움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문화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

- 국토의 65%인 산림이 개인, 가족, 단체 등의 여가활동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자리 잡음

o 숲을 가꾸고 보호하던 정책에서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변화

-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휴양, 레포츠, 치유, 교육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

나. 기본방향

o 산림복지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한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

o 생애 단계별로 휴양·문화·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제공

o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o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 · 사업 영역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청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을 담은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

o 산림의 휴양적 가치 활용과 건강 · 문화 · 교육 등 복지적 가치 확립을 위한생애주기별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

- '산림복지 개념 정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산림복지 개념 정립 및 국민이 공감하는 산림복지 방향 제시

※ 산림기본법에 '산림복지'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립산림과학원 현안과제로 기본계획 수립 추진('13 상반기)

o 기본계획을 토대로 산림복지 관련 정책 개선, 예산사업 발굴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련부서에 전파 및 홍보강화

2) 생애 주기별로 휴양·문화·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제공

출생기	⇨	유아기	⇨	아동·청소년기	⇨	청년기	⇨	중장년기	⇨	노년기	⇨	회년기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산악레포츠 시설 운영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공간, 조성·운영		산림요양 서비스 및 자원봉사		수목장림 확충

가) (출생기)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탄생목 심기

o 산모 및 태아의 건강·감성 증진을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 임신 24~36주 부부를 대상으로 명상·요가숲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o 5살 이하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탄생목 심기」 행사 추진
- NGO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나) (유아기)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확대조성 · 운영

o 체험 · 놀이 위주의 「유아숲체험원」 확대조성 및 운영
-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o 유아숲체험원 등록 및 전문인력 양성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록
-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 지도 점검, 전문인력 양성

다) (아동 · 청소년기) 청소년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산림체험 · 교육 확대

o 숲사랑소년단의 체계적 육성
- ‘숲사랑소년단 ‘ 설립에 따른 역량강화 및 조직홍보
  ※ 권역별 지역회 확대, 소년단 CI · 단복 제작, 보조지원·조세감면 등의 지원마련
- 단원(초 · 중 · 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화

o 청소년 교육시설 조성 · 운영의 활성화
- 체계적인 산림체험 · 교육을 위한 산림교육센터 설치(2곳), 지정 및 운영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한 수련활동 등과 연계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소외계층 · 청소년 등에 대한 청소년 녹색체험교육 확대
  ('12년 4개소 → '13년 6개소)
- "숲으로 가자" 운동의 지속적 추진 및 활성화

o 교육과정 내 산림교육 강화
- 중등·고등 산림교육 교과서 개발·보급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산림청 '숲에 on' 및 교과부 'CRM(창의체험자원지도)'에 등재
- 학교 교장·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원산림체험과정 확대 운영

라) (청년기) 등산·레저 · 문화 활동 지원 활성화

o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의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
- 임도 등을 이용한 레저스포츠길에서 관련단체에게 산림청장배 산악스키,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대회 등 개최로 매니아층 확대
- 임도 등을 레저스포츠길로 지정하여 관리방안 마련

o 산림생태·문화 등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숲길' 조성
- 숲길 조성을 확대하고 옛길·임도 등과 연계한 전국 숲길 네트워크화

마) (중 · 장년기) 산림휴양 · 치유서비스 지원

o 지역별로 특색있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조성 확대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o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확대 조성 및 운영
- 국립 2개소(양평, 울주) 및 공립 6개소(화순, 순창, 영동, 광양, 합천, 서귀포) 조성

바) (노년 · 회년기) 산림 요양 · 장묘서비스 지원

o 자연친화적인 수목장림 인프라 구축 및 인식 제고
- 지역별 특색있는 국 · 공유 모델 수목장림 확대 조성
- 수목장림 인식제고를 위한 범국민 서명 실천운동 전개

3) 「산림복지단지」 조성 방안 마련

o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12)을 바탕으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운영 · 관리 편람' 제작
- 산림을 휴양, 요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 · 운영

※ 「산림복지단지」 조성 방향 •산림복지단지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관광문화시설, 의료 및 공공기반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수익모델을 도출하고 활용도 제고 •최소 1개월에서 수년까지 복지단지 이용 목적에 따라 체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경영 모델을 제공

4)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운영 활성화

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조직정비 및 안정화

o 2인 이사체계 전환에 따른 조직 인사 및 사무분장 개편
- 상임이사 1인 체계를 기획개발 · 시설운영 2인 이사체계로 전환

o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의 산림문화 · 복지 ·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수행 · 지원

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o 산림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산림교육센터 운영관리
- 지역의 산림교육센터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별로 국가 산림교육센터(숲체원) 확대 조성 추진

o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 등 산림교육업무 위탁

o ‘수목장림 지원센터’ 설치 · 운영

o 푸르미 장학금 운영 · 관리 등 장학사업

o 대외 출연금 · 기부금 유치 및 홍보 · 마케팅 확대

라. 추진일정

o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종합계획 수립 : 2013. 8월

o 숲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2013. 3~10월

o 탄생목 심기행사 추진 : 2013. 3~5월

o 유아숲체험원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숲으로 가자! 운동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연중

o 수목장림 활성화방안 추진 : 연중

o 산림기본법에 ‘산림복지’ 법적 근거 마련 : 2013. 10월

11.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

목 표

◇ 산림교육 수혜자 1,000만명 시대를 준비하는 산림교육 시설 조성 확대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림의 역할과 대중교육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강조

o 유아·청소년의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해 체험활동 위주로 교육정책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산림을 통한 교육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교육시설·공간 확충

o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개발·보급

o 전문화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관리

o 범국민적 "숲으로 가자!" 운동 확대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교육종합계획('13~'17)」 수립으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

o 제정 법률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교육정책 마련
- UNDESD(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계한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o 산림교육 비전, 목표, 세부추진과제(21) 및 주요 지표 설정

2) 놀이·체험위주의 친환경적인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o 도시인근, 접근성 및 자연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수의 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공유 유아숲체험원 조성
- '13년 계획 : 5개소
- 현지 특성 및 운영 형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제시
※ 조성 형태(일반, 공원연계, 휴양림연계형), 운영 형태(정기, 체험, 매일형)

3) 체계적인 산림체험 · 교육을 위해 산림교육센터 설치 확대

o 『숲체원』의 조성 ·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 수행

- ’13년 계획 : 2개소(전남 장성, 부산 금정구)

o 수요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폐교를 활용한 산림교육센터 조성

- ’13년 1개소(부산 금정구 윤산중학교)를 시범적으로 조성한 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

4)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o 국립수목원에서 개발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화 · 셋트화하여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

※ 개발 프로그램 : (’08) 초등 → (’09) 중등 → (’10) 유치원 → (’11) 특수 → (’12) 고등

o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체험 수요를 반영하여 능동적으로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

- 일선학교와 “1校1숲” 또는 “방과후 숲교실”을 맺고 지역 내 산림을 야외체험학습공간으로 제공
- 대학, 수목원 등과 연계하여 도시지역의 소외계층, 장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주말 산림학교” 개설 · 운영

5)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o 초 · 중 · 고등 교과서 내 산림교육 내용 강화

- 새롭게 적용되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산림관련 내용의 반영 확대 추진
- 산림시설에 대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교과부 ‘창의체험지도(CRM)’ 등록 추진

o 교원의 산림교육 역량 강화

- 학교교사 산림교육 연수 교육 표준 교육과정 개발 · 보급
-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원 등을 통해 교장 · 교감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연수과정을 운영

6) 전문화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및 관리

o 숲해설가를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으로 휴양림, 수목원 등에 배치 · 활용

- ’13년 배치계획 : 총490명(국가 237명, 지자체 253명)
- 숲해설 체험인원 : (’09) 767 → (’10) 1,132 → (’11) 1,366천명

o 수요 및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분야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 운영

- ’13년 지정계획 : 숲해설가 5, 유아숲지도사 1, 숲길체험지도사 5개소
  ※ ’12년 현재 지정된 양성기관 : 숲해설가 26, 숲길체험지도사 3개소
- 교육과정, 교재, 강사 등 전문위원 검토 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o 산림교육전문가 자질 향상 및 수준높은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 산림정책 · 산림교육 등의 트랜드 변화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 운영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유사 자격제도를 참고하여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직무교육 · 승급교육) 실시

o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 교육생의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당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7) 범국민적으로 “숲으로 가자!” 운동 추진 확대

o 시 · 도 교육청, 일선학교 및 지역 WEE센터 등과 MOU체결

-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

o “숲으로 가자!” 캐치프레이즈 적극 활용

- 소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체험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활용

8) 숲사랑소년단을 명실상부한 청소년 산림단체로 육성

o 지역단위 조직 보강 및 관련단체와 협력하여 체험활동 활성화

-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지역회를 확대
- 숲체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캠프형 체험활동 활성화

o 교사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 관심도 등을 조사하여 학년별 · 성별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o 일체감, 자긍심 조성을 위한 CI, 마크 및 단복 등 제작 · 보급

라. 추진일정

o ’12년 유아숲체험원 조성(정비)·운영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 : 2013. 2월

o 산림교육전문가 소양·보수교육 및 현장점검 실시 : 2013. 3~10월

o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연중 추진

o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 연중 추진

o 범국민적으로 “숲으로 가자!” 운동 : 연중 추진

12.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인프라 확대

목 표

◇ 산림치유 공간 조성 등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 제공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 민간, 지자체 등에서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o 최근 산림치유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면서 산림치유 효과규명을 위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o 치유의 숲 조성기준 및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도입 등 정책추진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국·공유 치유의 숲 확대 조성

o 치유의 숲 운영·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산림치유 효과규명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인식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공유 치유의 숲 확대 조성

o 접근성, 치유환경을 고려하여 국유 치유의 숲을 확대 조성하여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
- ('12) 3개소 운영 → ('13) 2개소 추가 조성(경기 양평, 울산, 울주), 442백만원
  ※ 치유의 숲 : 개소 당 50억원 규모로 3년(설계1, 조성2)사업으로 추진

o 산림치유 환경이 우수한 생활권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
- ('12) 7개소, 3,375백만원 → ('13) 16개소, 5,400백만원(계속 5, 신규 11)
  ※ 7개소(충북 영동, 전북 순창, 전남 화순·장흥·광양, 경남 합천, 제주 서귀포 → 16개소(강원1, 경기2, 전남5, 충북1, 경남2 추가)

o 강릉「저탄소 녹색시범도시」조성사업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11~’14)

- (’12) 실시설계·토지매입 → (’13) 토지매입 → (‘14) 조성공사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체계 정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o 치유의 숲 특성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마련 등 국유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활성화

- 생태·물리적 환경 및 이용 대상을 고려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 국유치유의 숲 : 산음 치유의 숲, 장성 치유의 숲, 숲체원 치유의 숲

o「치유의 숲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치유의 숲에 대한 운영 내실화로 이용 만족도 제고

- 치유의 숲 세부운영 방법 및 치유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 규정

3) 산림치유 효과규명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및 국민인식 확산

o「산림치유 연구사업단」등 산림치유 관련 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 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산림치유연구협의회 구성·운영

- 연구기관·대학·민간단체 등을 총망라한 산림치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자문 청취

※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2회/년)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o 기획과제 등 연구결과는 연 1회 이상 세미나·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림치유에 대한 과학적 인식 확산

o 주요 언론매체와 연계하여 산림치유 체험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민참여 제고

라. 추진일정

o 국유 치유의 숲 운영계획 수립 : 2013. 2월

o 산림치유협의회 구성·운영 : 2013. 5월

o 산림치유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2013. 6월, 11월

1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및 활용

목 표

◇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안정된 녹색일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가. 정책여건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운영으로 인하여 전문분야인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o 국·공유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공간 확대로 산림치유지도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o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이 치유의 숲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할 필요

나. 기본방향

o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o 산림치유지도사의 계획적인 양성

o 산림치유지도사 영역확대 등 제도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o 산림치유지도사 수요를 고려, 7개 권역(수도권,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에 양성기관을 최소 1개소씩 지정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 산림 및 보건·의학 교육기능이 있는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기관·단체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추진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현황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12.8월)

o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 추진

2) 산림치유지도사의 계획적인 양성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검정평가 계획 수립 추진

- 의료, 보건, 간호, 산림 관련 전문가를 양성과정별 검정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검정의 객관성 확보
- 평가 준비기간, 양성기관 지정에 따른 시험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검정평가 계획 수립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검정평가는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토록하고 있음

3) 산림치유지도사 영역확대 등 제도정비

o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지역을 규정하고 있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개정을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영역 확대

o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학과의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현재 관련학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세부학과명을 산림청장이 고시토록「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3 관련 별표1 개정하여 교육생들의 혼란 방지

※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은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과로 규정하고 있어 세부학과명에 대한 교육생의 혼란 발생

o 산림치유지도사 교육분야별 교육시간 조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실습시간이 이론시간에 비해 부족하여 교육생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 관련 별표 개정

※ 현재 산림치유지도사 교육과정은 교육분야별로 이론과 실습시간을 두고 있으나, 실습시간이 이론시간에 비해 부족

라. 추진일정

o 권역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 연중

o 산림치유지도사 검정평가 계획 수립 : 2013. 3월

o「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산림치유지도사 제도정비) : 2013. 6월

14.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체계 정비

목 표

◇ 산촌생태마을 특성별 운영·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산촌 활성화 도모

가. 정책여건

o 1995년~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240개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o 2009년 4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예산편성

o 주요 언론에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운영부실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기 조성된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

나. 기본방향

o 산촌주민의 참여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o 마을 특성별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o 산촌마을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o 산촌마을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산촌관련 제도개선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촌주민의 참여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o 마을대표 및 청년층(운영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산림교육원에 마을리더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마을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 조성 중인 산촌개발사업 마을 대상으로 배치하던 운영매니저를 ’13년부터 활성화마을(체험) 위주로 배치

o 주민노령화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산촌마을에 베이비부머세대(은퇴자)를 산촌으로 유입하여 마을 운영 능력 배양

2) 마을 특성별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o 산촌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 등을 관광화 할 수 있는 자원 발굴을 통해 마을 간 차별화

- 녹색체험시설(숙박 등)이 도입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는 유·무형 자료 구축

※ 산림치유 환경이 우수한 마을의 경우 산림치유마을로 육성하는 방안 검토

3) 마을간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o 온라인 홍보 강화와 더불어 산촌생태마을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마을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숲에 On을 통한 우수산촌마을 적극 홍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계 홍보

o 휴양림, 산림조합 등과 MOU체결 등 연계를 통한 활성화 체계 마련

4)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산촌관련 제도 개선

o 조성완료된 산촌개발사업 마을 사후관리 및 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지침 마련

- 소득기반시설 및 숙박(체험)시설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라. 추진일정

o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배치 : 2013. 1월

o 마을리더 양성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2013. 3월

o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지침 마련 : 2013. 3월

o 우수산촌마을에 대한 기획홍보 : 연중

15. 가족친화적인 산림휴양서비스 제고

목 표

◇ **자연휴양림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족친화적 · 친자연적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가. 정책여건

o 소득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약 68%)이 가족동반 고객

o 계층별, 지역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 요구 증대

o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림휴양 시설 및 프로그램 등 공익적 역할 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o 지형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형 산림휴양시설 확대

o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 ·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o 휴양림 내 먹는 물 관리, 안전사고 운영으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1) 체계적인 설계, 공사, 관리를 통해 산림휴양시설 선진화 기반 마련

o 휴양시설 설계의 체계적 기반 마련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체계적 설계검토를 위한 ‘휴양시설 표준설계 매뉴얼’ 제작 · 활용
- 설계비 1억원 이상 시설의 현상공모 및 인테리어 등에 전문가 참여

o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 및 공사감독 공무원의 자질 강화
- 노후시설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및 ISO 9001 기준에 따른 시설물 점검
- 시설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 제작하고 시설유지보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완 · 관리
- 공사감독 공무원의 건설기술원 감리교육 이수로 시공관리 강화

2)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약형 산림휴양시설 확대

o **(펠릿)** 규모 있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펠릿보일러를 신규·교체 설치하여 전체 난방시설의 15%까지 확대(현재 4% → 15%)

- 설치 계획(국립) : (’12) 16대 → (’13) 26대 → (’17까지) 60대

※ 펠릿 사용량 증가에 따른 ‘펠릿 보관시설’도 매년 2개소씩 설치

o **(태양광 · 풍력)** 국립자연휴양림 가로등을 태양광 · 풍력을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으로 신규 · 교체 설치해 전체 가로등의 15%까지 확대(현재 0.8% → 목표 15%)

- 설치 계획(국립) : (’12) 10개 → (’13) 40개 → (’17까지) 180개

o **(태양광 · 지열)** 온대 남부지역에 위치한 국립자연휴양림에 에너지 절약형 휴양시설(패시브하우스)을 확대 조성

- 조성 계획(국립) : (’12) 2동 → (’13) 4동 → (’17까지) 10동

o **(태양광)** 위생복합시설(화장실 · 취사장 · 샤워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과 전기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내년도에 시범 설치 후 확대 추진

- 설치 계획(국립) : (’13) 1개소 → (’14) 3개소 → (’17까지) 10개소

o **(물 순환)** 용수 공급이 어려운 장소에 위치한 야외 화장실을 ‘무방류 순환정화시스템’을 적용한 화장실로 순차적으로 조성

- 조성 계획(국립) : (’12) 1개소 → (’13) 3개소 → (’17까지) 10개소

o 설계시부터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는 등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운영경비 절약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 마련

o 에너지절약 객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시범운영 방안 추진

3)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o 가족단위 고객을 겨냥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숲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을 활성화

- 에코어드벤처(방장산), 트리클라이밍, 로프파크(청태산) 등과 같은 친환경적 산림 체험 놀이시설 설치
- 가족놀이터, 기후변화체험 놀이기구 등 자연휴양림별 공간특성을 고려한 가족형/교육형 놀이공간 설치

※ 설치 계획(국립) : (’13) 5개 → (’14) 10개 → (’15) 20개

o 이용자 편의를 위한 체류기간 다변화 휴양림 시범 운영
- ('12) 1개소 5객실 → ('13) 7개소 11객실

o 계절별, 지역별 및 이용자별 특화된 산림문화 테마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산림휴양 만족도 제고 및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 기존 테마프로그램 일제정비 및 연중 운영 가능테마 신규개발로 테마프로그램 운영 비율을 70%이상으로 확대
※ 테마프로그램 신규개발 8건, 기존 테마프로그램 보완 30건

o 주 5일 수업제도 전면시행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수요확대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 신규 산림교육프로그램 추가개발, 매뉴얼 발간,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 보급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현황 : ('10) 37건 → ('11) 18건 → ('12) 30건

o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자연휴양림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자연휴양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기반 마련

o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문자안내센터를 확대 · 운영하여 고객 편의와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숲해설 등 산림교육, 자연휴양림 홍보 등 각종 정보 제공, 지역특산물 판매, 주변관광지 소개 등
- 신규조성 휴양림 및 4개 권역 지역본부 휴양림 우선 설치('13년 이후)
※ 운영 · 조성 현황 : ('11) 1개소(칠보산) → ('12) 2개소(변산, 대야산)

4)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확대로 자연휴양림의 공익적 역할 강화

o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숲체험 기회 제공 확대
- 자연휴양림별 지역 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1개소 이상)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장애인 단체 초청 숲체험 행사 추진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대전)평강의 집과 MOU 체결('12.11.6)

o 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이용기회 확대를 위한 객실 및 예약시스템 구축
- 장애인 우선예약 객실 확대 및 장애인예약 편의를 위한 장애인 우선예약 시스템 구축
※ 우선예약 객실 : ('12) 19객실 → ('13) 22객실

o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나무오르기 등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장 설치 및 장애인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 단체 및 대학 특수교육학과 등과 MOU를 체결 추진

o 자연휴양림 '작은결혼식' 캠페인 전개를 통한 알뜰 예식문화 정착으로 예식비용 부담 완화 및 휴양림 이미지 제고

- 유명산, 청태산, 대관령, 칠보산, 희리산, 남해편백(잔디광장, 숲속수련장 활용)

5) 다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산림휴양시설 확대로 국민 수요 충족

o 자연휴양림 : ('12) 21개소, 188억 ⇒ ('13) 21개소, 205억

- 국립(4개소) : 부산(1), 경기(1), 전북(1), 전남(1)
- 지자체(17개소) : 경기(3), 충북(2), 충남(2), 전남(1), 전남(2), 경북(5), 경남(2)

o 산림욕장 : ('12) 4개소, 9억 ⇒ ('13) 5개소, 9억

- 지자체(5개소) : 강원(3), 전남(1), 경북(1)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2) 8개소, 106억 ⇒ ('13) 10개소, 148억

- 지자체(10개소) : 강원(1), 경기(1), 충북(1), 충남(1), 전북(1), 전남(1), 경북(2), 경남(2)

6) 자연휴양림 내 먹는 물 관리 강화로 고객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o 용도에 맞게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휴양림내 안전한 먹는 물 공급

- 음용수는 연 4회(분기별), 물놀이장 등의 생활용수는 연 2회(반기별) 실시

o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객실 등에 신속히 공지

- 부적합시 수질검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예약자에게 개별 통지

o 일반세균, 대장균 등 부적합 항목의 특성에 따라 신속한 수질개선 조치

- 취수원 주변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질관리 강화

o 상수도 설치, 계곡 주변에 지하수공 시설, 정수시설 설치 등 대체수원 개발로 안정적인 물 공급

o 자연휴양림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

라. 추진일정

o 자연휴양림 계속 및 보완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 : 2013. 2월

o 산림욕장 조성(보완)계획 수립 승인 및 공사 발주 : 2013. 2월

o 사유자연휴양림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2013. 2월

o 사유자연휴양림지원 보조금 집행점검 : 2013. 10월

o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사업추진상황 보고 : 2014. 1월

o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약형 산림휴양시설 확대 : 연중

o 지역자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 연중

o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숲체험 행사 : 연중

o 자연휴양림 내 먹는 물 관리 강화 : 연중

〈참 고〉

2013년도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보완 현황

ㅁ 자연휴양림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개 소 별
합계	91	47,703	
설계	4	650	전남(진도 200), 경기(안성 100), 전북(김제 150), 전남(200)
조 성	17	19,856	
〈1년차〉	3	7,240	부산(1,690), 경기(연천 350), 경북(본청 5,200)
〈2년차〉	3	5,401	경기(양주 3,901), 충남(공주 1,200), 경남(하동 300)
〈3년차〉	11	7,215	전북(변산 1,060), 경기(의왕 649), 충북(진천 835, 괴산 800), 충남(논산 200), 전남(구례 400), 경북(본청 960, 성주 1,270, 김천 450, 포항 191), 경남(창녕 400)
보 완	70	27,197	국유(유명산 등 37개소 13,086) 대전(서구 425, 동구 90), 충북(본청 500, 보은 800, 옥천 800, 청원 236) 충남(금강 200, 안면도 200, 부여 200, 홍성 100, 금산 90) 강원(본청 500, 홍천 200), 전북(장수 1,590) 전남(여수 1,000, 순천 400, 광양 990, 화순(한천 300, 백아산 100), 장흥 200, 강진 500, 해남 300) 경북(구미 600, 영천 500, 의성 300, 칠곡 900, 청송 200) 경남(도청 950, 산청 100, 거제 100) 제주(본청 300, 제주 240, 서귀포 200)

ㅁ 삼림욕장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개 소 별
산림욕장	11	1,595	
〈조성〉	5	900	강원(정선 200, 평창 200, 삼척 100), 전남(신안 200), 경북(구미 200)
〈보완〉	6	695	강원(춘천 대룡산 100, 금병산 100, 속초 100), 전남(함평 50, 장성 245, 나주 100)

ㅁ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개 소 별
합 계	10	14,758	
설 계	2	700	경북(영천 200), 경남(함양 500)
조 성	8	14,058	
〈1년차〉	1	1,000	경남(의령 1,000)
〈2년차〉	2	4,108	경기(가평 958), 전북(무주 3,150)
〈3년차〉	3	2,950	강원(정선 1,200), 충북(증평 500), 충남(금산 1,250)
〈4년차〉	2	6,000	경북(영덕 2,000), 전남(보성 4,000)

16. 건전한 수목장림 활성화

목 표
◇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홍보강화로 수목장림 인식 전환 및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가. 정책여건

o 전국 묘지면적은 국토의 1%에 해당하는 약 10만ha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900ha 묘지 발생

o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편리성 선호, 매장 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안치공간은 부족한 실정

o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부담이 적은 수목장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 수목장림 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

나. 기본방향

o 국·공·사유 수목장림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 충족

o 친환경적 자연장인 수목장림의 홍보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o 범국민 수목장림 실천운동 및 '작은 장례' 운동 전개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장림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

o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 제고

- 산림청 홈페이지 수목장림 관련 사항 팝업(POP-UP) 등록 및 하늘숲추모원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
- 수목장림을 '작은 장례' 문화 확산의 터전으로 활용하고, 유명인사의 동참을 유도하는 등 범국민 수목장 실천운동을 전개
- 정원처럼 아름답게 가꾸고 재해안전시설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 내 명소로 조성

※ 스위스(바인펠덴-정원형 수목장림), 독일(라이하르츠발트 수목장림), 일본(쇼운지수목장) 등은 친근한 가족공간으로 인식

- 일반국민이 수목장림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TV, 신문, 기획보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강화
-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관리 편람, 안내 리플릿 배부로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o 건전한 수목장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수목장림을 잔디 및 화초가 아닌 산림내 수목 밑에 안치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현행)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개정안) 산림내 수목 밑에 조성하는 자연장지

- **(산림청)** 국고금을 융자받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개정

·(현행) 숲가꾸기 등 7개 → (개정안) 사설 수목장림 조성 등 8개

o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내 '수목장림 지원센터' 설치·운영

- 수목장림 운영·관리, 사설수목장림 지도·교육, 작은 장례 문화 확산 및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등

2) 수목장림 인프라 확충

o (국유)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 명칭을 국민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지방산림청별 모델 수목장림 조성

- 하늘숲추모원 10ha, 2천그루 → (가칭)하늘숲쉼터, 30ha, 6천그루
- 지방산림청별 1개소 이상의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및 '14년 예산 신청

o (공유) 광역시·도별 1개소 이상의 모델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고(광특회계 지역계정) 및 산림사업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 참여 유도

- 모델 수목장림 조성·운영 업무는 지자체 산림부서에서 전담
- 대상지 소재 해당 시·군 지역주민에 대해 사용료 감면(50%), 주민 우선 고용,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기여도 제고

o (사유) 수목장림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로 활성화를 도모

- 수목장림 조성 사업을 국고융자금 지원 사업에 포함
-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등 산림사업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컨설팅 등 지원

라. 추진일정

o 하늘숲추모원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산림청 홈페이지 게시 : 2013. 1월

o 하늘숲추모원 구역 확대 : 2013. 2~5월

o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협의 : 2013. 3월

o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내 수목장림 지원센터 설립 : 2013. 3월

o 사회적기업 진출을 위한 산림형 예비기업 지침 개정 및 공고 : 2013. 6월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 2013. 10월

o 지방산림청별 국유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광역시·도별 공유 모델 수목장림 조성 대상지 선정 : 연중

o 수목장림 제도 이해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 연중

o 수목장림 기획보도 등 신문·TV 등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 : 연중

o ‘작은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 실천운동 전개 : 연중

〈참 고 1〉

수목장림 조성 기준 및 절차

1. 수목장림 조성 기준

구 분	공 설	사 설			
		개인 · 가족	종중 · 문중	종교단체	법인
조성권자	산림청장, 지자장 등	개인, 가족	종중, 문중	종교단체	공공법인 재단법인
허가권자	-	시장 · 군수 등	시장 · 군수 등	시장 · 군수 등	시장 · 군수 등
조성절차	고시	신고 (조성후 30일 이내)	신고	허가	허가
조성면적	-	100㎡ 미만	2천㎡ 이하	3만㎡ 이하	1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 미적용)
공통사항	■ 설치제한지역 :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 상수원보호구역(가족, 종중 제외), 문화재보호구역, 채종림, 산림보호구역, 특별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사방지 등 ■ 조성방법 :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1조 -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로 매장(유품 등 매장 금지) - 용기의 크기는 30㎝ 이내, 재질은 생분해성 수지제품 또는 천연소재 - 표지(150㎠ 이하)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 급경사지 및 붕괴 · 침수 우려지 등에는 조성 금지 -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안에서는 보행로, 안내표지판만 설치 가능 - 관리사무실, 유족 편의시설, 주차장, 공동분향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 밖에 설치 가능				

* 공설수목장림 고시사항 : 명칭, 약도, 전체면적이나 규모, 이용방법 및 절차 등

2. 수목장림 조성 절차

o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 장사법 제16조, 시행령 제20조, 제21조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설치 허가 이행 통지	⇒	현장 확인	⇒	허가(신고)증 교부
신고인		시 · 군		시군→신고인		시 · 군		시군→신고인

* 개인 · 가족 수목장림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이행 통지 생략)

o 산지일시사용신고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시행령 등

허가(신고)서 작성 및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대조비 및 복구비 산정	⇒	예치 통지 및 예치 확인	⇒	허가증 교부 및 신고 수리
신고인		시 · 군		시 · 군		시군→신고인		시군→신고인

* 유골을 안치하는 수목장림(수목장림 허가면적 범위)은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며 그 밖의 시설물 설치 구역은 허가 대상에 해당됨

*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음

o 구비 서류

수목장림 조성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
1. 자연장지 조성 종약, 의사증명 서류,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의 정관 등 2. 평면도, 실측도, 토질조사서 3. 위치도(약도) 및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4. 토지소유 증명서류 등 5. 종교단체 등록증, 법인정관 · 재산목록 등 6. 평균경사도 조사서 7.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8. 전기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서 9.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 · 평면 · 구조도) * 허가(신고) 주체에 따라 첨부서류 종류 다름	1. 사업계획서 2. 산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3. 지형도(축척 2만5천분의 1) 4.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1천200~6천분의 1) 5. 복구계획서(종 · 횡, 견취도) * 관리사무실 등 시설물 등의 설치에는 산지전용 허가(신고) 서류 첨부

〈참 고 2〉

수목장림 대상지 선정시 유의사항

◆ **수목장림은 지리적 여건, 입지적 조건 및 산림의 생태, 산림재해의 발생 가능성, 민원발생 요인,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집단 민원발생 우려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 등은 제외

1) 지리적 여건

o 접근성은 이용객 편의를 위해 특·광역시, 시·군·구의 중심지에서 차량으로 이동시 소요시간 1시간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

o 도로조건은 공도와의 접속이 용이하거나 차량통행을 위해 계획된 도로가 있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

o 인구분포는 30만명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

2) 입지적 조건

o 면적

- 국가, 지방자치단체·법인 : 30ha이상(수목장림 활용면적 10ha이상)
- 개인·가족(100㎡미만), 종·문중(2천㎡이하), 종교단체(3만㎡이하)

o 지형조건

- 경사가 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완만한 지역
- 산꼭대기방향이 긴 형태보다는 산기슭 방향으로 긴 형태로 구성된 지역

o 방위

- 이용자의 선호도나 전통사상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남향,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

* 단 지형의 고저차가 미미하여 지면이 평탄한 형태의 산림은 예외

o 해발고

- 동절기에 적설량이 많고 지표면의 결빙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용시기 및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므로 해발고는 낮을수록 좋음

o 조망권

- 대상지에서 바라보았을 때 앞이 탁 틔어 있는 지역
- 수목장림 경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 몇 군데 있어야 함

o 건습도

- 토양의 습도는 높지 않아야 하고 물이 나오는 지역은 피해야 함
- 배수가 잘되고 물을 머금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지역

3) 임상적 조건

o 20~40년생 이상의 수목이 골고루 분포한 숲으로 병충해·산사태 등의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혼효림이 좋으며 조림지의 경우 주변의 자연림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o 천연림

- 침엽수와 활엽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30년생 이상의 수목이 60% 이상인 지역으로 전체가 맹아갱신으로 이루어진 산림은 제외
- 수종이 다양하고 상하층의 임상구조가 조화를 이룬 지역
- 전체적으로 20~40년생 수목의 비율이 70%이상이며 추모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목이 ha당 100그루 이상인 지역

o 인공림(낙엽송 조림지는 제외)

- 21~50년생 수목이 분포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추모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목이 ha당 150그루 이상인 지역

4) 민원발생 요인

o 골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민원의 가능성이 있는 상수원보호지역이나 하류지역에 저수지 등이 있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

o 인근마을에서의 차단성

- 대상지 5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이 있으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 대상지로부터 1km 이내에 마을이 집단적으로 있고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상지까지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

17. 숲에서 행복을 찾는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 보급

목 표

◇ 전 국민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개발 · 보급

가. 정책여건

o 삶의 질이 높아짐과 함께 여가시간을 숲이나 자연을 즐기려는 국민 요구 및 관심 폭증

o 국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문화 콘텐츠 보급 미흡

나. 기본방향

o 산림문화자산을 국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o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을 녹색문화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

o 숲 태교 프로그램 등 산림문화를 통해 숲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인 조사 · 발굴 및 보존

o 관련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등과 산림 내외 옛길, 산성, 봉수 등 산림 문화자산 실태를 파악 · 심의 후 산림문화자산으로 추가 지정

o 운영 · 관리가 필요한 산림문화자산에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 지정된 산림문화자산에 시범적으로 해설가를 배치하는 등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개발·운영을 통하여 숲의 문화적 가치 증진
- 산림문화자산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산림문화 영역 확대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 원	5명	20명	50명	100명

2) “국민의 숲” 운영으로 산림문화 활성화

o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의 숲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숲 확대 지정
- (’12) 153개 → (’13) 173개

3) 숲에On을 통한 산림문화 서비스 확대

o 산림문화자산, 산림문화행사 등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

o 주요 명산에 대한 기본정보 및 등산로, 레포츠 정보를 웹 GIS로 제공 확대

4) 다양한 산림문화행사 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o 중앙 및 지방 산림문화축제 개최·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계절별 · 유형별 · 대상별 · 주체별 산림문화행사 개최 · 지원계획 마련
- 소외계층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산림문화행사 추진

o “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산림인 축제로 운영
-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의 날’을 자체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를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 ’13년에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관련 세미나 등을 통해 추진

5) 산악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의 산악레포츠 대회 개최

o 임도 등을 이용한 레저스포츠길에서 관련단체를 통한 산림청장배 산악스키,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대회 등의 개최로 매니아층 확대
- 임도 등을 레저스포츠길로 지정하여 관리방안 마련

6) 산림문화 인문학적 가치 창출

o 산림문화 인문학적 관련학자 및 유명인사 특강을 통한 가치창출

o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산림사업에 공헌한 세계적인 산림학자들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 세계적인 산림과학자인 남궁진박사(남궁억 손자)의 스토리 발굴
- 일본인으로서 우리나라 산림사업에 공헌을 하고 망우리에 묻힌 아사카와 타쿠미 박사 인문학적 자료 수집

7)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o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의 협조 및 홍보 등을 통해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 생태공예 체험 등 이용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목재 체험 도구 및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관심도 및 이용율 제고

라. 추진일정

o 산림문화행사 추진 기본계획 수립 : 2013. 2월

o 산림문화 인문학적 가치 창출 계획 수립 : 2013. 2월

o 제11회 산의 날 행사 등 산림문화행사 : 2013. 1~12월

o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및 지정 : 2013. 3~11월

o 산림문화 행사 및 산악레포츠 대회 : 연중

o 숲사랑체험관 운영 및 국민의 숲 지정. 정비 : 연중

o 숲에On 콘텐츠 확충사업 추진 : 연중

18.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목 표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업극복에 기여하고,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산림교육 및 산림휴양 등의 기회 제공

- 고용인원 : 1,408명, 예산액 : 143억원 -

가. 정책여건

o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o 최근 웰빙 및 주5일제 확산으로 자연휴양림, 수목원, 도시림, 주요 명산 등을 찾는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휴양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나. 기본방향

o 취약계층 및 청·장년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준비 철저

o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집행 및 관리 철저

o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13예산 및 고용계획

사 업 명	고용계획(명)	예산(억원)	고용기간
산림서비스도우미	1,408	143	10월

2) 적기사업추진을 위해 지침마련, 참여자 선발 등 사전준비 철저

o 취약계층, 청·장년실업자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예산배정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 및 참여자 선발 등 준비

- 모집공고 및 안내는 현수막, 지역방송,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

o 매월 계획된 인원(상시고용인원)을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발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선발·관리 철저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업 참여자가 연 200일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

o 녹색일자리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효율적 활용

- 고용부의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www.ilmoa.go.kr)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집공고, 선발처리상황 및 참여자 등록, 지원금관리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철저히 관리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하여 수시로 중복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기타 사업별 선발기준, 근로계약, 사업장 선정 및 추진요령 등은 별도 시달하는 『'13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

3) 예산집행 및 관리 철저

가) 투명한 임금지급 방안강구

o 임금은 주급 또는 월급 형태(매월 25일 기준)로 지급하되, 반드시 참여자의 개인별 계좌입금으로 지급

- 산림서비스도우미(7개사업) : 41,000/일(부대비 5,000원 별도)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수목원 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o 유급휴일,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 등의 지급시 부대비는 제외

나) 『산림서비스도우미』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관리

o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 선발 및 예산 집행

- 2013년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 33%

o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산림서비스도우미 7개 사업은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분야 여성 참여율 향상에 노력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및 추진상황 점검

o 참여자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착 유도

o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13. 8~9월)

o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라. 추진일정

o 201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신청·접수 및 선발 : 2012. 12~2013. 1월초

o 201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착수(예산배정 즉시) : 2013. 1월초

o 산림서비스도우미 교육실시 : 2013. 3~10월

o 산림서비스도우미 현장 지도·점검 실시 : 2013. 8~9월

〈 붙 임 〉

2013년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현황

ㅁ 산림서비스도우미 : 1,408명, 14,285백만원

○ 숲해설가(490명, 5,550백만원)

- 산림문화·휴양 이용객에게 산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올바른 숲탐방 서비스 제공

○ 숲생태관리인(158명, 1,830백만원)

-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올바른 산행문화를 확립하고, 휴양림 내 산림을 휴양에 적합한 쾌적한 숲으로 조성·관리

○ 숲길체험지도사(302명, 2,925백만원)

-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 숲길안내 제공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74명, 621백만원)

- 산촌마을의 소득증대 도모와 산촌체험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수목원코디네이터(72명, 635백만원)

- 수목원을 찾는 국민들에게 수목원 안내 및 해설 등 관람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도시녹지관리원(243명, 2,099백만원)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에 대한 안내 및 생태교육, 가로수 실태조사, 병해충피해 등 도시녹지자원의 조사·관리

○ 학교숲코디네이터(69명, 625백만원)

- 식재관리 및 수목관리 컨설팅 지원 등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19. 임업인 육성·지원 활성화

목 표

◇ **임업인 육성·지원 활성화로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o 전문임업인 : ('12까지) 4,731명 → ('13) 5,231(500명)

◇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제도 개선**

o ('12까지) 1,972천ha → ('13) 72천ha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건강·웰빙, 휴양, 레저 등으로 산림과 청정임산물에 대한 관심 고조, 베이비부머, 귀농·귀촌 붐으로 경영임지 수요 점차 증가

o (대내여건) 산림투자의 장기성과 규모의 영세성 등 임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림경영인의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등 새로운 문제 대두

나. 기본방향

o 전문임업인을 지속적으로 선발하여 사유림경영 주체로 육성

o 산림경영 참여 유도를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컨설팅 확대 추진

o 산림의 다양한 수요 증가에 따른 사유림 정책 개발 및 경영기반 구축

다. 세부추진계획

1) 전문임업인 육성 및 역량 강화

o 독림가·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산림경영주체 확대 선발·육성
- 전문임업인 : ('12까지) 4,731명 → ('13) 500명

o 건강한 고령층 증가에 따른 임업후계자 연령 완화 추진
- 후계자 가입 연령 : 50세 미만 → 55세 미만

o 전문 임업인 임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제공
- 임업단체를 통한 경영모델학교 운영 활성화
- 산주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위한 "임업인 만남" 행사 개최
- 산림조합중앙회 사이버 산림경영시스템을 이용한 컨설팅 및 경영정보 제공 확대

o 전문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경영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산림경영현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및 경영장비 지원

o 전문임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창 및 각종 행사 지원
- 독림가 하계연찬회 및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 식목일·산의날 등 각종 행사시 전문임업인에 대한 산림유공표창 실시
- 선진 임업국의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

2) 산주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한 사유림경영컨설팅 확대·강화

o 임업진흥원내 컨설팅 상담전문 인력 보강 및 자질향상
- 임업분야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요원을 증원하여 상담 서비스 개선 및 보완
- 전문교육을 통한 상담원 전문지식 습득방안 강구

o 현장 중심 기술컨설팅 강화
- 상담내용에 따라 현장 맞춤형 컨설팅팀을 유동적으로 구성 추진
- 품목별 현장 기술지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방안 강구

o 산주 및 은퇴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부재산주, 베이비부머를 위한 품목별 단기소득 전문가교육과정 개발 운영
  ※ 임업진흥원, 각 협회의 모델학교, 대학교와 산학협력에 교육과정 신설

o 임업인 및 품목별 생산자 단체들과 소통을 위해 현장 토론회 등 개최
- 워크숍, 간담회, 현장토론회 등을 반기별 개최

3) 산지은행 제도 등 사유림경영 활성화 방안 강구

o 은퇴자 등에 따른 정착지 공급, 임업의 소유구조 개선 및 산지에 대한 수요 창출 등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 사업종류, 추진방법 정립 등 기본계획 마련

o 대리경영, 경영지도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 강구

o 산림경영 성공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제작 홍보

4)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경영을 위한 공·사유림 산림경영계획 내실화

o 공·사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지속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계획적인 사유림육성을 위한 산림경영계획제도 개선방안 검토
- 산림경영계획 작성 72천ha, 단가인상 12,800원 → 15,200원

o 산주 및 지자체 담당자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능력 배양
- 산림교육원의 산림경영계획과정 및 시책교육을 통한 훈련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보급

o 산주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혜택사항 홍보 강화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및 산림사업 실행에 대한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대상지 분류 등 홍보
- 산림경영계획의 중요성 및 인가·신청절차 등에 대한 홍보

5)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임업인의 소요자금 적기 공급

o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한 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 운영 추진
- 집행율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와 담당자 교육 등 실시
-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도·관리 강화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
※ 융자 지원액(실 대출규모) : ('12) 906억원 → ('13) 904억원

o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관리 강화를 위한 운용실태 점검(산림청, 농업정책자금관리단)
- 사업자선정, 대출금 집행, 대출금 사후관리 등 점검(상·하반기 실시)
- 기타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추진

o 임업인의 불만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
- 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내 산림조합중앙회 금리산출 근거마련
- 산림경영인협회 등 가입회원과 비회원간의 산림사업융자 분담비율 합리화

라. 추진일정

o 2013년도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서 발간·배부 : 2013. 1월

o 산림경영모델학교(독림가, 임업후계자) 운영 : 2013. 3~11월

o 산림사업종합자금 담당자 교육 실시 : 2013. 3월

o 산림사업 유공자 포상 : 2013. 4월

o 임업인 만남(컨설팅) 행사 개최 : 2013. 3~11월 중

o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지원사업 지도 점검 · 지도 실시(산림청) : 상 · 하반기

o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 추진 점검 · 지도 실시(산림청) : 상 · 하반기

o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실태 점검 실시 : 상·하반기

o 산지은행제도 도입 추진계획(안) 마련 : 2013. 12월말까지

20.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

목 표

◇ **산주 조합원 확대, 경영특화기술지도 등으로 협동조합 기능 강화**

o 조합원 확대 : ('12까지) 492천명 → ('13) 15천명 확대

◇ **특화 및 유통사업 활성화, 지속적인 경영개선 등을 통한 자생력 육성**

o 산림조합특화사업 : ('12까지) 24개조합 → ('13) 5개조합 확대

o 조합 판매장 운영 : ('12까지) 53개조합 → ('13) 7개조합 확대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산림사업법인 증가, 산림사업 공개경쟁 확대로 사업수주 경쟁 치열

o (대내여건) 부재산주 증가, 산주·임업인 조합원이 적어 산림조합의 정체성 모호

나. 기본방향

o 협동조합 기능 확립을 위한 산주와 임업인 중심조직으로의 산림조합 역할 강화

o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조합별 특화사업 개발 추진

o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리경영사업 추진 및 산림경영지도 체계 개선

o 산림조합구조개선 사업 성과 평가 및 경영개선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조합원 확대를 통한 산주와 임업인 중심의 산림조합으로 정착

o 산림조합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산주·임업인 조합원 가입확대 추진

- 조합별로 관내 산주 리스트를 작성하여 3ha이상 산주의 조합원 가입 독려
- 조합원을 위한 산림사업과 산림경영 지원으로 조합원의 소득증대 도모
- 조합원 중 산주조합원 비율을 65%까지 확대

o 산주조합원 가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및 홍보 활동 강화

- 조합원 가입 산주와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 조합원 가입 홍보물 제작·배부 및 신문, 언론 등 대중매체 홍보
- '산주와의 만남 행사' 등을 통해 자발적인 조합원 가입 유도

2) 산림경영지도원 역량강화 및 특화품목전문지도원 확대

o 친환경 단기소득 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품목별 맞춤형 기술지도를 위해 일반지도원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전환 확대 배치

- 일반지도원 전환 : ('07) 840명 → ('12) 820명 → ('14이후) 790명
- 특화지도원 확대 : ('07) 40명 → ('12) 60명 → ('14이후) 90명

o 임업인의 현장애로 기술, 품목별 경영방법 등에 대한 지도원 역량강화 추진

- 교육이수 의무제 도입 및 특화품목기술보급서 전자책 등 보급
-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계하여 신기술의 현장 전파 및 현장애로사항 합동 연구
- 단기임산물 소득 창출을 위한 유통분야 지도역량 배양

o 산림경영지도원의 사기 앙양 및 경영지도 품질향상 추진

- 성과계약제 및 목표관리제 운영 등 종합계획 수립
- 산림경영지도 사업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정기평가 실시
-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자 포상 등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도원 배치 조정 및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조합 총회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에 의한 디지털방식 산림경영지도

3) 산주·임업인을 위한 임업전문 금융기관으로 역할 강화

o 임업인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 산림사업종합자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한 자금 지원 활성화
- 임산물재해보험 조기 도입을 위한 조합보험컨설팅 능력 배양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

- 농·산촌 지역주민의 금융편의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o 보이스 피싱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전산 보안시스템 강화

4) 임업분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임업인종합연수원 조성

o 산림경영기술 선진화 및 녹색성장을 선도할 임업분야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교육시스템 구축

- 3년간('12~'14) 국고 지원계획 : 13,426백만원(총사업비 200억원)

o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현지 지도·감독 강화

5) 1조합 1특화사업 개발 지원 및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o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과 자립기반 조기 구축을 위한 특화사업 지속 추진
- 산림사업이 공개경쟁체제로 전환되는 2015년까지 54개 조합을 우선 지원하고 2022년까지 전체조합으로 확대
  ※ ('12까지) 24조합 → ('13까지) 29조합 → ('15까지) 54조합(증 30조합)

o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합별 경쟁을 유도하고, 효과 거양을 위한 사업 내실화
-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
- 특화사업 지원 조합의 운영 성과 보고대회를 통해 효과 거양
- 산림조합 판매장 운영 개선 및 확대('12년 53개 → '13년 7개 확대)

6) 사유림의 산림경영 촉진을 위한 대리경영사업 적극 추진

o 대리경영 계약면적 확대 및 계약임지 우선 사업실행 추진
- 계약면적 : ('12까지) 535천ha → ('13까지) 565천ha(증 30천ha)
  → ('30까지) 1,071천ha
- 사업실행 : ('12까지) 36천ha → ('13까지) 56천ha(증 20천ha)
  → ('30까지) 300천ha

o 대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훈령) 마련
- 대리경영사업 별도 예산확보 및 조림, 벌채, 산림토목 등 사업범위 확대

o 사유림의 경영 촉진을 위해 산주들을 대상으로 대리경영 참여 유도
- 산주의 대리경영사업 참여 및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대리경영사업을 통한 산주의 수익 창출 방안 강구

7) 지속적인 경영구조 개선으로 건실한 산림조합 육성

o 부실 및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 5년간('08~'12) 경영개선자금 국고 지원 : 13개조합, 14,485백만원

o 경영개선 미달성 조합에 대한 추가 적기시정 조치 등 관리감독 강화

o 자금이 지원되는 조합은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

o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상태 모니터링과 경영진단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
-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 요청

라. 추진일정

o 산주 조합원 가입확대를 위한 3ha이상 산주 명부 작성 : 연중

o 2014년도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자체 공모선정 : 2013. 9~10월

o 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2013. 하반기

o 산림경영지도원 및 임직원 교육(기본, 전문) : 연중

o 산림경영지도 우수지도원 해외연수 : 2013. 10~11월

o 산림경영지도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013. 10~12월

o 산림경영지도 우수사례 발표회 및 우수지도원 포상 : 2013. 11~12월

o 산림조합구조개선 성과 평가 및 분석 : 2013. 상반기

21.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

목 표

◇ **임산물 품목별 단지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12까지) 24개소 → (’13) 15개소

o 산림작물생산단지 : (’12까지) 93개소 → (’13) 12개소

◇ **FTA대비 청정임산물 안전성 기준강화 등 제도 개선**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시장개방, 청정임산물 수요증가, 식품안전성 관심고조

o (대내여건) 생산지역 분산, 생산규모 영세, 시설 낙후 등으로 경영여건 열악

나. 기본방향

o 규모화 · 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으로 임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o 임업인 개별지원에서 생산자 조직 또는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

o 안전하고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품질관리 및 친환경 생산 지원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안정적 정착 및 관련제도 정비

o 산양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생산과정확인제도」지원(6개소, 300백만원)

- 경위도 좌표를 측정하고 측정지점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농약검사
- 검사결과는 이력관리카드에 기록(분기별로 지자체에서 확인)

o 산양삼의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포장 자재비 지원(105개소, 504백만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품질검사를 받은 농가 대상

o 산양삼 재배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품질 검사비 신규지원

- 품질검사비 전액 자부담을 200천원/건 이내 지원토록 지침 개정

o 품질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등 정비
- 용어변경(산양삼 → 산양산삼), 생산신고(의무제 → 임의제) 등
- 산양삼 가공 및 수출관련 근거 마련

o 산양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검사 등에 대한 지속적 계도·단속 실시(한국임업진흥원 주관)

o 가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규격·등급기준·성분분석 기준 등 마련

o 연찬회 및 전시회 등을 통한 산양삼 바로 알리기 운동 전개

o 중국삼과 구분방법, 인삼과의 성분효과 비교분석 등에 대한 연구

2) 산림사업와 연계한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지원

o 숲가꾸기 사업지 등에 산나물 · 약초 또는 약용수종을 재배하여 숲을 가꾸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단위산림복합경영 확대(9개소, 4,500백만원)
- 사업대상지 : 조림예정지, 숲가꾸기 사업지 등
- 숲가꾸기와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생산기반조성 지원

o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를 위한 사전 설계 · 감리의무화
- 총사업비 중 30%이상은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 나머지는 산림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사업추진
- 품종선택은 작물 및 입지특성을 고려하되, 사업계획 수립시 품목별 해당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선정

3)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집단화·규모화 등 지원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산지약용식물 소득원화 등의 사업은 규모화 · 집단화 유도(12개소, 12,000백만원)

o 사업지원대상
- 산나물류·수실류·수엽류·수목 부산물류 등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비 지원
  ※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시설, 감시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관수·자동화 시설 및 표고톱밥재배시설 등
- 관상산림작물류 : 조직배양 및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o 국고보조 사업의 규모화 · 집단화를 위해 관련지침 개정 추진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공모사업) 사업대상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를 위한 사전 설계 · 감리 의무화
- 사업규모별 지원율 차별화(대규모 : 국고40%, 소규모 : 국고 20%)
- 사업공종별 총사업비 집행비율 현실화 등

4) 임산물 생산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o 수실류 등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 구분지원을 사업 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7,764백만원)

- 수실류 생산장비 및 생산시설을 품목별로 구분하였으나 현지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집행
  - 4륜구동 오토바이, 굴삭기, 밤 수확망, 대추비가림시설, 조경수 관정 및 컨테이너 등 지역 및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 수실류 재배 · 관리의 기계화를 위한 작업로 시설 지원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및 친환경 방제장비(포충등, 성페로몬 등)

o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대하여 고소득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체작목 조성사업비 지원(910백만원)

o 계속된 연작으로 인한 지력약화 및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2,658백만원)

- 밤, 관상식물 및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을 친환경 토양개량 사업으로 통합하고 수실류 및 관상수 등 전 품목으로 확대
- 밤 토양개량비 단가조정(282천원/ha → 504천원/ha) 및 이외 품목은 밤의 1.5배

o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시설 및 종균생산 지원

- 종균개발, 재배하우스, 톱밥배지시설 및 연중재배시스템 구축
- 산림조합중앙회(산림버섯연구소) 버섯 연구 및 기술교육 등 내실화
  - 귀농 · 귀촌 정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멘토지정 등
  - 현장재배기술 보급 및 표고배지센터 교육장신설
  - UPOV 시행에 대비하고, 연중 표고생산을 위한 저온고온성 우량종균개발
  - 우수종균 보급 확대 및 종균사고 예방을 위한 종균생산 실명제 실시
-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재배기술 강화
-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현장맞춤형 기술 교육 및 사이버 교육 실시
- 표고 전업농 육성을 위한 6개월 과정의「표고재배반」운영

5) FTA대비 임산물 안전성 기준강화 및 지원대상 품목 확대 추진

o FTA대비 임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성 기준 강화

- 표고 중금속기준 마련 및 시행('13.1.1부터) * 납, 카드뮴 0.3ppm이하
- 산양삼에 대한 중금속 기준마련('13.12월) 추진(식약청 협의)

※ '12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 카드뮴 등 기준 마련

o 청정임산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확대
- 웰빙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임산물 지원 품목 확대(두메부추 등)
※ 소득지원대상 품목(’ 12. 1.26) : 수실류·버섯류·산채류 등 90품목

6) 임업인·생산자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지원과 홍보강화

o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의 다양화 및 지원 강화
- 식품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o 관상자원 수요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등 행사지원
- 한국분재대전, 대한민국난대전, 잔디세미나 등

o 산림복합경영 모범모델 및 성공한 임지에 대한 알기 쉬운 소개책자 제작·보급하고, 임업경영 활성화 컨설팅에 활용

라. 추진일정

o 일선 시·군 공무원의 소득분야 지원업무 교육 : 2013. 2월

o 표고재배기술 교육 : 연중

o 산양삼 품질검사 등 계도·단속 실시 : 연중

o 산양삼 중금속 기준 마련 협의 : 2013. 3분기

o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 연중

o 산양삼 전시회 및 연찬회 개최 지원 : 2013. 8월

o 한국새우란대전 및 대한민국난대전 개최 지원 : 2013. 1분기

o 한국분재대전 개최 지원 : 2013. 4분기

〈 붙 임 〉

2013년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2예산		'13예산		형 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34,047		30,512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농특】		30,731		27,519		
-표고종균생산연구지원	1식	1,100	3종	2,310	보조	100:-:-:-
-임산물 생산기반정비	10종	4,840	12종	8,064	보조+융자	20:20:20:40
-친환경토양개량 사업지원	5,400ha	2,017	6,589ha	2,658	보조	70:20:-:10
-밤나무대체작목조성	650ha	1,820	325ha	910	보조	40:20:-:40
-산림작물생산단지	12개소	12,000	43개소	8,169	보조	40:20:-:40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	22개시군	4,154	-	-	보조	70:30:-:-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6개소	300	6개소	300	보조	50:50:-:-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9개소	4,500	9개소	4,500	보조	50:50:-:- 50:30:-:20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모델림조성	-	-	1식	200	보조	100:-:-:-
-분재산업 활성화	-	-	1개소	300	보조	100:-:-:-
-산양삼테마랜드	-	-	1개소	108	보조	100:-:-:-
o 산림재해복구지원【농특】	-	3,150		2,993	보조+융자	
o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광특】		166	-	-		(제주계정)
-표고재배시설	11개소	100	-	-	보조+융자	20:20:20:40
-산지약용특화단지	1개소	48	-	-	보조	40:20:-:40
- 조경수생산시설	1개소	12	-	-	보조+융자	30:20:20:30
- 친환경토양개량	1개소	6	-	-	보조	70:20:-:10

22. 단기임산물 유통 기반구축

목 표

◇ **임산물 주산단지를 고려한 산지종합유통시설 지원**
o (’12까지) 72개소 → (’13) 7개소, 30억원

◇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명품 개발 및 지원**
o (’12까지) 44품목 → (’13) 12품목, 19억원

가. 정책여건

o (대외여건) FTA 시장개방, 대형유통업계 성장 등으로 임산물 유통 여건 악화

o (대내여건) 유통전문가 및 유통조직 부재, 생산지역 분산, 단순가공 등으로 경쟁력 약화

나. 기본방향

o 임산물의 안정성 강화 및 적정 가격유지를 위한 저장 및 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 가공분야 지원 확대

o 임산물 전자직거래 활성화 및 임산물 소비촉진 활동 강화

o 임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 수출·입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다. 세부추진계획

1) 임산물 주산단지를 고려한 수집·저장·가공·유통시설 지원

o 임산물 생산량이 많은 시·군 위주로 수집·저장시설을 규모화 하여 지원

- 임산물 청정성 확보 및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 152개소, 1,826백만원

o 소비자에게 청정임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 등 지원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 (’12까지) 72개소 → (’13까지) 79개소

※ (신규) 7개소, 3,000백만원, (보완) 5개소, 250백만원

o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박피기 등 기계화 가공 지원 : 635대, 635백만원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떫은감, 밤 등 임산물 가공용 박피기 등 기계장비지원

o 임산물 유통차량지원 : 냉동탑차 28대, 168백만원, 화물차 21대 82백만원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생표고버섯, 복분자 등)의 신속한 운반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여 유통능률 향상 및 효율성 제고

2) 임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상품개발 및 브랜드화

o 임산물 포장디자인개선 등 상품화 지원 : 1,233백만원
- 일반임산물 153개소 733백만원, 특별관리임산물 8개소 500백만원

o 지리적표시 등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지원 : 12개소, 720백만원
- 지리적표시등록 품목 및 친환경임산물 인증품목 등 차별화된 상품에 지원
- 명품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및 저장 포장라인 시설보완
  • 등록완료 : 44품목(심의중 : 5개 품목)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지리적인 특성, 지역과의 연계성, 자체품질관리 등 안전성 심사강화
- 지리적표시등록품목에 대한 표준출하 등 예산지원 및 사후관리강화
- 지리적표시 편법 운영근절을 위한 등록단체 운영실태 수시 지도·관리
- 지리적표시품목 등록 전·후에 대한 생산과정(생산·가공·출하실태·가격차 등) 파악

3) 소규모 임가의 소득 증진을 위한 소비촉진 활동 추진

o 「e-숲으로」 쇼핑몰을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푸른장터」 와 통합 운영하여 임산물 소비촉진 시너지 효과 거양

o 임산물 상품판매를 위한 홍보채널 구축, 유지보수, 교육훈련 등 지원 : 150백만원
- 식품박람회 등 규모 있는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o 부정임산물에 대한 단속강화
- 원산지 표시 및 불량임산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 지역별 합동지도단속 실시(산림청+농관원+지자체)
- 생산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부정임산물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 강화

4) 임업경영에 유익한 임산물 생산 · 가격 등 유통정보 제공

o 주요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유통 정보 제공을 위해『임업관측』추진
- 6품목(밤, 표고, 떫은감, 대추, 관상수, 산채류), 600백만원
- 생산·유통·가격 및 수출입 등 다양한 임산물정보제공으로 경영능력 향상
- 임업관측의 절차 및 정밀성, 생산자 및 유통자의 활용도 등 효과성 제고

o『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임산물 종합정보 제공(산림조합중앙회) : 352백만원
- 임산물 공판실적·수출입정보·가격정보 등 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품목확대 및 가격조사의 정확성 제고

o 우수하고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표준재배지침 마련
- ('12까지) 44품목 → ('13) 9품목(산딸기, 고비, 삽주, 초피, 구절초 등)

5) 단기소득임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검토 등

o '12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산단지별 거점 유통체계 구축
- 적정개소, 품목별 생산 지역, 소비 패턴 등을 감안하여 추진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운영상황에 대한 경영분석 실시

o「산림소득운영지원시스템」운영을 통해 효율적 산림사업 관리
- 산림소득사업 D/B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라. 추진일정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경영분석 : 2013. 1분기

o 산림소득사업 담당자 교육실시 : 2013. 2월

o 임산물 소비촉진행사 지원 및 홍보 : 연중

o 임업관측 사업 및 생산자 등에 정보제공 : 연중

o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연중

o 산림소득사업 운영시스템 운영·관리 : 연중

o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 관리실태 점검 : 2013. 3분기

o 단기소득임산물 유통시스템 구축 검토 : 2013. 4분기

〈 붙 임 〉

2013년 임산물유통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안		2013예산안		형태	지원율 (국:지:융:자)
	사업량	예산액	사업량	예산액		
계		9,184		9,065		
o 임산물유통지원【농특】		9,069		9,065		
- 임업관측	6품목	600	6품목	600	보조	100
- 임산물유통DB운영	1식	352	1식	352	보조	100
-「e숲으로」임산물직거래장터 운영	1식	49	1식	49	보조	100
- 임산물소득소비촉진	1식	150	1식	150	보조	100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신규)8개소 (보완)5개소	3,000 250	(신규)7개소 (보완)5개소	3,000 250	보조	50:20:-:30
-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유통차량)	49대 (냉동 28) (일반 21)	250 (168) (82)	49대 (냉동 28) (일반 21)	250 (168) (82)	보조	30:20:-:50
- 임산물 상품화지원	161개소 (일반153) (특별 8)	1,233 (733) (500)	161개소 (일반153) (특별 8)	1,233 (733) (500)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명품브랜드화	12개소	720	12개소	720	보조	40:20:-:40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72개소	862	152개소	1,826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가공지원	300대	300	635대	635	보조+융자	20:20:20:40
- 곶감 저장 · 건조시설 보완	575개소	1,303	-	-		
o 임산물유통지원【광특-제주계정】		115		-		
- 임산물가공·유통시설	-	-	-	-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표준출하지원	8개소	82	-	-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4개소	9	-	-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유통기반조성(차량)	6개소	24	-	-	보조+융자	20:20:20:40
- 임산물 HACCP 적용지원	-	-	-	-	보조	50:20:-:30

23. 임가 소득 안전망 구축

목 표

◇ **자연재해 피해지원 품목확대 및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o ('12까지) 25품목 → ('13) 5품목 추가

◇ **산림경영안정화를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및 가입품목 확대**

o ('11까지) 4품목 → ('12) 표고 추가 → ('13이후) 13품목 추가

◇ **한·중 FTA 체결 대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o 임산업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산림작물·시설의 피해 급증

o 산림작물 피해액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금 현실화 미흡

o FTA 체결로 임가 소득 불안정 및 소유규모 영세 등 타 산업과의 경쟁력 미흡

나. 기본방향

o 자연재해 산림작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임가의 생활·경영안정 도모

o 피해임가 복구비 현실화, 지원 품목확대, 재해보험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o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소득보전 및 임업 경쟁력 방안 강구

다. 세부추진계획

1) 자연재해 피해지원 품목확대 및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o 신속한 재해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체계 정비('13년 2,993백만원)

- 현장수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연재해 복구지원 품목 및 범위 확대
  - ('12까지) 25품목(7품목 추가) → ('13추가) 5품목(오미자, 산수유, 은행, 헛개, 구기자)
  - 표고 및 대추 등 재배시설 피해 발생시 비닐 등 소모품 피해복구 지원

- 작물재배 시설 재해피해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12년에 인상되지 않은 8개 품목과 신설·인상된 17품목 대상으로 추진
    ※ ’12년 제외품목 : 표고재배사, 표고자목, 잔디, 조경수, 분재, 대추, 떫은감, 호두
    ※ ’12년 신설·인상 품목 : 대추비가림, 산양삼, 약초류, 조경수, 표고자목, 유실수 묘목대, 약초류 종자대 등

o 복구비 단가 현실화를 위해 정확한 조사 및 관계부처 적극 협의
- 산림작물 주 재배·생산 지자체, 산림버섯연구소 등에 태풍 등 피해 실소요액(인건비, 재료비 등) 조사(1월까지) 및 대응방안 마련
- 복구지원 기본단가 신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3월까지)

〈복구지원 기본단가 조정절차〉

조정계획 수립·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품목별 복구 실소요액 파악 및 대응 자료 구축**	**조사결과 의견통보** (소관부처)	**중대본 · 기재부 협의** (각부처)
중대본 → 16개 부처(1월초)	산림청 → 지자체(1월)	각 부처 → 중대본(2월말)	(3월)

협의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검토후 조정내역 통보** (중대본)	**단가 합동고시**	**단가 확정 및 통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정부 → 중대본(4월)	중대본 → 각 부처(4월말)	(5월초)	중대본 → 소관부처·지자체(5월)

2) 산림경영 안정화를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및 가입품목 확대

o 산림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임목재해보험 도입 적극 추진
- 임산물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임산물 재해보험시스템 구축(’13예산 : 17억원)
  - 임목·죽 등 다양한 임산물의 재해보험 수행을 위한 전산 장비 및 시스템 구축
- 임목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임목에 대한 보험료 적용방안 및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지역별·임령별·수종별 임목표준금액 산출 등 보험 도입 시 대두되는 선결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 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보험연구원, ’12. 7.~14. 3월, 330백만원)

o 가입 대상품목과 보장 범위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적극 협의
- 보장비율(70 → 80%) 상향 조정, 보험료 지원 확대(50 → 60%)

o 연간생산액 100억원이상 산림작물(13품목)의 보험가입 품목 확대·적용

- (’ 12까지) 4품목 → (’ 13) 표고 추가 → (’ 14이후) 13품목 추가

수실류(호두, 잣, 은행), 산채류(더덕,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약용류(산양삼, 오미자, 오갈피, 구기자, 산수유), 조경수·분재

o 재배자 간담회, 각종 교육 추진 시 임산물 보험관련 교육으로 가입률 제고

〈보험가입률 ’ 12년 현황 및 ’ 13년 계획(가구기준)〉 - (’ 12년) 떫은감(8.1%), 밤(0.4%), 대추(15.3%), 복분자(5.7%) → (’ 13년 계획) 떫은감(15%), 밤(5%), 대추(20%), 복분자(10%)

3) 한·중 FTA에 대비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대책 강구

o FTA 대응대책의 분야별 세부실행 계획 수립·추진
- 중기재정계획(’ 14~’ 18)에 예산반영 추진
- 임업직불제도, 임산물자조금제도 및 산지은행제도 도입 검토
- FTA 기금 활용을 통한 직접적 피해보상 지원체계 구축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품목 발생 시 피해보전 직불금 등 신속지원 체계 마련

o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기반정비,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안전망 및 임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생산액 감소 등 피해예상 단기소득 품목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사업과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

라. 추진일정

o 임업인 재해복구 지원 단가 조정 및 품목확대 : 2013. 5월까지

o 임산물 재해보험 단가조사 및 품목 추가 : 2013. 5월까지

o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 연구용역 추진 : 연중

o 한·중 FTA 대비 신규 사업 발굴 : 연중

o 임업인 대상 FTA 대책 홍보 및 교육 : 연중

24. 국가숲길 지정 추진

목 표

◇ **전국 숲길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지역숲길을 연결하는산림생태 ·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 숲길"을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추진**

* 숲길의 유형 : 국가 숲길과 지역 숲길로 구분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근무, 웰빙문화 등의 확산으로 등산, 트레킹이 가장 대중적인 산림휴양활동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활동으로 대두

o 여가활용 ·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산림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른 산행 인프라 확충 요구와 산림생태계 보호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증가

o 각 부처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의 중복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필요성 제기

나. 기본방향

o 「숲길의 조성 · 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한반도 숲길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고, 산림생태 · 역사 ·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숲길을 "국가 숲길"로 지정 추진

o "국가 숲길" 지정을 통해 전국 숲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 틀을 확립

o 다양한 산행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무분별한 산행으로부터 중요산림지역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o 숲길관리청이 체계적이고 연차별로 조성 및 운영 ·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 지원

o "국가 숲길"을 제외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 관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하는 숲길은 "지역 숲길"로 지정

다. 세부추진계획

1) 국가숲길 지정

o 기존 국가등산로 및 국가트레킹길 뿐만 아니라 산림생태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하여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숲길을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확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관리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국가숲길 지정 요청

국가숲길 지정 발의 (산림청, 숲길관리청)	⇨	숲길정책 자문 위원회 검토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	국가숲길 지 정 (산림청)	⇨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반영 (숲길관리청)

o 산림청에서는 숲길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숲길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숲길 지정 협의

o 국가숲길로 지정될 경우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국가숲길로 지정된 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o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국가트레킹길은 타 걷는 길과 노선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반영여부 검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숲길 우선 검토 】
①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에 걸치는 숲길
② 3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숲길
③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숲길
④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는 숲길

라. 추진일정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숲길관리청)

o 숲길정책 자문위원회 개최 : 연중

o 관계부처 걷는 길 노선 중복방지 협의회(의견수렴 등) 개최 : 수시

25.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목 표

◇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깃든 자연친화적인 숲길 조성·관리**

o 훼손 등산로 정비 : 941km, 19,075백만원

o 트레킹길 조성 : 468km, 11,319백만원

o 등산로 연결 : 3개소, 1,3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 수요 증대

o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걷기와 등산에 대한 수요 증가

o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한 숲길 이용의 활성화 전망

o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푸르고 울창한 숲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관리 필요

나. 기본방향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및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o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o 산림 생태자원, 경관자원 등 숲길 주변의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발과 시설물의 설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노선 선정 등 숲길로 인한 환경적 영향 최소화

o 숲길의 노선선정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며,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o 숲길 노선의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에게도 산림휴양의 공익적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1) 훼손 등산로 정비

〈 대상지 선정 〉

o 백두대간 및 정맥 등산로 구간 중 이용자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과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우선 선정

o 100대 명산,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 등 이용객 집중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

〈 사업 추진방향 〉

o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 추진
-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등산로 정비 매뉴얼'을 참조
- 동일 노선은 숲길관리청별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하여 유역 완결 추진

o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와 주변 경관과 조화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과다한 구조물과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전부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요구가 없도록 정비
- 민원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시설물은 적의 반영 설치
-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o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재해 취약지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 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예방 시설의 집중 설치
-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설치, 간이 구급함 등 설치

o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 등산객의 조난 대비 신고처(좌표 등) 등을 표기한 위치 표지판 설치
- 정비, 보수 등을 위하여 표지판은 위치데이터(GPS)로 유지·관리
- 안내판, 표지판 등 설치 시에는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
- 노선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테마 발굴과 체험을 강화한 등산로 정비

o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전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 관내의 등산로 현황과 관리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고, 숲길관리청별 노선거리 20㎞이상 등산로는 안내센터 설치·운영
-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련단체, 학계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 만족도 제고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시(설계, 시공) 현장심의회 구성·운영

〈 2013년 정비계획 〉

구 분	기관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합 계		**941.4**	**19,075**		
국가등산로	소계	98	2,800		
	북부	10	318	직접	
	동부	33	1,050	직접	
	남부	26	828	직접	
	중부	5	159	직접	
	서부	4	127	직접	
	경기	7	111	보조	한북정맥, 한남정맥
	경북	11	175	보조	백두대간
	경남	2	32	보조	낙동정맥
지역등산로	소계	843.4	16,275		
	서울	60.0	3,178	보조	
	부산	41.0	650	보조	
	대구	119.0	1,910	보조	
	인천	57.2	910	보조	
	대전	70.0	1,062	보조	
	울산	30.6	490	보조	
	경기	10.1	160	보조	
	강원	73.0	1,162	보조	
	충북	23.0	350	보조	
	충남	10.2	267	보조	
	전북	70.9	1,135	보조	
	전남	126.7	2,045	보조	
	경북	75.0	1,210	보조	
	경남	56.7	996	보조	
	제주	20.0	750	보조	

2) 트레킹길 조성

〈 장거리 국가트레킹길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2011	경북
낙동정맥트레일 CI	2011	경북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경북)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2	강원대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3	미정(전남)
속리산둘레길 기본 및 실시설계	2013	미정(충북)

* 상기 계획은 「숲에 on(www.foreston.go.kr」 - 숲길 - 숲길자료에 게재

〈 사업 추진방향 〉

o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에 따라 노선을 선정하되, 기 조성된 트레킹길과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추진

o 국가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o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2012, 산림청)」에 따라 트레킹길 조성

o 고도화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길 이용자의 이용여건을 배려하여 경사도, 보행편의 정도 등 숲길 난이도를 구분하여 안내판에 포함 설치

⇧ 〈 트레킹길 안내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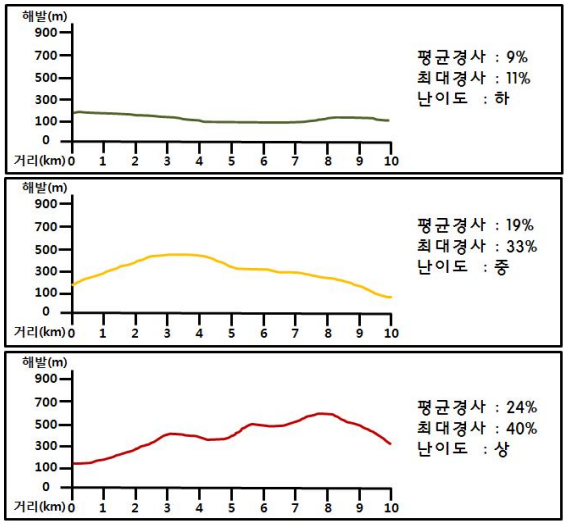

〈 숲길 난이도에 대한 예시 〉 ⇨

o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시설 설치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o 속리산둘레길의 전체 노선 연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차년도부터 해당 시·도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o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년도부터 노선이 통과하는 해당 시·군에 예산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조성 추진

o 한라산둘레길은 명품 숲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보완·추진
  -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대중교통 연계방안 모색, 고유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o 타 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 중복 노선 배제
  - 타 부처(지자체)에서 산림내를 통과하는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요청시 숲길 노선을 반드시 확인

〈 2013년도 조성계획 〉 (단위 : km, 백만원)

구 분	기관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합 계		468.4	11,319		
국가트레킹길	소계	144.6	2,918		
	북부	13.0	321	직접	백두대간트레일
	동부	8.0	197	직접	백두대간트레일
	남부	0.6	296	직접	무장애숲길
	충북	기본·실시설계 1식	200	보조	속리산둘레길
	전남	기본·실시설계 1식	200	보조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경북	108.0	1,734	보조	낙동정맥트레일 낙동강 풍경트레일
	제주	15.0	370	위탁	한라산둘레길
지역트레킹길	소계	323.8	8,401		
	서울	82.0	3,432	보조	서울둘레길
	부산	20.9	950	보조	
	광주	87.0	500	보조	
	경기	8.6	106	보조	
	충남	99.0	1,523	보조	내포문화숲길
	전남	9.3	400	보조	
	경북	2.0	1,200	보조	안동 호반길 등
	경남	15.0	290	보조	

〈 트레킹길 조성 추진체계〉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 - 사업 개요 - 5년 단위 투자 실적 및 계획 등	o 전년도 말까지 산림청 제출(의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수립
⇩	
기본 및 실시설계 : 다음 사항 포함 **〈조성계획 수립〉** - 명칭 및 위치 - 노선의 지정 목적 - 노선의 지정 기간 및 거리 - 노선에 편입된 토지소유자별 지번·지목 및 면적 - 기타 필요한 사항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숲길 명칭 부여〉** **〈숲길 노선 지정·고시〉**	o 숲길안내센터 확보 (신축 또는 가급적 기존시설 이용) o 노선 선정원칙〈붙임 1〉에 따라 기본 및 대체노선 선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수립 o 숲길조성계획(예정노선의 도면 포함)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o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o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의견 수렴 또는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등 개최 o 다음 국가트레킹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명칭 사용 예) ○○○트레일-○○○구간으로 사용 * 국가트레킹길 백두대간트레일 / 설악산둘레길 DMZ트레일 / 속리산둘레길 낙동정맥트레일 / 덕유산둘레길 서부종단트레일 / 지리산둘레길 남부횡단트레일 / 한라산둘레길 o 타 부처 걷는 길과 중복 여부 검토
⇩	
시설공사	〈붙임 2〉 트레킹길 조성 원칙 참고
⇩	
사업실적 보고	준공 즉시(숲길관리청→산림청)

3) 등산로 연결

〈 대상지 선정 〉

o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및 도로 등으로 인해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등 우선 필요한 대상지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14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는 사업계획 사전 협의·반영

〈 사업 추진방향 〉

o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o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며,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o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설계부터 반영하고 당해연도 행정절차 이행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o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객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o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품질향상 노력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사업에 이용자의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사업 명칭 사용과 산림청 지원 사업 명시
  • 예시(사업명) : ○○ 등산로 연결사업(○), ○○ 등산로 복원사업(×)

〈 2013년 사업계획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기관	사업량	사업비	지원형태	비 고
등산로 연결	전남	3	1,300	보조	

라. 추진일정

o 숲길사업계획 수립·배부 : 2012. 12월

o 숲길 시책회의 개최 : 2013. 1월

o 숲길 실태조사 : 연중

o 숲길관리청별 특별현장책임관 지정 : 2013. 5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3. 상반기

o 숲길 현장모니터링 : 2013. 6월, 11월

o 숲길 걷기행사 : 2013. 하반기

o 숲길 조성 완료 : 2013. 하반기

o 숲길 이용 만족도 조사 : 2013. 4분기

o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13.12.31.까지

o 숲길사업 추진결과 제출 : 2014. 1월

〈붙 임 1〉

트레킹길 노선선정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대상지 조 건		o 마루금 등산로와 중첩되는 노선은 제외하고 각 지자체간 상호 연결성(넘나드는 길 등)이 최적으로 호환되도록 한다. o 국·공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노선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o 숲길의 종류별 기능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산줄기를 향하는 경사지는 배제하며, 산자락을 따라 수평적으로 조성한다. o 전체 구간 중 나무그늘이 있는 숲속을 통과하는 노선 거리의 비율이 가급적 50% 이상 되도록 한다.
연결성	노선 간 연결	o 산림생태와 역사·전통문화 등 다양하고 우수한 자연자원들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한다. o 농로, 임도, 옛길 등 기존의 길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생태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 o 마을과 마을이 소통될 수 있도록 연결된 길(옛길, 생활길 등)을 찾아 원활한 동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o 장거리트레일은 지역의 숲길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거리트레일(지선)은 장거리트레일(주선)의 지선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o 차도 등 포장된 길과 횡단하는 위험한 길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의 경관을 즐기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선이 되도록 한다. o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임도 등 산림기반시설 등을 이용하고, 주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최대한 발굴한다.
	노선 외부	o 주요 거점에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사회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우 등)이 접근하기 쉽도록 고려한다.
안전성		o 트레킹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안내시스템을 정비하여 이용객이 안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전성		o 트레킹길 노선선정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기 타		o 트레킹길의 계획 수립시에는 운영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붙임 2〉

트레킹길 조성 원칙

구 분	내 용
환경적 측 면	o 신규 노선의 개설 및 시설물 지양, 기존의 옛길이나 시설 최대한 활용. 단, 신규 개설이 불가피할 경우 규모 최소화 및 환경친화적 재료와 공법 적용 o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 유의 o 숲길 노선의 선형을 무리하게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우회노선, 안내시설(안내판, 해설판 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동선 유도 o 철저한 배수계획으로 숲길의 물리적인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노면의 세굴과 사면 붕괴 등 재해 예방 o 숲길의 보전적 활용을 위해 조성공간과 보전공간을 명확히 구분
경관적 측 면	o 자연경관과의 조화에 유의하여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성 o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속성·일체성을 유지하고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 o 계획한 시설물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부대시설과의 형태적 통일성 도모 o 각종 조사를 통해 파악된 조망점이나 경관포인트를 철저히 분석하여 조망이 가능하도록 시업하고 전체 노선과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고려 o 숲길의 선형, 재료와 적용 공법 등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고려
기능적 측 면	o 지리적·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o 산림을 이해하고 조망할 수 있으며, 장차 산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 부여 o 부대시설과의 기능적 통일성을 도모 o 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통행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함

구 분	내 용
이용적 측 면	o 생태, 역사, 문화, 경관 등 지역·권역별 특화된 주제를 조사·발굴 o 주요 거점에 대한 정보, 숲길 난이도, 위험요인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이용 유도 o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이용기간, 이용자 유형(연령별/그룹별), 이용방법 등을 예측하여 숲길의 운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시설기준을 제시 o 각 구간별 도입프로그램과 설정된 목표에 부합하고 이용안전을 고려한 노선 선정 o 대중교통이나 자가차량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선 선정
지역·사회적 측 면	o 숲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과 합의 유도 o 숲길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o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친화형 숲길 조성

〈붙임 3〉

숲길의 종류별 대상지 및 노선선정 비교

구분	공통점	차이점
등산로	o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배제 o 가급적 신규노선 개설 제한	o 등산로 간의 연결은 최소화(분기 관리 철 o 전체 구간 중 나무그늘이 있는 숲 속을 전체의 80% 이상이 되도록 함
트레킹길	o 각 숲길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 o 급경사지의 노선 가급적 지양 o 이용객의 안전 최우선 고려 o 산림 내 주요자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o 주요 거점마을에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 마을과 연결성을 고려 o 숲길 노선에 의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o 안내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마루금등산로와 중복되는 구간을 제외하여 계획 o 적정 종단구배는 20% 이내이며, 최대 30% o 전체 구간 중 나무그늘이 있는 숲 속을 가급적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 o 장거리트레일은 지역숲길과 연계하여 전 가능하도록 하고, 단거리트레일은 지선으 o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고 이용자가 공감
탐방로		o 지역의 탐방자원을 최대한 활용 o 운영프로그램을 고려하여 계획 o 어린이와 노약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
휴양치유숲길		o 전문가의 자문과 평가를 통해 계획 o 전체 구간 중 숲 속 통과 노선이 전체의 o 노선의 길이를 10km 이내로 하여 1일 이
레저스포츠길	o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설계·시공	o 기존의 임도를 대상으로 대상지 및 노선 o 활용 종목선정에 따라 관련 시설규정 및

26.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목 표

◇ **청소년·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행문화 보급과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 도모**

o 등산·트레킹학교 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 **숲길 이용자의 안전·편의 증진으로 만족도 제고**

o 숲길안내센터 및 산악구조대 운영, 숲길 안전대책 추진 등

o 숲길체험지도사(302명)를 통한 산행서비스 품질 향상

가. 정책여건

o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o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지속증가

- 산악사고 구조건수 : ('07) 5,096 → ('09) 7,105 → ('10) 7,718건

o 올바른 산행문화의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참여 기회 부족

o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악구조 활동 구축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

나. 기본방향

o 올바른 산행 유도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안내서비스 제공

o 숲길훼손 및 산악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의식수준 제고

o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DB 구축

o 올바른 산행방법 등 건전한 등산문화의 체계적인 보급·지원

o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등산관련 정보 및 양질의 산행 안내 서비스를 제공

o 산악구조 활동의 민 · 관 공조체계 유지 및 교육훈련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등산·트레킹 학교 운영

o 교육기간 : 2013. 3월 ~ 11월(9개월)

o 교육인원 : 1,500여명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강사료, 보험료 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인원 조정

o 교육과정 : 청소년과정, 백두대간·DMZ 생태탐방과정 등

o 사 업 비 : 280백만원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악구조대원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산악구조 교육 및 훈련

※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교육 시기 조정 가능

o 청소년 및 소외계층의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교육인원 : ('11년) 520명 → ('12년) 600명 → ('13 계획) 600명

o 제13회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과정 운영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등산교육과 백두대간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산림생태계의 올바른 이해와 국토사랑 정신을 고취
- 대 상 : 중·고등학생
- 기 간 : 2013. 7월 말~ 8월 초
- 장 소 : 백두대간(684㎞) 약 10개 권역
- 참가인원 : 약 300명
- 참여방법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kmsc.kr)를 통해 공고(6월 게시 예정)

※ 지원 협조사항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사업수행에 따른 업무 협조 및 인력, 차량, 야영장 등 협조·지원

o 교육의 성과제고,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별도 실시

- 전과정(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정 제외)

2)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3.1.1.~12.31
- 사 업 비 : 702백만원(운영경비 175, 조사·홍보사업비 527)

o 센터의 중장기 발전방안(2012)에 따라 신축 센터를 중심으로 자립기반 구축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경쟁력 확보방안 모색
- 중부지방산림청 및 대전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센터 주변 산림인프라 구축
- 신축 센터가 등산·트레킹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o 숲길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전국 걷는 길 DB 구축 및 정보 공유화 추진
- 전국 걷는 길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연차별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마련

o 유관 기관 및 기업, 산악단체 등을 활용한 등산로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이용도가 높고 특색 있는 등산로는 민간단체를 이용한 사후관리 도모
- 지자체별 파악된 등산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관내 등산로에 대한 다양한 문화 행사 추진
- 숲길관리청별로 관내의 등산로를 선별하여 단체 등과 협약 체결
- 사후관리 참여 단체에는 소요 비용의 지원 등 노력

o 자생 산악단체에 주요 산행정보 공유 및 '숲길 공모사업' 추진
-「숲에 on」및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산행정보 공유 및 정책고객 운영 활성화 도모
·산악단체 사후관리를 통해 숲길정책 사업의 서포터로 활용
- 전국의 특색 있고 아름다운 숲길 공모사업 추진(별도 계획 : oo산 아름다운 등산로 사진공모, 산행 후기 등)

o 청소년, 사회소외계층이 참여하거나 다수의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익적 성격의 등산·트레킹문화사업 확대

o '12년도 성과를 분석한 후 실적이 저조하거나 타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기

o 산악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창구 역할 지속 수행

3) 숲길 안전대책 추진

o 숲길관리청별 숲길 안전관리대책 마련·추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5항에 근거한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 조사 근거
※ 숲길정책팀-2751(2012.9.24.)호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숲길 안전관리대책 조속 수립·추진

o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24시간 상황유지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보 공유
- 이용자를 대상으로 비상연락망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강화
  - 산림청 홈페이지 및 각 숲길관련 사이트에 〈붙임〉의 '산행 안전수칙' 및 비상연락망 게재
  -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 산림청(1688-3119) 등 산악사고 구조 요청 신고 전화 홍보
  -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안전관련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o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숲길관리청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숲길체험지도사(302명)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 순찰
- 지역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약체결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거점 마을별 자율방범조직 구성·운영
- 각종 이정표 및 안내판 등 보수·보완 및 추가 확충

o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의 효율적인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 통제

4) 산악구조대 운영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공중, 산림항공본부) 〉

o 사업비 : 351백만원(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o 인명구조 안전운항 시스템 추가 장착을 통해 산악구조임무 고도화
- 현행 10대에만 장착되어 있어 예비 헬기 10대에 추가 장착

o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 제출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등산 · 트레킹지원센터에서 상 · 하반기 산악구조대원반 교육 수행(수요 제출)
- 등산객이 집중되는 봄 · 가을철 및 공휴일 · 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 산행안전지원대 운영(지상, 숲길관리청) 〉

o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따라 숲길관리청별로 운영
  ※ 숲길체험지도사, 기타 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을 통해 편성 방안 등 구상

o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 도모(3월)
  - 세부적인 운영 관리는 별도 제공하는 운영 지침을 통해 사업추진

o 산행안전지원대를 편성 · 운영하는 기관은 ’14년도부터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 민간산악구조 활동의 협력강화 및 지원체계 마련 〉

o 사업비 : 149백만원(구조장비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 ’13년 지원대상 : 4대(울산 · 경기 · 전북·전남도 연맹 산악구조대)
    ※ 장비 지원실적 : 13대 (’10년 5대, ’11년 5대, ’12년 3대)

o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 · 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 구조협회 : 1본부 16개 시 · 도 연맹 소속 민간구조대 운영(약 600명)
  - 해외(중 · 일) 산악구조대와의 합동훈련을 통한 기술 교류 및 정보공유
  -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 대처

o 제4회 민 · 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추진

o 산악구조 활동 결과자료 관리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발
  - 2014년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등 관련부서 협조 요청

5) 숲길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안내센터 운영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추진

o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숲길관리청은 20km 이상의 숲길에 숲길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숲길 운영·관리 계획(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추진

o 주요사업

주요내용	세부내역
숲길의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	o 각종 재해 조사·보고 및 소규모 복구, 노면 배수로 정비, 숲길주변 풀베기, 안내판 정비, 안내판 설치, 기타 시설물 정비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o 숲길 이용정보 및 편의시설 등 제공 o 숲길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산행 및 안전교육 o 숲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추진 o 홈페이지 운영, 예약제 운영(필요시) o 각종 재해대비 숲길의 일시 이용중지 안내 o 숲길관련 협의체 운영(정기, 수시)
트레킹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o 연 1회 이상 숲길 걷기행사 개최 o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도모 o 청소년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트레킹길 모니터링	o 숲길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o 숲길에 대한 이용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o 지역주민·이용자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 o 숲길 노면 및 주변환경, 불필요한 샛길 등의 분기, 시설물 노후화, 위험요소 등 정기·수시 점검

o 시범 운영계획

- 숲길안내센터 운영 지원 (단위 : km, 백만원)

숲길명	기관	거리	예산	숲길안내센터	지원형태
합 계	**5개소**	**493**	**756**	**11개소**	
백두대간트레일	인제관리소	113	79	1개소	직접
펀치볼둘레길	양구관리소	47	79	1개소	직접
금강소나무숲길	울진관리소	40	138	1개소	직접
지리산둘레길	서부지방청	274	324	8개소	직접
한라산둘레길	제 주 도	19	136	-	위탁

- 인력(숲길체험지도사) 지원계획

기관	합계	백두대간 트 레 일	펀치볼둘 레길	금강소나무숲 길	지리산둘 레길	한라산둘 레길
	46	3	3	4	34	2
인제	3	3	-	-	-	-
양구	3	-	3	-	-	-
울진	4	-	-	4	-	-
서부	24	-	-	-	24	-
남원	2	-	-	-	2	-
구례	2	-	-	-	2	-
하동	2	-	-	-	2	-
함양	2	-	-	-	2	-
산청	2	-	-	-	2	-
제주	2	-	-	-	-	2

※ 내포문화숲길 : 2명(중부), 8명(충남 4개 시·군)

6) 숲길체험지도사 효율적 배치·운영 및 전문성 강화

o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올바른 산행문화 교육·홍보 등을 위해 숲길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배치·운영

- 운영 계획 : 302명 (지방청 등 57명, 지자체 245명)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1.7.25.)·시행(2012.7.26.)으로 종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안내인'이 '숲길체험지도사' 명칭 변경

o 100대 명산과 기 개통·운영중인 트레킹길의 숲길안내센터에 우선 배치

- 100대 명산의 보완조사 및 ' 07년부터 현재까지 미조사된 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DB 구축(「숲에 on」에 자료 제공)
- 기 개통·운영중인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지원

  ※ 상기「숲길안내센터 인력 지원계획」참조

o 숲길체험지도사로서의 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 실시

- 교육일정 : 2.25~2.27, 3.4~3.6, 3.11~3.13, 3.18~3.20, 3.25~3.27
- 교육인원 : 기당 60명(5회)
- 교육기관 : 산림교육원

  ※ 상기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실시 (기간 미정)

라. 추진일정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 보고 : 계약체결 즉시

o 2013년도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계획 수립 : 2013. 1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위탁 계약 : 2013. 2월

o 숲길체험지도사 위탁교육 : 2013. 2~3월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 : 2013. 3~11월

o 등산·트레킹학교 만족도 조사 : 2013. 6월

o 트레킹길 운영·관리 상반기 실적보고 : 2013. 7. 15일까지

o 제13회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 2013. 7~8월

o 제4회 민·관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 : 2013. 하반기

o 등산·트레킹학교 운영결과 제출 : 2013. 12월

o 2013년도 트레킹길 운영·관리 실적보고 : 2014. 1. 15일까지

o 한국등산 · 트레킹지원센터 사업 추진 : 연중

〈붙 임〉

산행 안전 수칙(안)

1. 산행하기 전에 날씨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라

2. 계획에 알맞은 장비, 의복, 식량을 준비하고 체온유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라

3. 특히 노약자, 여자, 어린이 등은 가능한 나홀로 산행을 자제하고, 동행할 경우 일행 중 가장 쳐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라.

4.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1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오후 6시(동절기 5시) 이후의 산행이 불가피한 경우 숲길안내센터, 경찰서 등에 사전 신고하라.

5. 하루의 산행은 8시간 이내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하라.

6. 짐은 적게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말라

7. 지정된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

8. 산행 중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9. 지도 및 안내리플릿을 휴대하며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고, 조난시 조난 구조용 스마트폰 앱 및 119로 위치 전송 구조요청하라

10.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서라.

※ 각 숲길별 현장에 맞도록 안전수칙 변경 사용

[참고자료]

지리산둘레길 이용 수칙

지리산둘레길은 자기성찰과 공정여행, 책임여행의 걷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약속, 하나!
스스로 준비하고 책임지는 여행을 합니다.

약속, 둘!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길의 상태, 기상조건 등 안전사항을 확인합니다.

약속, 셋!
폭우, 폭설, 폭염 및 야간(동절기 5시, 하절기 6시 이후)에는 안전을 위해 걷지 않습니다.

약속, 넷!
뭇 생명과 마을 주민,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습니다.

약속, 다섯!
함께 가꾸어 가는 지리산둘레길
- 농작물 보호
- 쓰레기 되가져 가기
- 길 위의 특이 사항, 문제점 신고하기

지리산둘레길 실무협의회 (산림청, 남원시, 구례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사)숲길)

27.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목 표

◇ **세계 산악강국으로서 위상제고 및 등산역사 · 문화와 관련된 전시 · 교육 · 정보 제공을 위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o 건축공사(시공 2년차) 및 전시물 제작·설치 5,119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세계 최고의 산악강국임에도 등산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유물 관리 미흡

o 산악단체 및 산악인들의 전시 · 교육 · 정보 제공 등 구심체 역할 필요

o 등산역사·문화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전시·홍보를 위한 공간 부재

나. 기본방향

o 우리나라 산악메카로 육성하여 등산거점으로서의 입지 구축

o 등산 · 트레킹 교육 · 체험 · 정보전달 등 복합 문화시설 기능 수행

o 관련 유물 · 유산의 체계적인 수집 · 기록 · 전시 등을 통해 산악강국의 입지 강화

o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립산악박물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현황

o 계약개요 : 10,489백만원(건축 7,050, 전시물 제작·설치 2,870, 감리 569)

o 공사기간 : 2012.10.12~2014.4.4(금차기간 : 2013.5.9)

※ 연도별 예산 : (’10) 125 → (’11) 325 → (’12) 2,483 → (’13) 5,119백만원

o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 종	총공사예산					금차공사예산			
	도급금액	관급금액		기타금액	계	도급금액	관급금액		계
		도급자	관급자				도급자	관급자	
건 축 (,토목,조경, 기계 포함)	6,803,346	1,401,979	477,309	-	8,682,634	1,554,890	320,418	109,087	1,984,395
전 기	572,495	185,296	308,445	-	1,066,236	130,842	42,348	70,494	243,684
통 신	381,411	-	140,676	-	522,087	87,170	-	32,151	119,321
소 방 (기계,전기)	470,874	-	-	-	470,874	107,616	-	-	107,616
건 설 폐 기 물	27,984	-	-	-	27,984	27,984	-	-	27,984
시 설 분 담 금	-	-	-	6,752	6,752	-	-	-	0
한전수탁 및 사용전검사비	-	-	-	123,367	123,367	-	-	-	0
계	8,256,110	1,587,275	926,430	130,119	10,899,934	1,908,502	362,766	211,732	2,483,000 (22.78%)

2) 건축공사

o 2012년도 건축공사(금차 시공) 추진

- 시 공 사 : ㈜삼부종합건설사무소
- 공사기간 : 2012.10.12.~2014.4.4.(금차 : 2012.10.12~2013.5.9(210일)
- 계약금액 : 8,682,634천원(금차 : 1,984,395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 사업자 선정

※ 금차 공사는 2012년도 토목사업 및 건축 구조물 터파기, 기초바닥공사 위주로 작업하고, 2013년도 2층까지 건축구조물 공사 추진

o 2013년도 건축공사(2년차 시공) 추진

- 사업예산 : 2,207,000천원
- 건축(토목, 조경 등), 전기, 통신, 소방 등 각 분야별 사업 추진

※ 2년차 도급계약은 1분기에 계약체결토록 감독관(조달청)과 협의

o 사업예산 규모에 맞추어 건축공사 2년차 시공계획 수립
- 당초 2년차에 건축공사(토목, 조경공사 포함)를 완료코자 하였으나 사업예산 미확보로 건축물공사 위주로 사업 추진
·건축공사 중 ’14년도 사업계획이 불가피한 조경공사 등은 우선 배제
- 시공사별 공사추진 계획을 예산 규모에 맞추어 공종별 시공계획 수립
- 2년차 도급계약을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 조기 예산집행에 대처

o 사업현장의 성토 작업을 위한 사토장 확보
- 사토장은 속초시에서 협조하고 있어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차장 부지 전체를 성토하는 물량은 ’13년도 확보 가능
- ’12까지 시공한 성토운반은 37,000㎥으로 잔여량은 ’13년도 사업 추진

o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 추진
- 약정기관 : 조달청(공사감독 :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팀)
- 금　　액 : 162,690천원(’11년~’14년)
·수수료 집행 : (’11) 40,000천원 → (’12) 60,000천원 → (’13안) 40,000천원
- 공사 전반에 대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이행으로 관리감독 강화
- 감리계약을 통해 시공관리의 체계적인 지도감독 및 품질관리 도모

o 박물관 부지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및 타부처 국유재산 사용승인 조치
- 산악박물관 조성 부대시설 부지의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속초시)
·재산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35-1번지(임)
·면적 및 기간 : 16,965㎡, 2012.12.1 ~ 2017.11.30.(5년간)
- 타부처 국유재산의 사용승인을 통한 재산 인수(노학동 735번지, 694㎡)
·기획재정부 토지로 사용승인 요청 중

3) 전시물 제작·설치

o 2012년도 전시물 제작·설치 실시설계(금차)
- 시 공 사 : ㈜시공테크
- 기　　간 : 2012.4.10.~2014.5.9.(금차 : 2012.4.10~2012.11.16)
- 계약금액 : 2,870,000천원(금차 : 208,725천원)
- 상설 및 기획 전시 공간, 체험교육 공간, 영상실, 수장고, 휴게공간 등 동선과 콘텐츠를 고려한 전시 설계 완료

o 2013년도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추진
- 사업예산 : 2,720,322천원
※ 건축공사의 2년차 도급예산 부족으로 전시물 제작·설치 예산 조정 활용

- 전시물 제작 · 설치사업은 건축물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
·건축부문과 전시부문 설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시 컨셉과 주제에 맞는 전시공간 구성 및 건축물 구현

o 전시자료 확보 추진
- 전시 대상의 선정 및 기증 협의 전개
- 박물관 테마를 구성하는 핵심 유물의 전시 설계 반영(125점)
- 주요 산악단체와의 면담 및 협의로 자료 확보 기반 마련
·대상: 한국산악회, 대한산악연맹, 대한산악구조협회, 한국등산연합회 등

4) 시공감리 추진

o 2012년 국립산악박물관 조성사업 시공감리 추진
- 감리업체 : ㈜선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 기　　간 : 2012.10.12.~2014.5.4.(금차 : 2012.10.12~2013.6.2)
- 계약금액 : 568,500천원(금차 : 266,235천원)
- 감리수행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건설폐기물, 전시 제작·설치사업

o 2013년도 시공감리 추진
- 사업예산 : 179,836천원
- 기　　간 : 2013년(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맞추어 사업추진)
※ 2014년도 소요 예산 확보 : 122,429천원

5) 산악박물관 운영·관리 기반 구축

o 박물관 소장품 확보
-「국립산악박물관 소장품 수집 관련 규정」제정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복제 등에 대한 운영 등 절차 마련
- 소장품 수집 예산 확보(안) : 2014년 약 6억원
- 수집 방법과 대상을 다양화한 소장품 수집 계획 시행
·등산관련자료(30%), 문헌자료(20%), 사진 · 영상자료(20%), 생활사자료(20%), 회화자료(10%)

o 유물평가 체제 및 자체 유물관리 시스템 구축
-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심의 및 선정 진행
- 종합유물관리 시스템(국립중앙박물관 제공)에 따른 하위 분류체계 수립
-『유물의 등록 및 관리 규정』제정·운영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기반 구축

- 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력 충원

  ·타 기관의 운영 현황 비교를 통한 소요 인력 확보

- 박물관 등록 및 유물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운영 등 협의

  ·국립산악박물관 등록운영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문화체육관광부)

o 국립산악박물관 운영 등 발전방안 마련

- 주변 경관 및 재해예방 시설을 위한 소형 사방댐 등 설치(속초시 협조)
- 연접 시립박물관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등산로 연결사업 방안 마련
- 등산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계획 수립

라. 추진일정

o 건축공사(금차공사) 준공 : 2013. 상반기

o 건축공사(시공 2년차) 도급계약 체결 : 2013. 1분기

o 산악박물관 부지내 타부처 국유재산 인수 : 2013. 상반기

o『유물의 등록 및 관리 규정』제정 : 2013. 상반기

28.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목 표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한 최적의 프로그램 개발

가. 정책여건

o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성 질환 증가로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 증가

o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실현의 구체화

o 국가, 지자체 등에서 조성하는 치유의 숲과 법제화한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교육의 중심역할을 할 구심체

o 산림치유의 기초연구, 교육, 체험, 체류 기능을 연계하는 세계 최초의 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여 활성화 기틀 마련

나. 기본방향

o 자연환경자원을 산림치유와 연계하면서 훼손 최소화와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치유단지를 조성

o 연구, 치유,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

o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공헌형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백두대간 낙후지역의 새로운 저탄소 녹색성장 롤 모델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예천군 상리면 옥녀봉 일원
o 면　　적 : 2,889ha(중심시설지구 152ha)
o 총사업비 : 1,546억원(토지매입 372, 시설공사 1,084, 기타 90)
o 사업기간 : 2010~2014년(5년간)
o 주요시설 : 건강증진센터, 산림치유수련원, 치유마을, 산림치유연구센터 등

2) 시설공사

o 건축 · 토목 · 기계 · 조경 · 산림 · 전기 · 통신 · 소방 · 폐기물 등 공종별 공사추진 계획

- 공사비(1,084억원) : (’12) 99억원 → (’13) 283억원 → (’14) 702억원
-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하여 최고의 공사품질 확보
  ·공정계획, 일정계획, 진도관리, 통제 · 조정 관리로 공사의 품질향상 제고
  ·공기준수, 품질확보, 원가절감, 안전확보, 환경보전 등을 통하여 공기 내 완료
- 전시시설 공사는 주변공사에 맞추어 발주(’13년 하반기)
- 주요 시설공정
  ·건축 : 기초터파기, 건물골조,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및 외장공사 등
  ·토목 : 지장가옥철거, 기초터파기, 교량공사, 오수처리장, 생태저류지 공사 등
  ·기타 : 숲길조성, 데크로드 설치, 조경수목 식재 등
  ※ 기공식 행사는 4~5월중 개최

o 토지보상에 따른 공탁절차 이행 및 공유지 보상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예정 : ’13. 1. 18.
- 관할법원(안동지원)에 공탁절차 이행 : ’13. 2월
- ’13년도 예산 배정시 공유지 보상금 지급 : ’13. 1월
  ·공유지 면적 : 80필지 170,004㎡(영주시 58필지 134,350㎡, 예천군 22필지 35,654㎡)

o 유 · 무연 분묘 이장

- 유연분묘(132기) : 43기는 ’12년말까지, 잔여 89기는 ’13.4.5(한식)까지 이장완료
- 무연분묘(205기) : ’13. 1월말까지 이장 완료

3)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

o 산림치유단지에 적용 가능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3억원)

- 질환별 · 계절별, 장 · 단기 산림치유 및 산림치유지도사 교육프로그램 개발

o 세부 운영매뉴얼 작성 및 시뮬레이션 사전준비

- 주요 시설별로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완공과 동시에 시뮬레이션 실행

o 지방청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적극 개발

- 존치과수원(8ha) 및 약용식물 재배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 지자체(영주시·예천군)와 연계한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개발 등

o 실무협의회(’12년 구성)의 지속 운영을 통한 현안사항 해결

- 토지보상, 불법행위 예방·단속, 민원처리, 지역개발 및 소득 지원방안 마련

- 분기별 1회 협의회 운영(경북도, 영주시·예천군, 남부청, 영주관리소 실무자)

4) 단계별 인력확충과 운영주체 구체화

o 공사단계별 필요한 적정인원 확보
- ('12) 3명 → ('13~'14) 15명 → ('15) 개원 55명
- 2차년도 공사에 필요한 적정인원 확보(직제상 3명 → 15명)
  ·전문계약직, 유동정원 등 인력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o 운영계획 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운영주체 구체화
- 치유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구체화
- 상업시설, 식당 등 위탁시설 운영방침 결정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강구
- 의료 및 연구분야 도입범위 결정 및 대상 선정

라. 추진일정

o 공종별 공사 추진 : 연중

o 실무협의회 운영 : 연중

o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절차 이행 : 2013. 2월

o 존치과수원과 약용식물 재배지 관리방안 마련 : 2013. 6월

o 분묘 이장 : 2013. 6월

o 인력확충방안 마련 : 2013. 12월

o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 2013. 12월

o 치유단지 운영주체 구체화 방안 마련 : 2013. 12월

산림보호국 소관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관리

목 표

◇ **산림생태계의 체계적 보호·관리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3~’17) 추진

o 산림소생물권(biotope) 관리 및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곤충 등 생물자원의 보전 · 관리 및 이용체계 구축

가. 정책여건

o 인간의 환경 파괴에 기인한 생물종 감소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나고야 의정서(ABS)[21] 채택으로 전 지구적 대책을 추진 중

※ (ABS발효) 50개국 이상의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12.10월 8개국 비준)

o 우리나라도 국가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전을 추진

o 산림생태계는 대부분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 ‘보호’와 ‘이용’의 핵심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예방, 현지내·외 보전 등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요

나. 기본방향

o 국가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체계 강화를 위해「제2차 산림생물 다양성기본계획(’13~’17)」의 수립·시행

o 산림내 주요 산림생물종 및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지(분포지)조사 · 관리를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

o 산림생태계의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추이를 예측하는 등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운영으로 산림곤충자원의 산업화 활용촉진 및 보전기반 확대

---

21)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자원제공국의 승인, 자원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내용으로 하며, 제10차 CBD 당사국총회시 채택(우리나라는 ’11.11.서명)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2013~2017)」 시행
- 대·내외 여건변화, 관계부처·기관 동향, CBD-COP10·11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종합 기본계획

o 특별산림보호대상종(53종) 자생지 보전사업 추진
- 산림사업 추진 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범위 · 목록화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 실시

o DMZ일원 산림관리종합대책의 체계적 추진
-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DMZ일원 산림의 체계적 사업 시행
- 민북지역산림생태관리센터 · DMZ자생식물원을 기점으로 실효적 관리 및 사업자료의 축척(전 · 중 · 후 사진, 과거의 현재의 비교 등)

2) 산림 습원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습원의 소생물권 관리를 위해 ’13년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5억원)
※ (’06~’08 국유림 조사완료) → (’10)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주 → (’11) 전남, 전북, 광주 → (’12) 충남, 충북, 대전 → **(’13) 경북** → (’14)서울, 경기, 강원

o 산림습원조사지의 보전가치 평가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습원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① 산림습원 중요식생, 희귀식물 등을 감안하여 완충지역 면적을 포함
② 산림습원 핵심구역 주변에 늪, 소택지 등이 연접된 경우 이를 단지화
③ 주변에 산림습원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된 경우, 이를 유역화하여 검토·지정

o 2006~2009년 조사 완료한 국유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기후변화 적응사업 추진

가) 기후변화 취약 식물의 개화 · 개엽시기 모니터링 실시

o 기후변화 취약 식물(100종)의 개화 · 개엽시기 모니터링 및 고산지역 · 풍혈지 등 특수지역의 취약 식물종 생육환경 조사 · 분석
- 예산액 및 시행 주체 : 170백만원, 국립수목원

나) 기후변화에 취약한 유용산림식물종 보전 · 적응사업 추진

o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 · 생육한계성 산림식물의 조사 · 증식 · 보존 및 현지(서식지) 내 복원 · 적응사업 실행

o 식생 권역별로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의 보존 · 적응사업 추진
- 예산액 및 시행주체 : 730백만원, 국립수목원 및 지방자치단체(공립수목원)

4) 산림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운영

o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곤충산업육성 5개년계획',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4개소) : ('13) 1개소 → ('14) 1개소 → ('15) 2개소
  ※ 곤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2.6)으로 산림자원의 범위에 포함

o 공무원 · 일반인을 대상으로 "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산림교육원, 5일 과정)" 신설로 곤충산업의 이해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라. 추진일정

o 제2차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 시행 : 2013. 1~12월

o 생물다양성 협약(CBD) 제12차 당사국회의 준비 : 2013. 1~12월

o 「기후변화 취약 식물종 적응사업」 추진계획 수립 · 시달 : 2013. 1월

o 산림습원조사 추진계획 수립 : 2013. 2월

o 산림곤충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 2013. 9월

o 산림습원 현장 조사완료 : 2013. 10월

o 산림습원조사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 2013. 12월

2.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체계 확립

목 표

◇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적극적 보호·관리**

o 산림보호구역 : 422,824ha(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126,868ha)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 1,724백만원(생육환경개선 등)
-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 : 2개소(동부, 서부), 2,292백만원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 4개소(전남, 경북), 200백만원

가. 정책여건

o 산림식물의 유전자·종 보존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o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 관리기준의 국내이행 필요

o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수요 확대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구 증가

나. 추진방향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보호·관리 기반 확립

o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효율적 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효율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

o 산림습원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추진

- ('10) 117천ha → ('11) 127천ha → ('12) 132천ha → ('13) 137천ha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계획 수립·시행

- 지역별 관리 목표 설정 등 계획 수립 · 관리(시 ·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o 울진 · 삼척 금강송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

o 산림보호구역 보전 · 관리 법령 정비 추진

- 산림보호구역 손실보상 관련 대상 범위 확대
- 산림보호구역내 입목 및 보호수 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기능 증진 및 관리

가)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운영

o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와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산림생태관리생태 신축 · 운영

- 신규 조성 2개소 2,292백만원(동부 1,338, 서부 954), 운영 4개소
- 시험 · 연구실, 회의 · 세미나실, 전시 · 체험관, 안내센터 등 시설 설치

* 신규조성은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및 신축, 신축시 기자재 등 포함 사업 추진

o 산림생태관리센터의 운영 매뉴얼 마련 및 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 추진

나)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o 대규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기능 · 유지 · 증진사업이 시급한 지역에 우량숲 생물다양성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내용 〉

① 유형별 특성의 기능 유지·증진 사업 실행(445ha, 534백만원)
- 종 보존과 증식을 위한 산림유전자원 생육환경개선사업
- 산림유전자원의 인위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② 산림유전자원 생태탐방로 정비(17km, 539백만원)

③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651백만원)

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o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 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림유전자원 보존 목적 달성

- 사업대상지 : 5㏊이상(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1ha 이상도 가능)

o 2013년 사업 : 4개소(나주, 장흥, 문경, 울진), 200백만원

소 재 지	지정유형	지정면적 (ha)	지원예산 (백만원)	주요 분포식물	소유자 (관리자)
합 계		2,594	200		
① 전남 나주시 다도면 마산리 산210 외2	유용식물	40	100	비자나무	사찰림(불회사)
② 전남 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산10-1	유용식물	3	30	비자나무	사찰림(보림사)
③ 경북 문경시 가은읍 원북리 산1-1 외1	희귀식물	2,290	42	고란초 등	사찰림(봉암사)
④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산30-1	원시림	261	28	소나무	사찰림(불영사)

o 보호·관리협약 추진 절차

- 보호 · 관리협약지침 시달(산림청) → 보호 · 관리협약 대상지 선정(지자체) → 보호 · 관리협약 체결 · 실행(지자체) → 모니터링 및 평가(산림청 · 지자체) → 평가 결과 환류(산림청 · 지자체)

라. 추진일정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 · 관리 협약지침 시행(산림청) : 2013. 1월

o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 2013. 1~12월

o 산림생태관리센터 신축 : 2013. 1~12월

o 산림보호법 개정안 마련 : 2013. 1월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역계획 수립 : 2013. 7월

o 산림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 2013. 9월

3. 산림생물자원의 현지내 · 외 보전기반 구축

목 표

◇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 · 증식 · 연구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보전 · 관리기반 확충**

- o 국립수목원 확충 : 2개소(중앙, 새만금), 58억원
- o 지방수목원 조성 : 31개소(설계 1, 조성 15, 특성 13, 보완 2), 170억원
- o 산림박물관 건립 : 6개소(조성 1, 특성 4, 보완 1), 10억원
- o 지역생태숲 조성 : 19개소(조성 15, 보완 4), 89억원
- o 자생식물원 조성 : 13개소(설계 5, 조성8), 32.5억원

가. 정책여건

o 「생물다양성협약(CBD)」 체결이후 식물자원의 이용가치 증대로 국가간 식물자원 확보경쟁 및 식물분야의 국제협약 이행 노력 강화

o 지구온난화 · 사막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협에 놓인 고산 및 한계성 자생식물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국가수목원 확충의 필요성 대두

o 국민소득 · 휴양문화 향상으로 녹색생태 탐방 · 체험 · 교육수요 증대

나. 기본방향

o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 증식 및 연구기반 확충

o 식물유전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 체험 학습 등 국민서비스 강화

o 수목원·생태숲 조성 사업의 타당성 제고 및 단계별 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수목원의 진흥·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o 「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14~2018)」 수립을 통하여 국내 수목원의 육성 및 선진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발전 방향 제시

o 주요 내용

- 「제2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009~2013)」에 대한 반성
-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지원 및 수목원간 교류에 관한 사항
- 수목원 정보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국립수목원 조성사업

가) 국립중앙수목원 조성 추진

o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림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교육 및 연구하여 산림생물자원의 현지외 보전기능을 구축

- 세종시에 도심형열린수목원 조성, 한국정원을 국가브랜드화 추진

o 한국전통정원, 국가별전통정원, 교육·체험·치유정원, 테마전문정원, 국제산림기술교육훈련센터, 도시녹화식물연구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임

- (총면적) 65ha, (총사업비) 1,374억원, (조성기간) ’12년~’16년(5년)

총사업비	연차별 계획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74억원	13	58	512	483	308

o 세종시 중앙녹지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국립수목원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3~12월), 조성예정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추진(1~12월)

o 신규로 조성하는 국립수목원 간의 조직체계와 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국가수목원 조직운영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3~12월)

나)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추진

o 국내·외 해안식물자원 수집·증식을 통한 해안식물 보존 및 체험·학습·연구를 위해 차별화된 해안형 국립수목원 조성 추진

- (총면적) 200ha, (총사업비) 약 5,000억원 추정, (사업기간) ’15년~’24년(10년간)

o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대비 기본계획(안) 용역 완료(5월)

o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 신청 추진(12월)

3) 공 · 사립수목원 지원

가)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 · 운영

o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세계식물보전전략(GSPC)에 대응하여 한반도 산림유전자원의 현황 파악 및 체계적 보전 · 관리 추진

o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은 산림유전자원의 수집, 특성검정·평가, 증식 및 보존,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

o 산림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 · 사립 수목원 지원

나) 수목원전문가 교육 과정 지원

o 수목원 관련 전문지식 및 운영 관리 노하우를 갖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수목원의 조성 · 운영 전문화 도모

o 수목원 전문가 육성을 위한 기초 종합 교육 및 현장 실습 교육 비용 지원

o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전문가 인증교육기관 지원

※ 공식 인증 수목원전문가교육기관 : 천리포수목원,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다) 지방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특성화, 전문화 추진

o 기후변화·산림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가 강화되어 생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후대별 전문화된 수목원 필요

o 식물자원의 보전 · 증식 · 전시 및 연구시설(전시원, 온실, 관리 · 연구) 설치

o 사업규모 및 기간

- 공립수목원 : 개소당 보완사업비 5억원/년(13개소)
- 산림박물관 : 개소당 보완사업비 3억원/년(4개소)

라) 수목원 정보 대국민서비스 시스템 개발

o 수목원생태숲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축된 다양한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산림식물자원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o 대국민 홈페이지 개발, 수목원별 보유식물 정보 및 유형별 통계 서비스 등 제공

4) 생태숲 및 자생식물원 육성 강화

가) 생태숲 조성·관리

o 산림식물의 현지 내 보존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훼손의 위협으로부터 산림생

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 휴양공간으로 제공

- 지정근거 : 「산림보호법」 제18조 생태숲 지정제도 및 생태숲 지정관리지침

o 사업대상지

-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다양성이 높아 자연상태로 보존 · 관리할 가치가 있는 숲으로 30ha 이상인 공유지

- 자연휴양림 · 도시숲 등과 연접하여 교육 · 탐방 · 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숲으로 20ha 이상인 공유지

o 지정 절차

-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입지여건 등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심사

- 타당성 심사 전에 관계공무원이 대상지 현지조사 · 확인

o ’13년 사업추진 : 19개소(조성 15, 보완 4), 89억원

나) 자생식물원 조성 · 관리

o 우리 고유의 향토 · 자생식물 등 초본류 · 관목류의 체계적인 보전 · 육성으로 식물 종다양성 · 자원화 연구의 활성화 촉진

- 사업대상지 : 3ha이상의 공유지

- 사업기간 : 3년(설계 1년, 조성 2년)

- 사 업 비 : 개소당 총사업비 15억원 이내 또는 1ha당 2억원 이내

o 사업내용

- 지방고유의 향토 · 특산식물을 보존 · 전시할 수 있는 자생식물 전시원 조성

- 자생식물의 교육 · 탐방 · 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 · 체험관 · 산림생태관찰원 · 탐방로 등 설치 · 조성

o ’13년 사업추진 : 13개소(설계 5, 조성 8), 32.5억원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o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지원하여 선진국의 정원문화 도입 및 한국전통정원 · 수목원 문화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조경 등 수목 산업발전에 기여

- 수행주체 : 전라남도 · 순천시(주무부처 : 산림청)

- 개최시기 및 장소 : 2013. 4. 20 ~ 10. 20, 순천만일원

- 총사업비 : 1,064억원(국비 149억, 도비 90억, 시비 825억)
  ※ 부지매입 416, 조성공사 470억, 전시연출 143, 설계 35

o 연차별 지원현황

구 분	계	’10 예산	’11 예산	’12 예산	’13 예산
합 계	1,064	527	65	382	90
국 비	149	20	20	85	24
지방비	915	507	45	297	66

라. 추진일정

o 국립중앙수목원 대형공사(턴키) 입찰방법 심의 신청 : 2013. 1월

o 국립중앙수목원부지 토지개량 및 성토 등 기반조성 협의(건설청, LH) : 2013. 1~12월

o 국립중앙수목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 2013. 2월

o 산림유전자원관리사업 신청 및 심사 : 2013. 2월

o 산림유전자원관리사업 수행자 확정 : 2013. 3월

o ’14년 수목원·생태숲 등 신규 사업신청 : 2013. 3월

o 국립중앙수목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13. 3~12월

o「국가표준식물종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개발 : 2013. 4~12월

o ’14년 수목원·생태숲 등 신규사업지 사전타당성 심사 : 2013. 5월

o「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 2013. 6월

o 수목원·생태숲·자생식물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13. 8월

o「제3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수립 : 2013. 12월

4. 불법 산림피해방지 대책 추진

목 표

◇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계도활동 강화로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

o 특별사법경찰관 : 1,314명, 청원산림보호직원 : 400명(국가 229, 지자체 171)

o 숲사랑 지역 네트워크(5개권역) 및 소셜네트워크(SNS) 활성화

가. 정책여건

o 산행인구 및 산지개발수요 급증으로 산림오염 및 훼손 우려 증대

o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08) 2,430건 → ('09) 2,445건 → ('10) 2,493건 → ('11 2,310건

o 우리나라 산림면적 대비 산림 현장 보호·단속 인력은 부족한 실정

- 전국 산림면적 637만ha, 단속인력 1,467명(평균 4,341ha/명)

나. 추진방향

o 불법산림피해의 유형·시기를 고려한 현장 맞춤형 대책 시행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

o 산림보호 시민참여의 새로운 모델로 민 · 관 협력형「숲사랑운동」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보호 단속강화

o 산림보호담당구역 책임 단속제 실시

- 직원별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

※ 월 2회 이상 산림보호 활동 실시

- 산림보호담당구역에서 피해발생시 책임한계 규명
- 시·군·구별로 지역단위 민간감시단과 연대하여 감시 추진

o 불법산림피해의 신속 대응을 위한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운영
- 지방자치단체·지방산림청의 특별사법경찰 등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활용
- 시·도 담당 과장 및 지방청 운영과장을 반장으로 선임
- 산림훼손의 고소·고발, 진정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처리

o 산림청(지방청)-지자체간 산림훼손 예방 · 단속의 공조체계 확립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시기별·유형별로 정기 예방 단속 실시
-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 다발지역 집중관리
- 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 불법 굴·채취행위 및 밀반출 중점 단속

o 민통선지역 불법 산림훼손방지 유관 기관간 합동기동단속 실시
- 군부대와의 공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감시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는 상시 단속 활동 추진
- 농경지 주변 등 산림훼손 우려 지역은 산림보호 감시원을 고정 배치

o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실무 능력 배양
- 산림보호담당자 수사실무 집합교육 및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실시

o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 효과 제고
- FGIS, 온나라지도 등을 불법 산림훼손행위 단속시 적극 활용
※ 온나라지도 :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

o 산림환경 오염 방지 대책 추진
- 산림정화구역, 유원지, 주요 등산로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림보호 감시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단속 실시

o 홍보 및 계도
- 산림피해 유형별 단속 계획 등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
■ 시·도 및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월별 중점 단속대상을 지정·홍보
■ 중대한 불법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국민 경각심 고취
-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홍보 실시

o 산림보호 단속선 접안시설 설치(260백만원, 중부)

2) 청원산림보호직원 관리 · 운영 개선

o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책임 관리·운용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에 부합하는 직무부여 및 지도·감독 강화
-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근무기강확립 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o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워크숍 추진

o ’13 증원 계획 : 15명
  - 지방청(7) : 북부 1, 동부 1, 남부 4, 서부 1
  - 과학원(2), 휴양림(6)
  - 시기 및 방법 : ’13. 1월 중 거주지 제한 공개경쟁 채용

o ’13년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 현황 조사
  - 배치 및 부여임무 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 조사
    ※ 조사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원조정 등 개선 조치

3)「숲사랑 운동」추진

o 민·관 협력형 산림보호활동인「숲사랑 운동」의 네트워크간 교류강화
  - 조직화된 5개 권역 네트워크별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활동 및 워크숍 개최
  - 권역별 네트워크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한 정보교류 및 연합 활동 추진

o 산불취약지역, 휴양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명승지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림을 「숲사랑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보호

o 인터넷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한「숲사랑 운동」활성화
  -「숲사랑 홈페이지」를 통한 숲지킴이 활동 강화 및 회원가입 확대
  - ‘숲사랑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보호활동 활성화 추진
    ※ ’12.12월 현재 숲사랑 트위터(팔로워 4,016명, 팔로잉 4,439명)

o 숲사랑 운동이 활성화된 일선관서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확대
    ※ 예산 : (’11) 135백만원 → (’12) 297백만원(증120%) → (’13) 323백만원

o「숲사랑 운동」홍보를 통한 참여의식 확산
  - 각종 행사·이벤트·교육 등을 통한「숲사랑 운동」참여의식 확산 추진
  - 산림보호활동을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기별·테마별 홍보
  -「숲사랑 운동」우수단체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실시(매년 10명)

라. 추진일정

o 불법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통보(산림청) : 2013. 2월

o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수립(시·도, 지방청) : 2013. 2월

o 숲사랑운동 추진계획 수립·통보 : 2013. 2월

o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편성 : 2013. 3월

o 청원산림보호직원 신규 채용자 교육 : 2013. 9월

〈참고〉

산림피해 유형별 중점 단속계획

단속유형	단속 내용	단속지역	단속시기
불법산지전용 등	o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전국일원	연중 (분기별)
	o 수목장림 조성, 분묘 조성지 과다 훼손		
	o 건축물 증·개축 빙자 불법훼손		
	o 농지전용지 경계 침범 훼손 등		
불법임산물 굴·채취 및 유통	o 산나물·산약초, 약용수목 굴·채취	전국일원	연중
	o 관상·조경수목 굴·채취, 유통		
	o 산림내 자연석 밀반출		
	o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o 고로쇠 등 수액 무단채취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 구역 등에서의 불법행위	o 희귀수목(주목)·약용수목 굴·채취	백두대간· 산림보호 구역	4~9월
	o 불법 산지전용		
	o 무속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o 국유림 불법점유 행위 등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	o 쓰레기 무단투기	휴양림 관광지 주변	6~9월
	o 계곡 등 경관보전지역 훼손		
	o 안내·홍보시설물 파손		
기타 사업지 등 불법행위	o 입목 벌채지 잘못베기 - 수종갱신, 솎아베기 사업지 - 표고자목 생산 벌채지	사업지	연중
	o 사용허가지 경계 침범		
	o 채광·채석장 경계 침범 등		
	o 도로개설지 과다훼손 등		

5. 산불예방대책 추진

목 표

◇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활동으로 산불발생 요인 사전 차단

가. 정책여건

o 새정부 출범(2.25)에 따른 전환기 산불대응력 약화 우려

o 농산촌 소각관행과 등산인구의 증가로 산불요인 상존

o 많은 산불 감시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IT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

o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차별화된 홍보전략 필요

나. 기본방향

o 새정부 출범(2.25)에 맞춰 산불방지 총력 집중, 사회 불안요인 해소

o 산불 조기발견 및 조기신고로 초기대응력 강화

o IT와 접목된 감시·예보시스템 통합운영 및 신속한 상황전달체계 보강

o 입산객 관리 강화 및 소각산불 근원적 차단

o 산불재해 예방(경감)을 위한 급수시설 및 산림관리 내실화

o 시기별·원인별·타겟별 차별화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다. 세부추진계획

1) 새정부 출범(2.25)에 맞춰 산불방지 총력 집중

o 새정부 출범(2.25) 전후 감시인력 집중 배치 등 특별대책 추진

o 단계별 대책회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산불대비태세 강화

- 전국 산불관계관회의(1.22), 국가정책조정회의(2월 중순), 대형산불방지 대책회의(2월 하순)
- 산불방지에 소방·한전·국립공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o 산불이 집중 발생하는 시기에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1)' 운영

2) 현장밀착형 감시역량 극대화로 조기발견 및 초기대응

o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 편성·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및 봄철 집중 고용 등으로 감시 효율성 제고

- 산불 감시인력의 봄철 고용 확대(70→80%) 및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 근무시간 : (종전) 09시~18시 → (조정) 07시~20시 중 8시간 근무
- 산불발생 원인별·시기별 감시인력 이동배치로 감시효과 제고
- 산불위험시기에는 '산림재해모니터링', '산림병해충 예찰단', '숲가꾸기 패트롤'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o 산불감시 인력과 시스템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

[시스템 통합]	산불위험예보 + 등산로 개방 안내 +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 + 산불위험 SMS 발송 + 감시카메라 영상

- 감시인력은 사역과 동시에 산불신고 단말기(14천대) 지급 및 현행화
  ※ 한전 자체예산으로 송전선로 감시원에게 산불신고 단말기 보급(400명)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주요 통합·연동·공유체계 구축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지역별 산불위험지수 실시간 표출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실시간 영상 공유
  ·스마트폰 「산불신고 앱」을 통한 신고 실시간 표출
  ·한국전력과 송전(탑)선로 위치정보 공유 및 표출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및 피해 최소화 추진

[시스템 고도화]	음성안내 기능 추가 + 화상도 4배 + MMS 추가 + SMS 추가 + 취약지 NFC

- 원활한 신고를 위해 음성안내 기능 추가된 산불신고 단말기 보급
- 정확한 산불 위치와 신속한 진화여건 파악을 위해 25㎝급 항공사진 도입
- 산불신고 시 항공사진 캡쳐(1㎞×1㎞)하여 담당공무원 등에게 MMS 통보
-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자동 SMS 발송
- 국유림관리소의 산불취약지역 실시간 감시를 위해 NFC 시범 도입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10㎝ 이내) 상호 통신체계, 사례 모바일 결제, 산불신고 단말기를 NFC Tag에 대면 시간, 위치정보 송신

3) 고도화된 감시·예보시스템 활용 및 신속한 상황전달체계 보강

o 감시카메라는 사전타당성 검토 후 시설, 영상공유 확대, 내구연한 경과한 감시카메라 교체 및 이동통신 중계탑 활용으로 설치 확대

- 시설 및 교체(이동설치)는 사전타당성 검토 후 설치(48개소)
- ’12년까지 영상 미 공유 지자체는 영상공유 작업 추진토록 유도
- 내구연한(7년) 경과된 감시카메라는 연차적으로 교체(41개소)
  ※ 부품생산이 중단되고 수리가 곤란한 아날로그전송 카메라 우선 교체
- 이동통신사 중계탑을 활용하는 기관에 신규 설치예산 우선 배정

o 산불위험정보 SMS 제공 방법 개선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SMS 제공체계 개선]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공무원, 감시원, 진화대
▸재난예·경보시스템 : 마을, 관광지 안내 방송

- ‘산불위험예보시스템’에서 SMS 발송하던 것을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으로 개선
- 산불위험지수 ‘매우 높음’이면 해당지역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마을방송, 관광지에 안내 방송토록 체계 구축
  ※ 재난예·경보시스템 : 마을단위 · 계곡 등 관광지에 방송시설 설치(13,995대), 기초 지자체에서 운용, 산불위험시기 활용 가능
- 수신자별 조치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SMS 발송 및 방송 실시

4) 입산객 관리 강화 및 소각산불 근원적 차단

o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가능지역 안내 웹서비스 확대
- 인터넷 포털(Naver)의 지도서비스에 등산로 개방지역 표시
  ·산림청, 지자체,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던 것을 확대
  ·접근성 개선, 검색 기능 강화 등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등산로 개방구간 안내지도는 고시 내용과 일치되게 제작(’13년 1월) 후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포털을 통한 웹서비스
- ‘숲에 On’ 등 산림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안내서비스 추진

o 소각에 의한 산불 근원적으로 차단
- 추수가 끝나는 10월부터 이듬해 ‘소각금지기간’ 이전까지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등은 소각이나 제거 실행
  ※ 가을철에 제거하지 못한 개소는 마을별 공동소각계획 수립(12월까지)
- 산불감시인력은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시기 ‘인화물질제거사업’에 투입
- 산불 위험시기 이전에「특별 제거기간」지정·운영
  ※ 소각은 전문진화대의 기계화진화장비를 통한 산불진화훈련 기회로 활용

-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은 3월 중순~4월 중순은「소각 금지기간」운영
  ·산림 내·산림연접지의 소각행위 금지(불 놓기 허가 원칙적 금지)
  ·소각 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철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시 담당지역 감시원 해고 등 불이익 처분

5) 산불재해 예방(저감)을 위한 급수시설·산림관리 내실화

o 산불취약지에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23개소)
  - 사업명, 대상지, 우선순위, 규격 등 기존 설치 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및 장기 추진계획 수립('13년 5월) 후 설치 추진
  ·'12년 처음 설치한 개소에 보완적 성격으로 추가 설치 가능
  - 산불위험단계 '경계' 이상이면 7일 단위로 사전 살수·담수 이행
  - 문화재청·불교종단 등과 협의 후 산림 내 주요보호시설에 집중 설치

o '산불방지 숲가꾸기' 및 전통사찰 등 보호를 위한 '이격공간' 조성(500㏊)
  - 산불방지 숲가꾸기는 대상지를 마을주변 등으로 확대 실행
  - 기 실행한 이격공간,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 유지관리(1,160㏊)
  ·이격공간 내 낙엽 및 관목류 제거, 상록관목류·꽃나무 식재 지원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지내 수관층이 겹치지 않도록 가지치기 등 관리

6) TV·신문·전광판 등 입체화된 홍보로 적극적 참여의식 함양

o 송출지역·시간대·타겟 등에 따른 차별화된 산불예방 홍보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 농산촌 주민 주 시청 시간대 광고 송출
  - TV, 신문, 지하철, 고속도로 전광판 등 매체에 따른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모바일(비즈링, 카카오톡, NFC Tag 등), 웹(포털 지도서비스) 등 다중 이용매체 활용

o 기상예보(방송사·기상청), 집배원(우정사업본부)을 활용한 산불조심 홍보
  - 언론사 기상캐스터 간담회 조기 개최, 집배원 홍보물(깃발) 제공

o 오피니언 리더를 산불방지 홍보 리더로 유도
  - 산불방지 주요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작 · 제공 등으로 관심 유도
  - 산불방지 관련 언론홍보(기고 · 칼럼 등) 주체로 참여 유인

o 산불신고 단말기, 스마트폰 산불신고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홍보
  - 산불 감시인력의 예방·계도활동 주요내용을 산불신고 단말기로 제공
  - 산불신고 앱에 대국민 산불예방 및 신고 요령 등 제공

라. 추진일정

o 산불감시인력 배치 : 2013. 2~5월, 11~12월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신고 단말기 교체 : 2012. 12~2013. 1월

o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 가능지역 웹서비스 : 2013. 2~5월, 11~12월

o 논·밭두렁 소각금지기간 운영 : 2013. 3~4월

o 산불방지 공익광고 추진 : 2013. 3~4월

o 산불방지 급수시설 장기추진계획 수립 : 2013. 5월

6. 산불 진화대책

목 표

◇ 통합적·체계적 초동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가. 정책여건

o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유용성 증대

o 산불재난 현장에서 지휘부와 유관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대

o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2010년), 기계화진화(2011), 지상진화 경연대회(2011년) 도입으로 지상진화 역량 강화의 중요성 인식

o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하여 임차헬기와 유관기관 지원헬기의 공중지휘 체계 확립 필요

o IT 기술발전에 따른 산불 현장동영상 전송시스템 시범도입

나. 기본방향

o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체계 구축

o 통합지휘본부장(지자체장, 국유림관리소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o 임차헬기·유관기관 지원헬기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o 산불상황실의 산불방지시스템 운영 활성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신고 단말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체계 구축

o 산불 발생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피해 최소화
  - 현장에 최초 도착한 산불감시요원은 반드시 산불 신고 단말기로 신고

(종전) 산불신고 접수(전화) → 산불담당자(시군·관리소) 현장 확인 → 시·도(헬기지원 요청)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개선) 산불신고 접수(신고단말기, 스마트폰 앱) → 시군·관리소, 시·도, 산림청(산불신고 동시 확인) → 산림청(헬기출동 지시)

- 풍속기를 사용하여 풍향 및 풍속을 측정하여 산불상황실로 보고

o 산불보고를 소홀히 하여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 유의

- 임차헬기로 자체 진화하다 늦게 보고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산불감시요원에게 지급된 산불신고 단말기를 담당공무원이 통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2) 통합지휘본부장의 산불현장 직접 지휘

o 산불발생 초반부터 현장을 지휘하고, 산림부서장은 반드시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

-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지휘본부장 임무 매뉴얼에 따라 현장지휘

※ 표준매뉴얼 정비(2월), 실무·현장매뉴얼(4월)

o 중·소형 산불발생시 신속한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산불현장 조망 및 언론사 등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설치(입구 등)
- 산불현장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임무·역할 부여로 유관기관의 산불진화에 적극적 참여유도(기관별 연락관 파견 및 대책회의 책임자 참여)
-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은 체계적인 산불진화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진화유도(진화작전도 작성 등)

o 산불상황의 정확한 언론 정보제공을 위한 「산불상황 보도요원」 지정·운영

-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언론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 기관의 명칭(산림당국), 투입장비(산림헬기 등), 산불규모 등 사실관계에 맞는 보도용어 사용을 위해 취재기자·언론사 협조 요청

3)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 지상진화대 편성 및 운영

o 시·군 및 관리소별 초동진화를 전담할 기계화 진화대 1개팀 운영

- 산불발생시 기계화 지상진화대 1개 팀은 반드시 산불현장에 상주

·산불현장에 펌프 등을 이용하여 산불현장까지 급수체계 구축

·기계화진화대는 분산 배치하지 않고 한 개소에서 반드시 통합관리

- 1개 팀은 6~14명으로 구성하며 산불 빈도가 높은 10:00~21:00 신축적으로 근무

- 장비차, 인력수송차로 편성하고, 13㎜ 호스 700m(표준호스 연결장치) 구비
- 주 2회 이상 호스설치(600m이상), 분배기 연결, 수조 설치, 분사(20분 이상) 등 기계화시스템 반복 훈련

o 광역적으로 지상진화를 지원하는 광역 기계화 산불진화대(9개대) 운영
- 평상시 관내 진화지원,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 등은 권역 외까지 지원
  ·통합지휘본부장 및 산불현장지원단(국장급)의 보좌 및 지원임무 수행
  ·펌프를 활용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산불기계화진화시스템 활용 선도
- 지방산림청 6개대, 항공본부 3개대 권역별 배치 운영
  ·대별 14명(공무원 등 2~4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2명) 내외로 구성
- 기계화 진화시스템 운영을 위해 보유중인 진화장비 현장점검(2월 하순)

o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출동차량 지원
- 산불조심기간(5개월) 출동차량 임차비 및 유류비 국고지원
  ·진화대원 12명당 출동차량 1대(승합) 임차비 및 유류비 배정

o 공중·지상협력 기계화진화시스템(호스설치) 구축 및 운영
- 헬기로 산불현장의 고지대에 호스를 투하하고 산 아래로 하향 설치함으로써 지상진화대의 직접 진화활동을 지원
  ·헬기로 호스 투하, 공중진화대가 호스 설치 및 산불현장 지휘 담당
  ·헬기로 호스만 투하, 시·군 및 관리소에서 호스 설치 및 진화 담당
- 산불이 2시간 이상 지속되고 3대 이상의 헬기가 투입되는 등 중대형 산불 또는 야간산불로 이어져 일몰 전 호스설치가 필요한 경우
  ※ 상향 설치보다 소요인력이 1/7~1/10 감축되어 호스설치 부담 경감
- 통합지휘본부장은 호스 설치방법 및 투하 지점 등을 산림항공기와 사전 협의(504채널)

o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상진화 역량강화 유도
- 시·도, 지방청별 자체 경연대회 개최(1~2월), 전국대회(11월)
  ·호스 설치거리 600m이상, 저수조 설치 및 분배기 사용, 호스내경 13㎜(8.5㎜)

o 뒷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불정리를 철저히 이행
- 산불진화 방법은 반드시 동력펌프·진화차, 분배기, 간이수조를 이용하여 지상진화 실시
- 산불현장에 간이수조를 설치하여 등짐펌프 운반거리를 최소화
- 잔불진화 후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감시 인력을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여 뒷불감시 철저

4)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o 산불위험시기에 가동률 극대화를 위한 산림헬기 정비 조기 완료(2월 이전)

- 정비소모품 사전확보와 야간 이동정비팀 및 이동정비차량 운영으로 신속한 정비실시
- 헬기의 효율적인 운용과 다양한 상황발생 대비책 마련
  ·산불진화 헬기는 일출과 동시 이륙 가능하도록 계류 및 승무원 출동 대기
  ·임무 종료 한 헬기는 철저한 예방점검으로 즉시 운항 가능상태 유지

o 산불 현장에 최초 출동한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기장은 공중상황 보고

- 산불 외각 지역을 가로×세로의 길이를 m단위로 개략 산출, 풍속계로 공중 풍향 및 풍속을 측정
- 화선 규모 및 풍속 등을 감안하여 진화에 필요한 헬기 대수 및 진화가능 시간을 추정하여 보고

※ 산림항공본부에서는 헬기조종사에게 산불상황·보고에 대한 교육철저(1월중)

o 항공 안전을 위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인적자원 역량강화

-「항공안전운항 정보시스템」운영으로 헬기 위치정보 실시간 공유
  ·운항관련 자료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제공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산불현장 지역으로 신속한 유도 및 주변 장애물 및 항공기 위치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모의비행훈련장치」등 조종사 비상대처 훈련으로 안전사고 대처 능력 강화
  ·악기상 대비 비상대처 훈련, 항공기 비상절차 훈련 강화
  ·해상생환훈련 실시로 항공기 담수 중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 효율적인 승무원 자원관리(CRM : Crew Resource Management) 및 불시 현장 점검 실시
  ·불시/수시 현장 안전점검(음주측정 등)을 통해 승무원 경각심 유지
  ·비행 전·후 브리핑 실시 및 최소 브리핑 시간 명시
  ·헬기 전진배치 지역, 야지 등 헬기 계류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헬기 조종실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으로 사전 안전저해요인 식별 및 제거
  ·Event(사건) 발생 시 또는 정기적 불시 분석을 통해 안전운항 제고

o 군부대, 지자체 등 산불진화 헬기 공조 투입 강화

- 대형산불 시 비상재난주파수 및 공중지휘기 운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사격장 및 군사시설 지역 산불은 물탱크를 장착한 군 헬기로 책임 진화
  ·우리 청에서 지원한 물탱크(7대)를 장착한 공군헬기(HH-32) 활용도 제고

5) 임차헬기·유관기관 지원헬기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o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임차, 군, 소방헬기의 공중지휘기 지휘통제 이행방안마련 및 헬기 공조체계 구축

- 지자체 임차헬기 등에「항공안전운항 정보시스템」공동 활용 촉진
- 공중지휘기 지휘·통제지시 이행 강화와 안전성 확보 체계 구축
  ·최초 헬기 현장 도착 시 산불현장 초기상황을 보고 기준에 따라 신속히 보고
  ·산불현장에 투입된 임차헬기 등은 공중지휘기로부터 진화구역 및 담수지 등을 지정받고 통제·지휘에 따른 산불진화 임무수행
  ·임차헬기 및 유관기관 승무원은 산불현장 진입,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 급유·계류·정비 등으로 현장 이탈 시 공중지휘기에 반드시 보고
  ※ 공중지휘기 지시에 불응한 산불진화헬기 관계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40조에 의거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익년도 예산 등 불이익 조치

o 산불진화 헬기(산림청, 지자체) 조종사 항공안전 교육실시(1월)

6) 산불상황실의 산불방지시스템 운영 활성화

o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산불현장 환경·진화대원 위치파악, 진화계획 수립에 활용

o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대형산불, 야간산불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산불에 대응

- 봄철 산불조심기간 2세트 운영, 가을철 산불조심기간까지 6세트 추가설치
- 영상전송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헬기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전송
  ※ 주요 상황보고처, 언론사 등에 실시간 제공으로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o 산불 종합상황실을 개편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

-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링시스템('10), 헬기안전운항시스템('11), 산불현장 동영상전송시스템('12) 등 다양한 정보체계의 통합 운영·관리

라. 추진일정

o 보고체계 구축 및 통합지휘본부장의 현장 직접 지휘 : 산불조심기간

o 기계화 진화시스템 활용 확대를 위한 지상진화 경연대회 : 지역(1~2월), 전국(11월)

o 기관별 전문화된 기계화진화대 편성 및 운영 : 산불조심기간

o 산림헬기 진화역량 극대화 및 안전관리 강화 : 산불조심기간

o 임차헬기·유관기관 지원헬기 효율적 활용체계 구축 : 산불조심기간

7. 산불방지 기반구축

목 표

◇ 다양한 산불방지 기반 구축으로 산불방지 역량 강화

가. 정책여건

o 산불방지업무를 국가 전담 체제에서 민간 참여 확대로 전환 필요

o 해외 산불감식기술 전수에서 벗어난 국내 감식기술의 개발 · 보급 필요

o 산불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부담에 상응한 보상체계 마련 절실

o 전 세계적 산불 대형화 추세에 따른 산불방지 국제협력 및 공조체제 구축 필요

나. 기본방향

o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 · 훈련 확대를 위한 법 · 제도적 기틀 마련

o 산불조사의 과학화 및 평가 기능 제고로 산불대응 피드백 기능 강화

o 산불담당자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 대책 마련

o 국제회의 개최·양자협력 확대 등 다양한 산불방지 국제협력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불방지 민간인력 교육대상 확대

o (교육대상) 공무원, 진화대 조장급 90명 ⇒ 전담·보조인력 46천명 확대
- 전담인력(23천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 보조인력(23천명) : 영림단, 국립공원, 유관기관(군), 읍·면·동사무소 공무원, 민간인

o (교육기관) 산림교육원 ⇒ 산림교육원, 민간기관

o (교육방식) 집합교육 ⇒ 강사 방문형 위탁교육

※ 교육방식(집합교육 ⇒ 강사방문교육) 변경으로 교육예산 절감 기대

2) 산불방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o 산불방지 민간인력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13년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 내용 : 교육·훈련 근거,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제도 마련 등

o 산림교육원 산불방지 민간 전문가 교육과정 개설
- 자격증 소지자, 학력, 경력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의 ‘산불방지지도사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민간전문가로 육성
  ※ ’13년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가 교육과정(2회) 개설하여 80명 교육

3) 산불전문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산불조사의 과학화

o 제2기 산불전문조사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내실화(200 → 100명)
- 산불발생시 신속히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 규명 주력
- 산불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산불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조사 완료)

o 방화성산불 등이 발생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여 방화성 산불의 근원적 차단
- 구 성 : 반장(관할 경찰서 과장·팀장), 반원(경찰, 산림공무원 합동)
- 임 무 : 방화·대형 산불발생시 전담수사
- 산림 관서별로 관할지역 경찰서「산불방화범 검거팀」에 협조요청

o 산불가해자 검거 시 적극 홍보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o 표준 산불감식보고 작성서식 보급 및 산불감식 보수 교육 추진
  ※ 2013년 2월초(2일간), 산불전문조사반 집합 보수교육 실시

o 해외 산불감식전문가 교육 실시(2주간 25명, 국내 및 캐나다)

o 한국형 산불감식 책자 제작 보급(원인별, 피해사례 구성 등 종합적 구성)

4) 산불대응의 평가·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대응 능력 향상

o 대형·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발생시 대응과정 평가분석
  ※ 산불발생 보고지연, 현장지휘 미흡사항 등에 적극적 개선 조치

o 복잡하고 상대평가인 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여 ’13 평가부터 반영
-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행안부 협의

o 산불통계의 과학화와 통계 품질 제고

- 산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확도 제고(정정보고 등 철저)
- 자원배치 등의 과학적 모델 개발을 위한 통계인자 조사(풍속, 피해유형)
- 산불통계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산불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서비스 강화

5) 산불업무 담당자에 대한 다양한 사기진작 대책 마련

o 산불비상근무자 휴일 근무수당 관련 지침개정에 따른 기관별 수당운영 철저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임을 감안하여 지침 개정

o 산불진화출동 등에 따른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o 산불방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o 해외정책연수 참여 기회의 균등 제공으로 산불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포상 수량 및 정책연수 프로그램의 순차적 확대 추진

6)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협력을 통한 산불방지 국제협력 강화

o 산불정책 및 조직발전전략 논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 기존 산불정책과 조직에 대한 점검 및 새로운 접근법 모색
- (일시 및 장소) 2013년 1월 15일(화)~17일(목), 서울 양재교육문화회관
- (참석자) 관련 국제기구(GFMC, FAO), 산불전문가(미국, 영국, 독일 등), 국내 관계관 등

o 2015년 제6차 세계산불총회의 단계적 준비를 통한 성공개최 기반 마련
- ILC 총회 개최(10월)를 통한 제6차 세계산불총회 의제 및 프로그램 개발
- 제6차 세계산불총회 개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선정 공모절차 추진

o 캐나다와 포괄적 산림협력을 위한 양자협력 추진
- 한국의 선진 IT 산불방지 기술과 캐나다의 산불방지 정책의 상호 협력

라. 추진일정

o 산불방지 전문인력 위탁교육 추진
- 산불방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 2013. 1월, 7월
- 산불방지 위탁교육 추진(봄철 : 2.1~6월말, 가을철 9.16~12월말)

o 산불방지 교육·훈련 법적근거 마련(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입안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13. 1월
- 법체처 검토 : 2013. 5월(국회제출 2013. 7월)

o 산불조사반 운영 내실화 및 조사기능 강화

- 제2기 산불전문조사반 구성 및 운영 : 2013. 1월
- 산불전문조사반 현장 보수교육 실시 : 2013. 2월
- 산불전문조사반 및 방화범 검거팀 운영 : 2013. 산불조심기간 중
- 산불조사반 전문교육 실시 : 2013. 9~10월

o 산불 유관기관 담당자 협력 강화 및 2013년도 유공자 포상 추천

- 전국 산불관계관회의 및 교육 실시 : 2013. 1~2월
- ’13년도 산불방지대책 유관기관 방문 설명 : 2013. 1월
- ’13년도 산불방지분야 유공자 포상 추진 : 2013. 5~11월

o 국제회의 개최 및 양자협력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산불정책 및 조직발전전략 논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2013. 1월
- 세계산불총회 준비를 위한 ILC 총회개최 및 양자협력 추진 : 2013. 10월

8.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의 현장 정착

목 표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방·대응 역량 제고
◇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활용성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현장 중심의 산사태 대응능력 및 전문성 강화

가. 정책여건

o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사태 발생 증가

o 생활권 지역에서 지속적인 산사태 피해 발생

o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대응역량 제고 필요

o 산사태대응팀 등 현장 대응 인력 부족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 적극 지정 및 집중관리

o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성 제고 및 현장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운영

o 현장 중심의 대응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산사태취약지역의 적극적 지정 및 집중관리

o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조사 및 지정 확대

-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및 지정 확대

  ※ 국방부,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한 조사 확대

- 전문가를 활용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조사 : 위탁사업

  ※ ’13년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실태조사 용역 : 20억원(1개소당 200천원 × 10천 개소)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사업 우선 실행으로 위험요인 차단

  ※「산림보호법」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의거 ’13년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행

o 우선순위에 의거 예방사업 후순위 개소는 우기 전·후 점검·관리 강화 및 지역주민과 사전소통 체계 구축

- 지역주민 대상 비상연락망 구축, 행동요령 및 대피체계 등에 대한 교육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인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 및 응급조치 등 관리

2) 산사태정보체계의 현장 활용성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o 현장중심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산사태정보시스템 개선

- 스마트폰을 활용한 현장 모니터링시스템(실시간 조사·확인) 시범도입
- 산사태 위험지도 제공을 위한 GIS(공간정보) 버전 업그레이드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및 지정결과 웹서비스

※ 추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한 의견 반영 및 구체화 예정

〈'12년 산사태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활용범위〉

'12년 고도화 내용	활 용 범 위
예측정보 전달체계 개편	· 산사태 및 재해업무 담당자 등 MMS 수신자 확대(10~20명)로 전달범위 확대
강우분석 고도화	· 동네예보 적용(714개소 관측자료)을 통한 읍·면·동 예측정보 제공·활용
판정표 개정을 통한 위험등급 재조정	·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준비단계 시 사전 도면조사용 참고자료(행정용)로 활용
토석류 위험 예측지도 제작보급	

3) 현장 중심의 대응 인력 확충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전담하여 운영할 공무원 조직인 "산사태대응팀" 구성

- 타업무와 병행으로 산사태 업무가 가중되고 업무 소홀이 반복되어 산사태 업무 전담 조직인 "산사태대응팀" 운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산사태대응팀의 설치)에 의거 운영

〈 산사태 대응팀 신설 사례 〉

•**서울시 산지방재과** : 1과 3팀 15명('12. 1. 1)

•**동부지방청 산사태대응팀** : 지방청 1팀 3명('12. 5. 16)

* 관리소 단위 직제 개정

o 공무원을 보조한 상시관리 체계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 운영기간 : 5월 15일 ~ 10월 15일(여름철재해대책기간)
- 운영규모 : 25개단(단장 포함 4명/1개단)

※ 광역시 15개단(6개광역시 2개단씩, 서울 3개단), 도(세종 포함) 10개단

-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하는 일

구 분	산사태현장예방단이 하는 일
집중호우 및 태풍 이전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점검 - 옹벽, 석축,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불법 훼손행위 감시 •산사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등
집중호우 및 태풍 빈발시기	•산사태취약지역 순찰 및 피해예방조치 - 배수로 정비, 물길 돌리기, 천막·비닐 피복 등 •산사태 예·경보 시 취약지역 내의 행락객 및 주민대피 안내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응급복구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조사 지원
피해발생시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차단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

o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및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산사태자원봉사단” 시범조직

- 현장 예방활동 및 신고 등의 활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사태자원봉사단” 시범 운영
- 시·군·구별 구성 유도 : 1,048명

※ 전국 시·군·구별 1개단 : 262개 시·군·구 × 1개단 4명

- 주요 활용 사항(현장 및 인터넷 활동)

·산사태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위험요소 제거 등 현장 점검·정비 활동

·산사태 위험요소 및 산사태 발생 징후시 신고활동

·현장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징후 감시 활동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의견교환, 정책건의, 여론형성 등

일본 “사방 자원봉사단”

o 구성계기 : ’95년 한신 대지진 발생 후 사방관계 기술자로 구성된 조직 결성

o ‘사방자원봉사단’의 정의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중 특히 토사재해로부터 지역 주민보호를 위해 사방에 관한 이해나 지식이 있는 사명감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총칭

o 운영현황 : ’10년 현재 67개 지역 협회, 5,142명 회원이 활동 중

o 활동내역 : (평상시) 사방시설 점검, 교육, 주민설명회 지원 등
(재해시) 위험지역 긴급점검, 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 등

4) 산사태방지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및 대국민 홍보

o 예방 · 대응 · 복구 실무교육을 통한 담당자 전문 역량강화

- 산림교육원 산사태방지 담당자 위탁교육

·산사태 담당자과정(2월)·산사태현장예방단(4월)·사방전문가과정(6월)

- 산사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실시(4, 6월)

·산사태 예방 · 대응 현장매뉴얼에 따른 대응 단계별 훈련실시

- 전국 산사태 예방 · 대응 체계 경진대회(5월)

·산사태 예방 · 대응 시나리오 우수사례 발굴 보급

- 산사태 방지 선진기관 정책연수 및 기술교류(4월)

·한 · 일 토사재해방지 회의 개최(일본측 개최)

·산사태방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선진국가 연수

o 워크숍 및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유관기관 산사태 방지정책 공유**

- 자연친화적 사방 및 복구사업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4월)

·기관별 우수사례 공유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계기로 활용

-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6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 산사태 예방 · 대응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36회 산사태방지 연찬회(12월)

o 산사태 예방 · 대응에 관한 홍보활동 추진으로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

- ‘산사태 바로알기’ 동영상, 등 홍보영상 · 음향물 제작 보급(2~6월)

- 산사태취약지역주민을 대상 ‘취약지주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보급(2~5월)

- 언론을 통한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4~9월)

·방법 : 방송, 일간지 기획홍보, 시기별 기도 등

·내용 : 산사태예방의 중요성과 사방시설의 기능·효과 입증 홍보

- ‘현장캠페인’을 통한 산사태 예방 · 대응 홍보(5~6월)

·산사태 리플렛 등 배부 및 주민센타 홍보물 비치 등

- 여름철재해대책기간 광고, 자막방송 추진(5~10월)

5) 산사태 예방·대응활동 평가제도 운영

o 평가지표(산사태 방지정책의 성과, 취약지역 지정·관리의 적극성, 사방시설 관리 등)에 따른 기관별 점수화하여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부여

〈산사태 예방·대응활동 평가제도 운영 계획 〉

□ 대상기관 : 시 · 도, 지방청
□ 평가기간 : 2013. 1. 1. ~ 10.31.(10개월간)
□ 관리과제 : 4개 과제
① 산사태 예방 · 대응역량 강화, ② 사방사업의 품질향상 ③ 수해복구 및 예산조기집행, ④ 산사태방지 정책의 성과
□ 결과활용
o 우수기관 선정 : 5개 기관(최우수 1×300만원, 우수 4×200만원)
o 인센티브 부여 : ’14년 성과예산 지원 등

라. 추진일정

o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담당자 위탁교육 : 2013. 2월

o 산사태 방지 홍보물 제작 : 2013. 2~5월

o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 2013. 3~9월

o 산사태 예방 연도별대책 수립 : 2013. 4월

o 산사태현장예방단 교육 : 2013. 4월

o 산사태 방지 선진기관 정책연수 및 기술교류 : 2013. 4월

o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실시 : 2013. 4월, 6월

o 언론을 통한 산사태예방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 : 2013. 4~9월

o 전국 산사태 예방 · 대응 체계 경진대회 : 2013. 5월

o ‘현장캠페인’을 통한 산사태 예방 · 대응 홍보 : 2013. 5~6월

o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 2013. 5~10월

o 여름철재해대책기간 광고, 자막방송 추진 : 2013. 5~10월

o 전국 산사태 관계관 회의 : 2013. 6월

o 산사태 예방·대응분야 자체평가 : 2013. 11월

o 산사태방지 연찬회 : 2013. 12월

9. 생활권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목 표

◇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확대 시행으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o 사업량

- 산지사방 222ha
- 계류보전사업 570km
- 사방댐 785개소
- 사방댐관리 447개소
- 해안방재림 40ha
- 해안침식지복구 11.5km
- 산림유역관리 5개소 등

o 사업비 : 351,852백만원(국고 269,178, 지방비 82,674)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심화 추세

o 사방시설의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부각

o 생활권지역 인명 ·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 확충 필요성 증대

o 토지소유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사방사업효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시점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

o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내실화

o 산사태 재해예방에 부합되는 설계 및 시공 추진

o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사업 현장 실무역량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추진

o 생활권 인명피해 방지가 필요한 산사태취약지역을 대상지로 최우선 선정

- 주거지역과 인접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 토석류(土石流) : 산지 또는 계곡에서 산사태로 붕괴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

o 사업대상지 선정 시 토지소유자 ·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 중 대상지가 변경되는 사례 미연 방지

- 동의서 징구시에는 발주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내용 명문화

※ 사방사업대상지 매수 · 교환 및 수용규정 신설 등 사방사업법 개정 추진 중

o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은 주계류(主溪流) 뿐만 아니라 소계류(小溪流)까지 확대하여 유역면적에 따라 사방시설을 다단계 형태로 계통적 조성

- 종전 주계류 위주로 시행하여 왔으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계류까지 확대

- 사방댐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형식 등을 다양화(일반형, 저수겸용, 소형 등)

· 일 반 형 : 저수기능이 없는 저사목적의 사방댐
· 저수겸용 : 저수기능을 겸한 비투과형 사방댐
· 소　　형 : 너비 30m 미만의 소규모 사방댐

※ 산불진화용 특수 저수겸용 사방댐을 조성할 경우 대상지 선정배경, 용도, 필요성 등에 대하여 산림청 사전검토를 받아 시행

o 우기전 사방사업 조기 · 견실시공을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개소별 대상지 선정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설계 · 시공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 실시(월1회 이상)

※ 우기전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산사태방지 및 사방사업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

중부지역(서울 · 경기 · 강원) 6.30까지, 중부 이남지역 6.15까지
* 미 완료지는 주간 추진계획 제출 등 문제사업으로 집중 관리계획

- 사업완료 개소는 우기 피해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사방사업 추진시기 : ('13 상반기) 사방사업 완료 → ('13 하반기) '14 타당성평가 · 설계 → ('14상반기) '14 사방사업 완료 順으로 추진

o 주요지역 ‘사방댐 원격관리시스템’ 시범 도입

-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댐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해위험정보 수집 및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시범 구축

※ 감시카메라 설치, 저사량 · 저수위 모니터링, 경고 안내방송 등

o 산지사방 대상지 중 현지여건에 따라 인명피해 및 피해재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은 사면보강공법(쏘일네일링 등)을 설계에 반영 검토

2) 해안방재림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

o 해안방재림 조성대상지 일제조사 및 기 조성지 사후관리

- 연구용역(’07, ’12)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답사를 통해 추진여건 등 조사 · 분석 후 신규조성 대상지로 선정

※ 해안선 길이에 따른 단순 산정 결과(3,336ha)를 기초로 정사항공사진 판독 및 현장조사 결과 신규조성 대상지는 250ha로 파악됨.

- 기 조성지에 대한 토양비옥도 증진(시비 · 객토),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방풍책 보수 등 사업이력 DB화 및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 기 조성면적 : 1,502ha(’06년 이전 1,479ha, ’06년 이후 23ha)

o 신규조성지 기능개선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방식 조정

3) 사방사업 대상지 타당성평가 내실화

o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방사업법에 따라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평가 추진

-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공작물의 종류별 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등

※ 사방사업법 제7조의3 및 제22조의2,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사방시설의 점검 등 위탁업무 처리지침’(’09.1.9) 등 참조

o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사업)

-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은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대상면적이 1ha 이상인 산지사방·해안방재림조성, 대상거리가 0.5km 이상인 계류보전 · 해안침식방지사업 등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은 타당성평가를 아니할 수 있으며, 대상기준 이하라도 전문적 검토 필요성이 있는 개소는 평가 추진)

o 산사태취약지역인데도 사업종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정구조물 시공 등의 대안제시

4) 산사태 재해예방에 부합되는 설계 및 시공 추진

o 산사태 재해저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및 강우강도 증가에 대비한 설계기준 강화

- 다만, 불요불급한 구조물 설계반영 등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감독자 · 감리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

o 사방시설은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가급적 친자연적 사방공법·자재 등을 활용하여 자연과 조화롭게 조성

- 친자연적 사방공법 개발 확대를 위한 연찬회(경진대회) 등 개최 추진

o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은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등에 따라 견실시공 추진

5)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o 사방시설 점검은 사방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안전조치 추진

- 안전조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방댐관리 및 사방사업비 집행 잔액 등 활용

o 노후화된 사방댐은 안전점검 · 보수조치는 물론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 · 하류 인근에 추가조성 추진

o 사방댐관리(종전 : 사방댐준설)는 생활권 등 필요한 지역을 준설하되 사방댐 유지관리 철저

- 사방댐 기능보강을 위한 보완시설 조성 및 안전시설·입간판 등 보수

o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사방댐 DB구축('12) 자료를 활용한 사방댐 사후관리 철저

- 지역별·연도별 사방댐 연혁, 보수이력 등 지속적 업데이트

6) 사방사업 현장 실무역량 강화

o 사방 전문교육장인 '사방기술원' 운영준비 철저(경북)

- 사방사업 실무, 공사감독, 산사태 대응요령 등 실무교육 위주 편성

※ 경북도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13.2.15까지)

- 사방기술원 개원 : '13. 2월중(예정)

o 권역별 사방사업 현장 자문 및 순회교육 실시

- 사방전문가(산림기술사, 사방협회 등)를 활용한 현장교육 등 실시

7) 기타사항

o ‘사방사업 시범지역’ 조성 추진
- 시 · 도, 지방청별 접근성이 양호한 1개 지역을 선정 사업종별(산지사방, 사방댐, 계류보전 등) · 공법 · 자재 등 다양화를 통해 홍보 · 교육의 장으로 활용
  ※ 제36회 산사태방지연찬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시상 계획

o 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등 현장 진입로 설치시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o 사방사업 계약체결시 공개경쟁비율 확대 시행(’13년 25% 이상)
- 산림토목사업분야 제도개선방안(’08. 4. 8) 참조

o 사방지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지정 · 해제사항에 대한 적기 행정절차 추진(토지정보시스템 등재 등)
- 10년 이상 경과지에 대한 적기 현지조사로 해제여부 검토 후 신속조치

o 개발제한구역 내 사방사업 시행 시 전용부담금 면제 조치(국토부 협의완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12.11.12)

라. 추진일정

o 사방사업 현장 순회교육 : 2013. 2~3월

o 해안방재림 대상지 일제조사 : 2013. 3~5월

o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추진 현장 점검 : 2013. 3월

o 사방사업 현장자문 및 지도 · 점검 : 2013. 3~6월(월1회)

o 사방사업 문제지역(우기전 미완료지) 집중 지도 · 점검 : 2013. 7월

o 사방사업 시행지 현장모니터링 : 2013. 7~10월

o ’14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및 설계 지도 · 점검 : 2013. 5~12월

10. 산사태의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실현

목 표

◇ 신속 · 정확한 산사태 원인 · 피해조사 및 항구 복구실현
◇ 산사태복구 사전설계심의를 통한 공법의 타당성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가. 정책여건

o 산사태 피해지 조사에서 복구설계까지 단계별 전문가 참여 미비

o 자연친화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산사태 복구공법 개발 보급 확대 필요

o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전문가적 분석·복구체계 확립 필요

나. 기본방향

o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13년 우기전 산사태 피해지 항구복구 실현

o 산사태복구 사전설계 · 심의로 공법적용 및 복구비 산출의 타당성 확보

o 우면산 산사태의 모니터링으로 사방기술 발전 방향 제시

다. 세부추진계획

1)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우기전 산사태 피해지 항구복구 실현

’12년 산사태 피해 491ha, 971억원(국비 485, 지방비 448, 자력 38)

o 산사태 복구공정을 상시 점검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매월 복구 진도 상황을 보고 받아 사업장별 복구공정 관리
  ※ 계약완료(1월말) → 공사착공(2월말) → 공사완료(5월중) → 공사준공(6월)

o 산사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현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산림 기술사·협회·학계 등 복구경력자로 구성
- 설계 타당성 및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피해지의 항구적인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 등

2) 산사태복구 사전설계 · 심의단 운영으로 공법의 타당성 및 복구사업의 투명성 확보

o 심의대상 : 산사태복구 설계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복구대상지

※ ’12년 심의대상지 : 43건/355억원(경남 34/298, 경북 8/80, 전북 1/7)

o 심의 방법 : 설계도서 납품 10일전 심의단의 심의

o 심의단 구성 및 역할

- 산사태복구 등 사방분야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구성
- 자체 심의단 구성(자체 심의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기관은 산림청에 추천 요청)
- 심의단의 역할

·설계도서의 현장 적용 및 공법의 타당성 여부 검토

·공법 적용에 따른 복구비 산출내역의 적절성 검토

·항구복구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자문

·도심지 산사태 복구지역의 도시사방 개념의 설계여부 심의

3)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한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컨설팅 추진

o 산사태 원인진단을 위한 “전문조사단” 운영

- 산림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
- 주요 피해발생지별로 권역화

o “전문조사단”의 역할

- 인명 및 대규모 피해 발생지 현황 · 원인조사 분석, 응급조치 · 복구방안 제시

※ 원인조사 및 복구컨설팅 흐름도

절차	기간	역할
산사태 발생	1일이내 현장 도착	현황 파악(추가 피해발생 여부 등)
↓		
현장 조사 및 원인분석	즉시	응급복구 방안제시 및 언론대응(조사단 홍보) - 상황 종료 시까지 현장 대기
↓		
조사 결과 제출	조사 후 2일 이내	조사결과 해당 지역 제공 및 산림청 제출 - 발생원인 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4)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모니터링 추진

o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지의 사방공학적 기능 및 효과 평가

o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지의 생태적 복원 가능성 평가

o 평가를 통한 사방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5) 산사태 분야 국가소송 수행

o 우면산 산사태 관련 국가소송 총 5건(손해배상 2건, 구상금 3건)

라. 추진일정

o 산사태 복구 설계용역 및 공사 계약 추진상황 점검 : 2013. 1월, 3월, 5월

o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모니터링 연구용역 추진 : 2013. 2월

o 산사태 복구지역 “현장자문단” 운영 : 2013. 2~5월

o 산림재해 복구단가 산정·시행 : 2013. 3~4월

o 산사태 원인 “전문조사단” 운영 : 2013. 5~11월

o 산사태 분야 국가소송 수행 : 2013. 연중

〈붙 임〉

2012년 산림분야 수해복구 사업계획

ㅁ 피해기간별 복구계획

(단위 : 백만원)

피해명	유형별	총계		지원복구				자체복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국비	지방비	물량	금액
합 계	총 계		97,075		93,308	48,465	44,843		3,766
	산사태(ha)	491.2	90,750	477.0	88,399	45,974	42,425	14.2	2,351
	계류보전(km)	6.6	2,279	5.4	1,231	616	615	1.3	1,048
	사방댐(식)	7	1,063	7	1,063	532	531		
	기타(건)	37	2,983	24	2,615	1,343	1,272	13	367
8.12~16 집중 호우	소 계		3,037		2,422	1,476	946		615
	산사태(ha)	22.94	2,815	17.67	2,200	1,365	835	5.27	615
	계류보전(km)	0.92	222	0.92	222	111	111		
8.25~30 태풍 “볼라벤, 덴빈”	소 계		4,366		4,040	2,056	1,984		326
	산사태(ha)	10.54	2,264	9.50	2,069	1,035	1,034	1.04	195
	기타(건)	28	2,102	18	1,971	1,021	950	10	131
9.15~17 태풍 “산바”	소 계		89,672		88,846	44,933	41,913		2,825
	산사태(ha)	457.7	85,671	449.81	84,130	43,574	40,556	7.89	1,541
	계류보전(km)	5.7	2,057	4.45	1,009	505	504	1.25	1,048
	사방댐(식)	7	1,063	7	1,063	532	531		
	기타(건)	9	881	6	644	322	322	3	236

ㅁ 기관별 복구계획

(단위 : 백만원)

피해기간	시·도	계	산사태 (ha)	계류보전 (km)	사방댐 (식)	기타 (건)
계	물량		491.18	6.62	7.00	
	금액	97,075	90,750	2,279	1,063	2,983
1차 집중호우 (8.12~16) 2차 태풍 '볼라벤, 덴빈' (8.25~30) 3차 태풍 '산바' (9.15~17)	소계		466.16	6.62	7	
		93,231	86,976	2,279	1,063	2,913
	인천		0.01			
		6	1			5
	울산		1.29	1.25		
		1,750	702	1,048		
	강원		1.49			
		212	212			
	충북		1.1			
		111	111			
	충남		10.11	0.92		
		1,413	1,155	222		36
	전북		13.16			
		1,399	13,99			
	전남		5.75			
		3,654	1,692			1,962
	경북		137.89	1.8	5	
		25,921	24,886	403	632	
	경남		295.36	2.65	2	
		58,736	56,818	606	431	881
	제주					
		29				29
	소계		25.02			
		3,844	3,774	0		70
	동부청		1.4			
		428	428			
	남부청		11.98			
		1,202	1,202			
	중부청		1.37			
		279	279			
	서부청		10.27			
		1,935	1,865			70

1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목 표

◇ **예찰 강화, 방제 확행, 사후관리를 통한 피해 최소화**

o 기상적 피해 고사목 등을 포함한 피해목 제거에 집중(37만본, 93억원)

o 서식처 제거(2,650ha, 60억원) 후, 예방 나무주사 실행(2,030ha, 44억원)

o 지상·항공방제(31,305ha, 20억원), 소나무 신고 고사목 제거(10만본, 16억원)

가. 정책여건

o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 전국 73개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나, 적극적인 노력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밀도를 낮추는데 성공(현재 50개 시·군·구에 발생)

- 감 염 목 : ('08) 103 → ('09) 42 → ('10) 16 → ('11) 8 →('12 예상) 11천본

o 가뭄·태풍 등 기상적 피해와 소나무림 노령화에 따른 생리적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재선충병 감염목 100% 색출 등 책임방제에 애로

o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 방제의지 부족으로 피해범위가 확대되고, 소나무류 인위적 이동에 따른 신규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음

- '12 신규발생 : 충남 보령시, 대구 동구, 경북 성주군, 경북 경산시(재발)

- 피해범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시·군·구 : 경남 거제·창녕, 경북 경주·포항시 등

나. 기본방향

o 주기적 예찰강화와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IT)를 통해 감염목 100% 색출

- 예찰모니터링제, 검경실명제 도입 및 특임관 확대로 예찰·검경체계 확립

o 방제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방제전략에 따라 피해외곽부터 압축방제 확행

- 단목 위주의 피해목 제거(훈증·파쇄) 사업 대폭 확대(14→37만본, 3회 반복)

o 매개충 서식처제거 후 나무주사 및 항공방제 병행으로 조기 책임방제 실현

- 피해지 주변 피압목 사전제거 후 나무주사로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피해지 주변 매개충 밀도조절을 위해 항공(지상)방제 제한적 실행

o 소나무류 이동 통제 철저 및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후관리 강화

다. 세부추진 계획

1) 주기적인 예찰강화와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IT)를 통한 감염목 100% 색출

o 주기적인 지상 · 항공 정밀예찰 실시 (시 · 군 · 구, 국유림관리소, 산환연)

- 지상정밀예찰 : 읍 · 면 · 동별 예찰책임제로 월1회 이상 정밀예찰(IT조사) 실시
- 항공정밀예찰 : 연2회 전국적으로 실시(상반기 3월~4월, 하반기 9월~10월)

o 소나무 고사목 전수조사 실시 (발생 및 연접 시 · 군 · 구, 국유림관리소)

- 조사시기 : 2013. 1~2월, 9~10월(상 · 하반기 2회)
- 조사방법 : IT조사(좌표취득) 및 FGIS에 등재하여 과학적 방제전략 수립
- 고사목 IT조사 사업비 신규 반영 : 15개 시·군, 7.2억원(50%:50%)

o 예찰 적정성 모니터링제 도입 (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 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원) : 매월 시 · 군 · 구별 소나무 고사목(감염목) IT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예찰의 적정성을 평가(예찰모니터링요원 70명)
- 국립산림과학원 : 매월 시 ·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IT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방제전략 수립(3 · 6 · 10 · 12월말 예찰의 적정성 평가 산림청에 보고)

구 분	인원	1인당 인건비(원)	예산(천원)	역 할
감염목 검사보조(’12년)	65명	54,050원/일	1,100,273	검경활동 보조
예찰모니터링(’13년)	70명	예찰방제단 수준	1,727,280	검경활동보조, 시군 예찰 적정성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 활동

o 시료채취 방법개선, 시료채취·검경 실명제 도입으로 검경의 정확성 확보

- 현장여건에 맞게 시료 채취방법 간소화(전동드릴, 입목상태에서 채취)
- 시료채취·검경실명제(대장관리 : Excel)로 책임의식과 오류사전 방지
- 기존 피해지와 5km 이상 떨어진 감염목 및 신규발생 지역은 연구기관의 최종 역학조사(발생원인, 피해목조사) 후 발생여부 최종판단

o 방제기술 전수 및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장 특임관 확대(7명)

- 전국 총괄 담당(1명, 연중) →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지역담당(6명 확대, 2~4월)

o 재선충병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및 방제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주기적인 광역권점검회의, 전문가 컨설팅 및 지역별 시책교육 강화

2) 압축방제와 피해 외곽지 임업적방제 병행으로 조기 책임방제 실현

o 지역여건에 맞는 50개 발생 시 · 군 · 구별 **맞춤형방제 전략 수립**

- 방제여건 5단계로 구분 : 피해목 발생 및 발생면적 기준(극심, 심, 중, 경, 경미)
- 방제전략 5단계로 구분 : 여건 및 전문성 · 의지에 따라 차등방제(1급 ~ 5급지)
- 시·군·구별 맞춤형 방제전략에 따라 ’13년 예산배분 및 ’14년 예산편성

o 압축방제 전략에 따라 단목 위주의 피해목제거 사업 집중(확대)

- 피해목 대상목 선정 및 피해목 제거 우선순위에 따라 정확한 방제 도모
- 피해목 제거사업을 반복실행(연3회)으로 방제효과 및 책임방제 실현
  · 1회 방제(전년 11월), 2회 방제(1～2월), 3회 방제(3～4월), 보완작업(5.15까지)
- 방제효과 거양을 위해 위탁사업은 지양하고 직영방제로 능동적 방제체계 구축
- 위탁 사업지는 100% 감리 실행 및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모니터링 확행

o 사전 매개충 서식처 제거사업을 통해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

- 재선충병 피해목(감염)을 100% 제거 후, 하층 피압목 등 매개충 산란처를 사전에 제거하는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방제 실행
- 사업시기를 매개충 우화가 끝나는 10～12월에 실행함으로써 숲가꾸기(육림)와 차별화하고, 산물은 부패촉진을 위해 1m내외로 잘라 낮게 깔아줌

※ 산림병해충 피해지 및 주변지역 소나무림을 숲가꾸기 예산을 활용하여 적극 관리
·서식처제거(반출금지구역 內) 및 재해저감사업(반출금지구역 外) 요령 준수

o 서식처 제거사업 후 예방나무주사 실시로 책임방제 도모

- 유적지, 사찰, 공원지역 등 주요지역과 우량 소나무림에 제한적으로 추진
- 보호수, 천연기념물 등 보호해야할 소나무 우량 독립수에 우선 실행

o 피해지 주변 매개충 밀도조절을 위해 지상·항공방제 제한적 실시

- 꿀벌피해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헬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 지역별 매개충 우화시기(북방수염하늘소 4～6월, 솔수염하늘소 5～7월)에 맞춰 2주 간격으로 3회 실시

o 재선충병 피해목 그루터기 처리 방법 개선(국정감사, 감사원 지적)

- 기존 : 그루터기를 대부분 훈증 처리
- 개선 : 그루터기를 지면높이(5cm이내) 낮게베기 후 수피제거 및 흙덮기

※ 긴급을 요하거나 급경사지 등 낮게베기가 곤란한 지역은 훈증 제한적 허용

- 효과 : 방제비용 절감 및 친환경적 방제 도모

3) 소나무류 이동통제 철저 및 모니터링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

o 소나무류 이동의 철저한 통제로 인위적인 확산저지에 최선 노력
- 봄 · 가을철 전국 일제「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37개, 209명)운영 내실화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소나무류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강화로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o 평가를 통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50개단, 1,000명)의 효율적 운영 도모
- 지자체 방제단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실운영 및 기술능력 부족으로 일부 시 · 군 운영 효율이 저조한 실정(2009년 처음도입)
- 방제단별 재선충병 예찰·방제 노력도, 기술교육 등 효율적 운영 자체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교육 및 평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재배치 및 예산배분에 활용

라. 추진일정

o 2012년 청정지역 지정선포 : 2013. 1월초

o 상반기 소나무 고사목 IT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 2013. 1～2월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1회 방제 집중 실행 : 2013. 1～2월

o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 방제 담당자, 방제단 교육실시 : 2013. 2월, 9월

o 예방나무주사 실행(발대식) : 2013. 2월, 12월

o 광역권 재선충병 방제대책 점검회의 개최 : 2013. 3월, 6월, 9월, 12월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2회 방제 집중 실행 : 2013. 3～4월

o 재선충병 피해목제거 사업 완료(춘기) : 2013. 4. 30일까지

o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종합 모니터링 실시 : 2013. 5월 15일까지

o 비가시권 재선충병 지상·항공정밀예찰(전국 단위) : 2013. 3월, 6월, 9월, 12월

o 예비 청정지역 신청 및 지정 : 2013. 6월

o 항공방제 및 지상방제 : 2013. 4~7월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종합 평가 : 2013. 7～8월

o 소나무류 이동 전국일제 특별단속 실시 : 2013. 3~4월, 10월

o 하반기 소나무 고사목 IT 전수조사 계획수립 및 실시 : 2013. 9～10월

o 하반기 서식처제거 사업 등 임업적 방제 추진 : 2013. 10~12월

o 2013년 청정지역 대상지 심사 : 2013. 12월

12.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안정화 유지

목 표

◇ **임업적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1만ha이하로 피해 안정화 유지에 주력**

o 사업량 : 임업적방제(재해저감)·나무주사 4,794ha, 해송림 종합방제 14개소

o 사업비 : 10,238백만원(국비 6,182, 지방비 4,056)

가. 정책여건

o 솔껍질깍지벌레는 지구온난화 영향 등으로 동·서해안을 따라 계속 북상
- 남방계 해충인 솔껍질깍지벌레는 기후변화로 인해 분포지역 확산

o ’07년까지 확산되었으나, ’08년부터 적극적인 방제로 연평균 16%가 감소
- 발생 추이(ha) : (’07) 47,207 →(’09) 32,497 → (’10) 21,855 → (’11) 12,524 → (’12) 8,945

※ ’12년 발생면적은 ’07년 대비 81% 감소

o 농·어촌 생활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안가 우량 해송림이 관리소홀, 태풍 등 기상피해와 인위적 피해 등으로 쇠퇴하는 실정
- 해안방재림 1,229개소(1,479ha), 개장 해수욕장 주변 해송림 351개소

나. 기본 방향

o 선단지역은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을 통해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

o 피해도 “중” 이상 지역 및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은 임업적 방제 후 나무주사 실시

o 동·서해안 선단지에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활동 및 임업적 방제를 집중

o 해안가 우량 해송림 보전을 위한 종합방제 확대 추진

o 피해 병징이 뚜렷한 5월중 전국 실태조사 및 리·동별 특별관리체계 구축

다. 세부추진 계획

1) 강도의 솎아베기 중심의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을 통해 해송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

o 발생 선단지, 국립공원 등 주요지역부터 임업적방제(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깍지벌레의 밀도저하 및 서식처를 사전에 제거
- 소나무(해송)림의 생태적 건강성 유지와 깍지벌레 북상(확산) 차단
- 국립공원 지역은 사전 지역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 추진(공문으로 협의)

o 재해저감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산주에게는 산물수집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지급
- 대상지선정 등 실행방법은 "소나무림재해저감사업 매뉴얼"에 따름

2) 나무주사는 사전에 임업적 방제 실행, 방제시기 확대 등으로 방제 효과 및 효율성 제고

o 사전에 임업적 방제(재해저감사업 등)를 실행하여 적정 본수를 남긴 후에 나무주사 실행

o "나무주사"는 주요지역 등 우량 소나무림에 적기방제를 통해 방제효과 제고
- 실행시기 확대 : 6~7월(정착약충기), 11~12월(후약충기)

3)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 종합방제" 사업 확대 추진

o 농·어촌 생활권 경관보전, 재해방지 등에 핵심 지역인 해안가 우량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확대 추진('11년 5 → '12년 11 → '13년 14개소)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대상지 선정·기본설계 완료 개소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사업 반영
- 주민설명회 등을 사전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요구를 사업에 반영하고, 국립공원 지역(변산, 한려해상 등)은 공원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실행
- 토양개량, 가지치기, 솎아베기, 나무주사, 인위적 피해 방지, 비료주기 등 현지 여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방제 추진(실시설계 반영)

o 2014년 우량소나무림 종합방제 대상지역은 사전 심의하여 대상지 확정
- 시·도, 지방청에서 2013년 대상지를 기본설계 후, 산림청에 신청(9월말)
- 현장 확인 등 사전심의를 통하여 대상지 확정(10월까지)

4) 리·동별(권역별) 발생 및 방제계획 등 특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 전략 마련

o 동해안 선단지(경북 경주 · 포항) 솔껍질깍지벌레 특별방제대책 수립
- 국립산림과학원 · 경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동조사를 통해 동해안 선단지 특별방제대책 수립(기본계획수립)
- 강도의 솎아베기 위주의 임업적 방제(9~10월), 나무주사 등 종합방제 실행

o 2012년 5월 조사·작성한 리·동별 발생조서에 2013년 임업적 방제, 나무주사 등 방제실적 이력관리 지속 추진
- 2013년 솔껍질깍지벌레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리·동별(권역별) 깍지벌레 발생·방제·효과 모니터링 체계구축

o 임분 특성을 고려한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특성, 피해유형 등에 따른 방제 전략 마련
- 피해선단형, 피해초기형, 피해극심형, 피해회복형 등으로 구분·방제

라. 추진 일정

o 시·구·군의 리·동별(권역별) 방제계획 수립 : 2013. 1월

o 소나무림재해저감 대상지선정·실시설계·계약 추진 : 2013. 2월

o 동해안 선단지 특별대책 수립 : 2013. 2월

o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추진 : 2013. 6~11월 집중

o 2013 솔껍질깍지벌레 발생 실태조사 : 2013. 5월

o 2014 해안가 종합방제 대상지 선정 및 기본설계 추진 : 2013. 8~9월

o 나무주사 대상지 사전 임업적 방제 실행 : 2013. 9~11월

o 나무주사 실행 : 2013. 6~7월, 11~12월

13. 솔잎혹파리 피해 안정화

목 표

◇ 임업적방제와 나무주사를 적절히 실행하여 솔잎혹파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 내실화

o 사업량 : 11,864ha(사유림 9,594, 국유림 2,270)

o 사업비 : 12,785백만원(국비 8,519, 지방비 4,266)

가. 정책여건

o 지속적인 솔잎혹파리 방제 작업 실행으로 피해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방제 예산이 축소되고 있어 피해 발생 안정화 노력이 필요함

- 발생면적(천ha) : ('04) 73 → ('06) 196 → ('08) 183 →('11) 82 → ('12) 68

나. 추진방향

o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체계 강화 및 책임방제 실시

o 소나무 숲의 건강성을 높이는 재해저감사업 지속 추진

o 적기에 나무주사를 실행하고 고독성 약제 방제 축소, 안전관리 강화

o 나무주사 실행지의 표준지 조사를 세밀화하여 정밀한 사업 실행

다. 세부추진계획

1) 솔잎혹파리 발생지역 특별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방제 실시

o 발생지역 특별관리를 위해 리·동별 방제계획(목록)을 작성하여 발생상황, 발생임지의 평균경급, ha당 본수 등에 대한 세부이력을 지속적 종합관리

- 신규발생 및 확산지는 목록에 추가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o 시·도 차원에서 리·동별 발생면적이 50ha이상 되는 지역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찰 및 책임방제 실시

2) 숲의 활력을 높이는 재해저감사업 지속 추진

o 2012년 솔잎혹파리 발생지역에 대해 강도의 솎아베기 실시
  - 강도의 솎아베기를 실시하고, 형식적인 고사목·피해목·피압목·생장불량목·형질불량목·소경목의 일부만 제거하는 것은 지양

o 나무좀 등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방제한 산물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

3) 적정한 시기에 나무주사를 실행하고 안전관리 강화

o 지역별 우화상을 설치하여 우화최성기에 나무주사 실시
  - 우화최성기는 평균 5월 하순~6월 하순이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우화 최초일이 가장 중요(우화 최초일로부터 2주 후가 방제 최적기)

o 임업적방제 실행으로 적정밀도가 유지된 임지에 한하여 나무주사 실행

o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농림수산식품부 기준에 맞는 안전복 등 반드시 착용, 안전교육 실시

4) 나무주사 표준지의 세밀한 작성 및 관리

o 나무주사 설계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조사를 세밀하게 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나무주사 방제 기술 향상과 신뢰성 확보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2. 12월

o 방제용 농약 조달을 위한 단가계약 체결 요청 : 2012. 12월

o 솔잎혹파리 담당공무원 실무(안전관리) 교육 : 2013. 5월

o 밀도유지를 위한 재해저감사업 실행 : 2013. 1~12월

o 2013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실행 : 2013. 6~7월

o 솔잎혹파리 발생 및 효과조사 : 2013. 8~9월

14. 참나무시들음병 확산 저지

목 표

◇ 피해구역이 확산된 참나무시들음병을 다양한 방법의 복합 방제를 추진하여 확산 저지

o 사업량 : 365,680본(끈끈이 199,300, 피해목제거 115,210, 모두베기 51,170)

o 사업비 : 6,983백만원(국비 4,295, 지방비 2,688)

가. 정책여건

o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시·군·구의 수는 늘어났으나,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목 본수는 다소 줄어든 상태임.

- 발생지(시·군·구) : ('09) 72 → ('10) 70 → ('11) 82 → ('12) 91개소
- 피해목(천본) : ('09) 221 → ('10) 181 → ('11) 331 → ('12) 268(19%↓)

나. 기본방향

o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리· 동 단위 특별관리 체계 고도화

o 매개충의 생활사 및 현지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합 방제 방법 적용

o 중점관리구역의 방제를 강화하고 GPS를 활용하여 피해구역 체계적 관리

o 경관 및 자연 생태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리·동 단위 특별관리체계 정착

o 병해충 발생에서 계획수립, 방제 완료,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세부이력을 종합관리하고 체계화

o 피해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은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방제 실시

2) 매개충의 생활사에 따른 맞춤형 복합방제 실시

o 매개충 잠복시기(11월~이듬해 4월)

-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소구역선택베기를 우선 적용하고, 반출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은 신속히 벌채 처리

o 매개충 우화시기(5～10월)

- 매개충의 밀도를 낮추기 위한 끈끈이롤트랩, 고사목 벌채·훈증, 유인목 설치, 전기충격법 등 친환경 방제 방법으로 추진

※ 새로운 방제 방법 적용(대량 포획 장치법, 약제 줄기 분사법)

3) 중점관리지역 방제 강화 및 GPS를 활용한 피해구역 관리

o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은 집중방제하고, 기타 지역은 벌채·이용 강화

o 참나무시들음병 피해구역을 GPS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그 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략적 관리

4) 국립공원, 보전림 등 중요한 보호지역을 우선적 방제

o 국립공원 지역 피해지 합동 방제 지속 추진

o 국 · 사유림 구분 없이 유관기관 협력 방제로 권역 완결 방제

5) 산림경관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 방제

o 경관이 중요시되는 지역은 기존의 노란색 끈끈이롤트랩 대신 갈색 사용

- 사찰, 고궁, 주요 숲길 등의 피해지에 선택적으로 방제

o 야생 조류 및 익충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은 안쪽면 점착성 롤트랩 설치

라. 추진일정

o 2013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2. 12월

o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담당자 실무교육 : 2013. 3월

o 2013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복합방제 추진 : 2013. 1～12월

o 수도권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대책회의 : 2013. 4월, 8월, 10월

o 2013년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조사 : 2013. 7～9월

o 2012년도 벌채·훈증목 처리상황 조사 : 2013. 10월

15. 기타(돌발·외래 등) 산림병해충 적기 대응

목 표

◇ 돌발·외래병해충 등 일반병해충에 대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o 사업량 : 31,273ha(사유림 30,942, 국유림 331ha)

o 사업비 : 5,597백만원(국비 3,048, 지방비 2,549)

가. 정책여건

o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신종 산림병해충이 발생되고 있으며, 기존에 피해를 많이 주었던 솔나방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 갈색날개매미충, 낙엽송왕소나무좀 등 새로운 해충 출현

나. 추진방향

o 예찰조사를 강화하여 조기발견·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o 돌발 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확산 저지

o 지역별 방제여건에 따라 방제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

o 타 부처와 연관된 병해충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 대처

다. 세부추진계획

1) 돌발·외래·일반병해충의 적기방제

o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 돌발해충의 예찰조사 철저

o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경관을 저해하는 해충은 정확한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발생초기 적극 방제하여 피해 최소화

o 돌발·외래병해충은 발생 즉시 전면적 방제로 피해 초동 차단

2) 확산되고 있는 솔나방 방제 철저

o 방제 실행 전에 피해 발생지역 담당자에 대한 예찰 및 방제교육 실시

o 솔나방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지 예찰활동 강화
- 월동한 유충이 피해를 주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방제
-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및 낙엽송도 포함하여 예찰

3) 꽃매미, (가칭)갈색날개매미충 등 방제 강화

o 근원적 방제가 가능한 동절기 기주나무의 알 덩어리 제거작업 집중 실시
- 농작물 재배지역 및 주변 산림 등에 지역공동방제 추진

o 성충 시기는 공원, 가로수, 주택 주변 등 생활권지역의 산림방제

4) 항구주변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집중 방제

o 북미지역으로 출항하는 우리 선박의 피해가 없도록 예찰조사 철저
※ 부산, 인천, 울산, 평택, 동해, 옥계, 군산, 목포, 광양, 여수, 포항(11개항)

o 항만주변(1km이내)의 녹지대 및 산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 실시

5) SNS를 활용한 산림병해충 담당자 소통 강화

o 현지에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즉시 SNS의 담당자 공간에 사진으로 전송하여 확인하고 병명, 해충명 등을 공유함으로 신속한 인지 및 적기 방제

라. 추진일정

o 산림병해충방제 세부지침 시달 : 2012. 12월

o 솔나방 방제담당자 실무교육 : 2013. 4월

o 꽃매미 발생억제를 위한 알집 제거작업 실시 : 2012. 12~2013. 4월

o 아시아매미나방(AGM) 유충발생기 집중관리 : 2013. 5~6월

o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2013. 6~8월

o ’14년 산림병해충 방제 약종선정 회의개최 : 2013. 11월

16. 생활권 수목진료 추진

목 표

◇ 생활권 수목의 병해충 관리강화 및 전문적 수목진료체계 구축
- o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 4,052건, 446백만원
- o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 15개소, 685백만원

가. 정책여건

o 도시 생활권에서의 전문가에 의한 수목방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시행 초기로 일부 혼선이 있으며, 사업 정착에는 일정기간 필요

o 수목진료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산업의 급성장이 예상되나, 이에 따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부족하여 전문 인력양성이 어려움

나. 기본방향

o 생활권 수목진단 및 진료를 통한 건전한 수목관리

o 민간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o 수목진료 전문조직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o 수목진료 발전을 위한 산 · 학 · 관 · 연 협의체 구축·운영

다. 세부추진계획

1)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운영

o 민간컨설팅은 민간(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단·치료 체계구축

o 아파트 녹지, 학교숲, 도시숲, 도시공원, 사회 · 복지 · 청소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를 대상으로 민간 컨설팅 실시

- 민간컨설팅 : 4,052건, 892백만원(국비 446, 지방비 446), 건당 220천원

※ ('12) 3,708건, 742백만원(국비 371, 지방비 371), 건당 200천원

o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고,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업체 및 기관 : 나무병원, 산림조합,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나무병원 등 민간업체 : 컨설팅을 실시하고 처방전 발급
-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분석 실시

※ 민간컨설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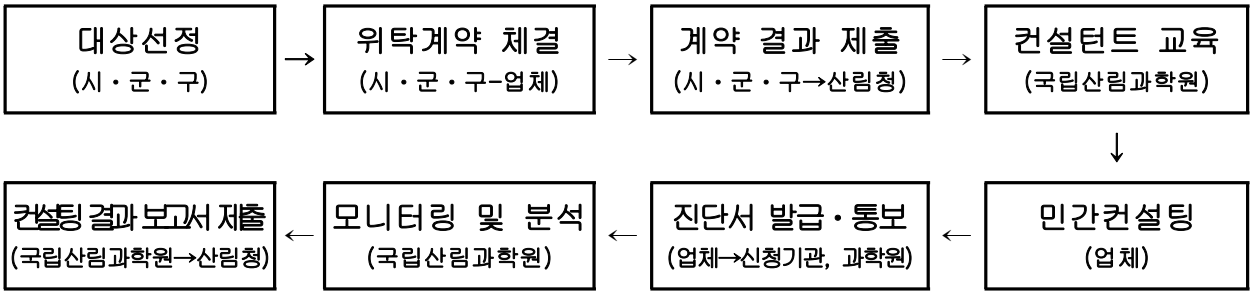

2) 국·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

o 생활권 수목진료의술 발전촉진 및 지역별 특성화된 수목진료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 보급 등 수목진료체계를 구축

o 국립나무병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수목진단센터는 관련 대학을 지정·운영하며, 공립나무병원은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운영(15개소, 국고 685, 지방비 225)

- 국립나무병원 : (’12) 1개소, 100백만원 → (’13) 1개소, 120백만원
- 수목진단센터 : (’12) 3개소, 75백만원 → (’13) 5개소, 340백만원

  ※ 계속 : 3개소 240백만원(개소당 80), 신규 : 2개소 100백만원(개소당 50)
- 공립나무병원 : (’12) 9개소, 450백만원(국고 225, 지방비 225) → (’13) 전년 동

  ※ 개소당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25)

o 생활권 수목진료 관련 실연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자 교육, 병충해 진단·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홍보 및 제도정착 유도

- 시범사업, 실태조사 등 실연연구 사업을 1과제 이상 수행
- 민원발생 병해충 진단 및 분석, 방제관계자 · 수목관리자 교육
- 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물 제작 · 배포
- 수목진료체계 구축 및 수목진료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o 수목진료의 품질은 높이기 위해 민간나무병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고,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는 운영결과에 대해 평가실시

- 민간 나무병원 운영자 교육 : 4월
-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11월말까지

※ 수목진료 관련 단체별 역할·업무

구 분	연구실연과제	주된 역할	세부 업무
국립나무병원 (산림과학원)	방제농약 직권등록	생활권 민간컨설팅 모니터링 등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운영 총괄	◦생활권 병해충 컨설팅 모니터링, 컨설턴트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공립나무병원 운영 총괄, 보고서 작성
수목진단센터 (관련대학)	실태조사 등 기초과제 수행	방제관계자 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 수목진료 및 수목의술의 조사연구	◦학술회의, 강연회, 강습회 등 개최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개발
공립나무병원 (산림환경연구소)	시범사업 등 현안과제 수행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 · 분석 공공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민원발생 병해충 조사 · 진단 ◦수목진료 관련 홍보물 보급
나무병원 (사업법인)	-	민간부분 수목진료 및 홍보 (생활권 민간컨설팅)	◦아파트 녹지 등의 수목진단서비스 제공 ◦전문적 수목진료 필요성 등 홍보

3)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o 산림교육원에 개설된 수목보호기술 전문가과정 운영(5회, 150명) 및 국가공인 수목보호기술자 지속 양성(3회)

o 대학 등과 수목진료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계교육 추진

- 대학, 단체 등 산·학·연과 연계한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실시

4) 제도개선 및 수목진료 발전 협의체 운영 등 발전방안 모색

o 수목진료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나무의사” 국가전문자격 등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

o 수목진료발전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발전방안 모색

- 구성 : 업계, 학계, 지자체, 산림청, 연구기관, 협회 등

o 체계적 수목진료를 위한 표준품셈 및 매뉴얼 개발

라. 추진일정

o 수목진료 법제화 추진 : 2013. 1~12월

o 수목진료 표준품셈 개발 : 2013. 2~11월

o 수목진료 매뉴얼 개발 : 2013. 2~11월

o 민간컨설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선정 : 2013. 2월(시·군·구)

o 민간컨설팅 위탁용역 계약체결 및 계약결과 제출 : 2013. 3월(시·도)

o 민간컨설팅 컨설턴트 교육 : 2013. 4월

o 수목진료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2013. 3월, 6월, 9월, 12월

o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분석결과 보고서 제출 : 2013. 11월(국립산림과학원)

o 공립나무병원 및 수목진단센터 운영결과 평가 : 2013. 11월

17. 산림복원

목 표

◇ **백두대간 등 주요 산림지역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o 사업량

- 산림생태복원 64ha(설계 3개소)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 1개소
- 대규모 산림복원 실시설계 1개소(포항)

o 사업비 : 7,556백만원(국비 6,485, 지방비 1,071)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가중

o 자연재해 및 인위적 간섭 증가 등 산림에 대한 위협 요인 증가

o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적으로 산림 황폐화 방지 및 복원 강화 추세

나. 기본방향

o 산림생태복원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 추진기반을 강화

-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정맥, 도서지역 등 복원 영역 확대
- 산림생태복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침 등 법·제도 등 정비 추진

o 산림생태복원 기술 개발·확산 및 환류 시스템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유형별 복원 기술·친환경 소재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생태복원 영역 확대 및 추진기반 강화

o 산림생태복원사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유형 다양화

-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정맥, 도서, 군사지역(폐군사시설)까지 포함
- 장기간 방치로 황폐화되어 단년도 완료가 어려운 훼손지에 대하여 연차별 복원 추진(1년차 설계, 2~3년차 시공)

※ ('13 설계) 포항 사방기념공원 주변 산불피해지 외 3개소

o 산림생태복원 분야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 훼손지 유형별 복원 기술 및 친환경적 복원 소재·수종 개발
-「훼손지 생태복원 기술개발사업(’12～’18)」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 산림교육원 등 교육과정에 산림복원 분야 편성

o 백두대간 단절지역 복원·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 단절된 마루금 실태점검 및 복원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 백두대간의 생태축을 단절하는 도로에 대한 복원방안 마련
※ 도로이용 형태별(예 : 사용/기능축소/미사용)로 복원 추진방안 다각화

o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개념,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업무처리지침 개정

2) 보전가치가 높은 백두대간, DMZ 일원 등 주요산림 복원

o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정맥지역까지 복원 확대
- 예상 피해도,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낙동정맥, 3ha)
- 외래종의 퇴치·제거 및 자생종 복원사업 추진(2ha)

o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지역 산림생태계 복원
- 울릉도 내 훼손된 주요 경관지역을 자생수종 위주로 복원(2ha)
- 장기간 방치되어 재해 우려가 높은 진도 가사도 폐광산 복원(’13 설계)
- 독도 산림생태계복원으로 황폐화 방지 및 국토 영유권 강화
·독도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고유생육 수종 증식·복원(’11~’14, 10억원)
·’13년은 사철, 보리밥, 섬괴불나무 등 복원수종 식재 및 보호공 설치

o DMZ 일원 산사태 발생지, 폐군사시설 등에 대한 생태적 복원
- 전술도로 주변 산사태 등 훼손지는 2차 피해 발생 저감에 중점
-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군사시설은 지형 및 식생복원 동시 추진
- DMZ 일원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육군본부와 협력 체계 유지

3) 산림생태복원 기술 확산 및 환류시스템으로 성과 제고

o 산림생태복원 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3월) 및 관련 세미나 확대 추진
- 한국산지보전협회와의 간담회 정례화
-「훼손지 생태복원 기술개발」국제 심포지엄 개최(11월)

o 산림생태복원 대회 추진(5~10월)으로 경쟁을 통한 우수 생태복원 사례 발굴 및 복원기술 확산

o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원칙 정립
  - 장기적으로 복원사업지에 대한 DB 구축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라. 추진일정

o 산림복원 워크숍 : 2013. 3월

o 백두대간 단절지역 조사 및 중장기 대책 수립 : 2013. 6월

o 산림복원 모니터링 원칙 수립 : 2013. 9월

o 산림생태복원 대회 추진 : 2013. 10월

o 산림복원업무처리지침 개정 : 2013. 11월

o 훼손지 생태복원 기술개발 국제 심포지엄 : 2013. 11월

18. 백두대간 보호·관리체계 강화

목 표

◇ **백두대간 보호지역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지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한 보호·관리 강화**

o 총사업비 2,267백만원(국비)

가. 정책여건

o 기후변화 및 인위적인 훼손으로 산림생태계 핵심축인 백두대간지역의 산림자원, 희귀 동·식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

o 백두대간과 연계된 정맥의 보전과 이용에 대한 새로운 산지관리체계 요구

o 백두대간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국민의 정서적 요구도가 증가하는 추세

나. 기본방향

o 백두대간 기본계획에 부합하며, 시대에 부응하는 백두대간보호사업 추진

o 백두대간자원변화·정맥실태조사를 통해 산림생태계 유지·증진 기반구축

o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보호지역' 지정확대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o 적극적인 백두대간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확충 및 교육·홍보 강화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 자원실태조사 및 보호 · 관리 강화

o 속리산권역(봉화~문경)자원변화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식생군집·식물상 변화상, 동물상 변화 등 변화상 모니터링 추진
- 백두대간 마루금 등 이용실태분석 및 조사 추진
  ·훼손실태, 등산로 이용실태, 권역별 브랜드 선정 등
- 산림문화·경관 등을 이용한 소득창출 방안 마련
  ·산림문화 및 테마가 있는 백두대간 마을 조사
- 소득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보전관리방안 및 ' 14년 조사 계획구간(덕유산 권역) 조사방향 마련

o DMZ · 민북 일원 및 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사유매수지 추가지정 추진

※ 고성·인제군 일원(지적 복구 국유지) 및 백두대간 연접 매수 사유지 1,338ha

o DMZ, 백두산 등 백두대간 이북지역의 현황 파악

-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 DMZ,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위성사진을 확보하여 통일대비 보전기반 마련

o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

- 등재 추진시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
- 진정성, 완결성, 뛰어난 보편적 가치 분석 및 잠정목록 등재
- 백두대간 세계유산 본 신청서 제출안 마련(’16년까지)

※ 잠정목록 자료 작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본신청서 준비, 유산비교 자료 등 작성

〈세계유산 등재절차〉
잠정목록 등재 → 본 신청서 제출 → 자문기구 현지실사 및 평가 → 세계유산 위원회 결정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및 운영

- 경남 거창, 전남 구례 실시설계 실시(’13)
- 전북 남원 생태교육장(생태 · 문화공원) 시설공사 추진

·주요시설 : 생태체험실, 영상정보실, 역사실, 산림이용관, 야외체험장 등

·사 업 비 : 400억원(국고 200, 지방비 200)

- 생태교육장 운영 3개소(충북 괴산, 경북 상주, 강원 양양)

·권역별 특색 있고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탐방객, 교육생 등의 이용객 이력관리 철저로 운영 활성화 추진

- 생태교육장을 백두대간트레일 숲길안내센터 기능과 연계

·백두대간트레일 지정·고시시 국가 트레일과 연계되는 생태교육장을 숲길안내센터 기능을 하도록 추진

2) 남한지역 정맥 실태조사

o 한남·금남정맥(안성~김포, 무주~부여)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 백두대간 중심의 보전 · 관리정책을 정맥까지 확대목적으로 보전 · 관리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자연환경 및 식생, 식물상, 동물상 조사

·훼손실태 조사 및 보전 · 관리방안 모색

·백두대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조사 · 분석

o 남한지역 정맥 구간 설정 및 정맥가이드 라인 마련

- 정맥지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여 건전한 국토보전을 위해 정맥의 마루금 위치 설정 및 거리 구명
- 정맥 지역에 대한 관리기준(안)마련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3)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 체계 구축

o 지방청, 지자체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백두대간 사랑 운동 전개

o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 협의 사전검토 강화

- 허가 시 사전검토 강화로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산림훼손 최소화

o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 보완 및 수정 추진

- 국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보완 추진

o 2013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13년 백두대간보호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보호시행계획 수립

※ 4개 중앙부처, 5개 지방청(17개 국유림관소), 6개도(32개 시 · 군)

o 2012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1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14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보호·관리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자연생태계조사, 훼손지 복원,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등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국립공원탐방안내소, 전통문화자원 발굴·보전·복원 등

·백두대간 보전관리강화, 개발행위 제한 및 관리강화, 사유토지 매수 추진 등

·국민참여 및 교육·홍보 활성화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남북협력 확대

라. 추진일정

o '13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수립 : 2013. 1월

o '12년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2013. 1~5월

o 백두대간 자원실태변화조사 및 정맥 자원실태조사 : 2013. 1∼12월

o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추진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 : 2013. 1∼12월

o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 관련 간담회 추진 : 2013. 3월

o 백두대간 보호·관리 세미나 개최 : 2013. 5월

o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및 운영상황 보고 : 2013. 12월

o 백두대간 리플릿 제작 등 백두대간 홍보 : 2013. 3∼11월

o 백두대간 보호지역 확대 지정·고시 : 2013. 12월

o 백두대간 사랑운동 전개 : 년 1회 이상

19.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체제 강화

목 표

◇ 백두대간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해서 지역주민을 보호 주체로 육성

o 32개 시·군 : 6,002백만원(국비 4,222, 지방비 1,780)

가. 정책여건

o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된 소득창출 요구 증가

o 백두대간은 청정지역으로 관심이 부각되어 도시민에 의한 농·임산물 및 휴양 수요가 증가

나. 기본방향

o 지역별 고부가가치 특산임산물을 선정·육성

o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주체로 육성

o 백두대간지역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감소분 지원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

o 백두대간보호지역내 32개 시·군(108개 읍·면·동) 주민소득증대 특화사업 지원
-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

o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인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가공시설 등

※ 지원제외대상 : 마을회관·찜질방·휴게소·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트

랙터, 지게차 등 고가장비 등 경상적 경비, 종묘비(종자, 접·삽수, 묘목 포함) 표고자목 구입비 등 부대경비, 부지 구입비 등

o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

- 지역(마을)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백두대간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 등 지자체에서 집중 육성 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

o 백두대간에 포함된 마을의 공동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등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우선순위 준수

※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우선순위

①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 · 면 · 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순으로 선정 ③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 · 면 · 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주민 순으로 선정 ④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 · 면 · 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o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반정착을 위한 관리체제를 강화하여 도별 사업비 인센티브 부여

- 지원사업의 효과 제고 및 기반정착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2)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o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위하여 벌기령이 지난 산림을 대상으로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게 소득감소분 지원

- 산림소유자가 입목을 벌채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 상당액의 1년 이자액을 벌채하기 전까지 매년 지원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2005.9.9)당시 공익용산지, 입목벌채 제한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추진일정

o 백두대간 소득 특화사업 지원

- 시·군별 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사업 선정·확정 : 2013. 1~3월
- 기 지원사업지에 대한 지도·점검 : 2013. 10월
-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지자체 → 산림청) : 2013. 12~2014. 2월

o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 평균입목가액과 예금금리 확정 통보(산림청→지자체) : 2013. 3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시·군) : 2013. 12월

2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목 표

◇ 백두대간 생태계의 보전·관리와 산림생물자원화로 지역 및 국토의 균형성장 도모

◇ Seed Vault 등 차별성 있는 아시아 최고의 고산수목원 조성

가. 정책여건

o 주 시공사인 (주)벽산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사기간 지연, 하도급 및 협력업체 이탈 등 정상적인 공사 진행에 장애 예상

o 새 정부 출범으로 2014년 백두대간수목원 개원에 앞서 조직, 예산 확보 등 부처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o 산림청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NGO, 언론 등 부정적 시각 노출

나. 기본방향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완공을 위한 3년차 공사 차질 없이 추진

o 2014년 개원에 필요한 조직, 예산, 시설, 운영프로그램 등 사전 준비

o 공사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발주, 감독, 시공, 하도급)

다. 세부추진계획

1) 사업개요

o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옥석산·문수산 일원)

o 면　　적 : 5,179ha(중점시설지구 206ha)

o 총사업비 : 2,515억원

o 사업기간 : 2009～2014(6년간)

o 주요시설 : Seed Valut 등 연구시설, 테마별 전시원 등 전시공간

o 연차별 추진사항

'09~'11	'12~'13	'14
《계획·설계단계》	《주요시설 공사 단계》	《운영준비·개원 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 평가 및 문화재시굴조사 ◦토지보상 ◦식물 수급계획 수립 ◦인허가 및 건축 협의 등 ◦조성공사 계약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사업단 신설('11.1)	◦주요 시설공사 시행 - 건축,토목,전기,기계,조경, 전시원, 특수시설(Seed Vault, 고산식물원 등) ◦전시식물 및 자료 본격 수집 - 식물조사 및 자료 수집 - 국내외 식물 확보·식재 ◦토지보상 후속조치 ◦수목원 연계 산림사업 추진 ◦수목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시설공사 및 공사감리 마무리 - 시설·연구 기자재 설치 및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전시식물 및 자료 관리 ◦연구시설, 기자재 등 설치 ◦연구·전시 및 교육·홍보 -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운영프로그램 개발·운영 ◦조직·인력 · 규정 등 운영체계 완비

2)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3년차)를 차질 없이 추진

o 청렴하고 투명한 공사감독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공사 품질 제고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사 실행을 위하여 현장 상주 감독체제 유지
- 공종별 관급자재 및 외자(Seed Vault)구매 설치 감독시스템 강화

o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3년차 공사 차질 없이 추진
- 산림청,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계자 정기적 협의회의 개최
- 기성금 직불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상시 교류협력 구축 · 운영

o 건축 · 토목 · 전시원 등 조성공사 추진('13년도 : 363억원)
※ 조달청, 감리단,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정 공사물량 확정 추진
- 폐기물 처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공기별 일정에 따라 완료

3)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 및 현지 외 보전 식물자원 확보

o 원산지 정보 및 관리이력이 추적 가능한 식물 종 위주로 확보
- 주제원 전시식물과 현지 외 보전을 위한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을 구분
- 이력관리가 잘된 식물(수목)을 우선 확보

o 구입, 교류, 기증, 자체수집 등 도입경로 다양화로 식물자원 확보 효율성 제고

- 국내 공·사립 수목원 및 국유양묘장 보유식물 조사 및 이식
- 한국수자원공사 협력 하에 댐 수몰 예정지 자생식물 조사 및 이식
- 국외 특수식물확보를 위해 국립수목원 MOU 기관 활용을 통한 협력
- 백두대간 지역 자생식물을 우선 확보로 현지 외 보전 목적 조기 달성
  ※ 국가산림자원조사 DB 활용(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 임업진흥원 협의)

o 국가 표준 식물종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식물정보입력(111만여 건)

4) 백두대간수목원 관리·운영프로그램 개발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계 등에 위탁 연구용역 추진(2013년 용역비 100백만원)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산림청, 국립수목원 관계 직원으로 구성된 T/F팀 협조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요시설 등 관리·운영 계획 수립

-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 보고서, 2010』의 운영계획을 수정 및 구체화
-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 예산, 연구기자재 및 내부시설 등(목록작성 및 예산)
- Seed Vault, 연구·교육·방문시설, 전시원 등 분야별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연구 분야 개발 및 업무편제 수립

5) 호랑이 숲 조성 타당성 검증 및 관리·운영 계획 프로그램 개발

o 국내 호랑이 전문가(학계, 동물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o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호랑이 종 번식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o 호랑이 종 번식을 위한 적정 사육 개체 수 및 방사면적

o 방사장내 오·우수시설, 인조 암, 호랑이 연못 및 쉼터 시설 도입 필요성

o 호랑이 숲 조성 이후 조직(수의사, 사육사)운영 및 관리방안 등

※ 조사결과는 호랑이 숲 확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6) 백두대간수목원내 산림사업 등 기타 사업추진

o 지방청(남부·영주관리소)의 협조를 통해 수목원 특성에 맞는 산림사업 추진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사방사업 1개소, 임도구조개량 5km, 계류보전 1.2km
- 수목원 특성에 맞는 숲가꾸기 1,000ha

o 호랑이 숲 확대 조성 등 총사업비 조정 추가 공사 내용 검토
  - 실시 설계시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주요시설에 대해 총사업비 반영 검토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운영을 위한 단계별 인력확충 추진
  - ('12) 8명 → ('13) 개원 인력 82명 확보 작업 → ('14~) 364명 추가
    ※ 근거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KDI) 및 기본계획

o 백두대간수목원 보전지역(4,974ha) 산림생물자원(식물) 총 조사 시범 실시
  - 보전지역 관리 및 이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o 국립수목원 인턴 및 코디네이터 활용(산림환경보호과, 국립수목원 협조)
  - 산림식물자원 조사와 기 확보된 식물 DB 구축 사업 등에 투입

라. 추진일정

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공사 : 연중

o 수목원 조성 전시물 및 유용식물 확보 : 연중

o 운영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 2013. 1월

o 호랑이 숲 조성 확대를 위한 타당성 용역 발주 : 2013. 2월

o 수목원 조성공사(3년차) 계약 : 2013. 4월

o 수목원 조성 및 운영 준비를 위한 T/F 운영 ; 2013. 1~12월

o 연계 산림사업 추진 : 2013. 4~11월

o 대경목 이식사업(1년차) 완료 : 2013. 11월

o 수목원 보전지역 산림생물자원 총 조사 시범실시 : 2013. 4~11월

〈부 록〉

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ㅇ 이 내용은 201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정리한 것임. ㅇ 2012. 12월 현재 관계법령과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도 있음.

2013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신 설〉	ㅇ 수출특화지역 육성 지원 개시 - 1개소, 국고 10억원 * 총사업비 20억원 * 정부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산림자원법률, 임업진흥촉진법률 등 ('13. 1월)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042-481-4086)
2. 수입 잣의 WTO 시장접근 물량 운영방식 변경	ㅇ 저율관세(30%)로 수입되는 잣 52.9톤(깐잣 14.89톤) 물량 배정을 수입권 공매로 운영	ㅇ 일정물량에 대해 선착순 실수요자배정으로 변경 - 실수요자배정 35톤(깐잣 9.8톤) - 수입권공매 17.9톤(깐잣 5톤)	산림자원법률, 고시 ('13.1.1) 해외자원개발 담당관실 (042-481-4086)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관리	〈신 설〉	ㅇ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해당 수종이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원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수종육성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2.2) 산림자원과 (042-481-4181)
4. 원목 규격 개정 및 규격별 시장가격 조사 실시	ㅇ 원목 규격에 대해 침엽수, 활엽수별로 재장별 말구지름, 결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품등을 구분 ㅇ 국유임산물 매각시 시가조사 산물이 다량 수요되는 도시 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 시가를 적용 - 현재 지방청별 매월 조사하여 조사자료 공유	ㅇ 원목 규격을 주요 수종별, 활용 용도별, 결점사항 등을 고려하여 규격을 산정 ㅇ 국유임산물 매각시 시가조사 산물이 다량 수요 되는 도시 중 국가에 유리한 시장의 도매 시가를 적용 - 임업진흥원 위탁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활용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13.1.1) 목재생산과 (042-481-888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5. 목재생산업 등록제도 도입	〈신 설〉	ㅇ 입목·죽을 벌채·제재·유통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5.24) 목재생산과 (042-481-4204, 8875)
6. 목제품 규격·품질 미표시 벌칙 상향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목재제품 규격·품질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보관·통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5.24) 목재생산과 (042-481-4204, 8875)
7. 목재펠릿 보급 대상 확대	ㅇ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농산어촌 거주자만 설치 가능 ㅇ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용 목재펠릿 보일러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만 설치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지역에도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가능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편의 및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 가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1.1시행) 목재생산과 (042-481-4201)
8. 국유림 영림단의 운영 및 지원·육성	〈신 설〉	ㅇ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영림단을 조직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음 - ①조림사업, ②숲가꾸기사업, ③산림병해충방제사업, ④양묘사업, ⑤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 - 산림사업 중 ①조림사업, ②숲가꾸기사업, ③입목의 벌채·굴취 또는 이식사업은 국유림 영림단에 대행, 위탁 시행 할 수 있음 ㅇ 국유림영림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2.2) 목재생산과 (042-481-4187)
9. 임도시설 단가의 변화	o 임도신설 단가 - 간선임도 : 188백만원/km - 작업임도 : 80백만원/km	ㅇ 임도신설 시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재해안전성을 강화한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가 현실화 - 간선임도 : 207백만원/km - 작업임도 : 125백만원/km	’13 예산내역서 (’13.1.1) 목재생산과 (042-481-4275)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10. 간선임도 사전 설계비 신규반영	〈신 설〉	ㅇ 겨울철 폭설로 인한 설계 불가 지역 등에 대한 사전 설계비 신설 - 175km, 1,711백만원 * 민유임도 137km, 국유임도 38km * (설계비) 220백만원/km×5.81% - 사전설계비는 2013년 1회 반영, 이후에는 사전설계 노선 설계비 활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1.1) 목재생산과 (042-481-4275)
11. 임도시설 시범단지 지정 및 사업량 지원	〈신 설〉	ㅇ 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지정한 임도 시범사업단지 조성계획 확정(10개소) ㅇ “임도시설 시범단지”는 조성완료까지 임도 신설 확대 지원(추가지원 실시) - 2013년 지원 : 도(간선 2km, 작업 2km), 지방청(간선 3km, 작업 3km)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1.1) 목재생산과 (042-481-4275)
12. 사유림 매수단가 인상	ㅇ 산림경영임지 실행 매수단가 600만원/ha	ㅇ 산림경영임지 실행 매수단가 650만원/ha (50만원/ha, 8.3% 인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1. 1.) 국유림관리과 (042-481-4095, 4098)
13. 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발급	〈신 설〉	ㅇ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 -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말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7.26)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6)
14.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 설〉	ㅇ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 - 숲해설가 전문과정(170시간이상), 유아숲지도사 전문과정(210시간이상),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130시간 이상)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7.26)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6)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 관계 부서
15.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과정별 평가	〈신 설〉	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받은 교육생은 각 과정별로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검정평가에 합격해야 함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 기준 (산림청 고시 제2012-45호, ’12.6.15)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6)
16.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침 개정	〈신 설〉	ㅇ 국고금을 융자받아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 - (현행) 숲가꾸기 등 7개 → (개정안) 사설 수목장림 조성 등 8개	산림사업종합자금지침 산림휴양문화과 (042-481-4211)
17. 품목별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사업 효율화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	ㅇ 수실류 등 생산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수실류 등 지상방제 장비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 친환경 밤 생산지원 - 수실류 등 생산장비 지원 ㅇ 대추 생산기반 조성 ㅇ 떫은감 생산기반 조성 ㅇ 조경수 생산시설 지원	ㅇ 수실류,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수실류 등 지상방제장비 - 친환경 방제장비 - 수실류 등 생산 장비 - 수실류 등 생산시설 -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18. 밤나무 토양개량 단가 현실화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	ㅇ 밤 토양개량 - 총사업비 : 282천원/ha ㅇ 적용 대상품목 확대 〈신 설〉	ㅇ 밤 토양개량 - 총사업비 : 504천원/ha ㅇ 적용 대상품목 확대 - 밤 이외 수실류 : 756천원/ha (밤의 1.5배)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6)
19. 산양삼 품질검사비용 신규지원(산양삼 생산 과정확인사업)	〈신 설〉	o 산양삼 품질검사 비용 200천원/건 이내 신규 지원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0. 대규모 사업추진시 사전타당성 검토 강화 (공모사업)	ㅇ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임업인 임의로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 실시	ㅇ 사업추진시 사전에 사업설계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 추진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 1. 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1.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 등 총사업비 집행비율 현실화	ㅇ 기반조성비 60%이상, 종자·묘목구입비 10%이내	ㅇ 기반조성비 40%이상, 종자·묘목구입비 30%이내,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규모별 국고지원율 차별화	ㅇ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ㅇ 지원조건 - (공모)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비공모)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3. 임산물생산기반정비 (산림복합경영)	ㅇ 모델유형별 지원 - 단기소득중심형 - 목재생산중심형 - 복합산지관리형	ㅇ 모델유형별 지원기준 삭제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 1. 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9)
24.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ㅇ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 (굴삭기 면허의 경우는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조건을 구비하여 현재 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지원 가능함. 단 후순위로 함)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1.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195)
25. 임산물유통 구조개선	ㅇ 임산물(곶감) 저장건조시설 지원	〈폐 지〉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13. 1. 1) 산림경영소득과 (042-481-420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26. 수목원 조성(변경) 계획의 자동 승인	ㅇ 수목원 조성(변경) 계획의 승인 처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규칙 별지서식에 별도 기재)	ㅇ 수목원 조성(변경) 계획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의제 (자동 승인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 4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27.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유효기간 폐지	ㅇ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경과시 재신청	ㅇ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유효기간 폐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 4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28. 개발제한구역내 '사방시설 설치시' 부담금 면제조치	ㅇ 부과대상	ㅇ 면제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사태방지과 (042-481-4271)
29.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신 설〉	ㅇ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을 보조한 상시 관리체계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림보호법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30.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	ㅇ 청문 없이 회복 명령	ㅇ 수목원조성계획 취소에 따라 산림의 원상회복을 명령시 청문 실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3. 4월)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8)
31.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ㅇ 금지구역 3km	ㅇ 금지구역 2km로 축소 ☞(참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2. 12.6월) 산림병해충과 (042-481-4076)